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진·이윤진·박은영·정재훈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저 자 김근진, 이윤진, 박은영, 정재훈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4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 070-4916-408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96-1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그동안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2018-2021) 등, 국정과제 이행 분석을 위한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제를 다년도 연구로 수행해 왔다. 2024년은 유보통합이라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의 큰 정책적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확대 속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핵심 과제와 주요 어젠다를 고려하여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과 미래 대응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은 영유아기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하여, 육아 및 교육·돌봄 정책에 관한 국가 핵심과제를 담는 중요한 부분이다. 초저출생의 추세와 인구구조의 가파른 변화가 진행 중으로,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책 수행의 실질적 효과와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수행된 본 연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분야의 설계와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현 정부의 ECEC 관련 국정과제 수행과 이행의 단계별로 핵심과제 도출 및 성과와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2년차로 정책 이행의 종합 및 부문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 | |
|--|------------|
| 요약 | 1 |
| | |
| I. 서론 | 15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 2. 연구내용 | 19 |
| 3. 연구방법 | 21 |
| 4. 선행연구 | 24 |
| 5.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 29 |
| 6. 성과분석 대상 정책의 범주 | 32 |
| | |
| II.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 33 |
| 1. 부처별 성과지표 | 35 |
| 2. 선행연구의 성과지표 | 40 |
| 3. 본 연구의 성과지표 | 48 |
| | |
| III. 국정과제 성과 평가 | 55 |
| 1. 국정과제 진행 모니터링 | 57 |
| 2. 전문가 조사 | 87 |
| 3. 소결 | 115 |
| | |
| IV. 정책과제 부문별 성과 평가 | 119 |
|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121 |
| 2. 교육·보육·돌봄 지원 | 140 |
| 3. 자녀돌봄 시간지원 | 169 |
| 4. 전체 육아정책 기준 평가 | 185 |
| 5. 소결 | 235 |

| | |
|---|------------|
|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 245 |
| 1. 심층분석의 필요성 | 247 |
| 2. 인구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 249 |
| 3. 저출산과 가족구성(family formation)에 관한 이론 | 254 |
| 4. 저출산 담론 분석 | 287 |
| 5. 심층분석의 성과지표 | 307 |
| 6. 정책 성과분석 | 310 |
| | |
| VI. 해외 정책 사례 분석(독일 가족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 321 |
| 1. 가족의 변화 | 323 |
| 2. 가족정책의 흐름 | 332 |
| 3.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45 |
| 4. 결론 | 349 |
| | |
| VII.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351 |
| 1. 일반 성과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353 |
| 2. 심층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364 |
| | |
| 참고문헌 | 373 |
| Abstract | 385 |
| 부록 | 387 |
| 부록 1. 부모 설문지 | 387 |
| 부록 2. 전문가 설문지 | 402 |
| 부록 3. 면담조사 질문지 | 420 |



표 목차

| | |
|--|----|
| 〈표 Ⅰ-3-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유치원 원장) | 22 |
| 〈표 Ⅰ-3-2〉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23 |
| 〈표 Ⅰ-3-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24 |
| 〈표 Ⅰ-4-1〉 2018~2022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 | 25 |
| 〈표 Ⅰ-5-1〉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 30 |
| 〈표 Ⅱ-1-1〉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35 |
| 〈표 Ⅱ-1-2〉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37 |
| 〈표 Ⅱ-1-3〉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38 |
| 〈표 Ⅱ-1-4〉 고용노동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40 |
| 〈표 Ⅱ-2-1〉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40 |
| 〈표 Ⅱ-2-2〉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및 목표치 | 41 |
| 〈표 Ⅱ-2-3〉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42 |
| 〈표 Ⅱ-2-4〉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 43 |
| 〈표 Ⅱ-2-5〉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 45 |
| 〈표 Ⅱ-2-6〉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 46 |
| 〈표 Ⅱ-3-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부문의 성과지표 | 48 |
| 〈표 Ⅱ-3-2〉 교육·보육·돌봄 정책 부문의 성과지표 | 50 |
| 〈표 Ⅱ-3-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부문의 성과지표 | 53 |
| 〈표 Ⅲ-1-1〉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조성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58 |
| 〈표 Ⅲ-1-2〉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61 |
| 〈표 Ⅲ-1-3〉 국정과제 48.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63 |
| 〈표 Ⅲ-1-4〉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추진현황 | |

| | |
|--|-----|
| (2023~2024.1분기) | 67 |
| 〈표 III-1-5〉 국정과제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71 |
| 〈표 III-1-6〉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74 |
| 〈표 III-1-7〉 국정과제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76 |
| 〈표 III-1-8〉 국정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77 |
| 〈표 III-1-9〉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79 |
| 〈표 III-1-10〉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2023~2024.1분기) | 84 |
| 〈표 III-2-1〉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 | 88 |
| 〈표 III-2-2〉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1순위) | 89 |
| 〈표 III-2-3〉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선택 사유: 1순위 | 90 |
| 〈표 III-2-4〉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2순위) | 92 |
| 〈표 III-2-5〉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선택 사유(전문가): 2순위 | 94 |
| 〈표 III-2-6〉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1+2순위) | 96 |
| 〈표 III-2-7〉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1순위) | 97 |
| 〈표 III-2-8〉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된 과제 선택 이유: 1순위 | 98 |
| 〈표 III-2-9〉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2순위) | 100 |
| 〈표 III-2-10〉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된 과제 선택 사유: 2순위 .. | 101 |
| 〈표 III-2-11〉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1+2순위) | 103 |
| 〈표 III-2-12〉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가장 미흡한 과제(1순위) | 104 |
| 〈표 III-2-13〉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 선택 이유: 1순위 .. | 106 |
| 〈표 III-2-14〉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미흡한 과제 개선 방안: 1순위 | 108 |
| 〈표 III-2-15〉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가장 미흡한 과제(2순위) | 110 |
| 〈표 III-2-16〉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미흡한 과제 선택 사유(전문가): 2순위 | 111 |
| 〈표 III-2-17〉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미흡한 과제 개선 방안(전문가): 2순위 | 113 |
| 〈표 III-2-18〉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가장 미흡한 과제(1+2순위) | 114 |
| 〈표 IV-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인지도 | 121 |
| 〈표 IV-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률(2023년/2024년 조사) | 123 |

| | |
|--|-----|
| 〈표 N-1-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3년/2024년) | 123 |
| 〈표 N-1-4〉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현금 및 의료비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 124 |
| 〈표 N-1-5〉 의료비 및 건강 지원 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 125 |
| 〈표 N-1-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126 |
| 〈표 N-1-7〉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127 |
| 〈표 N-1-8〉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128 |
| 〈표 N-1-9〉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2023년/2024년 조사) | 129 |
| 〈표 N-1-10〉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 | 130 |
| 〈표 N-1-11〉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31 |
| 〈표 N-1-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과제 | 133 |
| 〈표 N-1-13〉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33 |
| 〈표 N-1-1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135 |
| 〈표 N-1-15〉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37 |
| 〈표 N-1-16〉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39 |
| 〈표 N-2-1〉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인지도 | 140 |
| 〈표 N-2-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3년/2024년 조사) | 141 |
| 〈표 N-2-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23년/2024년 조사) | 142 |
| 〈표 N-2-4〉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 142 |
| 〈표 N-2-5〉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 143 |
| 〈표 N-2-6〉 어린이집 연장보육 만족도 | 144 |
| 〈표 N-2-7〉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만족하는 이유 | 145 |
| 〈표 N-2-8〉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불만족하는 이유 | 146 |
| 〈표 N-2-9〉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경험 | 147 |
| 〈표 N-2-10〉 유치원 방과후 과정 만족도 | 148 |
| 〈표 N-2-11〉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만족하는 이유 | 149 |

| | |
|---|-----|
| 〈표 IV-2-12〉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불만족하는 이유 | 150 |
| 〈표 IV-2-13〉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인지도 | 151 |
| 〈표 IV-2-14〉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2023년/2024년 조사) | 152 |
| 〈표 IV-2-15〉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23년/2024년 조사) | 153 |
| 〈표 IV-2-16〉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 153 |
| 〈표 IV-2-17〉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154 |
| 〈표 IV-2-18〉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156 |
| 〈표 IV-2-19〉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157 |
| 〈표 IV-2-20〉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2023년/2024년 조사) | 158 |
| 〈표 IV-2-21〉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 159 |
| 〈표 IV-2-22〉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교육·보육·돌봄 정책) | 160 |
| 〈표 IV-2-23〉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작은 과제 | 162 |
| 〈표 IV-2-24〉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교육·보육·돌봄 정책) | 163 |
| 〈표 IV-2-25〉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165 |
| 〈표 IV-2-26〉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 (교육·보육·돌봄 정책) | 166 |
| 〈표 IV-2-27〉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교육·보육·돌봄 정책) | 168 |
| 〈표 IV-3-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인지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170 |
| 〈표 IV-3-2〉 유연근무제 인지도(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 171 |
| 〈표 IV-3-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만족도(2023년/2024년) | 172 |
| 〈표 IV-3-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 173 |
| 〈표 IV-3-5〉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174 |
| 〈표 IV-3-6〉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175 |
| 〈표 IV-3-7〉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 |

| | |
|---|-----|
| (2023년/2024년 조사) | 176 |
| <표 IV-3-8>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성과 및 미흡 정도 | 176 |
| <표 IV-3-9>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77 |
| <표 IV-3-10>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80 |
| <표 IV-3-1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182 |
| <표 IV-3-12>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82 |
| <표 IV-3-13>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84 |
| <표 IV-4-1>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 | 187 |
| <표 IV-4-2>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2순위) | 189 |
| <표 IV-4-3>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1+2순위) | 191 |
| <표 IV-4-4>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1순위) | 194 |
| <표 IV-4-5>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2순위) | 196 |
| <표 IV-4-6>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1+2순위) | 198 |
| <표 IV-4-7>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1순위) | 201 |
| <표 IV-4-8>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2순위) | 203 |
| <표 IV-4-9>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1+2순위) | 205 |
| <표 IV-4-10>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1순위) | 207 |
| <표 IV-4-11>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 선택 이유: 1순위 | 208 |
| <표 IV-4-12>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2순위) | 211 |
| <표 IV-4-13>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 |

| | |
|---|-----|
| 정책 선택 이유: 2순위 | 212 |
| <표 IV-4-14>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1+2순위) | 213 |
| <표 IV-4-15>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1순위) | 215 |
| <표 IV-4-16>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 선택 이유: 1순위 | 216 |
| <표 IV-4-17>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2순위) | 218 |
| <표 IV-4-18>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 선택 이유: 2순위 | 219 |
| <표 IV-4-19>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1+2순위) | 220 |
| <표 IV-4-20> 육아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 | 221 |
| <표 IV-4-21> 육아정책 중 중요도 높은 정책범주 선택 이유 | 222 |
| <표 IV-4-22> 정부 육아정책 정책과제 중요도 | 225 |
| <표 IV-4-23> 정부 육아 정책 중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1순위) | 227 |
| <표 IV-4-24>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1순위 | 228 |
| <표 IV-4-25> 정부 육아 정책 중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2순위) | 230 |
| <표 IV-4-26>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2순위 | 232 |
| <표 IV-4-27> 정부 육아 정책 중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1+2순위) | 234 |
| <표 V-3-1> 국민 삶의 질 2020 지표(통계청·통계개발원) | 255 |
| <표 V-3-2>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 257 |
| <표 V-3-3> 시·도별 합계출산율 | 258 |
| <표 V-3-4> 주택구입부담지수 | 259 |
| <표 V-3-5> House price index (OECD) (2015=100) | 260 |
| <표 V-3-6> 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group and gender (2020). | 265 |
| <표 V-3-7> International survey of youth attitude 2018(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13-29세)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Men should work outside of the home and women stay home and take care of it.) 에 대한 응답 | 267 |
| <표 V-3-8> Employment rates (%) for all mothers (15-64 year olds) with at least one child under 15 | 268 |
| <표 V-3-9>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 269 |
| <표 V-3-10> Gender wage gap (median) for full time employees | 272 |
| <표 V-3-11> Time spent in unpaid/paid work (2022 or latest year) (Men, 15-64) | 273 |

| | |
|---|-----|
| 〈표 V-3-12〉 Stocks of foreign-born population | 278 |
| 〈표 V-3-13〉 성별 미혼인구 비율(30-39세) | 279 |
| 〈표 V-3-14〉 Crude marriage rate (per 1,000 people) | 279 |
| 〈표 V-3-15〉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 280 |
| 〈표 V-3-16〉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청소년 가치관(2023년) | 282 |
| 〈표 V-3-17〉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변화 .. | 282 |
| 〈표 V-3-18〉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청년의 가치관 변화 | 283 |
| 〈표 V-3-19〉 결혼을 안하는 이유 | 283 |
| 〈표 V-4-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혼인력(nuptiality) 증진 관련 언급 | 287 |
| 〈표 V-4-2〉 2019년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fort all women, by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United States, 2019) | 292 |
| 〈표 V-4-3〉 20-49세 여자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2015) | 292 |
| 〈표 V-4-4〉 1990-2016년 간 18세 이상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출산율 증가 (Percent of births occurring to unmarried women age 18+ by all education levels) | 293 |
| 〈표 V-4-5〉 1990-2016년 간 18세 이상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출산율 증가의 인종별 차이(Percent of births occurring to unmarried women age 18+ by education and race/ethnicity, 1990 and 2016) .. | 293 |
| 〈표 V-4-6〉 첫째아이 출생 시 기준 1970-2009년 핀란드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 출산율 변화(Percentage of nonmarital first births: mothers marital status at first birth 1970-2009) | 294 |
| 〈표 V-4-7〉 20세 이상 교육수준별 혼인율(2015) | 294 |
| 〈표 V-4-8〉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를 준다고 응답한 비율(who mention family and children as sources of meaning in life) | 303 |
| 〈표 V-4-9〉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에 대한 국가별 응답 순위(Ranked choice among 17 topics coded as part of what gives people meaning in life) .. | 304 |
| 〈표 V-5-1〉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성과지표 | 307 |
| 〈표 V-5-2〉 김근진·박창현·김희수(2020)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 308 |
| 〈표 V-6-1〉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 314 |
| 〈표 V-6-2〉 2019년 가족지원정책 공적 예산 GDP 대비 비율(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2019), % of GDP) | 316 |



그림 목차

| | |
|--|-----|
| [그림 IV-4-1] 정부 육아정책 정책과제 중요도(2023년·2024년 비교) | 226 |
| [그림 VI-1-1] 가족 개념의 재구성(2005년 연방통계청 인구조사) | 327 |
| [그림 VI-1-2] 가족 구성의 변화 | 328 |
| [그림 VI-1-3] 혼인 추이 | 329 |
| [그림 VI-1-4] 결혼 유형의 변화 | 330 |
| [그림 VI-1-5] 결혼 유형의 변화 | 331 |
| [그림 VI-1-6] 가족 유형의 변화 | 332 |
| [그림 VI-2-1]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지출 비율의 구성 변화 | 334 |
| [그림 VI-2-2] 전일제학교 확대 추이 | 335 |
| [그림 VI-2-3] 현금에서 서비스로의 비중 변화 | 336 |
| [그림 VI-2-4] OECD 주요 회원국 가족복지비 지출 비율 | 337 |
| [그림 VI-2-5] 부모시간 참여자 수 추이 | 339 |
| [그림 VI-2-6] 독일 가족친화기업 확대 전략 | 344 |
| [그림 VI-2-7] 저출생 대책으로서 육아휴직과 아빠 육아참여 | 346 |
| [그림 VI-2-8] 저출생 대책으로서 아이돌봄 정책 | 347 |
| [그림 VI-2-9] 저출생 대응으로서 주거 지원 | 348 |
| [그림 VI-2-10] 저출생 대응으로서 다자녀가구 지원 | 349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2018-2021) 등, 국정과제 이행 분석을 위한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제를 다년도 연구로 수행해 오고 있음.
- 본 연구는 5년 연속과제 중 2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선행연구에 적용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24년 시점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를 진단, 분석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측면에서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18-2022년 5개년에 걸쳐 수행된「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국정과제 이행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한 육아정책 전체(현금 및 의료비 지원, 교육·보육·돌봄, 시간지원)를 대상으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할 것이다. 후술할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책은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한 육아정책 전반을 의미함.

나. 연구내용

- 유아교육·보육 분야 주요 정책의 연도별 실행과 효과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행의 유의한 성과와 함께 계획 대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개선과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함.

- 국정과제 이행수준에 대한 연도별 점검과 이행수준 진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증거기반의 정책분석을 실시, 국정과제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함.
- 유아교육·보육 관련 5개년 국정과제의 이행수준 진단을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 마련된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 성과지표 및 분석 틀에 기초하여, 2차년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일반 성과평가'와 해당 연도별 핵심과제에 대한 '현안분석'을 실시함.
- 올해 심층분석 주제는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로 선정하였음.

다. 연구방법

- 유아교육·보육 정책 분야 정부발간자료(5개년 국정과제, 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와 가용한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OECD family database 등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국제지표 및 데이터를 분석함.
- 유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및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2024년 핵심 현안과제 도출과 관련자료 분석에 대해 협의
-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방향성, 이행 기반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8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
- 부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 부모 설문조사: 수요자 부모(0~5세 영유아 및 초등 1-3학년 자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 육아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아동, 가족,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50명 대상 개방형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

라. 선행연구

- 2018~2022년 「육아정책 성과와 분석」 5개년도 과제의 결과를 정리함.
- 2023년 1차년도 연구 결과를 정리함.

마.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50(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1(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6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7(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68(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69(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정리함.

바. 성과분석 대상 정책의 범주

- 정책의 범주는 선행연구인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에 기반하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교육·보육·돌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3개 범주로 구분함.

2.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가. 부처별 성과지표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성과지표를 정리함.

나. 선행연구의 성과지표

- 선행연구 중 육아정책 성과분석 과제 4차년도 연구인 김근진·유해미·조혜주 (2021)에서 사용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리함.

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

- 본 연구의 성과지표를 3개 정책범주인 현금 및 의료비 지원, 교육·보육·돌봄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3. 국정과제 성과 평가

가. 국정과제 진행 모니터링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진행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함.

나. 전문가 조사

-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등 이상 3개 국정과제가 평균 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51번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국정과제가 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46번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48.0%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은 84번 국가교육책임제강화로 교육격차해소다 22%로 나타남.
-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는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24.0%로 가장 많았고, 63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20.0%,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4.0%,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2.0% 순으로 나타남.
-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는 48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과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 2개 국정과제를 18.0%로 동일하게 1순위로 꼽았고, 다음은 51번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 16.0%,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14.0% 순으로 미흡한 과제로 평가하였음.

4. 정책과제 부문별 성과 평가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부모조사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전반의 만족도는 3.2점에서 3.8점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65.5%로 가장 높았음.
 -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 진료체계 개선'이 48.0%로 가장 높았음.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50.2%로 가장 높았음.

□ 전문가 조사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는 부모급여를 5.7점(긍정비율 84.0%)으로 가장 높았고,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5.3점(긍정비율 74.0%), 아동 진료체계 개선 4.4점(긍정비율 56.0%) 순으로 나타남.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은 “부모급여”가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과제는 “아동 진료 체계 개선”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향후 중점과제는 “부모급여”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 교육·보육·돌봄 지원

□ 부모조사

-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2023년 조사에 비하여 민간육아도우미를 제외하고 대체로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만족 비율은 2023년 78.2%에서 2024년 80.1%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외의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의 만족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26.9%로 가장 높았음.
-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보통합’이 20.1%로 가장 높았음.
-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19.7%)로 나타남.

□ 전문가 조사

-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달성도가 높은 정책과제는 “교통안전”이 5.4점(긍

정비율 68.0%)으로 가장 높았고, 유보통합이 3.9점(긍정비율 34.0%)로 가장 낮았음.

-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과제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40%)이었고, 그 다음이 유보통합(28%)으로 나타남.
-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로 “유보통합”(28%)을 가장 많이 선택했음.
-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역시, “유보통합”(42%)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음.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 부모조사

- 2024년 만족도를 살펴보면, 3.4점에서 3.8점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4%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6%)보다 높게 나타났음.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3%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7%)보다 높게 나타났음.

□ 전문가 조사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 4.7점(긍정비율 66.0%),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긍정비율 48.0%)가 4.3점으로 나타났음.
- 어느 과제가 성과가 더 있는가는 질문에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56.0%)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44.0%)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자녀돌봄 시간지원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60%)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40%)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음.

라. 전체 육아정책 기준 평가

□ 부모조사

-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49.3%로 가장 높았음.
-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3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 진료체계 개선” 10.5%,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10.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 조사

- 전체 육아정책 정책과제들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은 “부모급여 도입”(46%)으로 나타남.
- 전체 육아정책 중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한 정책으로는 “유보통합”정책이 28.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음.
- 육아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는 교육·보육·돌봄 정책(72%)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육아정책 1순위는 “유보통합”(32.0%)인 것으로 나타남.

5.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가. 심층분석의 필요성

-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정성호, 2018: 51),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가능함.
-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과(outcome) 지표를 구성해야 함.

- 20년 넘게 초저출산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구정책과 육아정책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구정책에서 육아정책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거시적 접근의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나. 인구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 인구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해 소개함.

다. 저출산과 가족구성(family formation)에 관한 이론

-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
-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
- 베커 모델(Becker model)
-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
-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라. 저출산 담론 분석

- 혼인력(nuptiality)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담론
- 해외 사례와의 비교
-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의 의미
- 생명권력(biopower)의 작동 및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의 규범화(normalization)

마. 심층분석의 성과지표

- 설계 및 기획(design & planning)
- 거버넌스(governance)
- 투입(input)
- 과정(process)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바. 정책 성과분석

- 현재 한국의 육아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의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론적 근거와 저출산 담론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대상자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와 비혼가정의 아동을 배제(exclusion)하고 있음.
-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었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같은 컨트롤 타워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 간접지원은 Malthus model 및 Easterlin model에 근거하여 주거 및 고용 지원을 하면 결혼이 증가하여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는 이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인구정책에서 제외하고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도 접근해야 함.
-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감축하는 것이 요구됨.
- 국정과제에 포함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이 산출 지표에 해당될 것임.
-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제고를 결과 지표로 하는 것보다 성별 임금격차,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률, 25-29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고용률 격차, 성별 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남성 임금·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연간 평균노동시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가족구성의 다양화 수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표 등 출산과 양육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의 개선을 결과 지표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됨.

6. 해외 정책 사례 분석(독일 가족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가. 가족의 변화

- 성별역할분리 규범의 변화
- 가족 구성의 변화
- 가족 형태의 다양화

나. 가족정책의 흐름

- 전통적 정책 패러다임의 시대
-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구축
 - 가족친화기업의 확대

다.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육아휴직 확대와 아빠의 참여
- 아이돌봄 정책
- 주거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

라. 결론

- 지속적으로 아기울음소리가 커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다양성, 다양한 삶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일관되면서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육아휴직 확대와 아빠의 참여가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예방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아이돌봄 정책이 단순한 돌봄이 아닌 교육과 돌봄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함.
- 주거 지원의 전제로서 전형적(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탈피하여 아이 중심 지원이라는 변화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구성해야 함.
-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도 아이 중심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7.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가. 일반 성과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부모급여가 영아기 현금지원에 집중한다면 아동수당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존재하는 중고등학생 시기인 청소년기로 적용이 확대되어야 함.
- 전문가들은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에 대해 난임부부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였고, 임신 및 산모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발생가능한 출생 전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 불식, 매년 임신기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의 수 및 실제 경제적 지원의 증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출산 후 전문인력 지원의 실현, 산모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의 경우 보건소, 병원 등과 잘 연계되어 있어 산모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성과로 제시함.
- 아동진료체계 개선은 초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인프라의 붕괴 및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 전달체계의 불안정성 심화가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 및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요구됨.

□ 교육·보육·돌봄 정책

- 유보통합의 성과가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반대로 유보통합의 성과가 작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진 후 정책 추진이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하였음.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교사 교육 강화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등의 확대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부모들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늘봄학교가 추진됨에 따라 학교 밖 돌봄이 학교 안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도록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향후 늘봄지원실장 등 늘봄학교 전담인력이 원활히 배치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 발달장애인 지원에서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이 미

흡하고, 장애조기 발견 및 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부족하며, 전문기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향후 과제로 제시됨.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서 전문가들은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은 별로 고려되지 못하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가족 단위의 사각지대가 잘 메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은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가족 중 두 가지 예시에 불과함에도 가족다양성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는 점을 그 한계로 제시함.
- 식생활 건강권 강화에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식생활 건강권 강화」는 식생활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고 생활 운동 놀이 시간의 확대경험이 부족함, 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식생활 건강권이 강화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식생활 이슈와 관련된 높은 관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급식 국가관리 확대가 현재 수요자 체감도 및 급식 종사자 관리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과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의 결과는 아직도 육아휴직 사용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집중되고 아직도 문화적으로 실제 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부모 및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온 것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보다 일상의 근로시간 운영에서 유연근무제 확대가 정책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됨.

나. 심층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이민자에 대한 현재의 육아정책을 보면,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육아정책(현금, 서비스, 시간)의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나, 향후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외국인에게도 육아정책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이 요구됨. 또한 현재 육아정책 관련 법체계는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육아정책의 대상 범위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정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다양성을 수용한 확대가 요구됨.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같은 컨트롤 타워 강화가 가시화할 전망이나, 이를 위해서는 향후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 정책결정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 대응 예산에서 직접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만 별도 관리한다는(2023년 기준 신혼·출산·다자녀 주거지원 7.5조원) 방향을 제시하였는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7),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직접지원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방향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 교사 대 영유아 수 감축은 교육·보육의 질 제고(quality)와 접근성 확보(access) 모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인구감소지역 등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합계출산율 목표가 실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목표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제고를 결과 지표로 하는 것보다 성별 임금격차,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률, 25-29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고용률 격차, 성별 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남성 임금·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연간 평균노동시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가족구성원의 다양화 수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표 등 출산과 양육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의 개선을 결과 지표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됨.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선행연구
- 05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 06 성과분석 대상 정책의 범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인구동향조사 결과,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24만 9천명(통계청 보도자료 2023. 2. 22)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그간 투입한 260조원의 예산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투입과 정책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다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소관부서별로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 진행되는 성과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책 분석과 이행점검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은 영유아기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하여, 육아 및 교육·돌봄 정책에 관한 국가 핵심과제를 담는 중요한 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험/재난 및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의 위기, 인구위기를 경험하면서 생애초기 유아교육·보육의 주요 어젠다는 전환기적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행복과 역량, 건강한 성장발달을 담보하는 미래설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의 이행과 주요 정책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책의 성과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수행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주요 육아주체(영유아, 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 과정이 진행되고 그 성과가 체감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관한 공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 개선 및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영유아 친환경 급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발달전문가 파견 등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지난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격차 완화에서 단계적 유보통합의 추진이라는 현안 과제의 이행

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현금-시간 지원을 포괄하는 양육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OECD 국가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유아교육·보육 분야가 부처 일원화 되어있으며, 양질의 우수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사 전문성 제고 및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다수의 질적 전략과 연계협력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2010-2015),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2018-2021) 등, 국정과제 이행 분석을 위한 육아정책 전반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제를 다년도 연구로 수행해 오고 있다.

2024년 시점, 글로벌 ECEC 동향과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확대로 그 중요성과 역할 범위가 확장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핵심 과제와 주요 어젠다를 고려하여,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과 미래 및 현안 대응의 전략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년 연속과제 중 2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선행연구에 적용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24년 시점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를 진단, 분석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측면에서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2022년 5개년에 걸쳐 수행된「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국정과제 이행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한 육아정책 전체(현금 및 의료비 지원, 교육·보육·돌봄, 시간지원)를 대상으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할 것이다. 후술할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책은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한 육아정책 전반을 의미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의 수립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설계와 계획, 이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분야 주요 정책의 연도별 실행과 효과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행의 유의한 성과와 함께 계획 대비 미비한 부분 및 미이행 지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개선과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한다.

셋째, 국정과제 이행수준에 대한 연도별 점검과 이행수준 진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증거기반의 정책분석을 실시, 국정과제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넷째, 2023년에 개발된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성과지표와 분석 틀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성과분석과 업무평가의 변화 등 국내외 성과분석의 경향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성과분석의 틀과 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다섯째,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수준 및 전달체계, 수요자관점의 체감 및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년차 정책 수행의 기반과 이행 과정을 점검한다.

여섯째, 유아교육·보육 관련 5개년 국정과제의 이행수준 진단을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 마련된 유아교육·보육 정책 범주 성과지표 및 분석 틀에 기초하여, 2차년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일반 성과평가’와 해당 연도별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Part I. 일반 성과분석)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유아교육·보육 정책 전반의 이행수준을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Part II. 심층분석) 국정과제 이행 단계에 따른 연도별 유아교육·보육 현안과제에 대한 별도 분석을 통해,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올해 심층분석 주제는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로 선정하였다. 심층분석 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비롯한 육아정책 뿐 아니라 다른 저출산 관련 정책들에 있어서도 미시적인 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저출산 대책의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지금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시적인 정책 연구보다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이다.

특히 육아정책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을 구성해 왔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인구정책과 연계되는 지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심층분석에서 저출산 대책의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점검은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관련 국제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저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 베커 모델(Becker model),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 제2차 인구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에 대해 검토하고 OECD 등 관련 국제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내재되어 있는 혼인력(nuptiality) 중심의 저출산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결과(outcome) 지표를 구성하여 설계·기획(design & planning), 거버넌스(governance),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지표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한다.

심층분석에 추가하여 2024.6.19.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가족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해외 정책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유아교육·보육 정책 분야 정부발간자료(5개년 국정과제, 각 부처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와 가용한 통계자료를 고찰한다.

OECD family database 등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국제지표 및 데이터를 분석한다. 「2018~2022 육아정책과 분석과 과제」등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유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및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2024년 핵심 현안과제 도출과 관련자료 분석에 대해 협의한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 대비 새로운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점검 및 정책분석/성과평가의 방법과 관련 설문문항의 구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방향성, 이행 기반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자문한다.

라. 면담조사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8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면담조사에서는 국정과제 수립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현안과제를 파악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후술할 부모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3-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어린이집·유치원 원장)

| 구분 | 소재지 | 유형 |
|--------------------|-----|------|
| 어린이집 원장 (10.31) | 서울 | 국공립 |
| | 경기 | 국공립 |
| | 충남 | 법인 |
| | 강원 | 직장 |
| | 서울 | 가정 |
| 유치원 원장 (10.31) | 울산 | 사립사인 |
| | 전북 | 사립사인 |
| | 충북 | 사립법인 |

마. 부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수요자 부모(0~5세 영유아 및 초등 1-3학년 자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2년차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443명으로 43.7%였으며, 어머니가 570명으로 56.3%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45.2%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38.7%, 읍면 16.1% 순이었다.

연령은 30대 이상이 52.2%로 과반 이상이었고 40대 이상 46.4%, 20대도 1.4%였다. 부모 중 절반 이상인 56.6%가 취업 중이었으며 맞벌이가 51.5%로 외벌이보다 많았다.

가구 소득은 601만원 이상이 47.0%로 가장 많았고 351~500만원(21.8%), 501~600만원(18.8%), 251~350만원(10.2%), 250만원 이하(2.3%) 순이었다.

첫째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등저학년 부모가 41.5%로 가장 많았고 유아부모 41.0%, 영아부모 17.6% 순이었다.

〈표 I-3-2〉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 계(수) | 구분 | 계(수) |
|-----------|-------------|------------------|-------------|
| 전체 | 100.0(1013) | | |
| 성별 | | 첫째아 기준 | |
| 남성 | 43.7 (443) | 영아 부모(만0-2세) | 17.6 (178) |
| 여성 | 56.3 (570) | 유아 부모(만3-5세) | 41.0 (415) |
| 지역 구분 | | 초등저학년 부모(만6-9세) | 41.5 (420) |
| 대도시 | 38.7 (392) | 모든 자녀 기준 | |
| 중소도시 | 45.2 (458) | 영아 부모(만0-2세) | 28.9 (293) |
| 읍면 | 16.1 (163) | 유아 부모(만3-5세) | 56.3 (570) |
| 연령 | | 초등저학년 부모(만6-9세) | 41.5 (420) |
| 20대 | 1.4 (14) | 이용 경험 | |
| 30대 | 52.2 (529) | 어린이집 이용자 | 73.9 (743) |
| 40대 이상 | 46.4 (470) | 유치원 이용자 | 43.1 (433) |
| 취업 여부 | |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자 | 37.0 (372) |
| 취업 | 56.6 (573) | 양육수당 이용자 | 47.0 (472) |
| 미취업 | 43.4 (440) | 아동수당 이용자 | 93.1 (936) |
| 맞벌이 여부 | | 모 근로단축 이용자 | 23.0 (231) |
| 맞벌이 | 51.5 (522) | 부 근로단축 이용자 | 8.3 (83) |
| 외벌이 | 48.5 (491) | 모 육아휴직 이용자 | 44.0 (442) |
| 가구 소득 | | 부 육아휴직 이용자 | 15.9 (160) |
| 250만원 이하 | 2.3 (23) | | |
| 251~350만원 | 10.2 (103) | | |
| 351~500만원 | 21.8 (221) | | |
| 501~600만원 | 18.8 (190) | | |
| 601만원 이상 | 47.0 (476) | | |

육아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아동, 가족,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50명 대상 개방형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2년차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추진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본 설문조사에 유관 전문가 50명이 참여하였다. 전공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각각 19명으로 동수이며 기타 전문가는 12명이 참여하였다. 직종은 대학교수가 90.0%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20년 이상의 고경력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I-3-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 계 (수) |
|-----------------|------------|
| 전체 | 100.0 (50) |
| 전공 | |
| 유아교육 | 38.0 (19) |
| 보육 | 38.0 (19) |
| 기타 | 24.0 (12) |
| 직종 | |
| 대학 교수 | 9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2.0 (1) |
| 현장전문가 | 2.0 (1) |
| 기타전문가 | 6.0 (3) |
| 전문분야 | |
| 유아교육/교육 | 54.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30.0 (15) |
| 사회복지/정책행정/경제/기타 | 16.0 (8) |
| 해당분야 경력 | |
| 5~10년 미만 | 2.0 (1) |
| 10~15년 미만 | 10.0 (5) |
| 15~20년 미만 | 22.0 (11) |
| 20년 이상 | 66.0 (33) |

4. 선행연구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는 2018-2022년 5개년에 걸쳐 수행된「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국정과제 이행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제의 선행연구인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도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와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8~2022년 「육아정책 성과와 분석」 개요

1) 육아정책 범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실시했던 「육아정책 성과와 분석」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의 범주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1차년도에는 15개, 2차년도 20개, 3차년도 21개, 4차년도 22개, 5차년도 20개를 육아정책 범주로 정하였다. 1차년도에는 저출산 정책과 유아교육·보육 정책 분야로 육아정책을 한정했다면, 2차년도부터는 여기에 아동정책 또는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을 추가하여 육아정책 범주를 확대해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4차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분야를 특별 신설하기도 했다.

〈표 I-4-1〉 2018-2022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

| 구분 | 분야 | | 핵심 육아정책 범주 | | |
|---------------|---|----------------------------|--|------|---|
| 1차 (2018년) | 복합· 혁신 10대 과제 | 저출산 정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7.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10.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 | |
| | | 유아교육· 보육 정책 5대 과제 | <table border="0"> <tr> <td>유아교육</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12.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td> </tr> <tr> <td>보육정책</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14.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15.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td> </tr> </table> | 유아교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12.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
| 유아교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12.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 | | | |
| 보육정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14.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15.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 | | |
| 2차 (2019년) | | 저출산 정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3.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4. 출산·양육 세제 개선 5. 의료비 제로화 6.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7.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등 8. 초등교육 혁신 9. 양육지원체계 개편 | | |
| | |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12.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강화 1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14.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15.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6.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서비스 17.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 | | |

| 구분 | 분야 | 핵심 육아정책 범주 |
|---------------|------------------|---|
| 3차 (2020년) | 아동정책 | 18.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9.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20. 아동권리보장(4영역:보호, 참여, 건강, 놀이) |
| | 저출산 정책 | 1.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3.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4.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 8.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2.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3. 보육서비스 질 제고 14.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5.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16.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서비스 17.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8.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확대 |
| | 아동정책 | 19.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21.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 | 유아교육·보육·초등 돌봄 지원 |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8.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 4차 (2021년) | 자녀돌봄 시간 지원 |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 구분 | 분야 | 핵심 육아정책 범주 |
|-----------------------|------------------|---|
| 5차 (2022년)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 1.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 가족돌봄휴가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 | 유아교육·보육·초등 돌봄지원 | 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4.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5.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6.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 | 자녀돌봄 시간지원 |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 *1~5차년도 정책평가에 대한 종합분석 | | |

자료: 1) 1차~4차년도: 김나영·최윤경·김희수(2022). 2016~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육아정책연구소. pp.80-82.

2) 5차년도: 김나영·최윤경·김희수(2022). 2016~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육아정책연구소.

2) 주요 연구결과

2022년에 실시한 5차년도 「육아정책 성과와 분석 과제」연구가 문재인 정부(2018~2022)의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크게 부모 집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육아정책 중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된 정책 1순위는 28.0%를 차지한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이며, 2순위는 아동수당(22.1%)을 꼽았다(김나영 외, 2022; 173-174). 3순위부터는 응답 비율이 한 자리로 떨어져서 1, 2순위와 차이가 컸는데 재택근무 유연근무제(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7.6%) 순이었다. 부모들은 직접적인 현금 및 시

간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육아정책 역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 ‘아동수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각 18.9%, 10.9%, 9.4%로 많이 나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8.9%, 7.4%로 많이 나온 점이다(김나영 외, 2022: 175). 요컨대, 육아에 도움이 되었다는 시간지원 및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 조사에서도 가장 성과가 큰 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이 26.0%로 1순위였으며,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2.5%, ‘아동수당’이 11.5% 순이었다(김나영 외, 2022: 178). 가장 성과가 미흡한 육아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4.4%,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0.6%로 그 뒤를 이었다(김나영 외, 2022: 181).

정리하면, 부모와 전문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와 ‘아동수당’을 성과가 높은 육아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부모는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재택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전문가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부모와 전문가의 육아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서도 부모는 현금 및 시간 지원 육아정책이 높게 나왔다면, 전문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완화 해소,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 기관 관련한 정책이 높게 나와서 부모와 전문가의 육아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

나. 2023년 「육아정책 성과와 분석」 개요

1) 육아정책 범주

2022년 5월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해당 과제에서는 육아정책 범주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초점을 주되, 밀접한 돌봄 정책을 일부 포함하였다(김동훈 외, 2023: 52-53).

이에 1)부모급여신설, 2)보육서비스 질 제고, 3)촉촉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4)산

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5)아동학대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6)발달장애인 지원, 7)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8)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9)아동 진료체계 개선, 10)식생활 건강권 강화, 11)교통안전, 12)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13)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등 총 13개의 육아정책을 범주화하였다(김동훈 외, 2023: 116-135).

2) 주요 연구결과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동전의 양면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부모와 전문가 모두,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문가는 현금지원 확대에 대한 오·남용 등을 우려하였다(김동훈 외, 2023: 116). 또한,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마을돌봄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민간돌봄서비스 자격관리제도나 등록제 도입이 오히려 공공의 책임성 약화, 늘봄학교-마을돌봄 간 연계의 불분명성, 돌봄기관의 질적 격차를 우려하였다(김동훈 외, 2023: 121).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분야에서도 관련 모바일 앱 활성화 및 정신건강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강화 등은 시의 적절한 정책이나, 모바일 앱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비, 산부인과·소아과 병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정책효과는 미흡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김동훈 외, 2023: 121).

5.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육아정책 부문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선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5-1〉 윤석열 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유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 과제목표 | 주요내용 |
|---|--|---|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신설)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보육서비스질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총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 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 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 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 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

| 국정과제 | 과제목표 | 주요내용 |
|--|---|--|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
|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 행 추진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 도 활용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 하는 문화 개선 지원 |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 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 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 한 삶을 향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 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 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 84 (국가교육책 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 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6. 성과분석 대상 정책의 범주

본 연구에서 정책의 범주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행연구인 육아정책연구소 5개년도 일반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의 후속과제로서 유아교육·보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육아정책을 다룬다. 정책의 범주는 선행연구인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에 기반하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교육·보육·돌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3개 범주로 구분한다.

II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01 부처별 성과지표

02 선행연구의 성과지표

03 본 연구의 성과지표

II.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1. 부처별 성과지표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성과목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과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이 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성과목표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임신·출산 건강 지원 과제가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성과목표에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로 관리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I-1-1〉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
|----------------------------|---------------------|--------------------------------------|--|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캠페인 효과성(점) | ‘홍보 캠페인 접촉 후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와 ‘홍보 캠페인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 응답 평균(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 비율 *5점 척도 100점 기준 환산 |
| |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
| | |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5점 척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
| | 임신·출산 건강 지원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 만족률 = 만족도 평가점수 / 만족도 총점 (20점) × 100 |
| 미숙아 NICU 퇴원후 생존율(%) | | KNN 연차보고서상 생존율 |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
|----------------------------|-----------------------|---------------------------|---|
| | | 성·피임 교육 전·후 인지 변화율 | (교육 후 인지율-교육 전 인지율)*100% |
| | | 임신·출산 종합상담 이용자 만족도 | 만족도 설문 조사(5점척도) 문항별 평균점수/문항수 |
| | | 첫만남이용권 지급률 (단위: %) | 첫만남이용권 지급률 = '23년 첫만남이용권지원 아동수 / '23년 출생아수(연도말 기준) ×100 |
|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보육료 지원 서비스 만족도(점) |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드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 | 만0세 부모급여 지급률(%) | 만0세 부모급여 지원아동 수/만0세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수 |
| | |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월평균 이용건수(건) | $\frac{\sum_{i=1}^{12} (\text{월별 총이용건수} / \text{월별 시간제보육반수})}{12}$ |
| | |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비율(호봉) | 보육교사 호봉총합 / 전체 인건비 지원 보육 교사수 |
| | |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 개소수(개소) |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
|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어린이집 평가등급 A·B 등급 비율 | 어린이집 평가 결과 확정 A·B등급 어린이집 수 / 평가 결과 확정 전체 어린이집 수 |
| | | 부모모니터링 참여 비율(%) |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한 어린이집 개소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증감(%) | 측정산식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 100 * 조사시기 : 당해 연도 12월말 |
| |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 측정산식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 100 * 조사시기 : 12월말 |
|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 측정산식 = (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수 - 측정대상자 및 표본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 측정방향 : 시스템 구성 및 이용 편의성, 기능개선 노력 정도 등에 대한 만족도 측정 |
| | | 보조교사 배치율(%) | 보조교사 수 / 영아반 담임교사수 |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 527-531.

나. 교육부

교육부의 성과목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유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한다.’ 2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유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 성과목표에는 모든 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유아교육 분야 유보통합 기반 조성, ‘늘봄학교’추진을 통한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장애학생 통합교육여건 개선 및 맞춤형 교육 확대의 관리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 성과목표에는 관리과제로 유보통합 기반 구축 강화가 있다.

〈표 II-1-2〉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
|-------------------------------------|--------------------------------|-------------------------------|---|
| 유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모든 아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 교육복지전문서비스 수혜 학교 수(개) | 교육복지 전문 서비스 지원 학교 수* * 교육복지 전문 인력인 교육 복지사 배치 또는 담당 학교 수 |
|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대학생 장학생 자퇴율(%) | 자퇴 장학생 수 / 전체 대학생 장학생 수*100 |
| |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 각 학교별 평균*의 합 / 전체 학교 수 * 학교의 학생별 설문조사 결과 값의 합 / 학교 학생 수 ※ 다문화 수용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값(6점 척도, 8개 지표)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유아교육 분야 유보통합 기반 조성 |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율(%) | 국공립유치원 전체 유아수 대비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수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수 / 국공립 유치원 전체 유아수)×10 |
| | | 방과후 과정 참여 학부모 만족도(%) |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측정 |
| | ‘늘봄학교’ 추진을 통한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방과후 학교 만족도(점) | 만족도 산출방식: 긍정응답률(매우 만족+만족)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
|--|--------------------------------------|-------------------------------|--|
| | 장애학생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맞춤형 교육 확대 |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이수율(%) | '23년 전국 통합학급 담당 교사 중 통합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 전국 통합학급 담당 교사 수 ×100 (대상) 전국통합학급담당교사* * '23년특수교육통계기준 |
| | |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만족도(점) | (산식)[(5점척도 해당 점수 × 응답자 수)의합/전체응답자수의 합 (대상) '23년 시·청각장애학생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학생 + 의료적 지원을 받는 중도장애학생 |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한다. | 유보통합 기반 구축 강화 | 유보통합 관련 현장 소통 실적(회) | 현장소통 관련 실적(횟수) 집계 (추진단 부서별 연간 5회 이상 실시) |
| | | 대국민 홍보 실적(건) | 11개월(2~12월) × 월 2건 |

자료: 교육부(2023). 2023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 407-408.

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성과목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목표들은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와 가족정책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의 관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II-1-3〉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
|--|--------------------------------------|----------------------------|---|
|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인증 유효 중소기업 수(개)(공통) | 연도 말 기준 가족친화인증이 유효한 중소기업 수 |
| |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점) | 설문응답자(이용 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5점 척도)합산·평균 |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
|--|--|-------------------------------|---|
| |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아동 수혜율 (%) | 주민등록 12세 미만 아동수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수 |
|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 가족정책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점)(공통) | 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태도 등 설문조사 |
| | | 가족센터 이용자 수(천명) (공통) | 센터 이용자 수 측정 |
| |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인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명) |
| | | 양육비 이행률(% (공통) |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 가구)×100 |
| | | 취약·위기 가족 지원 가구(가정)수 | 취약·위기 가족대상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가구(가정) 수 |
|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 수혜율 (%) |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 대비 지원 서비스 이용 자녀 수 |
| | | 다문화 이해교육 참여자 증가율(%) | '22년 대비 '23년 다문화 이해 교육 참여자 증가율 (%) |
|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 전화 건수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 화센터의 상담전화 건수 |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 30-37.

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육아정책과 관련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및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이다. 이 중, 육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과제는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노력,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 제도 효과(%), 가사근로자법 시행효과(%), 남성 육아휴직자 수(명),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이 있다.

〈표 II-1-4〉 고용노동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3)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
|---------------------------------|--------------------|------------------------|--|
| 데이터 기반의 정책 대응과 고용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노력 | 일·생활 균형 제도 효과(%) | ① 근로자 직장 만족도에 미친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 × 0.5 + ② 기업 생산성 향상에 미친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 × 0.5 |
| | | 가사근로자법 시행효과(%) | ① 가사근로자 전환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 × 0.5 + ②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목표 대비 달성률 × 0.5 |
|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및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 남녀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명)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
| |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공통) | (여성근로자 비율의 합 / AA대상 사업장 수)×10 |

자료: 고용노동부(2023).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 277-278.

2. 선행연구의 성과지표

선행연구 중 육아정책 성과분석 과제 4차년도 연구인 김근진·유해미·조혜주 (2021)에서 사용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2-1〉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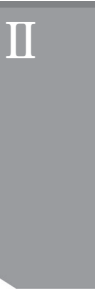
| 목표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세부 목표 | 성과지표 |
|---------------------------------------|----------------------------------|---------------------------------------|--|
| 자녀양육 및 임신·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아동수당 | -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의 기본권 보장 | - 아동수당 지급액의 충분성 - 아동수당 지급의 포괄성 - 아동수당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
| |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비 부담 완화 | -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 -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 - 의료비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
| |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건강관리 비용 부담 완화 | - 건강 지원 금액의 충분성 - 건강 지원의 포괄성 - 건강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

자료: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74.

〈표 II-2-2〉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및 목표치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성과지표 | 산식(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액의 충분성(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 - 아동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중 아동수당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액과의 비교(국가별 소득수준 고려) | - 아동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관련 선행연구 - OECD 아동수당 관련 데이터 |
| | 아동수당 지급의 포괄성 |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의 비교 | OECD 아동수당 관련 데이터 |
| | 아동수당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 아동수당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아동수당 문항(5점 척도)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 |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의료비 지출 비용 중 의료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의료비 지출 비용 관련 선행연구 |
| |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출산모수×1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출산모수×10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난임 환자 수×100(%)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불임 환자수 및 진료비 |
| | 의료비 지원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 의료비 지원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의료비 지원 문항(5점 척도)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건강 지원 금액의 충분성 |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출 비용 중 건강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출 비용 관련 선행연구 |
| | 건강 지원의 포괄성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출산모수×10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난임 환자 수×100(%) | -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불임 환자수 및 진료비 |
| | 건강 지원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 건강 지원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비 지원 문항(5점 척도)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

자료: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75.



〈표 II-2-3〉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목표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세부 목표 | 성과지표 |
|--|--------------------------|---|---|
| 아동의 성장·발달 및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실현 - 유아의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보급 및 운영 건설당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사교육 확대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만족도 |
|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 공공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취원률 제고 | -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 유치원 취원률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률 |
|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
|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부모 및 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및 시설 기준 차이 완화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차이 완화 여부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완화 여부 |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개선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
| |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의 안정화 | - 연장보육교사 인력 확대 - 보육지원체계 개편 만족도 |
|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를 통한 단시간 보육 수요 대응 |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 |
| |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충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 연도별 초등돌봄 인원 확충 - 온종일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 온종일돌봄체계의 연계성 향상 -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 온종일돌봄체계 만족도 |
|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 - 아이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 - 아이돌봄미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 아동학대 대응 예산 안정성 | |

자료: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76.

〈표 II-2-4〉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성과지표 | 산식(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놀이중심 누리과정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보급 및 운영 컨설팅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보급 및 운영 컨설팅 시행 현황 | 교육부, 복지부,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자료 |
|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사교육 확대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사교육 시행 현황 | 교육부, 복지부,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자료 |
|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만족도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부모 및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 만족도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및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 유치원 취원율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공공 유치원 취원아 수 / 전체 유치원 재취원아 수×10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율 |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국공립 등 공공 보육 이용 아동 수(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00(%)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 파인 도입 등)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른 성과 및 개선사항: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2020/2021년 유아학비·보육료 인상 | 교육부 각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유치원-어린이집 자격양성체계 차이 완화 여부 | 유치원-어린이집 자격양성체계 차이 현황 | 관련 정책 자료 |
|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완화 여부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현황 | 관련 정책 자료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상담 지원 | - 보건복지부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어린이집 원장·교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
| |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 -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 보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성과지표 | 산식(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보육지원 체계 개편 (기본-연장 보육) | 연장보육교사 인력 확대 | - 연장보육교사 인력 확대 -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 보육지원체계 개편 만족도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 만족도 및 개선사항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
| 시간제보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 |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자 수 대비 연간 전국 시간제 보육반 수 |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 |
|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 연도별 초등돌봄 인원 확충 |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이용자 수 |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교육부 온종일돌봄 시설 현황 |
| | 온종일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여부 |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 온종일돌봄체계의 연계성 향상 |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연계·협력 증진 여부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면담조사 |
| |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 종사자 자격요건 및 보수교육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면담조사 |
| | 온종일돌봄체계 만족도 | 온종일돌봄체계에 대한 부모 및 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부모 및 설문조사 / 부모 및 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면담조사 |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 비율 2019년 대비 확대 정도 및 이용자 부담 완화 정도 | - 여성가족부 각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 | 2019년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변화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아이돌봄 사업현황) |
| | 아이돌봄미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 아이돌봄미 인적성검사,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제재 강화 등 근거규정 마련 | 아이돌봄지원법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2020-2021 | 「2020-2021 육아정책 |

II.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성과지표 | 산식(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 만족도 |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아이돌봄서비스 문항(5점 척도) |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 시군구 수 / 전체 시군구 수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지사체 배치 현황 |
| |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 관련 정책자료 |
| | 아동학대 대응 예산 안정성 | 아동학대 대응 예산(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의 안정성 |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

자료: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77.

〈표 II-2-5〉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목표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세부 목표 | 성과지표 |
|-----------------------|-------------------|---|--|
| 부모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 보장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 육아휴직제도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 - 육아휴직 사용률/이용가능성 - 전체 제도 이용 중 남성 비율 - 성별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육아휴직 급여의 충분성 - 육아휴직자의 고용복귀율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현황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제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각지대 해소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용가능성 - 전체 제도 이용 중 남성 비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각지대 해소 현황 |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제고 - 배우자 출산휴가 사각지대 해소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이용가능성 - 배우자 출산휴가 사각지대 해소 현황 |
| | 유연근무제 확대 1: 재택근로 | - 재택근로 이용률 제고 - 재택근로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재택근로 사각지대 해소 | - 재택근로 사용률/이용가능성 - 성별 재택근로 사용률 |
| | 유연근무제 확대 2: 시차출퇴근 | - 시차출퇴근제도 이용률 제고 - 시차출퇴근제도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시차출퇴근제도 사각지대 해소 | - 시차출퇴근제도 사용률 - 성별 시차출퇴근제도 사용률 |

자료: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80.

〈표 II-2-6〉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성과지표 (세부 지표) | 산식(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사용률/이용가능성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출생아 부모의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중 당해 연도 육아휴직자/출생아 부모 중 당해 연도 육아휴직 대상자×100(%) - 출생아 100명당 당해 연도 육아휴직자 수=출생아 부모 중 당해 연도 육아휴직 대상자/출생아 수×100(%) -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사용자 수=출생아 부모 중 전 기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출생아 수×100(%) -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현황(KOSIS) - 육아휴직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휴직 이용 문항(5점 척도) | -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 (KOSIS): 매년 12월 - KOSIS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현황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
| | 전체 제도 이용 중 남성 비율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중 남성 비율 - 위의 육아휴직 사용률 지표의 남성 이용 비율 |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 (KOSIS): 매년 12월 |
| | 육아휴직 급여의 충분성 | - 육아휴직 급여 수준(소득 대체율) - 육아휴직 급여의 충분성: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휴직 급여 문항(5점 척도) | - 관련 정책자료 -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
|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 -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중: 출산전 360일까지, 출산후 720일까지(30일 배수) 모의 취업 비중(%) | - e나라지표 -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 (KOSIS): 매년 12월 |
|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현황 | - 위의 육아휴직 사용률 지표의 소속 기업체 규모별 사용률 현황 - 육아휴직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 -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 (KOSIS): 매년 12월 - KOSIS 육아휴직제도 인지도/활용실적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용 가능성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산전후휴가자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현황(KOSIS) | - e나라지표 - KOSI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현황 - (고용노동부 일·가 |

II.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성과지표 (세부 지표) | 산식(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문항(5점 척도) | 정 양립실태조사) - 「2020-2021 육아 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중 남성 비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중 남성 비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성 사용자 수/산전후휴가자수 × 100(%) | e나라지표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각지대 해소 현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 | KOSI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활용 실적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이용가능성 |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현황(KOSIS)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문항(5점 척도) | -KOSIS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 「2020-2021 육아 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각지대 해소 현황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 KOSIS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활용 실적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
| 유연근무제 확대 1: 재택근무 | 재택근무 사용자/이용가능성 |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재택 및 원격근무제)(경제활동인구조사) -유연근로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도입 여부(KOSIS) - 재택근무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재택근무 이용 문항(5점 척도) | -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KOSIS 유연근로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도입여부(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 「2020-2021 육아 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
| | 성별 재택근로 사용자 | 성별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 (재택 및 원격근무제)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 성과지표 (세부 지표) | 산식(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유연근무제 확대 2: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도 사용률/이용가 능성 | -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시차출퇴근제) (경제활동인구조사) -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 도입 여부(KOSIS) - 시차출퇴근제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시차출퇴근제 이용 문항(5점 척도) |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 로형태별 부가조사 - KOSIS 유연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도입 여 (고용노동부 일·가 정 양립실태조사) - 「2020-2021 육아성 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 조사 |
| | 성별 시차출퇴근제도 사용률 | 성별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시차출퇴근제)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 제 활 동 인 구 조 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자료: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
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80.

3. 본 연구의 성과지표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에 포함된 육아정책 관련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부모조사 및 전문가 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성과지표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3개 정책 범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별로 구성하였다.

〈표 II-3-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부문의 성과지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부모급여 도입 | 부모급여 시행 정도 |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시행 정도 | 보건복지부 자료 |
| | 부모급여 만족도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부모급여 수행 달성도 평가 | 부모급여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 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II.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실행 정도 |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 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 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실행 정도 | 보건복지부 자료 |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만족도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 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 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수행 달성도 평가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 (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 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아동 진료체계 개선 실행 정도 |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실행 정도 | 보건복지부 자료 |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 아동 진료체계 개선 만족도: 「유아교육·보육 (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 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수행 달성도 평가 | 아동 진료체계 개선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 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 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표 II-3-2〉 교육·보육·돌봄 정책 부문의 성과지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유보통합 | 유보통합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여부 | 교육부 자료 |
| | 관리체계 일원화 | 2024년 6월까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지방 조직의 시·도교육청 통합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수립 | 교육부 자료 |
| | 0~5세 영유아 대상 유아교육·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0~5세 영유아 대상 유아교육·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발표 | 교육부 자료 |
| | 유보통합 추진 만족도 | 유보통합 추진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유보통합 추진 수행 달성도 평가 | 유보통합 추진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황 |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황 방안 발표 | 교육부 자료 |
| | 보육교사 처우개선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상담 지원 | 교육부 자료 |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만족도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수행 달성도 평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개소수 | 연도별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확충 개소수 | 보건복지부 자료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 비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 비율 2022년 대비 확대 정도 및 이용자 부담 완화 정도 | - 여성가족부 각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II.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 및 양육지원체계의 성과지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제재 강화 등 근거규정 마련 | 아이돌봄지원법 |
| |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여부 | 여성가족부 자료 |
| | 총체적인 아동돌봄체계 마련 만족도 | 총체적인 아동돌봄체계 마련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총체적인 아동돌봄체계 마련 수행 달성도 평가 | 총체적인 아동돌봄체계 마련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늘봄학교 운영 학교 수 | -2024년 1학기 2,000개교 이상 -2024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운영 | 교육부 자료 |
| | 초등돌봄 대기자 수 감소 | 초등돌봄 대기자 수 감소 | 교육부 자료 |
| | 늘봄학교 전담인력 배치 | -2024년 1학기말 늘봄실무직원 배치 완료 -2024년 2학기 늘봄지원실 배치 완료 | 교육부 자료 |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만족도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수행 달성도 평가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아동학대 방지 | 아동학대 방지 실행 정도 |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 보건복지부 자료 |



| 정책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 아동학대 방지 만족도 | 아동학대 방지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아동학대 방지 수행 달성도 평가 | 아동학대 방지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실행 정도 |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 의료 인프라 확대 실행 정도 | 보건복지부 자료 |
| | 발달장애인 지원 수행 달성도 평가 | 발달장애인 지원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행 정도 | 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실행 정도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자료 |
|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수행 달성도 평가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식생활 건강권 강화 실행 정도 | 급식 국가관리 확대 정도 | 교육부·보건복지부 자료 |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만족도 | 식생활 건강권 강화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수행 달성도 평가 | 식생활 건강권 강화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교통안전 | 교통안전 실행 정도 |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정도 | 국토교통부 자료 |

| 정책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 교통안전 만족도 | 교통안전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교통안전 수행 달성도 평가 | 교통안전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표 II-3-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부문의 성과지표

| 정책과제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이용자료 |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실행 정도 |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실행 정도 | 고용노동부 자료 |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만족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수행 달성도 평가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실행 정도 | 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실행 정도 | 고용노동부 자료 |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만족도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만족도: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부모 설문조사 결과 |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수행 달성도 평가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수행 달성도 평가: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III

국정과제 성과 평가

- 01 국정과제 진행 모니터링
- 02 전문가 조사
- 03 소결

III. 국정과제 성과 평가

본 장에서는 먼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정부업무평가포털」의 자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어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육아정책의 3개 범주인 현금 및 의료비 지원, 교육·보육·돌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으로 나누어 성과를 평가한다.

1. 국정과제 진행 모니터링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조성”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가 주관 부서이다. 실천과제는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질제고,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지원,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육아정책인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실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금액을 0세(생후 11개월)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생후 12~23개월)는 35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하였다(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2024).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2023년에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계획 수립, 신규 어린이집 확충 사업 수요조사, 부모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연구 수행,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2024년 1분기에는 부모교육 육아정보 제공 등 육아지원 플랫폼 운영, 보육교사 임금 격차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지침 개정,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 사업 운영, 표준보육비를 5% 인상을 발표하였다(메디칼월드뉴스, 2024.1.2.).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 시간 확대, 난방비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및 시간 연장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관련 사업의 예산과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을 실시하였다.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모바일 앱을 배포하였고, 연구를 기반으로 영유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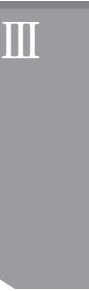
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였고, 신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립했고 2024년에는 추가 설치 공모를 실시하였다. 난임부부 건강보험 시술비 지원 기준도 확대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에 위기아동발굴을 위한 “e 아동행복지원사업”을 3차례 실시하였고, 아동보호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교육과 현장간담회(2024년) 등을 실시하였다. 산모가 임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이 2023년 10월31일에 공포되었고, 관련한 하위 법령 논의가 2024년 1월에 이루어졌다.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1차 회의가 지난 1월에 개최되었다.

〈표 III-1-1〉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조성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46-1. 부모급여 도입 | 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지급 개시(1월~) • 부모급여 신청 안내등(1월) • 부모급여 지급방법 등 권역별 설명회(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지급현황 모니터링 이행(4월) • '24 부모급여 정부 예산안 검토 및 부처안 마련(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부모급여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부모급여 예산 (28,887억원, 12,672억원 증액) 확보(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및 지급 개시(1월~) • '24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신청안내 등 집중홍보(1월) |
| 46-2.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복지부·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효율화 계획 수립·안내(1월) • 유보통합 추진단 발족 및 로드맵 발표(1월) • '23년 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 발표(3월) • '23년 어린이집확충사업 추가 수요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거점형양육 지원 시범사업 (육아침표) 추진계획 수립(4월) • 부모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운영 계획 수립(4월) • 비담임교사 등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시(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통합형 2단계 시범사업 운영(7월~) •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품질관리 사업 실시(8월) • '23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가 수요조사 (3차)(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선정 심의실시 (2차)(10월) • 부모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완료(11월)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운영(11월) •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육아정보 제공 등 양육지원 플랫폼 기능보강 및 운영(1월)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1월) • 보육교사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2월) • 국공립어린이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1차)(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추진(5월) • '23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가 수요조사 (2차)(6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결과 보고(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장기임차 전환 지침 개정(2월) • 시간제보육 통합반 분사업 운영(3월) • '24년 어린이집표준 보육비용 발표(3월) |
| 46-3. 영유아·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 체계 마련 | 복지부·여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돌봄시설 기본운영시간 (19사→20사) 시행(1월~) • 마을돌봄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실시(센터당 월 30만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2월), 지원가구 (7.5만→8.5만) 및 지원시간(연 840→960 시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이력 및 이용자 만족도 반영 등 서비스품질 평가를 통한지역아동센터 5기 평가 기준 개선(6월) • 다함께돌봄센터 실무 운영 매뉴얼 제작을 통해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6월) •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관련 시·도 과장 회의(5월) •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추가 지정(6월) • 공공·민간 돌봄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2회, 8월) •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시범사업 추진 (8~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센터 981개소 확충(신설 100개소, 9월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5기('24~26) 평가지표 확정 및 설명회 • '23 돌봄시설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간 및 배포 • 초등학교 입학 시기 운영 및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시설방문 ("24.3)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및 청소년(한)부모 0~1세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통합교육 시범사업 교육기관 선정(6월, 4개소) •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 과정 개발 중간보고 (6월) | | | |
| 46-4.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지원 확대 | 복지부 | •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배포 ('23.3.27) • 권역 난임·우울 증 상담센터 운영 공모 및 2개 지역 선정(1~3월)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신규 사업 기관 공모 및 18개소 선정(2~3월) | • 영유아건강 검진 개선 연구결과 검토 및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5~6월) • 사실혼 부부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인정 기준 개선(5월)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39개소→56개소(6월) |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가 56개소→59개소(9월) • 난임 상담 수가 검토를 위한 논의 추진(7~8월) | • '24 권역 난임·우울 증 상담센터 신규 선정 사업 설명회 추진(11.3) •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 관련 고시 개정 완료 •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운영 보건소 59개 선정·운영(11월), 영아발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소득기준 폐지) 개선(1월) • 난임부부 건강보험 시술비 지원 기준 확대(2월)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설치·운영 지자체 대상 공모(2월)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신규 사업기관 공모 및 9개소 선정(2~3월) |
| 46-5.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 복지부 | • e아동행복 지원사업 1차수 실시 (1월) •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 전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2월) • '23 아동학대 대응인력 | •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엔아동 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 연구」(4월) • 제20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 • (위기아동 발굴)e아동 행복지원사업 3차수 실시 ('9월) • 아동보호 전담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2회 실시 (9월) | •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 제정(10.31 공포) •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연구용역 종료 (5~11월)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 • 입양체계 개편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1월) •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한 위기임신보호 출산법 하위법령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교육계획 수립(3월) | 개최(5월) • 긍정양육 129홍보 영상 공모 실시(6월) | | 전수조사 실시(10~12개월) • 아동학대 공공 대응 체계 운영 우수지자체 평가·포상(11월) | 논의(1.15~1.16)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간담회 실시(2월) |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5.인출).

국정과제 47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47-1),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47-3),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 강화(47-5)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 지원 단가 확대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계속 실시 및 평가, 심층연구를 시행을 통해 통합 돌봄 지침을 2024년 3월에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난 해 계속해서 추가 확충하는 등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I-1-2〉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47-4. 발달장애인 | 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시간 확대 및 단가인상(1월)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 추가 확충(3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심층연구 추진(7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재활 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 완료(11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우수 제공 기관 표창 및 우수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침 마련(3월)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지속 추진 (1월)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20명 대상 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 시험사업 지원중('22~) | 운영방안 마련 및 시행(4월~) • 발달재활 서비스 제도개선 연구(4월) 및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2개년도 연구(6월) 착수 | 돌봄시험사업 평가(7월)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 1개소 추가 확충(8월) | 성과대회 개최(12월) | |

주: 영유아 관련 사업 중심으로 발췌함.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국정과제 48은 다양한 가족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 구현을 지향한다.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청소년부모, 수용자, 이주민 등이 정책수요자이나 여기서는 양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대상의 가족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5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18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가족), 일시지원시설(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배우자와 분리해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였다(법제처 사이트, <https://www.moleg.go.kr/>, 한부모가족지원법, 2024.6.10.인출). 동령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설 입소 시간을 연장하였다. 양육비 책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였고,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도 매년 상향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고(월 20만원에서 21만원), 지원대상도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배포,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현장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대상의 주요 정책을 보면, 2023년에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지원 등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2024년도에는 2024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모범 다문화 아동·

청소년 대상의 현장간담회, 이들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지원비 지원 시범사업 및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2023년에 실시하였다. 2024년에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수행기관을 전국가족센터로 확대 실시하여 이에 세부운영 매뉴얼을 가족센터 및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참고로 온가족보듬사업이란 기존의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7개 가족서비스(1인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를 통합하여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1.22., ‘온가족보듬사업’으로 가족서비스를 통합 지원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879>, 2024.6.10.인출.).

〈표 III-1-3〉 국정과제 48.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추진현황 (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48-2.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 강화 | 여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및 시행(1월)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확대 (6개 지역 15개소,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 계획(2023~2027) 수립(4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 ('22.12월) 20.4만명→('23.5월) 20.9만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 개편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 4월) *출산·양육·생활·일시 지원 등 시설 유형을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 지자체 의견수렴 (7~9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10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을 증가 *양육비 이행률: ('21)38.3%→('22)40.3%→('23.9월)42.4% · 한부모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10~11월)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 개정(12월) *복지급여 지급기준 변경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월20만원에서 월21만원으로 인상(1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 상향 고시 개정(1.2) *기준중위소득 60%이하→63%이하 · (현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장 간담회 개최(1.18) ·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 개최(1차, 2.19~2.21)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및 배부(2월)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중심으로 개편 • 한부모가족에게 SMS를 통한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 직접 안내(23.6월) | 미성년자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강화 *('21) 246백만원 →('22) 1,560만원 →('23.9월) 1,114백만원 | | *17개 정부, 공공기관, 66개 지원 서비스 포함 배포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약 체결(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3.13~12.15) • 한부모가족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추진방안 발표(3.28) • (현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3.29, 소망모자원) |
| 48-3.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 여가부 | •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1월)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운영 기관 수요 조사 실시 (3월) • '22 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 •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제21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4월)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직접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교실 운영가이드' 제작·배포(6월말, 전국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현황 점검 및 지원 강화 위한 중사자 간담회 실시, 우수사례 발굴(8월)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다문화학생 멘토링 장학사업 연계 추진 (8월~) • '23 하반기 다문화가족 자녀 | • '23년 다문화이해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 '24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계획 수립(12월) | •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1.22) •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계획 수립 (1.26) • (현장)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1.4, 한양대학교) •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추진 계획수립(2.23)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p>이해교육 실적 점검(3월)</p> | <p>운영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 개최(4~6월, 총5회)</p> | <p>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방식 개선(8월) *(지원방식 확대) 외부 언어발달지도사 시간제 채용 및 외부 언어발달치료전문기관 이용 • 다문화가족 인재DB 지원자 모집 마감(~9월) • 다문화가족 차별 개선 및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 통합전략 연구 중간 보고회(9월)</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홍보(2월~) • (현장)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현장 간담회(2.13, 인하대학교) •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 배포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민·관협력 협약 체결 (2.23) • (현장) 모범 다문화 아동·청소년 간담회 실시(2.6) |
| <p>48-4.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p> | 여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1~12월) 추진 및 홍보(1~2월) *전국 지자체에 홍보영상 및 홍보 포스터 배포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추진(1월~) *'23년 가족희망드림사업 지원 가족센터 5개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자녀양육 부담 완화 *'23.4월말 기준 1,131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의견수렴(7~9월) •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연구 중간보고(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손가족 실태조사 최종보고(12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가족보듬사업 수행기관 전국가족센터로 확대 실시(1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1월) *소득기준 상향 60%→63%, 지원단가 인상 20만원→25만원 • '국민비서'와 '가족지원 통합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2월~)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24년 가족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2.6) *'24 가족정책 추진방향 및 변경사항 등 설명 • 온가족보듬 사업 세부운영 매뉴얼 가족센터 및 지자체 배포(3월) • 제4차 건강가정기본 계획 2023 실적 및 2024 시행계획 이행점검 및 분석연구 실시 ('24.3~'24.12) |

주: 영유아 관련 사업 중심으로 발췌함.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실천과제인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고용부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 휴가기간 확대였다.

육아휴직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 휴가기간 확대 등 기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3. 3. 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다,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고용직 등) 확대를 위하여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체 인력뱅크를 5개소로 증가하고 하반기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국정과제에 비해 직접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50-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고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방안 발표(3.28.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계속) •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추진 * 공공기관 통합 공시 매뉴얼 게시·배포(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23.4.19) • 모성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노동포털(abor.moel.go.kr)에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오픈(’23.5.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등을 위한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재택근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 입법예고(5.25~7.4) → 규제심사(7~8월) → 법제처 제출(9월) → 국무회의 의결(10.4) → 국회 제출(10.5) -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24년 예산안** 반영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초기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확대 개편(’24.1.1 시행) • 중소기업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대체인력뱅크* 5개소) * ’24년 ‘인재채움뱅크’로 명칭 변경 • 하반기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 실시(500개소, 기획감독 50개소 포함) • 공공부문 성별근로공시제 시범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24.1.1~) •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1.16) • 일·육아양립 산단(명칭 변경: 워라밸 행복산단)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1.18, 2.1, 2.14) •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발표(2.26.)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입법예고 (5월)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운영('23.6~ '24.5)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제도 관련 홍보자료 배포 등 추진 | 육아휴직 기간추가 (1년 → 1년 6월) 부여 및 급여 지급, ▲3+3 부모육아휴 직제를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 ** ▲ 육아휴직 급여: ('23) 1조6,964억 → ('24안) 1조 9,869억 <+17.1%> *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상반기 근로감독 ('23.4.19~ 6.30) 결과*를 분석(업종별, 규모별)하여 하반기 감독계획 반영(8월) 및 기획감독 추진(9월) * (실적) 500개소 감독, 위반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3건, 시정지시 109건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료 지원제도 | ('23.12월~) |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 신설('24년 예산안 반영) • (모성보호 제도 홍보)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확대 (9월부터 월 1회 → 월 2회),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배포(7월, 5,000부) 등을 통해 모성보호제도 인식개선 및 홍보 실시 *건강보험공단 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근로자(지원 제도) 및 사업주(법정 의무)에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 (성별근로공 시제) '23년 하반기 공공부문 시범운영 등 단계적 도입 지속 추진 | | |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다음으로 **국정과제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추진현황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실천과제인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고용부가 주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을 위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2023.2.24.)를 시작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및 입법예고(3.6.),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3.15.~4.13.)을 거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시·지침 등 지방관서 시달하였다. 또한 4월 부터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및 FGI 추진하고 23년 7월부터 9월까지 근로시간 단축 등 워라밸 확산을 위하여 TV·신문·옥외매체 등 공익광고 제작·송출(23.7~9월) 및 블로그·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방향을 11월 13일 발표하였으며,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공인노무사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및 기업 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11월). 2024년에는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고시개정을 시행(1.15.)하였으며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1.26.) 및 선정(2.21.),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1.22.),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및 사업장 방문·의견수렴(3.7.)을 진행하였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관련으로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 희망기업을 신청 받아(23.3.23.)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총 400개소에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초적인 제도 기반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 지원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유연근무(시차·선택 등)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출퇴근 기록·관리 시스템 지원을 추진하고('24년 정부안 편성, +20억)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2024.2.20.)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사업장 방문 및 의견수렴(2.16.)을 진행하였다.

〈표 III-1-5〉 국정과제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51-1.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 고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2.24.)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및 입법 예고(3.6.)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실시(1월~, 16개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3.15~4.13) 장관 12회, 차관 7회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고시·지침 등 지방관서 시달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완료 및 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공고(3.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및 FGI 추진(4월~)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실시(4.7.~, 87개소)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고시·지침 등 지방관서 시달 → 장려금 지급(계속)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금년 400개소 목표로 컨설팅 제공중('23.6월 현재 226개소 컨설팅 참여) 자발적·적극적 근무혁신을 유인하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추진('23년 100개소 선정 목표)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근무혁신 인센티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급 진행 중-근로시간 단축 등 워라벨 확산을 위한 TV·신문·옥 외매체 등 공익광고 제작·송출('23.7~9월) 및 블로그·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모션그래픽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SNS 퀴즈 이벤트 진행 등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금년 400개소 목표로 컨설팅 제공 수행기관 계약(3.3)→ 컨설팅 모집(총 4차수 400개소 모집완료)→ 컨설팅 완료·사업 평가(12월) 재택·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제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발표(11.13)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상 제공 전문가(공인 노무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실시(1,155개소)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및 기업 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23.11월) 자발적·적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 장려금(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시개정 시행(1.15.)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1.26) 및 선정(2.21.)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 해석 변경(1.22)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사업계획 수립(2.20.)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사업장 방문 및 의견 수렴(2.16.)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및 사업장 방문·의견수렴(3.7.)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 근무 컨설팅 시 기업이 희망하면 시차·선택 근무 컨설팅을 병행제공 하면서,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컨설팅 제공 - 기초적인 제도 기반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 지원 확대 ('22년 전체 컨설팅 물량의 20% → '23년 30%) - 육아기 유연근무 컨설팅 시 인프라 구축비·장 려금 등의 패키지 안내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의 유연근무(시 차·선택 등)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출퇴근 | 적 근무혁신 유인을 위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23년 100개소), • 재택·원격근 무 도입 희망기업에 컨설팅 제공(400개 소) 및 기업 희망에 따라 시차·선택 근무 컨설팅 병행,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 컨설팅 우선 제공 (262개소) |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 기록·관리 시스템 지원 추진('24년 정부안 편성, +20억) -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정부안 마련(4월) → 입법예고 (5월) → 법제처 제출(8월) → 국회 제출 (하반기 중) | | |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실천과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실천과제인 아동학대 방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계획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이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하고 법무부와 여가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2023. 1.)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합동교육을 총 10회 실시하였으며, 각 분기별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연중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사범 지도감독 매뉴얼 개정 계획을 수립(2023.3.)하고 개정을 완료하였다(2023.6.).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과 응급조치·임시조치 실효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2023.10.)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전국 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을 배포하였다(2023.12.).



〈표 III-1-6〉 국정과제 63. 범치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63-1.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법무부 여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1월) • 2022년 4분기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실적 점검 실시(1월) • 아동학대 보호관찰대 상자 관리 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연중) - 아동학대 사범 밀착 지도 • 아동학대 보호관찰대 상자 관리 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연중) - 아동학대 사범 밀착 지도 3,768회, 피해아동 면담 등 확인 1,409회, 고위험가정 공동출장 126회, 사례관리회의 161회, 지자체 등 이행상황통보 164회 • 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매뉴얼 개정 계획() 수립(3월) • 한국법무 보호복지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보호관찰대 대상자 관리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연중) - 아동학대 사범 밀착 지도 8,245회, 피해아동 면담 등 확인 3,484회, 고위험가정 공동출장 314회, 사례관리 회의 791회, 지자체 등 이행상황통보 482회 • ‘아동학대 사범 지도 감독 매뉴얼’ 개정 완료(6월) - 피해아동 면담 방법 등을 보완한 아동학대 사범 관리 매뉴얼 개정 •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경기북부지부 감호위탁제도 정책현장 방문(5월) • 감호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보호관찰대 상자 관리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연중) - 아동학대 사범 밀착 지도 11,854회, 피해아동 면담 등 확인 5,574회, 고위험가정 공동출장 371회, 사례관리회의 1,641회, 지자체 등 이행상황통보 730회 • 2023년 2분기 아동 학대 사건 관리회의 실적 점검(7월)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 위탁 제도 안내자료 각급법원 송부(9월) • 2023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합동교육(총 4회, 7~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보호관찰대 상자 관리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연중) - 아동학대 사범 밀착 지도 15,610회, 피해아동 면담 등 확인 7,576회, 고위험가정 공동출장 450회, 사례관리회의 2,241회, 지자체 등 이행상황통보 1,003 • 2023년 3분기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실적 점검 실시(10월) • 아동학대살 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임시조치 실효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1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계획 수립(2월) • 아동학대 보호관찰대 상자 관리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연중) - 아동학대 사범 밀착 지도 3,965회, 피해아동 면담 등 확인 2,638회, 고위험가정 공동출장 |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단 서울동부지부, 인천지부 정책현장 방문(3월) | 서울가정 법원과 간담회(5월) • 감호위탁제도 활성화 추진성과 보도자료 배포(6월) • 2023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합동교육 실시(총5회, 4~6월) | | 법제처 심사 (10월) • 2023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합동교육 실시 (1회, 11월) • 전국 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법 죄조사부에 '범죄피해자 일스톱 지원 매뉴얼' 배포(12월) | 63회, 사례관리회 의 433회, 지자체 등 이행상황동보 225회 |

주: 영유아 관련 사업 중심으로 발체함.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국정과제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현황의 실천과제인 아동 진료체계 강화를 살펴보면, 이전 계획이었던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맞춤형 진료체계와 관련하여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주관으로 실천과제가 추진되었으며 중증소아 단기 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23.1.1.~, 2개소 참여) 및 모니터링 실시(23.7.), 아동 일차 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23.3.) 및 모니터링 실시(23.11.),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 및 수가·기준 개선(23.3.6.~), 중증 소아 요양비 급여확대 확대 방안 검토(23.12.) 및 관련 간담회를 개최(24.1.)하고 소아당뇨 요양비 급여확대 적용(24.2.)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안) 건정심 보고(24.3.)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23.1.) 9개소가 참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회계 자료를 수집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를 개최하고 (23.9.),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23.12.) 확대 시행(24.1.~)하였으며 시범사업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다(24.2.).



〈표 III-1-7〉 국정과제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67-1. 아동 진료체계 강화 | 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3.1.1.~, 2개소 참여) •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23.1.1.~, 9개소 참여)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23.3월, 1,287→1,739개소)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 및 수가·기준 개선 ('23.3.6.~) * 대상연령은 만18세 이하, 환자의 필요에 따라 만 24세 이하까지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대상 회계 자료수집 추진(~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7월) •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8월) •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 요양비 급여 확대 관련 의견 수렴(8~9월) • 성장기 장애아동 발 교정을 위한 발보조기 신규 지원(7월) •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 개최(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11월) •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 관련 급여 확대 방안 검토(12월)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추가 선정(12월) * 분당서울대 학교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시행 ('24.1~) • 중증 소아의 요양비 급여 확대 관련 간담회 개최 ('24.1월) •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현장방문 및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간담회 ('24.2월) • 소아당뇨 요양비 급여확대 적용 ('24.2.월) • 신생아중환자, 분만의료 기관 현장 간담회 ('24.2월)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안) 건정심 보고 ('24.3월) |

주: 영유아 관련 사업 중심으로 발췌함.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국정과제 68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정식명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다(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이트, <http://dietary4u.mfds.go.kr/> 2024.6.10.인출). 즉,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와 사회복지 2종으로 구분된다. '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36개소이며 등록 어린이급식소 수는 25,541개이다(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이트, <https://dietary4u.mfds.go.kr/> 2024.6.10.인출). 따라서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지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포함하였다.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집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이트, <https://dietary4u.mfds.go.kr/menu.es?mid=a10201010000>, 2024.6.10.인출).

〈표 III-1-8〉 국정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68-2.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 식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설명회 개최(1.2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68개소 설치 완료(~11월) • 생애주기별 영양성분(7개) 섭취 수준평가(~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 시설 현장방문(1.12) • 「어린이 식생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2.27) • 「사회복지 시설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2.27) • 가칭「급식 안전기본법」 제정법률(안) 의견수렴(3.29) |

주: 영유아 관련 사업 중심으로 발체함.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천과제로 계획하였으며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와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실천과제중 첫 번째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하여 적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계도 활동 및 언론보도 등을 진행하였으며(2023년 1분기), 스쿨존·음주사고로 인한 집중 단속·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주말·주간 스쿨존 등 취약 시간·지역에서 주·야간(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진행하였다(2023년 2분기). 또한 개학기 어린이 안전대책을 추진하여('23.7.31.~9.22)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노면표시도색 등 시설을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행 위협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였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 위 교통문화만들기' 작품 공모전 등을 진행하였다. 2024년에는 어린이 통학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하였고(3.14.) 도로교통공단 등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 및 계도·단속 등 안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교통안전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던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에 대한 간접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69의 두 번째 실천과제로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가 있으며 이는 경찰청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이 중 아동 관련 보호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1분기부터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제작·배포(1월) 학교전담경찰관 강의역량 향상과정 위탁교육 실시를 시작으로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 및 유해환경 정비를 추진(3~4월)하였으며 2분기에는 아동안전 관련, 장기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아동학대 보호지원율을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 강의역량 향상과정' 운영 및 면담기법·법령 등 'SPO 전문화 과정' 전문기관 위탁 교육 추진하여 아동을 위한 보호활동을 추진하였다. 3분기에는 하계방학기간 위기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7~8월) 및 2학기 개학 맞이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활동기간 운영(8~10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등 현장 지원 관련 SPO의 'KICS 권한'을 신설하고, 소년사건 모니터링강화 및 SPO 대상 강의·면담기법 및

법령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경찰청 교육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흉악범죄예고글 게시' 관련 교육·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아동안전 관련 학대 고위험군 아동 대상으로 경찰·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소재 확인 및 학대혐의(유기·매매·방임 등)를 철저 수사하였다. 이후에도 고위험 가해자 격리 등 현장조치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활성화(10월 말기준)하였고 2024년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관련 세종대 등 관계기관실무회의를 개최(1.26.)하였으며 APO(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모바일 앱을 개발(1.30.)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계획을 수립·시행(2.26.)하였다.

〈표 III-1-9〉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추진현황(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69-1.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 국토부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국토부·행안부)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수립 (3.16) • '적신회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주요 교차로 중심계도 활동 및 언론보도 등 집중 홍보 활동 추진 -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현장 계도 15,902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혼잡구역 관리 매뉴얼 수립 추진(4.5) •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1.22~4.21) 종료 관련, 홍보 활동 - 보도자료 배포(4.20) △ 중앙일보 전면광고 (4.28) △ JTBC 뉴스룸 인터뷰(4.30) △ TBN교통 방송 출연 (5.2) △ 맨인블랙 박스 인터뷰 (5.4) 등 • 스킵존·음주 사고로 인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관련 홍보 및 계도·단속 실시(6~8월) -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보도자료 배포 △ SNS 숏츠 영상 제작 △ 고속도로 VMS 및 휴게소 모니터 송출 △ 리플릿 배부 등 / 총 53개 언론사, 59회 보도 - 암행순찰차, 캠퍼드 등 가용장비 활용 △ 앞지르기 차로를정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제보단 제도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10월) • 법안차 전용번호판 도입 관련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고시」 개정(12월) • 택시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 검사 관리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순찰대 순찰·거점 추천 시스템' 운영(1.23.) - 요일별 결빙사고 다발지역 등 18개 데이터 분석·산출 △ 한국도로공사 등 외부시스템 연계 구축, 차량소통량·공사현황 실시간 현출 등 • '무인 단속장비 활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정식단속(과태료)' 실시 (3.1~)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SBS 등 주요 방송사 인기 프로그램 출연 및 모바일·SNS 등을 활용한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2.27~3.12) △ 주요 방송 147회 △ 대형전광판·플래카드 등 285,129개소 △ SNS 2,872개 △ 홍보영상 12,854개소 - 차량신호 적신호 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 •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집중 안전 활동 전개, 새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2.27~4.28)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 단속·홍보 활동 전개 - 주말·주간 스쿨존 등 취약 시간·지역에서 주·야간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 - 티맵 모바일티 등 기업과 협업을 통한 민·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전개 - 스쿨존 현장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 추진(5.18~31) • 관계기관 협업방안 발굴, 고령자 교통안전 이슈 대응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연계 독거노인 전수교육 실시 - 관계기관 (교통안전공단, 손보협회 등)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행등 소통 방해 차량 상습·고질적 위반자 등을 집중 단속 • 취약요인 중심 안전활동 (음주운전 집중단속, 7.14~8.25) 경찰청(주 1회), 시도청·경찰서(주 2회이상) 주관 일제단속 -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 실시 - (개학기 어린이 안전대책, 7.31~9.22)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노면표시도 색 등 시설 개선(지자체 협조) - 어린이 보행 위협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 - (보행자 안전 홍보) -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한 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12월) • 취약요소 중심 교통안전 정책 추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6% 감소(10월말 기준) - 보행자 중심 제도 개선,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및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보행사고 사망자 5.4% 감소(742→702명) - 스쿨존·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 단속·홍보 활동 지속 추진,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음주사고 사망자 46.6% 감소(178→95명) •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10.24.)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후면 무인단속 도입시 추가된 안전모 미착용단속 기능에 대하여 전국 89개소 시범운영 실시('24.1.8.~2.29, 誤단속 여부 모니터링) • '화물차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 단속' 전개 (3.4.~4.30.) - 도로공사·도로교통안전공단 등 / 화물차 사고 다발지점 중심으로 △추락방지 조치 위반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행위 단속 • '어린이 통학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3.14.) - 도로교통공단 등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화물 업계 간담회 개최(3.8),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차 교통 안전 강화 대책 추진 (3.17 ~ 5.12)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범운영 유관기관 간담회개최 (3.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광고 제작추진, 영상 제작 (8월) 후 홍보채널 송출(9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 공단, OB맥주, 방지장치 업체 등 참여한 킷오프 행사 개최(6.15) △ 방지장치 도입·대상·장착기간·비용부담 등 대국민 설문 조사 실시 (5.31 ~ 6.9)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위 교통문화 만들기’ 작품 공모전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확대 추진 (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5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위 대상자가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내 안전시설(△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횡단 보도 등) 점검 및 계도·단속 등 안전활동 실시 고속도로 사망감소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순찰 실시(3.2) - 한국도로공사 등 / 출음운전 취약시간대(15~18시, 21~06시 / 주 2회) 가시적 순찰활동 전개 |
| 69-2.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동계방학 기간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추진 ('22년 11월~'23년 2월) 여성청소년 정책 자료집 발간(1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제작·배포 (1월) 학교전담 경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및 홍보 추진(4월), 성매매·가정 폭력 예방에 대한이해와 경찰관의 역할 강화를 교육 실시(6월) 한국여성변 호사회와 MOU 체결, 피해자 지원 강화(4월) △ 범죄피해 자 일상회복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스토킹 특성 반영한 맞춤형 위탁교육 (6월) △ 「스토킹처벌 법」·「전자 장치부착법」 개정 사항 (6월) 및 가정폭력 임시조치 길라잡이 (8월) 등 현장경찰관 역량 강화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가해자 격리 등 현장조치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10월 말기준) - (검거) 가정폭력 37,640→38,078건(1.2% ↑) / 스토킹 8,069→9,447(17.1% ↑) /교제폭력 10,872→11,589건(6.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법무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대비 합동 FTX (1.4)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1.12.) - 국내·외관련 법 규정 및 제도현황 등 실태 분석 청소년 경찰학교 성과분석 등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4월) △ 외부전문 가로 구성된 여성청소년 안전 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6월) • 아동안전 관련,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합동점 검 등 추진, 아동학대 보호지원을 상승 • 학교폭력 예방 관련, △ 첩보수집을 통한 조기감지 △ 특별예방 교육 집중 실시 △ 학교폭력· 소년사건 모니터링 강화 △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 (5.3) • 학교전담경 찰관(SPO) 강의역량 향상과정' 운영 및 |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 전국 APO 80명(5일× 20명×4회) 대상 △ 가정폭력 ·학대 관련 법령 및 사법 처리절차 등 전문성 강화 교육 - 전국 스토킹 전담경찰관 90명(4일× 30명×3회) 대상 역량 강화 교육 • 하계기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퍼스 안심 소식지 제작· 배포(7월) △ 여성가족부 공동,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7월) 등 집중적 예방·홍보 활동 전개 • 학교폭력· 소년범죄 예방 등 관련 △ 하계방학 기간 위기청소년 보호활동 | 아동학대 9,794 → 10,973 (12.0% ↑) - (보호·지원) 가정폭력 62,401→ 71,445건(1 4.5% ↑) / 스토킹 9,988→ 13,318건 (33.3% ↑) /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율 27.4→ 29.1% (1.7%p ↑) • 맞춤형 홍보·교육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 등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성범죄 5.2% 감소· 검거율 4.8%p 증가(10월말 기준 / 87.1→91.9 %) • 경찰 선도제도 적극 운영, 소년범 재범률 3.3%p 감소 (10월말기준 / 28.0→24.7 %) • 개선 「위험성 판단 | 워크숍 개최(1.25.) • 사회적 약자 보호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관련 세종대 등 관계기관실 무회의 개최(1.26.) • 'APO(학대 예방경찰관) 업무관리 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1.30.) •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계획 수립·시행 (2.26.) • '24년 전국 여성청소년 기능 관리자 (337명) 워크숍 개최(3.28)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면담기법· 법령 등 'SPO 전문화 과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추진 | 강화(7~8월) △ 2학기 개학 맞이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활동기간 운영 (8~10월) 등 추진 • 신종 유형범죄 대응 관련 △ SPO 활용 마약예방 교육 효과성 분석(7월) • 학교전담경 찰관 등 현장 지원 관련 SPO의 'KICS 권한' 신설, 소년 사건 모니터링 강화 및 SPO 대상 강의·면담 기법 및 법령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운영 • 아동안전 관련 학대 고위험군 아동 대상 으로 경찰· 지자체 합동조사 실시 △ 신속한 소재 확인 및 학대혐의 (유기·매매· 방임 등) 철저 수사 | 체크리스트」 에 근거, 맞춤형 대응으로 스마트워치 제공, CCTV 설치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7.6% 증가 (10월말기준 / 24,471→ 26,343건) | |

주: 영유아 관련 사업 중심으로 발체함.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국정과제 84는 교육부 주관으로 영유아 대상의 유보통합과 초등학생 대상의 늘봄학교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의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설정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월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하였고,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7월에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4년 1분기에는 전국 시도센터장 간담회,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회의, 지방 예산 이관을 위한 시도교육청-시군구 협의 등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유·초연계(이음교육) 사업,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현장 지원자료를 개발하였다. 2024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5세 유아에게 월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유·초 연계 사업, 유치원 방과후 과정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료를 보급하였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업인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사업에 이어서 2024년 2,741개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2월에 늘봄학교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배포하였고, 학기가 시작한 3월부터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1-10〉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2023~2024.1분기)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84-1.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돌봄·교육 기회 제공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완료(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1월) 시도별 유·초연계(이음교육) 시범 유치원 운영 계획 수립(2월)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조사(~4.25) 유아교육법 개정안(보호자 교육 근거 마련)마련(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7월) '23년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공유를 위한 시도담당자 협의회 실시(8월) 보호자 교육 관련 유아교육법 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연계 시범유치원 운영 컨설팅(10월) 유치원 방과후 운영 관련 시도담당자 협의회(11월) 부모 역량 강화 현장 지원자료 개발 최종 보고(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장 및 17개 시도센터장 간담회(1.26) 지방 행재정 통합 논의를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1.9) '23 하반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집행점검 결과(1월) 2024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내실화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발전기본 계획수립 (2.23) • 유치원 부모역량 강화 개발 자료 안내 및 협조 요청(3.9) | | 수렴(9월) | | 계획 수립(1월) •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업무 협약(1.8) • 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실무협의회 (2.21) • 시도별 이음교육 운영 지원 추진 계획 수립(2.8) •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자료 보급 (1.17) •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지원 자료 보급(2월) • 유치원, 어린이집 만5세 추가 보육료(5만원) 지원 개시(3월) • 단장, 각 안전 공제회 관계자 업무 협약(3월) • 시도교육감협 의회 사무국장 업무 논의(3월) • 17개 시도 실무팀장 업무 논의(3월) • 지방단위 정원 예산 이관 관련 시도교육청- 시도사군구 협약(3월) • 유·초 이음학기 시범유치원 1,000개원 운영(3월)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84-2.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공모 및 선정(1월) • 초등 늘봄학교 추진 관련 시도담당관 협의회 실시(3월) • 초등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원(현장 컨설팅, 시범교육청 부교육감 회의)(3월) • 신학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안내 및 현장 지원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초등 돌봄교실 운영현황 조사(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확대 및 교육청, 학교 대상 설명회 개최 (7~8월) • 늘봄학교 현장방문 및 간담회 (7~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성과보고회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늘봄학교 준비 현황 점검 등 현장방문 (1.30. 청주 창리초 등) •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교 (2,741교) 선정·발표 (2.19) •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및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5) • 늘봄학교 전담인력 배치 (3.11. 기준, 3,477명) 및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증액 선정 • 2024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2.28) • 2024년 상반기 늘봄 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21) •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2,838교 운영 (3.18. 기준) •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안내(2.20) 및 학교별 초1 |

| 실천과제 | 주관 | 2023년 | | | | 2024.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 | |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4~) • 학교체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 대상 시도정책협의회 개최 (3.25~3.26) |

주: 유보통합 및 초등돌봄 관련 사업(늘봄학교) 중심으로 발제함.
 자료: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2024.6.10.인출).

2. 전문가 조사

가. 국정과제 수행 정도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한 국정과제 10개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등 이상 3개 국정과제가 평균 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51번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국정과제가 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국정과제 46번에는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등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84번 국정과제는 유보통합과 초등전일제 교육(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국정과제는 긍정 응답비율이 54.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서 84번, 46번순으로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특히, 2023년 대비 84번 국정과제(유보통합 및 초등전일제교육)의 평균 점수가 3.7점에서 4.5점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표 III-2-1〉 육아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

단위: %, 점(명)

| 구분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긍정 | 평균 | 계 (수) | 긍정 | 평균 | 계 (수) |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 4.3 | 100.0 (98) | 50.0 | 4.5 | 100.0 (50) |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 | 3.7 | 100.0 (98) | 46.0 | 4.2 | 100.0 (50)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 3.7 | 100.0 (98) | 40.0 | 4.1 | 100.0 (50) |
|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 3.5 | 100.0 (98) | 40.0 | 4.0 | 100.0 (50) |
|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 | - | - - | 28.0 | 3.8 | 100.0 (50) |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 3.8 | 100.0 (98) | 46.0 | 4.3 | 100.0 (50) |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 4.1 | 100.0 (98) | 54.0 | 4.5 | 100.0 (50) |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 3.9 | 100.0 (98) | 42.0 | 4.2 | 100.0 (50) |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 3.7 | 100.0 (98) | 48.0 | 4.3 | 100.0 (50) |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 3.7 | 100.0 (98) | 52.0 | 4.5 | 100.0 (50) |

주: 1) 7점 척도임(1점: 매우 못하고 있다 ~ 7점: 매우 잘하고 있다)

2) 긍정비율은 '⑤', '⑥', '⑦매우 잘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 104. 〈표 IV-2-5〉 지난 1년간 육아 관련 국정과제 수행 정도 참조.

나.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전문가들은 10대 육아정책 관련 1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46번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48.0%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은 84번 국가교육책임제강화로 교육격차해소를 꼽았다. 이들 2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과제의 중요도를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정과제 50, 51, 67번을 응답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앞선 문항에서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정과제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중요도 1순위에서 응답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학교수는 46번 국정과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고, 84번은 2순위를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유아교육/교육 전문가의 약 60%가 46번 국정과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서 1순위로 나왔으나, 아동보육/가족/여성 전

문가는 46번과 84번 국정과제를 동일하게 1순위로 꼽았다. 사회복지/정책/행정/경제 기타 등 전문가도 46번과 84번을 응답한 비율이 37.5%로 동일하게 나왔다. 경력별로는 다수를 차지하는 20년 이상 전문가들은 46번 국정과제를 48.5%가 1순위로 꼽았고, 84번 국정과제는 15.2%로 2순위로 나왔다. 경력 15~20년 미만 전문가는 46번과 84번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게 1순위로 나왔다.

정리하면,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46번과 84번 국정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공별에 따라 중요도가 달랐는데, 유아교육/교육 등 교육계 전문가는 46번을, 아동보육/가족 및 사회복지 등 전문가는 46번과 84번의 국정과제 중요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체제로의 유보통합 정책을 담고 있는 84번 국정과제에 대해 교육계 전문가들이 타 전공 전문가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평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도 전공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과제의 순위가 다를 수 있다.

〈표 III-2-2〉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1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계(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48.0 | 4.0 | 8.0 | 8.0 | 4.0 | 6.0 | 22.0 | 100.0 (50) |
| 전공 | | | | | | | | |
| 유아교육 | 57.9 | - | 5.3 | 5.3 | 5.3 | 10.5 | 15.8 | 100.0 (19) |
| 보육 | 31.6 | 10.5 | 10.5 | 10.5 | 5.3 | 5.3 | 26.3 | 100.0 (19) |
| 기타 | 58.3 | - | 8.3 | 8.3 | - | - | 25.0 | 100.0 (12) |
| $\chi^2(df)$ | 8.208(12)(b) | | | | | | | |
| 직종 | | | | | | | | |
| 대학 교수 | 46.7 | 4.4 | 8.9 | 8.9 | 2.2 | 6.7 | 22.2 | 10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100.0 | - | - | - | - | - | - | 100.0 (1) |
| 현장전문가 | - | - | - | - | - | - | 100.0 | 100.0 (1) |
| 기타전문가 | 66.7 | - | - | - | 33.3 | - | - | 100.0 (3) |
| $\chi^2(df)$ | 13.258(18)(b)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59.3 | 7.4 | 3.7 | 7.4 | 3.7 | 7.4 | 11.1 | 100.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33.3 | - | 20.0 | 13.3 | - | - | 33.3 | 100.0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37.5 | - | - | - | 12.5 | 12.5 | 37.5 | 100.0 (8) |
| $\chi^2(df)$ | 15.229(12)(b) | | | | |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계(수)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100.0 | - | - | - | 100.0 (1) |
| 10~15년 미만 | 60.0 | - | 20.0 | - | - | - | 20.0 | 100.0 (5) |
| 15~20년 미만 | 45.5 | - | - | 9.1 | - | - | 45.5 | 100.0 (11) |
| 20년 이상 | 48.5 | 6.1 | 9.1 | 6.1 | 6.1 | 9.1 | 15.2 | 100.0 (33) |
| $\chi^2(df)$ | 20.996(18)(b) | | | | | | | |

주: ①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⑤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의 노동시장 구축 ⑥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⑦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선택 사유(1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동일연령의 영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여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차별없는 포용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에서의 가족관점의 중요성,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표 III-2-3〉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선택 사유: 1순위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 어린시절 양육환경은 건강한 성인,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양육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서 정책으로 구현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미래 사회가 위태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양육에 대한 부모의 안심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의 해결방안 가운데 양육환경의 개선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됨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폭력 학대 등의 문제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녕과 발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임. - 모든 육아정책의 기본은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 조성임에도 평균적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 한 인간의 생애 최초의 양육 환경을 안전하고 질 높게 조성하는 것이 인간의 전생애 행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 -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제공함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할 수 있음 - 보육서비스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저출생으로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초저출산 사회 진입, 양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실행안이 절실하므로 - 저출생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 - 저출생 완화에 직결될 수 있는 과제 - 전체적으로 양육환경의 개선과 국가지원이 영유아 발달과 교육에 필요함 -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하는 아이들은 감소하고 있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양육환경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저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에 있어 안전은 그 어느것보다 중요하며, CCTV, 교사 교육 등으로 인해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이 많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유아반의 경우 1:20 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과 질높은 양육 환경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거나 보조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임 - 육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부모가 직장 근무 중 대신해줄 수 있는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함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이야말로 출산을 제고의 첫번째 조건이라고 여겨지며,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사회(국가)는 그러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1차적인 의무가 있음. -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양육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자녀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 등 가치관 교육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울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지원 등도 필요하다. - 아이를 안전하게 질 높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기대는 저출산 해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교사 아동간 비율 조정,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 추진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시설육아의 최우선 사업이라 생각함. - 부모들이 신뢰하는 양육기관에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함. |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84.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와 초·중등 교육보조금을 제공하여 예전보다 국가에서 교육 격차를 갈수록 줄여 나가고 있다고 사료됨 - 동일연령의 영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가 육아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을 위한 오랜 염원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핵심과제이기 때문 -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자 국가의 인재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발점 평등 구현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는 매우 중요함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중요 - 과도한 사교육 경쟁, 교육격차 및 불평등 심화 등은 심각한 대한민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매우 많음. 예컨대 저출산, 공교육을 입시위주 단편적, 일률적 교육에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격차가 줄어든 양질의 교육시스템으로 개혁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모든 사회문제 해법의 중심에 놓여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이 필요함,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통해 교육기회의 형평성 강화 - 교육격차해소는 국가적 장기과제라 여겨짐 - 유보통합 및 초등전일돌봄제 구현이 가장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해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교육의 동일 출발선 보장이 중요하므로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안전해야 출산율제고를 통한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 가능 - 갈등과 혐오가 만연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차별없는 포용이 가장 중요 - 정책에서의 가족관점의 중요성,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의 중요성 -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 다양성의 요소에는 장애, 다문화, 한부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III-2-4〉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계(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전체 | 32.0 | 4.0 | 8.0 | 8.0 | 2.0 | 4.0 | 6.0 | 4.0 | 32.0 | 100.0 (50) |
| 전공 | | | | | | | | | | |
| 유아교육 | 36.8 | 5.3 | - | 5.3 | - | 5.3 | 5.3 | - | 42.1 | 100.0 (19) |
| 보육 | 36.8 | - | 10.5 | 5.3 | - | 5.3 | 10.5 | 5.3 | 26.3 | 100.0 (19) |
| 기타 | 16.7 | 8.3 | 16.7 | 16.7 | 8.3 | - | - | 8.3 | 25.0 | 100.0 (12) |
| $\chi^2(df)$ | | | | | | | | | | 14.405(16)(b) |
| 직종 | | | | | | | | | | |
| 대학 교수 | 33.3 | 2.2 | 6.7 | 8.9 | 0.0 | 4.4 | 6.7 | 4.4 | 33.3 | 10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100.0 | - | - | - | - | - | - | 100.0 (1) |
| 현장전문가 | - | 100.0 | - | - | - | - | - | - | - | 100.0 (1) |
| 기타전문가 | 33.3 | - | - | - | 33.3 | - | - | - | 33.3 | 100.0 (3) |
| $\chi^2(df)$ | | | | | | | | | | 52.778(24)**(b)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수) |
|---------------------|-------|-----|------|------|-----|-----|------|-----|------|---------------|
| 전문분야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18.5 | 7.4 | 7.4 | 3.7 | 3.7 | 7.4 | 7.4 | 3.7 | 40.7 | 100.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53.3 | - | 6.7 | - | - | - | 6.7 | 6.7 | 26.7 | 100.0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37.5 | - | 12.5 | 37.5 | - | - | - | - | 12.5 | 100.0 (8) |
| $\chi^2(df)$ | | | | | | | | | | 21.676(16)(b)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5~10년 미만 | 100.0 | - | - | - | - | - | - | - | - | 100.0 (1) |
| 10~15년 미만 | 40.0 | - | - | - | - | - | 20.0 | - | 40.0 | 100.0 (5) |
| 15~20년 미만 | 45.5 | - | 9.1 | - | - | - | 9.1 | 9.1 | 27.3 | 100.0 (11) |
| 20년 이상 | 24.2 | 6.1 | 9.1 | 12.1 | 3.0 | 6.1 | 3.0 | 3.0 | 33.3 | 100.0 (33) |
| $\chi^2(df)$ | | | | | | | | | | 11.869(24)(b) |

주: ①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⑥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⑦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⑧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⑨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1$.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선택 사유(2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양육환경 개선은 아동의 질적인 삶의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하며, 초기 양육경험의 질적 안전성이 이후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은 결혼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경도되어 아동의 정신건강, 건강한 성장과 비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국가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등의 정책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제고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현대 사회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주인인 영유아,

아동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선택한 이유는 육아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육아로 인한 일자리 단절, 특히 여성들에게 불리한 일자리 조건과 직장 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데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표 III-2-5〉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선택 사유(전문가): 2순위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환경 개선이 출산을 제고 최우선 과제 - 아동들의 질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 - 보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출산율 제고에 영향 - 초기 양육경험의 질적 안전성이 이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의 조성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의 조성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조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 국가인재양성을 위해 생애초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 - 저출산, 저출생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고, 그 중심에는 돌봄 문제가 놓여 있음. 무상보육으로 보육서비스는 확대됐으나 여전히 안전하고 질 높고 빈틈없는 돌봄, 양육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임. - 건강한 아동발달, 양육자의 삶의 질, 저출생 등과 직결됨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완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은 결혼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핵심 요소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망이 걸린 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임 - 출산율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여겨짐 - 추가적으로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큰 틀과 세부 항목의 제도 구축이 균형을 이루고 완성될 것으로 판단됨 -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력 및 사회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지금부터 시급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유치원-대학시설까지의 무료혜택 필요 - 안전과 질적 수준 높은 교육보육의 중요성 때문 |
| 84.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 시장에 현혹되어 중심을 잃고 아동들의 정신건강, 건강한 성장과 비용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살아갈 위험이 많으며, 이러한 요소는 계층간 격차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됨 - 다문화, 다양한 가족 등 교육접근 형평성에 대한 정책 및 지원 확대 - 교육 격차의 해소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사교육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교육이 국가의 근간이 되므로. |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통합 등 부모의 SES로 발생하게 되는 교육격차를 국가가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함.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더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유보통합 도입 계획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제공함 - 현재 사교육이 만연하여,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가 책임 교육을 통해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다른 과제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교육격차 축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빈부차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교육책임제가 무엇보다 중요함 - 기초학력저하, AI, 인공지능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온국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 교육격차 해소는 국가의 의무이며 책무임 - 교육격차를 줄이는 여러 방안이 필요함 - 우리 사회의 빈부간, 지역간 격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 공정한 출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 기관간의 격차 못지않게 어린이집 시설 유형간의 격차가 크므로 이의 해소 또한 필요하다 -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놀이의 가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관련된 기관별 교육격차가 많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이 절실한 상황임. |
| <p>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책의 핵심이 가족 기능의 회복에서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 -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제고로 인해 중요성이 커짐 -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이라고 하여 영유아, 아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족)에서부터 중년층까지, 영유아에서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조화로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다른 육아정책의 효과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양육에 참여하고, 현대 사회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주인인 영유아, 아동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p>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연령의 여성은 경력초임단계이므로 경력관리와 임신출산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경력단절을 원하는 여성은 거의 없을 것임. 특히 맞벌이가족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환경에서는 경력관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결혼과 출산선택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급여 안정 및 현실화를 통한 가정생활의 안전 및 건강성 증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이 종사하는데 이 일자리가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라는 문제. 돌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돌봄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만들. - 육아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육아로 인한 일자리 단절, 특히 여성들에게 불리한 일자리 조건과 직장 문화라고 생각하므로 이 문항을 선택하였음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1, 2순위를 합친 결과는 46번 과제가 80.0%로 가장 많고, 84번 과제 54.0%, 48번 16.0% 순으로 나타났다. 유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육아 정책 국정과제는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고 진단하였다. 전공, 직종(대학교수), 전문분야, 경력 등 변인에 따른 결과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III-2-6〉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1+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전체 | 80.0 | 8.0 | 16.0 | 8.0 | 2.0 | 12.0 | 10.0 | 10.0 | 54.0 | (50) |
| 전공 | | | | | | | | | | |
| 유아교육 | 94.7 | 5.3 | 5.3 | 5.3 | - | 10.5 | 10.5 | 10.5 | 57.9 | (19) |
| 보육 | 68.4 | 10.5 | 21.1 | 5.3 | - | 15.8 | 15.8 | 10.5 | 52.6 | (19) |
| 기타 | 75.0 | 8.3 | 25.0 | 16.7 | 8.3 | 8.3 | - | 8.3 | 50.0 | (12) |
| 직종 | | | | | | | | | | |
| 대학 교수 | 80.0 | 6.7 | 15.6 | 8.9 | 0.0 | 13.3 | 8.9 | 11.1 | 55.6 |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100.0 | - | 100.0 | - | - | - | - | - | - | (1) |
| 현장전문가 | - | 100.0 | - | - | - | - | - | - | 100.0 | (1) |
| 기타전문가 | 100.0 | - | - | - | 33.3 | - | 33.3 | - | 33.3 | (3) |
| 전문분야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77.8 | 14.8 | 11.1 | 3.7 | 3.7 | 14.8 | 11.1 | 11.1 | 51.9 |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86.7 | - | 26.7 | - | - | 13.3 | 6.7 | 6.7 | 60.0 |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75.0 | - | 12.5 | 37.5 | - | - | 12.5 | 12.5 | 50.0 | (8)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5~10년 미만 | 100.0 | - | - | - | - | 100.0 | - | - | - | (1) |
| 10~15년 미만 | 100.0 | - | 20.0 | - | - | - | 20.0 | - | 60.0 | (5) |
| 15~20년 미만 | 90.9 | - | 9.1 | - | - | 9.1 | 9.1 | 9.1 | 72.7 | (11) |
| 20년 이상 | 72.7 | 12.1 | 18.2 | 12.1 | 3.0 | 12.1 | 9.1 | 12.1 | 48.5 | (33) |

주: 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⑥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⑦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⑧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⑨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에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과제 하나를 선택한 결과이다.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24.0%로 가장 많았고, 63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20.0%,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4.0%,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2.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는 67번을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보육과 기타 전문가들은 67번보다 63번을 더 많이 응답했다. 앞서 고찰한 중요도 1순위 국정과제로 꼽은 46번은 실행정도에서는 3순위로 밀려났다.

전문분야별로 1순위가 갈렸는데 유아교육/교육 전문가는 67번을, 아동보육/가족/여성 63번과 67번 두 개 국정과제 모두 26.7%로 동일하게 나왔고, 사회복지/정책/행정/기타는 46번 국정과제를 1순위로 응답했다.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도 67번 과제가 가장 잘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I-2-7〉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1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수) |
| 전체 | 14.0 | 10.0 | 4.0 | 6.0 | 20.0 | 24.0 | 2.0 | 8.0 | 12.0 | 100.0 (50) |
| 전공 | | | | | | | | | | |
| 유아교육 | 15.8 | 5.3 | 5.3 | 5.3 | 5.3 | 36.8 | - | 15.8 | 10.5 | 100.0 (19) |
| 보육 | 15.8 | 10.5 | 5.3 | 5.3 | 31.6 | 15.8 | 5.3 | - | 10.5 | 100.0 (19) |
| 기타 | 8.3 | 16.7 | - | 8.3 | 25.0 | 16.7 | - | 8.3 | 16.7 | 100.0 (12) |
| $\chi^2(df)$ | 12.578(16)(b) | | | | | | | | | |
| 직종 | | | | | | | | | | |
| 대학 교수 | 13.3 | 11.1 | 4.4 | 6.7 | 20.0 | 24.4 | 2.2 | 6.7 | 11.1 | 10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 | - | 100.0 | - | 100.0 (1) |
| 현장전문가 | - | - | - | - | - | - | - | - | 100.0 | 100.0 (1) |
| 기타전문가 | 33.3 | - | - | - | 33.3 | 33.3 | - | - | - | 100.0 (3) |
| $\chi^2(df)$ | 21.540(24)(b)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11.1 | 7.4 | 3.7 | 7.4 | 14.8 | 29.6 | - | 14.8 | 11.1 | 100.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6.7 | 6.7 | 6.7 | 6.7 | 26.7 | 26.7 | 6.7 | - | 13.3 | 100.0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37.5 | 25.0 | - | - | 25.0 | - | - | - | 12.5 | 100.0 (8) |
| $\chi^2(df)$ | 16.114(16)(b) | | | | | | |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수)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100.0 | - | - | - | - | - | 100.0 (1) |
| 10~15년 미만 | - | - | - | 20.0 | 60.0 | 20.0 | - | - | - | 100.0 (5) |
| 15~20년 미만 | 27.3 | 9.1 | 9.1 | 9.1 | 18.2 | - | 9.1 | 9.1 | 9.1 | 100.0 (11) |
| 20년 이상 | 12.1 | 12.1 | 3.0 | - | 15.2 | 33.3 | - | 9.1 | 15.2 | 100.0 (33) |
| $\chi^2(df)$ | 36.489(24)*(b) | | | | | | | | | |

주: 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⑥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⑦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⑧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⑨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된 과제를 선택한 이유(1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67(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을 선택한 이유로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했고, 영유아 건강검진체계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6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영유아 교통사고 및 영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부모급여, 산모건강관리 체계화, 유보통합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추진으로 국가교육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표 III-2-8〉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된 과제 선택 이유: 1순위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67.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 | - 코로나 대처의 효율성 - 코로나 이후 건강관리에 힘씀 - 의료보험의 보편적 실행 - 다양한 예방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했음. 예를 들어 흡연, 비만등의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하 |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 <p>고 만성질환 발생을 줄이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캠페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근성을 높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을 예방적 건강관리 실현 - 출생 이전부터 출생 이후까지 국민 개개인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의료 서비스 분야를 포함)이 잘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 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음 - 코로나 등 전염성 질병 발생이 낮음 -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대처기술 - 영유아 건강검진체계 지속과 심화평가권고에 대한 강조 - 국가 차원의 의료, 건강관리 우수 |
| <p>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일관된 정책적 실행 - 마약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표설정 및 추진이 가시적이라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었다고 봄. 다만 이를 실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함 - 사실 이 정책도 잘 했다고 볼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평가 - 범죄나 치안이 잘 확보되어 안전사회 구현이 잘 되었다고 생각됨. -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임 - 최근 영유아 교통사고 등을 통계를 보아도 사고율,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영유아 관련 강력 범죄 또한 감소하고 있고, 영유아 유괴 등의 범죄도 감소하고 있다고 본다. - 다른 분야가 실행이 잘 안되어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였음 2021년 전후해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음. - 마약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처벌도 강화되었다고 여겨짐 - 다른 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치안 분야가 잘 실행되었다고 생각함. |
| <p>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통합에 대한 접근 -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고, 부모급여, 산모지원,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를 마련함 - 제도적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여겨짐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부모급여의 도입과 급여수준의 상향으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완화 및 부모의 선택권 확대 - 상대적으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부모급여 도입 및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단계적 확대했기 때문에. |
| <p>84.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지원이 점차 확대 되어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 특별히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더 가시화된 성과가 있는 영역이므로 - 유보통합을 실현시키고 있으므로 - 다른 과제의 실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관련 실적 - 유보통합 가시적으로 진행중. 늘봄학교 진행중.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다 사료됨 - 유보통합을 통한 국가교육책임 강화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다음으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국정과제로는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 확보와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해소가 각각 24.0%로 동일하게 2순위로 나왔다. 46번과 68번이 각각 10.0%로 다음으로 많이 응답했다. 전공별로는 유아교육 전문가는 전체 응답 결과와 동일하게 69번, 84번이 공동 1순위로 나온 반면, 보육 전문가는 69번 과제, 기타 전문가는 68번과 84번을 공동 1순위로 응답함으로써, 전공에 따른 전문가의 판단이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는 69번 과제를, 15~20년 미만은 84번 과제를 꼽았다.

〈표 III-2-9〉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계(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전체 | 10.0 | 4.0 | 6.0 | 4.0 | 4.0 | 6.0 | 8.0 | 10.0 | 24.0 | 24.0 | 100.0(50) |
| 전공 | | | | | | | | | | | |
| 유아교육 | 10.5 | 5.3 | 5.3 | - | 5.3 | 10.5 | 5.3 | 5.3 | 26.3 | 26.3 | 100.0(19) |
| 보육 | 15.8 | - | 5.3 | 10.5 | 5.3 | - | 5.3 | 5.3 | 31.6 | 21.1 | 100.0(19) |
| 기타 | - | 8.3 | 8.3 | - | - | 8.3 | 16.7 | 25.0 | 8.3 | 25.0 | 100.0(12) |
| $\chi^2(df)$ | 16.053(18)(b) | | | | | | | | | | |
| 직종 | | | | | | | | | | | |
| 대학 교수 | 11.1 | 4.4 | 4.4 | 4.4 | 4.4 | 6.7 | 8.9 | 6.7 | 24.4 | 24.4 | 100.0(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 | - | 100.0 | - | - | 100.0(1) |
| 현장전문가 | - | - | 100.0 | - | - | - | - | - | - | - | 100.0(1) |
| 기타전문가 | - | - | - | - | - | - | - | 33.3 | 33.3 | 33.3 | 100.0(3) |
| $\chi^2(df)$ | 28.667(27)(b)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11.1 | 3.7 | 7.4 | 0.0 | 3.7 | 7.4 | 7.4 | 14.8 | 18.5 | 25.9 | 100.0(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6.7 | 6.7 | 6.7 | 13.3 | 6.7 | - | - | - | 46.7 | 13.3 | 100.0(15) |
| 사회복지/정책 | 12.5 | - | - | - | - | 12.5 | 25.0 | 12.5 | - | 37.5 | 100.0(8) |
| 행정/경제/기타 | | | | | | | | | | | |
| $\chi^2(df)$ | 21.342(18)(b) | | | | | | | | |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 | - | - | - | - | 100.0 | - | 100.0(1) |
| 10~15년 미만 | 20.0 | - | - | - | 20.0 | - | 20.0 | - | 20.0 | 20.0 | 100.0(5) |
| 15~20년 미만 | 9.1 | - | 9.1 | 9.1 | - | 9.1 | 9.1 | - | 18.2 | 36.4 | 100.0(11) |
| 20년 이상 | 9.1 | 6.1 | 6.1 | 3.0 | 3.0 | 6.1 | 6.1 | 15.2 | 24.2 | 21.2 | 100.0(33) |
| $\chi^2(df)$ | 14.929(27)(b) | | | | | | | | | | |

주: 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⑥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⑦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⑧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⑨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⑩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된 과제를 선택한 이유(2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유보관련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성과, 늘봄학교 도입 및 시범운영을 통해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69(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홍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제도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저출생 문제가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되면서 유보통합 추진, 부모급여 도입 등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68(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 하고자 원산지 표시 강화, 위생 등급 시스템 도입, 식품 안전검사 강화 등 식품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안전한 소비 행동을 위한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및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점, 아동의 건강은 국가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급식 관리 확대 정책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표 III-2-10〉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된 과제 선택 사유: 2순위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격차가 있는 영유아 지원 강화 - 교육료, 보육료 지원 및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기관 지속 관리 - 공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 - 가정배경의 다양성 속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어젠다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여겨짐 - 유보관련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성과, 초등늘봄학교 도입 및 시범운영 - 유보통합 및 늘봄교육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유보통합단 설치 운영 등 추진 - 어린이집과 유치원 즉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영유아 교육의 국가책임 실현 - 여전히 미흡하지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전면시행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하고자 했지만 단행하지 못했음. 이 둘의 시행으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는 교육제도라고 볼 수 없지만 늘봄학교 등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아울러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펼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교육기관에도 교육복지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유보통합이 유아교육보육에서 진전을 보임. 부처의 통합을 이루어냄 - 어찌되었거나 교육부로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유보통합의 여러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 <p>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통한 신뢰감 -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 -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함.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 특히 국민에게 주는 생활안전이 잘 확보되었음.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는 안전사고나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생각됨. - 최근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선택 -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 - 종전의 정책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 어디에나 있는 안전정보 시스템 - 생활안전 우수 - 매우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다른 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잘 실행되었다고 생각함. |
| <p>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통합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이고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한 과제를 현 정부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됨. -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서 - 저출생 문제가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되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다른 과제의 실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 관련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추진, 부모급여 확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최근의 저출생대응기구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짐 |
| <p>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 하고자 원산지 표시 강화, 위생 등급 시스템 도입, 식품 안전검사 강화 등 식품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안전한 소비 행동을 위한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및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대표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 - 일본 원전폐기물 방류 관련 수입수산물 관리 강화 - 아동의 건강은 국가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급식 관리 확대 정책은 긍정적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음 표는 실행을 잘 하고 있는 국정과제 1, 2순위를 합친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84번 국정과제를 가장 잘 실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69번, 67번, 46번순으

로 긍정적으로 진단하였다. 전공에 따라 진단을 달리했는데 유아교육 전문가는 67번과 69번이 동수로 가장 많았고, 중요도가 높다고 본 84번과 46번 과제는 실행정도가 중요도보다는 낮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보육 전문가는 46번, 63번, 69번, 84번 등 4개 과제 모두, 각각 31.6%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과제로 뽑았다. 기타 전문가는 84번 과제가 가장 잘 실행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문가들의 전공, 직종, 전문분야, 경력에 따라 국정과제의 실행 정도를 다르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1〉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 된 과제(1+2순위)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수) |
|---------------------|------|------|-------|-------|------|------|------|-------|-------|-------|------|
| 전체 | 24.0 | 14.0 | 10.0 | 10.0 | 4.0 | 26.0 | 32.0 | 12.0 | 32.0 | 36.0 | (50) |
| 전공 | | | | | | | | | | | |
| 유아교육 | 26.3 | 10.5 | 10.5 | 5.3 | 5.3 | 15.8 | 42.1 | 5.3 | 42.1 | 36.8 | (19) |
| 보육 | 31.6 | 10.5 | 10.5 | 15.8 | 5.3 | 31.6 | 21.1 | 10.5 | 31.6 | 31.6 | (19) |
| 기타 | 8.3 | 25.0 | 8.3 | 8.3 | - | 33.3 | 33.3 | 25.0 | 16.7 | 41.7 | (12) |
| 직종 | | | | | | | | | | | |
| 대학 교수 | 24.4 | 15.6 | 8.9 | 11.1 | 4.4 | 26.7 | 33.3 | 8.9 | 31.1 | 35.6 |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 | - | 100.0 | 100.0 | - | (1) |
| 현장전문가 | - | - | 100.0 | - | - | - | - | - | - | 100.0 | (1) |
| 기타전문가 | 33.3 | - | - | - | - | 33.3 | 33.3 | 33.3 | 33.3 | 33.3 | (3) |
| 전문분야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22.2 | 11.1 | 11.1 | 7.4 | 3.7 | 22.2 | 37.0 | 14.8 | 33.3 | 37.0 |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13.3 | 13.3 | 13.3 | 20.0 | 6.7 | 26.7 | 26.7 | 6.7 | 46.7 | 26.7 |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50.0 | 25.0 | - | - | - | 37.5 | 25.0 | 12.5 | - | 50.0 | (8)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100.0 | - | - | - | - | 100.0 | - | (1) |
| 10~15년 미만 | 20.0 | - | - | 20.0 | 20.0 | 60.0 | 40.0 | - | 20.0 | 20.0 | (5) |
| 15~20년 미만 | 36.4 | 9.1 | 18.2 | 18.2 | - | 27.3 | 9.1 | 9.1 | 27.3 | 45.5 | (11) |
| 20년 이상 | 21.2 | 18.2 | 9.1 | 3.0 | 3.0 | 21.2 | 39.4 | 15.2 | 33.3 | 36.4 | (33) |

주: 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⑥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⑦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⑧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⑨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⑩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라.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로는 48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과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 2개 국정과제를 18.0%로 동일하게 1순위로 꼽았다. 다음은 51번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 16.0%,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14.0% 순으로 미흡한 과제로 평가하였다.

유아교육 전문가는 48번 과제를, 보육 전문가는 47번 과제를, 기타 전문가는 51번 과제를 미흡한 과제 1순위로 꼽았다. 미흡한 과제도 전문가의 전공에 따라 진단이 다를 수 있었다.

유아교육/교육 전문가들은 47번, 48번 2개 과제를 미흡한 과제로 선택했고, 아동보육/가족/여성은 48번, 51번 2개 과제를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사회복지/정책/행정/경제/기타 전문가는 50번, 51번 과제를 선택하였다. 20년 이상의 고경력 전문가는 50번(노사 및 양성평등), 48번(가족), 47번(장애인) 순으로 선택하였다. 요컨대, 유관 전문가들은 노동, 젠더, 장애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들이 추진이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표 III-2-12〉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가장 미흡한 과제(1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계(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전체 | 6.0 | 14.0 | 18.0 | 18.0 | 16.0 | 8.0 | 6.0 | 4.0 | 2.0 | 8.0 | 100.0 (50) |
| 전공 | | | | | | | | | | | |
| 유아교육 | - | 10.5 | 21.1 | 26.3 | 15.8 | 10.5 | 5.3 | 5.3 | - | 5.3 | 100.0 (19) |
| 보육 | 15.8 | 21.1 | 15.8 | 15.8 | 10.5 | 5.3 | - | 5.3 | 5.3 | 5.3 | 100.0 (19) |
| 기타 | - | 8.3 | 16.7 | 8.3 | 25.0 | 8.3 | 16.7 | - | - | 16.7 | 100.0 (12) |
| $\chi^2(df)$ | 16.048(18)(b) | | | | | | | | | | |
| 직종 | | | | | | | | | | | |
| 대학 교수 | 6.7 | 13.3 | 15.6 | 17.8 | 17.8 | 8.9 | 4.4 | 4.4 | 2.2 | 8.9 | 10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100.0 | - | - | - | - | - | - | - | 100.0 (1) |
| 현장전문가 | - | - | - | - | - | - | 100.0 | - | - | - | 100.0 (1) |
| 기타전문가 | - | 33.3 | 33.3 | 33.3 | - | - | - | - | - | - | 100.0 (3) |
| $\chi^2(df)$ | 23.898(27)(b) | | | | | | | |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수)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3.7 | 22.2 | 22.2 | 14.8 | 7.4 | 11.1 | 11.1 | 3.7 | - | 3.7 | 100.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13.3 | 6.7 | 20.0 | 13.3 | 20.0 | 6.7 | - | 6.7 | 6.7 | 6.7 | 100.0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 | - | - | 37.5 | 37.5 | - | - | - | - | 25.0 | 100.0 (8) |
| $\chi^2(df)$ | | | | | | | | | | | 22.561(18)(b)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 | - | - | 100.0 | - | - | - | 100.0 (1) |
| 10~15년 미만 | - | - | 40.0 | - | 20.0 | - | - | - | - | 40.0 | 100.0 (5) |
| 15~20년 미만 | 18.2 | 9.1 | - | 9.1 | 36.4 | 9.1 | 9.1 | 9.1 | - | - | 100.0 (11) |
| 20년 이상 | 3.0 | 18.2 | 21.2 | 24.2 | 9.1 | 9.1 | 3.0 | 3.0 | 3.0 | 6.1 | 100.0 (33) |
| $\chi^2(df)$ | | | | | | | | | | | 40.319(27)*(b) |

주: 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 51. 노사협력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⑥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⑦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⑧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⑨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⑩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 $p < .05$.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를 선택한 이유(1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은 별로 고려되지 못하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가족 단위의 사각지대가 잘 메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은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가족 중 두 가지 예시에 불과함에도 가족다양성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족다양성은 매우 다양한 차원과 층위가 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고, 일터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해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정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으

며, 노사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노동단체가 이 이슈를 핵심 어젠다로 가져가도록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노사 역시 협력해야 함에도 진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선택한 이유로는 유연근무가 코로나시기 이후 시작이 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 관련 노력과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유아교육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 유아 시기 조기 선별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정책 준비 중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유아 특수교육 실행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표 III-2-13〉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 선택 이유: 1순위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 폐지 등 가족 정책에 대한 비중 약화 - 빈부격차가 심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 가족 구현이 어려움. -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은 별로 고려되지 못하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 -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가족 단위의 사각지대가 잘 메워지지 못하고 있음 - 가족다양성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국정과제를 수립하였음.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은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가족 중 두 가지 예시에 불과함.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관심이 폭증한 청소년 부모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이러한 형태의 가족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은 어색함. 청소년 부모의 정의에 20대가 포함되므로, 지원 대상 청소년 부모 중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십대 부모는 수적으로 매우 적음. 가족다양성은 매우 다양한 차원과 층위가 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여전히 저출산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임신은 물론이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이혼과 분가 등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해체도 심해지고 있다. -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 1인 가족의 증대와 미취업인 증가 |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이 평등한 일자리는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됨. - 모든 취업 영역에서 양성평등 미흡 - 여성 노동자 취업, 육아휴직, 보육 등에 대한 체계적 시행의 부족 - 국민 체감도가 미흡하게 여겨짐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미흡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 미흡하여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함 -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난항을 겪고 있어 미흡한 과제로 선택함. 일터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음.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해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정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노사 |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 협력이 필수적임. 경제계와 노동단체가 이 이슈를 핵심 어젠다로 가져가도록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노사 역시 협력해야 함에도 진척이 없음. -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여성의 일자리 조건이 불리함을 알 수 있고 육아 측면에서 노사관계의 공정함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
|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 유연근무가 코로나시기 이후 시작이 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함. -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가 축소되고 있음. 예를 들어 근로시간 확대 등 -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하여 과로와 장시간 노동 조장, 노동보호 약화를 낳을 것임. - 화합보다는 노사 대립 심화됨 - 제도의 실효성 미흡 - 관련 노력과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 특별하게 유아교육보육 관련하여 실행된 정책을 모르겠음 - 노사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 -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유아교육기관이 늘어나야 함(특히, 사립유치원)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조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공공시설의 접근성 개선, 장애인 전용시설의 확대 등)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긴 했지만, 장애인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산업환경의 장애는 아직도 한계가 많다고 생각한다. - 특히 유아 시기 조기 선별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정책 준비 중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장애인 복지가 증진되어야 하므로 -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예산 등에서 부족하다고 여김 -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인 대중교통 등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관련된 당사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매우 미흡함 - 유치원에서의 특수교육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음.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1순위)에 대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양한 가족들이 사회보장이나 입양 등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에 집중하는 것은 취약가족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을 전제로 시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의 구조와 무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관한 대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건강한 노사관계 및 양성 평등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점검과 개선 필요,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경력단절 해소, 가족 돌봄자에 대한 차별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은 인구위기 해법과도 연결되므로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핵심 정부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등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이후에 차별이 없는 분위기 조성, 공무원이나 공기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장애통합을 원하는 유아교육기관에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유보통합 정책에서 장애 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 및 교사교육 관련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III-2-14〉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미흡한 과제 개선 방안: 1순위

| 국정과제 | 개선 방안 |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강조되어야 함.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서 가족의 의미와 출생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지원정책 활성화 - 보편적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 - 1인 가구, 동성애 부부 등 다양한 가족들도 사회보장이나 입양 등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관련정책들 개선 - 사회적 안전망의 촘촘한 확대(거버넌스간의 연계 확대) - 한부모, 다문화 가족에 집중하는 정책은 제한적임. 가족은 형태와 무관하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가족센터의 서비스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벤트성 사업이 많으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아 서비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예방적 관점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함. 또한 사업의 만족도가 아닌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가족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의 정책은 취약 가족 = 다양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을 토대로 하며, 국민들이 흔히 '불쌍하다', '도와주어야 한다' 등 시혜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가족형태에 집중하여 제한적임. 커플갈등, 부모자녀갈등 등 가족의 구조와 무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소중함,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한 교과목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 - 부, 모, 자녀(연령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파악 및 미흡 지원 체제 분석과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대학 수준이 아닌 인성수준에 따른 교육개편 필요, 가족중심이 아닌 일중심의 현 사회구조 개편 |

| 국정과제 | 개선 방안 |
|--------------------------------|--|
|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인사 제도, 양성에게 합리적인 승진 기회 제공 - 여성인력 채용 확대 - 건강한 노사관계 및 양성 평등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점검과 개선이 시급함 - 노사관계 진행과정 및 양성평등 일자리 포털을 국민들도 상시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면 좋겠음 -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의무화해야 함 -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 -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경력단절 해소, 가족 돌봄자에 대한 차별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은 인위기 해법과도 연결됨.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핵심 정부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고 추진 -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거나 실행하는 기업, 양성평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강한 인센티브 부여 |
|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등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다만 반복적인 실업급여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제도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또는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보상 지급) - 직장 어린이집 설립 및 지원 확대 -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이 후에 차별이 없는 분위기 조성, 공무원이나 공기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필요 |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을 원하는 유아교육기관에 교사 인건비 지원 - 장애인들이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과 교통수단 등에 장애인 친화적 설계를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 정보 제공 고도화 등을 개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유보통합정책에서 장애 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 및 교사교육 관련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 장애인 취업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해야 함. 장애인의 경우 계약직이 많은데 정규직을 늘려야 함. -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과 관련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예산확대 필요 - 기본권(이동권 등) 보장 지원 방안 발표 - 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입학정원 대폭 증대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2순위) 실행이 미흡한 육아정책 국정과제는 50번(노사 및 양성평등) 국정과제가 26.0%로 가장 많았고, 68번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이 14.0%로 뒤를 이었다. 전공, 직종, 전문분야, 경력 변인별로 모든 전문가들이 50번 과제를 추진이 미흡한 과제 2순위로 선택하였다.

〈표 III-2-15〉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가장 미흡한 과제(2순위)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수) |
|---------------------|------|------|------|------|---------------|------|------|-------|------|------|------------|
| 전체 | 6.0 | 6.0 | 8.0 | 26.0 | 12.0 | 6.0 | 6.0 | 14.0 | 10.0 | 6.0 | 100.0 (50) |
| 전공 | | | | | | | | | | | |
| 유아교육 | 5.3 | 10.5 | 5.3 | 31.6 | 10.5 | - | 5.3 | 21.1 | 5.3 | 5.3 | 100.0 (19) |
| 보육 | 10.5 | 5.3 | 5.3 | 21.1 | 15.8 | 10.5 | 10.5 | 5.3 | 10.5 | 5.3 | 100.0 (19) |
| 기타 | - | - | 16.7 | 25.0 | 8.3 | 8.3 | - | 16.7 | 16.7 | 8.3 | 100.0 (12) |
| $\chi^2(df)$ | | | | | 11.225(18)(b) | | | | | | |
| 직종 | | | | | | | | | | | |
| 대학 교수 | 6.7 | 6.7 | 8.9 | 26.7 | 8.9 | 6.7 | 6.7 | 13.3 | 8.9 | 6.7 | 10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100.0 | - | - | - | - | - | 100.0 (1) |
| 현장전문가 | - | - | - | - | - | - | - | 100.0 | - | - | 100.0 (1) |
| 기타전문가 | - | - | - | 33.3 | 33.3 | - | - | - | 33.3 | - | 100.0 (3) |
| $\chi^2(df)$ | | | | | 18.521(27)(b)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3.7 | 7.4 | 3.7 | 25.9 | 14.8 | 7.4 | 3.7 | 18.5 | 11.1 | 3.7 | 100.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13.3 | 6.7 | 13.3 | 26.7 | 6.7 | - | 13.3 | 6.7 | 6.7 | 6.7 | 100.0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 | - | 12.5 | 25.0 | 12.5 | 12.5 | - | 12.5 | 12.5 | 12.5 | 100.0 (8) |
| $\chi^2(df)$ | | | | | 10.201(18)(b) | | | | |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 | - | - | - | 100.0 | - | - | 100.0 (1) |
| 10~15년 미만 | 20.0 | - | 20.0 | 20.0 | 20.0 | - | - | 20.0 | - | - | 100.0 (5) |
| 15~20년 미만 | - | 18.2 | - | 18.2 | - | 9.1 | 27.3 | - | 18.2 | 9.1 | 100.0 (11) |
| 20년 이상 | 6.1 | 3.0 | 9.1 | 30.3 | 15.2 | 6.1 | - | 15.2 | 9.1 | 6.1 | 100.0 (33) |
| $\chi^2(df)$ | | | | | 30.684(27)(b) | | | | | | |

주: 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⑥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⑦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⑧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⑨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⑩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를 선택한 이유(2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여성의 직업, 능력향상, 사회참여 등의 공평과 평등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는 점,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해야 할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있어 성과를 파

악하기 어려움, 노사관계의 공정한 분위기가 강조되지 않았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일자리 구현에 대한 강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정과제 68(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선택한 이유로는 유아교육기관에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급식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식생활 건강권이 강화될 수 없다는 점, 영유아들 역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각 기관에서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고물가가 결국 안심 먹거리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생각보다 미흡하다는 점, 시간 외 수당, 탄력적 근로시간 활용이 현실화되지 않은 업계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국정과제 69(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속도와 효율이 떨어졌으며, 예방적인 대책 마련이나 시스템 구축이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점,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활안전 확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표 III-2-16〉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미흡한 과제 선택 사유(전문가): 2순위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 평등과 관련된 정책 약화 - 여성의 직업, 능력향상, 사회참여 등의 공평과 평등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음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어려움. 사회구조상 아직도 성적 차이가 존재함. -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해야 할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있어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여성가족부 폐지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 불평등에 무지 - 한국사회에서 유리천장의 이슈는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공정성은 업종이나 산업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큼 - 아직도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여성 차별적 문화 - 관련 노력과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과 양성평등 정책 조화의 어려움 - 노사관계의 공정한 분위기가 강조되지 않았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일자리 구현에 대한 강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 휴직 등의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갑을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피해 사례 속출 |

| 국정과제 | 선택 이유 |
|--------------------------|--|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좀더 불편하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위한 공익 광고 나 안내를 통해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로 생활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유아교육기관에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함 - 급식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식생활 건강권이 강화될 수 없음 -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먹거리에 안전 문제가 발생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후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의 증가. GMO 관리부실 - 영유아들 역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각 기관에서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고물가가 결국 안심 먹거리 문제로 연결됨. - 초등학교 아동의 급식문제가 지속적으로 뉴스 등에 보도되어 있음. |
|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함데 이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생각보다 미흡함 - 시간 외 수당, 탄력적 근로시간 활용이 현실화되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가 늘고, 사회 각 분야의 법규 및 규칙 준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고 생각됨. -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 발생 및 사후 대책 미흡 -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속도와 효율이 떨어졌으며, 예방적인 대책 마련이나 시스템 구축이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단속,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활안전 확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아짐.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2순위)에 대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성별과 지위 관련하여 차별 없이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타고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실행되어야 하고, 성별 임금격차 및 여성의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 타파,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성평등 정책 강화, 여성 차별 조직 문화에 대한 강제 징벌 부과, 기업의 희생과 구성원들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세금감면, 대체인력 무상 지원 등), 육아 휴직이 대기업 이외에도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 전반의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68(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급식비 및

환경 개선비 지원 확대, 급식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등)의 근무조건 등 처우 개선, 안심 먹거리를 위한 인증제 강화, 식품 물가 안정 등이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수범사례를 전 국민에 상시 홍보하고 세액 혜택 등을 관련자에 지원하는 방안, 보다 많은 업체에서 시간의 수당이나 탄력적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69(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재난 대응 시스템 및 인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위치한 곳에서는 서행하도록 법 제화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III-2-17〉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미흡한 과제 개선 방안(전문가): 2순위

| 국정과제 | 개선 방안 |
|--|---|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과 지위 관련하여 차별 없이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타고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실행되어야 함 - 여성과 남성간 임금격차 줄이기, 여성의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 타파, 여성 승진기회 장려 등 양성평등과 공정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확대. -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성평등 정책 강화 - 서비스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함.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일-가족 갈등, 전반적 웰빙에 대한 지원 필요 - 여성 차별 조직 문화에 대한 강제 징벌 부과 - 출산, 육아휴직 지원 확대(임금, 기간 등) - 기업의 희생과 구성원들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세금감면, 대체인력 무상 지원 등 - 노동자를 노사관계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여성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육아 휴직이 대기업 이외에도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 전반의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직도 같은 직업군과 경력 레벨에서 차별적인 임금제 폐지, 갑을관계의 노사관계에서의 갑질 신고와 피해자 보호 |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비닐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고 재활용을 잘하도록 독려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곳에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는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급식비 및 환경 개선비 지원 - 급식 종사자의 처우를 함께 개선해야 함 - 안심 먹거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 고물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등에 대한 근무조건 등 처우개선 필요 |



| 국정과제 | 개선 방안 |
|--------------------------|--|
|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수범사례를 전 국민에 상시 홍보하고 세액 혜택 등을 관련자에 지원하는 방안 - 노사합의에 기반한 협력적이고 건강한 기업문화 존중 분위기 조성 - 보다 많은 업계에서 시간외 수당이나 탄력적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등을 통한 법규정 강화. 이를 어겼을 때 처벌 강화. -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점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 재난 대응 시스템 및 인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전에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위치한 곳에서는 서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단속이 필요함. - 아이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실행이 미흡한 국정과제 1, 2순위 응답을 합친 결과, ④50번(노사 및 양성평등) 국정과제가 44.0%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은 ⑤51번(노사협력) 국정과제가 28.0%, ③48번(가족) 26.0%, ②47번(장애인) 20.0% 순으로 나왔다.

유아교육 전문가, 사회복지/정책/행정/경제/기타 전문가, 20년 이상 전문가들이 ④50번(노사 및 양성평등) 국정과제에 대해 절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표 III-2-18〉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가장 미흡한 과제(1+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전체 | 12.0 | 20.0 | 26.0 | 44.0 | 28.0 | 14.0 | 12.0 | 18.0 | 12.0 | 14.0 | (50) |
| 전공 | | | | | | | | | | | |
| 유아교육 | 5.3 | 21.1 | 26.3 | 57.9 | 26.3 | 10.5 | 10.5 | 26.3 | 5.3 | 10.5 | (19) |
| 보육 | 26.3 | 26.3 | 21.1 | 36.8 | 26.3 | 15.8 | 10.5 | 10.5 | 15.8 | 10.5 | (19) |
| 기타 | - | 8.3 | 33.3 | 33.3 | 33.3 | 16.7 | 16.7 | 16.7 | 16.7 | 25.0 | (12) |
| 직종 | | | | | | | | | | | |
| 대학 교수 | 13.3 | 20.0 | 24.4 | 44.4 | 26.7 | 15.6 | 11.1 | 17.8 | 11.1 | 15.6 |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100.0 | - | 100.0 | - | - | - | - | - | (1) |
| 현장전문가 | - | - | - | - | - | - | 100.0 | 100.0 | - | - | (1) |
| 기타전문가 | - | 33.3 | 33.3 | 66.7 | 33.3 | - | - | - | 33.3 | - | (3)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수)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7.4 | 29.6 | 25.9 | 40.7 | 22.2 | 18.5 | 14.8 | 22.2 | 11.1 | 7.4 |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26.7 | 13.3 | 33.3 | 40.0 | 26.7 | 6.7 | 13.3 | 13.3 | 13.3 | 13.3 |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 | - | 12.5 | 62.5 | 50.0 | 12.5 | - | 12.5 | 12.5 | 37.5 | (8)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 | - | - | 100.0 | 100.0 | - | - | (1) |
| 10~15년 미만 | 20.0 | - | 60.0 | 20.0 | 40.0 | - | - | 20.0 | - | 40.0 | (5) |
| 15~20년 미만 | 18.2 | 27.3 | - | 27.3 | 36.4 | 18.2 | 36.4 | 9.1 | 18.2 | 9.1 | (11) |
| 20년 이상 | 9.1 | 21.2 | 30.3 | 54.5 | 24.2 | 15.2 | 3.0 | 18.2 | 12.1 | 12.1 | (33) |

주: 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②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③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④ 50. 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⑤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⑥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⑦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⑧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⑨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⑩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소결

전문가들은 10대 육아정책 관련 1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48.0%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은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강화로 교육격차해소)(22.0%)를 꼽았다.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요도 선택 사유(1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여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에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과제 하나를 선



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67(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이 24.0%로 가장 많았고, 국정과제 6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20.0%,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4.0%,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2.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잘된 과제를 선택한 이유(1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67(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을 선택한 이유로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했고, 영유아 건강검진체계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6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영유아 교통사고 및 영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부모급여, 산모건강관리 체계화, 유보통합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추진으로 국가교육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로는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과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 2개 국정과제를 18.0%로 동일하게 1순위로 꼽았다. 다음은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 16.0%, 국정과제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 14.0% 순으로 미흡한 과제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를 선택한 이유(1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은 별로 고려되지 못하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가족 단위의 사각지대가 잘 메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은 수많은 형태의 다양

한 가족 중 두 가지 예시에 불과함에도 가족다양성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족다양성은 매우 다양한 차원과 층위가 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고, 일터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해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정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노사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노동단체가 이 이슈를 핵심 어젠다로 가져가도록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노사 역시 협력해야 함에도 진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선택한 이유로는 유연근무가 코로나시기 이후 시작이 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 근로시간 유연화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 관련 노력과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유아교육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 유아 시기 조기 선별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정책 준비 중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유아 특수교육 실행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선택한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1순위)에 대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양한 가족들이 사회보장이나 입양 등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에 집중하는 것은 취약가족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을 전제로 시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의 구조와 무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관한 대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정과제 50(공정한 노사관계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건강한 노사관계 및 양성 평등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점검과 개선 필요,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경력단절 해소, 가족 돌봄자에 대한 차별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은 인구위기 해법과도 연결되므로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핵심 정부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등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이후에 차별이 없는 분위기 조성, 공무원이나 공기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국정과제 47(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실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장애통합을 원하는 유아교육기관에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유보통합 정책에서 장애 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 및 교사교육 관련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IV

정책과제 부문별 성과평가

- 0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02 교육·보육·돌봄 지원
- 03 자녀돌봄 시간지원
- 04 전체 육아정책 기준 평가
- 05 소결

IV. 정책과제 부문별 성과 평가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가. 부모조사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및 만족도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현금 및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들은 모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과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는 9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부모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도 68.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 및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 | 의료비 지원 | 건강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지자체 현금지원 | 계(수) |
|--------------|------------------|------------------|------------------|------------------|------------------|------------------|-----------------|--------------|
| 전체 | 97.8 | 69.6 | 75.7 | 81.9 | 78.5 | 68.2 | 82.6 | 100.0(1,013) |
| 성별 | | | | | | | | |
| 남성 | 95.7 | 60.5 | 66.4 | 76.3 | 70.2 | 60.3 | 78.1 | 100.0(443) |
| 여성 | 99.5 | 76.7 | 83.0 | 86.3 | 84.9 | 74.4 | 86.1 | 100.0(570) |
| $\chi^2(df)$ | 16.610 (1)*** | 30.801 (1)*** | 37.433 (1)*** | 16.901 (1)*** | 31.933 (1)*** | 22.905 (1)*** | 11.215 (1)** | |
| 지역구분 | | | | | | | | |
| 대도시 | 95.9 | 68.1 | 74.7 | 81.1 | 75.3 | 64.8 | 77.6 | 100.0(392) |
| 중소도시 | 98.9 | 70.7 | 75.8 | 81.4 | 80.3 | 69.7 | 87.3 | 100.0(458) |
| 읍면 | 99.4 | 69.9 | 77.9 | 85.3 | 81.0 | 72.4 | 81.6 | 100.0(163) |
| $\chi^2(df)$ | 11.108 (2)** | 0.701(2) | 0.630(2) | 1.480(2) | 3.965(2) | 3.861(2) | 14.232 (2)** | |

| 구분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 | 의료비지원 | 건강지원 | 첫만남이용권 | 지자체 현금지원 | 계(수) |
|--------------|-------------|--------------|--------------|--------------|--------------|---------------|--------------|-------------|
| 연령 | | | | | | | | |
| 20대 | 92.9 | 92.9 | 85.7 | 92.9 | 78.6 | 85.7 | 85.7 | 100.0(14) |
| 30대 | 98.9 | 79.2 | 80.3 | 85.6 | 81.9 | 78.8 | 87.3 | 100.0(529) |
| 40대 이상 | 96.8 | 58.1 | 70.2 | 77.4 | 74.7 | 55.7 | 77.2 | 100.0(470) |
| $\chi^2(df)$ | 6.609(2)* | 56.098(2)*** | 14.655(2)** | 12.413(2)** | 7.579(2)* | 63.165(2)*** | 17.782(2)*** | |
| 취업 여부 | | | | | | | | |
| 취업 | 98.6 | 71.6 | 76.1 | 83.8 | 82.4 | 69.5 | 83.9 | 100.0(573) |
| 미취업 | 96.8 | 67.0 | 75.2 | 79.5 | 73.4 | 66.6 | 80.9 | 100.0(440) |
| $\chi^2(df)$ | 3.735(1) | 2.390(1) | 0.101(1) | 3.000(1) | 11.842(1)** | 0.944(1) | 1.597(1)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맞벌이 | 98.7 | 71.1 | 75.9 | 83.9 | 82.6 | 68.6 | 83.7 | 100.0(522) |
| 외벌이 | 96.9 | 68.0 | 75.6 | 79.8 | 74.1 | 67.8 | 81.5 | 100.0(491) |
| $\chi^2(df)$ | 3.499(1) | 1.111(1) | 0.013(1) | 2.833(1) | 10.653(1)** | 0.068(1) | 0.892(1) | |
| 소득 기준 | | | | | | | | |
| 250만원 이하 | 95.7 | 52.2 | 69.6 | 82.6 | 73.9 | 65.2 | 69.6 | 100.0(23) |
| 251-350만원 | 98.1 | 68.9 | 70.9 | 76.7 | 68.9 | 67.0 | 78.6 | 100.0(103) |
| 351-500만원 | 98.2 | 71.9 | 76.0 | 79.6 | 78.3 | 69.2 | 83.3 | 100.0(221) |
| 501-600만원 | 97.4 | 68.9 | 77.9 | 81.1 | 74.2 | 67.4 | 82.1 | 100.0(190) |
| 601만원 이상 | 97.9 | 69.7 | 76.1 | 84.5 | 82.6 | 68.5 | 84.0 | 100.0(476) |
| $\chi^2(df)$ | 0.875(4)(b) | 3.940(4) | 2.317(4) | 4.843(4) | 12.598(4)* | 0.351(4) | 4.627(4)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영아부모 | 98.3 | 95.5 | 74.2 | 89.3 | 89.3 | 97.8 | 93.8 | 100.0(178) |
| 유아부모 | 99.0 | 71.6 | 83.6 | 84.3 | 80.5 | 69.9 | 87.0 | 100.0(415) |
| 초등부모 | 96.4 | 56.7 | 68.6 | 76.4 | 71.9 | 54.0 | 73.6 | 100.0(420) |
| $\chi^2(df)$ | 6.921(2)* | 90.412(2)*** | 25.976(2)*** | 16.791(2)*** | 24.134(2)*** | 111.034(2)*** | 45.025(2)*** | |

주: 1) 각 정책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정책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중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이용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이용률이 9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 지원(72.0%), 지자체 현금지원금(69.4%), 가정양육수당(61.5%), 첫만남이용권(45.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률(2023년/2024년 조사)

단위: %(명)

| 구분 | 2023년 조사 | | 2024년 조사 | |
|---|----------|--------------|----------|-------------|
| | 이용률 | 계(수) | 이용률 | 계(수) |
| 1. 아동수당 | 96.5 | 100.0 (1939) | 94.5 | 100.0 (919) |
| 2. 부모급여 | 57.4 | 100.0 (1708) | 38.4 | 100.0 (705) |
| 3. 가정양육수당 | 78.7 | 100.0 (1482) | 61.5 | 100.0 (767) |
| 4.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84.9 | 100.0 (1574) | 72.0 | 100.0 (830) |
| 5.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51.8 | 100.0 (1115) | 33.3 | 100.0 (795) |
| 6. 첫만남이용권 (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급,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 지급) | 71.2 | 100.0 (824) | 45.4 | 100.0 (691) |
| 7. 지자체 현금지원금(출산지원금 등) | 84.3 | 100.0 (1518) | 69.4 | 100.0 (837) |

주: 1)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정책의 이용 경험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76-77. 〈표 IV-1-2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참조.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전반의 만족도에 대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만족도를 살펴보면, 3.2점에서 3.8점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3년/2024년)

단위: %(명), 점

| 구분 | 2023년 조사 | | 2024년 조사 | | | | |
|----------------------|---|------|--------------|--------------|------|-------------|-------------|
| | 만족비율 5점 평균 | 계(수) | 만족비율 5점 평균 | 계(수) | |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1. 아동수당 | 3.55 | 100.0 (1872) | 47.4 | 3.4 | 100.0 (936) | |
| | 2. 부모급여 | 3.68 | 100.0 (499) | 56.8 | 3.6 | 100.0 (271) | |
| | 3. 가정양육수당 | 3.53 | 100.0 (1166) | 46.2 | 3.4 | 100.0 (472) | |
| | 4.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 3.66 | 100.0 (1336) | 55.2 | 3.5 | 100.0 (598) |
| | 5.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3.63 | 100.0 (578) | 52.1 | 3.5 | 100.0 (265) | |

| 구분 | 2023년 조사 | | 2024년 조사 | |
|--|------------|--------------|------------|-------------|
| | 만족비율 5점 평균 | 계(수) | 만족비율 5점 평균 | 계(수) |
| 6. 첫만남이용권 (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급,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 지급) | 3.88 | 100.0 (587) | 61.5 3.7 | 100.0 (314) |
| 7. 지자체 현금지원금 (출산지원금 등) | 3.48 | 100.0 (1280) | 42.0 3.2 | 100.0 (581) |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76-77, 82 참조.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현금 및 의료비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를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87.7%가 지자체 현금지원금의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현금 및 의료비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인프라 등 다른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어서 | 기타 | 계(수) |
|--|-----------------|------------------------|------------------------|------------------------------|--------------------------------------|-----|-------------|
| 1. 아동수당 | 76.4 | 15.2 | 1.2 | 0.6 | 3.6 | 3.0 | 100.0 (165) |
| 2. 부모급여 | 75.6 | 14.6 | - | - | 4.9 | 4.9 | 100.0 (41) |
| 3. 가정양육수당 | 75.0 | 15.9 | 1.1 | 1.1 | 5.7 | 1.1 | 100.0 (88) |
| 4. 첫만남이용권 (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급,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 지급) | 72.7 | 6.1 | 3.0 | 3.0 | 15.2 | - | 100.0 (33) |
| 5. 지자체 현금지원금 (출산지원금 등) | 87.7 | 3.9 | 1.3 | - | 4.5 | 2.6 | 100.0 (155) |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의료비 및 건강 지원 부문에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역시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를 70% 이상이 응답하여 지원 금액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1-5〉 의료비 및 건강 지원 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지원 금액/서 비스 수준이 낮아서 | 이용방법/ 절차가 복잡해서 |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 기타 | 계(수) |
|--|--------------------------------|----------------------|-----------------------|-------------------------------------|------------------------------|-----|------------|
| 1.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70.6 | 8.2 | 8.2 | 3.5 | 8.2 | 1.2 | 100.0 (85) |
| 2.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73.2 | 12.2 | 12.2 | 2.4 | - | - | 100.0 (41) |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성과 평가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65.5%로 가장 높았다. 부모 연령별로는 20대(85.7%), 30대(72.6%), 40대 이상(57.0%)로 나타나,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급여 도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는 영아부모(83.7%), 유아부모(69.9%), 초등부모(53.6%)로 나타나, 영아 부모일수록 ‘부모급여 도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1-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 구분 | 부모급여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계(수) | |
|--------------|---------|-------------------|---------------|-------|---------|
| 전체 | 65.5 | 18.5 | 16.0 | 100.0 | (1,013) |
| 성별 | | | | | |
| 남성 | 66.1 | 20.1 | 13.8 | 100.0 | (443) |
| 여성 | 65.1 | 17.2 | 17.7 | 100.0 | (570) |
| $\chi^2(df)$ | | 3.607(2) | | | |
| 지역구분 | | | | | |
| 대도시 | 65.1 | 17.6 | 17.3 | 100.0 | (392) |
| 중소도시 | 64.8 | 19.4 | 15.7 | 100.0 | (458) |
| 읍면 | 68.7 | 17.8 | 13.5 | 100.0 | (163) |
| $\chi^2(df)$ | | 1.834(4) | | | |
| 연령 | | | | | |
| 20대 | 85.7 | 7.1 | 7.1 | 100.0 | (14) |
| 30대 | 72.6 | 16.6 | 10.8 | 100.0 | (529) |
| 40대 이상 | 57.0 | 20.9 | 22.1 | 100.0 | (470) |
| $\chi^2(df)$ | | 34.217(4)***(b) | | |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 | 66.8 | 18.5 | 14.7 | 100.0 | (573) |
| 미취업 | 63.9 | 18.4 | 17.7 | 100.0 | (440) |
| $\chi^2(df)$ | | 1.802(2)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66.5 | 19.0 | 14.6 | 100.0 | (522) |
| 외벌이 | 64.6 | 17.9 | 17.5 | 100.0 | (491) |
| $\chi^2(df)$ | | 1.673(2) | | | |
| 소득 기준 | | | | | |
| 250만원 이하 | 65.2 | 17.4 | 17.4 | 100.0 | (23) |
| 251-350만원 | 65.0 | 18.4 | 16.5 | 100.0 | (103) |
| 351-500만원 | 63.3 | 17.6 | 19.0 | 100.0 | (221) |
| 501-600만원 | 66.8 | 15.3 | 17.9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66.2 | 20.2 | 13.7 | 100.0 | (476) |
| $\chi^2(df)$ | | 5.497(8)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영아부모 | 83.7 | 12.9 | 3.4 | 100.0 | (178) |
| 유아부모 | 69.9 | 17.6 | 12.5 | 100.0 | (415) |
| 초등부모 | 53.6 | 21.7 | 24.8 | 100.0 | (420) |
| $\chi^2(df)$ | | 65.841(4)***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 진료체계 개선’이 48.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3.3%)이 남성(41.1%)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일수록 ‘아동 진료체계 개선’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1-7〉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 구분 | 부모급여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계(수) |
|--------------|----------|----------------|------------|---------------|
| 전체 | 30.5 | 21.5 | 48.0 | 100.0 (1,013) |
| 성별 | | | | |
| 남성 | 35.7 | 23.3 | 41.1 | 100.0 (443) |
| 여성 | 26.5 | 20.2 | 53.3 | 100.0 (570) |
| $\chi^2(df)$ | | 15.771(2)*** | | |
| 첫째아 기준 | | | | |
| 영아부모 | 30.9 | 23.5 | 45.7 | 100.0 (392) |
| 유아부모 | 29.3 | 20.7 | 50.0 | 100.0 (458) |
| 초등부모 | 33.1 | 19.0 | 47.9 | 100.0 (163) |
| $\chi^2(df)$ | | 2.742(4) |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28.6 | 14.3 | 57.1 | 100.0 (14) |
| 외벌이 | 28.7 | 20.4 | 50.9 | 100.0 (529) |
| 해당없음 | 32.6 | 23.0 | 44.5 | 100.0 (470) |
| $\chi^2(df)$ | | 4.675(4)(b) | | |
| 소득 기준 | | | | |
| 250만원 이하 | 31.4 | 20.6 | 48.0 | 100.0 (573) |
| 251~350만원 | 29.3 | 22.7 | 48.0 | 100.0 (440) |
| 351~500만원 | 0.885(2) | 36.7 | 55.6 | 100.0 (611) |
| 501~600만원 | | | | |
| 601만원 이상 | 32.4 | 19.5 | 48.1 | 100.0 (522) |
| $\chi^2(df)$ | | 28.5 | | |
| 지역구분 | | 3.202(2) | | |
| 대도시 | | | | |
| 중소도시 | 34.8 | 34.8 | 30.4 | 100.0 (23) |
| 읍면 | 29.1 | 30.1 | 40.8 | 100.0 (103) |
| $\chi^2(df)$ | | 26.2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50.2%로 가장 높았고 ‘아동 진료체계 개선’ 30.3%,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별로는 ‘부모급여’를 선택한 비율에서 남성(60.3%)이 여성(42.5%)보다 높았으나, ‘아동 진료체계 개선’을 선택한 비율에서는 여성(37.5%)이 남성(21.0%)보다 높았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 진료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부모급여’를 선택한 비율이 20대(100.0%), 30대(54.3%), 40대 이상(44.3%)으로 나타나,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1-8〉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 구분 | 부모급여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계(수) |
|--------------|---------|-----------------|------------|---------------|
| 전체 | 50.2 | 19.4 | 30.3 | 100.0 (1,013) |
| 성별 | | | | |
| 남성 | 60.3 | 18.7 | 21.0 | 100.0 (443) |
| 여성 | 42.5 | 20.0 | 37.5 | 100.0 (570) |
| $\chi^2(df)$ | | 38.479(2)*** | | |
| 첫째아 기준 | | | | |
| 영아부모 | 49.5 | 18.6 | 31.9 | 100.0 (392) |
| 유아부모 | 50.4 | 19.2 | 30.3 | 100.0 (458) |
| 초등부모 | 51.5 | 22.1 | 26.4 | 100.0 (163) |
| $\chi^2(df)$ | | 1.988(4) | | |
| 연령 | | | | |
| 20대 | 100.0 | - | - | 100.0 (14) |
| 30대 | 54.3 | 16.8 | 28.9 | 100.0 (529) |
| 40대 이상 | 44.3 | 23.0 | 32.8 | 100.0 (470) |
| $\chi^2(df)$ | | 25.069(4)***(b) | | |
| 소득 기준 | | | | |
| 250만원 이하 | 48.5 | 19.9 | 31.6 | 100.0 (573) |
| 251~350만원 | 52.5 | 18.9 | 28.6 | 100.0 (440) |

| 구분 | 부모급여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계(수) |
|--------------|----------|----------------|------------|--------------|
| 351~500만원 | 1.638(2) | 36.7 | 55.6 | 100.0 (611) |
| 501~600만원 | | | | |
| 601만원 이상 | 48.5 | 19.7 | 31.8 | 100.0 (522) |
| $\chi^2(df)$ | | 52.1 | | |
| 지역구분 | | 1.517(2) | | |
| 대도시 | | | | |
| 중소도시 | 65.2 | 17.4 | 17.4 | 100.0 (23) |
| 읍면 | 47.6 | 20.4 | 32.0 | 100.0 (103) |
| $\chi^2(df)$ | | 50.2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나. 전문가 조사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현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과제에 대해 3개 세부과제의 수행 달성도를 알아보았다. 결과, 전문가들은 부모급여를 5.7점(긍정비율 84.0%)으로 가장 높았고,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5.3점(긍정 비율 74.0%), 아동 진료체계 개선 4.4점(긍정비율 56.0%)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조사 대비 3개 정책과제 모두 달성도 평가가 상승하였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과제가 지난 해 대비 0.9점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표 IV-1-9〉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3년/2024년 조사)

| 정책과제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 부모급여 도입 | | 5.3 | 100.0 (98) | 84.0 | 5.7 | 100.0 (50)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 | 4.4 | 100.0 (98) | 74.0 | 5.3 | 100.0 (50)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 3.7 | 100.0 (98) | 56.0 | 4.4 | 100.0 (50) |

주: 1) 긍정비율은 '⑥',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105-106. 〈표 IV-2-6〉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수행도 참조.

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

이어서 이들 3개 과제에 대해 가장 큰 성과를 낸 과제도 앞선 달성도 평가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부모급여”는 74.0%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2개 정책과제는 응답률에서 현저히 낮았다.

〈표 IV-1-10〉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

| 관련 국정과제 | 2024년 조사 |
|----------------|-----------|
| 부모급여 도입 | 74.0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18.0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9.0 |
| 계(수) | 100.0(50) |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서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도입」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책 수혜자 누락 가능성 미미하며, 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0세와 1세의 발달에 가장 적합하게 가정양육을 하도록 국가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이고, 부모입장에서 현금지원을 통한 정책적 체감이 크며 실제 이 시기 양육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지적되었다. 또한 저연령 아동을 둔 가정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음. 특히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의 여성은 경력단절을 겪은 상태여서 출산 전보다 소득수준이 명백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뒷받침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는 난임부부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였고, 임신 및 산모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발생가능한 출생 전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 불식, 매년 임신기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의 수 및 실제 경제적 지원의 증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출산 후 전문인력 지원의 실현, 산모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의 경우 보건소, 병원 등과 잘 연계되어 있어 산모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아동 진료체계 개선」은 아동의 인지, 정서, 신체 발달을 위한 공공 전문 진료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1-11〉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부모급여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만족도가 높음. 실수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접 복지의 혜택이 이루어짐. -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책 수혜자 누락 가능성 미미함. 정책 만족도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모교육 등 몇가지 옵션을 함께 묶어서 시행하면 좋을 듯함 - 아동별 현금 지원 적용의 확대 - 자녀를 낳으면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면이 있는데 부모 급여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게 될 단계까지 갈수 있는 초석이 되므로 - 0세와 1세의 발달에 가장 적합하게 가정양육을 하도록 국가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 그러나 만1세도 0세처럼 현금지원을 높여야 함. -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실천되고 있음 - 부모들의 만족도 높음. - 현금지원을 통한 실질적 도움 - 가장 정책적 체감이 크므로 - 부모입장에서 현금지원을 통한 체감 크고 실제 이 시기 양육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됨 - 부모급여가 양육부담경감 및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수혜 시기가 짧고 정책 수혜 대상자가 한정돼 있지만) 부모가 당장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정책보다 정책 수혜 당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육아휴직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확대 - 영아에 대한 현금지원 금액이 증액되어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 자녀 출산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영아 초기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2024년 부모급여는 2.8조원 예산, 아동수당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음.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자 만족이 높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에 비례해 영아가구에서 수요자 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됨. - 부모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됨 - 저연령 아동을 둔 가정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음. 특히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의 여성은 경력단절을 겪은 상태여서 출산 전보다 소득수준이 명백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부모급여를 도입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다만 부모교육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 - 모든 출생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출산에 따른 지원 강화로 저출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금지원으로 부모 만족도와 가정 내 양육비율이 증가함 - 실제로 가정에서 체감도가 높음 - 실질적으로 부모급여의 금액이 오르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출산결정에 영향력 높은 요인이라 여겨짐. 직접 수혜로 만족도 높은 요인 |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p>이라 사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정책중에 현 정부에서 실행완료한 정책으로, 부모급여가 저출산 해결의 답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있으므로 부모 급여 제도는 양육에 큰 도움이 됨 - 양육부담 완화에서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고,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통한 정책 실행 체감도가 높기 때문 - 부모는 서비스나 세제혜택 보다는 현금 지원을 가장 선호함. 처음 도입때에 비해 지원금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음. -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한 금전적 효과를 가져옴. 그렇다고 이 정책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아님. 아동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됨. - 현금지원이기에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지원 정책임. - 현금 지원은 실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시행 - 도입 취지대로 양육수당과 차별화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음. - 성과가 크다고보다 이 정책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었음.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출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었음.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국민으로 하여금 출산하고 싶을 때 국가가 도와주고 있음을 각인하게 되어 신뢰가 형성되었음 - 장기적 관점의 정책 - 임신 및 산모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출산의지 고취 - 출생률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발생가능한 출생 전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많이 불식되었다고 봄 - 매년 임신기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의 수 및 실제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산 후 전문인력 지원이 실현되고 있음 - 산모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의 경우 보건소, 병원 등과 잘 연계되어 있어 산모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봄. - 보건소 등의 활용으로 값이 저렴하면서도 모자 건강관리 체계화 실천 바람직함 -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음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저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므로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의 중요성과는 달리 소아과 진료시 대기가 길고 이용이 편리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 아동 진료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인지, 정서, 신체 발달을 위한 공공 전문 진료 지원 강화함 - 아동 진료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3개 과제 중에서 가장 미흡한 과제는 “아동 진료 체계 개선”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아동주치의 시범 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포함한 아동 진료체계 개선 사업이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의대증원 관련한 의료분쟁의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표 IV-1-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과제

| 관련 국정과제 | 2024년 조사 |
|----------------|-----------|
| 부모급여 도입 | 12.0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18.0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70.0 |
| 계(수) | 100.0(50) |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서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아동 진료체계 개선」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본 사안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점, 대국민 홍보 미흡,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제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생애주기별(월령, 연령별) 진료체계 수립의 미흡함, 소아청소년과 부족,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접근의 한계성,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체감도는 낮은 편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아전문 병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음, 아동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1-13〉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대정원 확대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본 사항에 대한 진전이 없음. - 이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음 - 아동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의사들의 운영의 어려움 때문인지 소아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대책이 필요함 - 작금의 의료사태를 볼때,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제공이 가능할지 의문임 |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아동의 신속하고 접근 가능한 진료 시스템이 보다 잘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애주기별(월령, 연령별) 진료체계 수립의 미흡함. - 소아청소년과 부족 - 지역일수록 관련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함. - 의료개혁이 미진한 점. 병의원 외 국가 공공전문 진료센터 구축 필요함 - 실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정보 부족 - 정책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으며 대국민 홍보 필요함 -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접근의 한계성 - 아동을 진료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체감도는 낮은 편임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아전문 병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음. - 아직 시범사업 단계임 -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됨. - 아동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물론 시범사업 이라고 하지만 소수아동을 출산하는 상황에서 아동맞춤형 교육과 상담은 매우 절실하므로 전면적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정책임. -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함 - 정책의 목표는 혜택을 보는 사람의 체감도를 높게 하는 것인데 체감도가 낮은 정책 -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으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음 - 아동진료는 현재 성과보다 어려움이 더 많음 - 아동진료체계에 대해 변화를 못 느낌 - 해당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 아동맞춤 교육 상담의 경우 부모 소득과 관련하여 지원에 차이가 난다. 부모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전달 체계 미비하거나 모호하여, 정보도 부족하고 전달도 어렵다 여겨짐 - 현재의 소아청소년과가 잘 운영되면 될 사항임(건강보험적용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주치의나 다름없음) - 아동 진료체계에 대한 홍보도 없고 사용하거나 혜택자도 많지 않음. 더구나 소아과 전문의나 전문 병원도 극히 부족함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도입 등도 필요하지만 부모들은 요구가 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즉시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네 소아과병원 같은 곳을 더 필요로 할 것임이다. 그러나 가까운 곳의 의료 서비스 체계는 지역별 편차도 크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 아동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음 - 의료파동 등 의사들이 기피함으로써 저출생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됨. - 지역사회 소아과가 폐업되고 종합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들 지원이 격감하는 현실인데 이러한 진료체계 개선안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지 전혀 모르겠음 -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 미흡 - 산모에게 와닿는 지원 부족 - 이미 지원의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분야임 -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도,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산모 아동 건강관리는 국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짐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회적 분위기기 때문에 - 출산 후 가장 빨리 필요한 조리원 지원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양질의 조리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 부모급여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실효성이 적다고 봄. - 지급 기간에 대한 실질적 고려가 부족 - 정책 수혜 시기가 짧고 정책 수혜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도입도 중요하지만 유아 및 초등 아동을 둔 가정에게도 이 제도는 필요함. 어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임. 부모 급여 보다 영유아 기관 중심의 지원 정책이 더욱 더 효과적임 - 저출생은 심화되고 있으며 부모급여를 받고 자녀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동을 확대하는 부모도 있으므로 - 부모급여가 아동학대와 방임의 급여로 활용되는 선진국의 복지의 허점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실정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향후 중점과제

이들 3개 과제 중에서 향후 중점과제로는 부모급여, 아동진료체계 개선,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단위: %(명)

| 관련 국정과제 | 2024년 조사 |
|----------------|-----------|
| 부모급여 도입 | 44.0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20.0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36.0 |
| 계(수) | 100.0(5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서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도입」은 예비부모에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영유아 보육·교육비이기 때문,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추후에는 만2세의 현금 지원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라는 측면(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괄),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금 지원이 필요함,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현금 지원은 부모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아동 진료체계 개선」은 발달이나 건강 문제 등 어린 시절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부모나 기관의 문제해결 능력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함, 아동 상담을 위한 효율적 체계 부재,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은 필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모 및 국민의 높은 요구도, 아동 주치의 사업은 전 아동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전문진료센터 또한 지자체별로 설립 운영되어야 함, 아동과 부모의 전문진료센터 접근성 확대 등이 지적되었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는 영유아·모성 건강 관리 및 증진의 중요성,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함,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통합적 건강기록 관리와 검진체계의 정비 필요, 해외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 시스템"을 체계화한 점에 비추어 단지 모성, 임신출산 시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재생산 건강에 초점을 맞춰 아동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산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과 훈련이 부족하여 양육환경이 불안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1-15〉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정책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부모급여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부모에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영유아 보육·교육비이므로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추후에는 만2세의 현금지원도 높여야할 것이라 사료됨 -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 - 영아 초기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결국 저출산 극복의 우선적 정책으로 여겨짐 -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라는 측면에서(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괄) -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부모급여 도입에 우선적인 집중이 필요함 - 주변의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대화하며, 실제 기관 원장이나 교사들이 부모 급여로 인해 부모들이 경제적 측면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한다고 함. -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금 지원이 필요함 -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이 기대되기 때문 -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판단 - 부모에게 가장 체감이 큰 정책임 -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됨. - 부모급여 금액을 증액하고 지원 연령 또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부모들은 현금성 지원을 선호. 실질적인 금액 - 저출산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 현금 지원은 부모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이는 2023년 영아수당제를 폐지하고 도입된 제도이며, 2024년 0-1세 아동 현금지원 확대는 5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임.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임. -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대 정원 확대가 빨리 확정된 후 아동 진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발달이나 건강 문제 등 어린 시절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부모나 기관의 문제해결 능력은 아직 미흡함.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함 - 아동 상담을 위한 효율적 체계 부재 -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안이 정리되길 희망합니다. 아동에 대한 진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전문진료센터 접근성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기 진료, 연령별(월령별) 진료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구현. - 태어난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중요 - 지역에서는 아동의료인프라가 부족해 부모들의 어려움이 큼. 아동의 건강은 이제 사회가 담당해야함. - 대상자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임 - 1.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은 필수 - 2.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모 및 국민의 높은 요구도 |



| 정책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가 변화하면서 아동 교육 및 상담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 전문 상담원을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교사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기 위하여 -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야하므로. - 아동의 건강권 확보 -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 아동에 대한 상담, 부모 상담이 좀 더 자유롭거나 또는 접근성이 쉬워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놀이치료실이 현재 많이 있으나 비용에 있어서 맞벌이의 경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아동 발달, 심리에 여러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진료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아이가 아플 때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가 결국 젊은 부부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될 것임. - 아동 주치의 사업은 전 아동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 전문진료센터 또한 지자체별로 설립 운영되어야 함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모성 건강 관리 및 증진의 중요성 - 초저출산 시대에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여 부모 부담 경감 필요 - 저출생 문제 해소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기 때문 -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함 - 부모급여 제도는 현금급여 재정비와 더불어 조정이 필요하고 아동주치의 사업 등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보임.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통합적 건강기록 관리와 검진체계의 정비 필요 - 건강한 임신, 출산, 생애초기 아동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함. 해외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 시스템"을 체계화함. 단지 모성, 임신출산 시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재생산 건강에 초점을 맞춰 아동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 증가, 아동과 산모의 건강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 - 더 이상의 의료혼란을 멈추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여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의료비 부담 축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음 - 대부분의 산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과 훈련이 부족하여 양육환경이 불안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표 IV-1-16〉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정책범주 |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급여를 연령에 따라 부분 부분 지급하기보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예비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제도로 임신부터 지원하며 영유아를 양육한다는 개념이 도입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만 2세 영아의 적극적이고 높은 현금지원 - 희귀 난치병 아동 진료비 지원 시험관 시술비 전폭 지원 - 평등한 의료복지체제 구축 - 비용지원정책은 유사성과 중복성을 해소하도록 통합하고 집중 지원 체제를 선택하여 고도화할 필요 있음. - 육아용품(유모차, 카시트 등) 지원 혹은 공유체계 구축 등 - 부모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거의 없는 은둔형 청년에 해당할 경우에 대한 지원 - 수혜 혜택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아동수당 확대 - 부모급여를 넘어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모색. - 아동수당 연령확대. -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정도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함. - 전반적으로 현금 및 의료비지원정책은 중앙, 지방 정책사업들이 각 개약진.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각각 체계화, 통합할 필요가 있음(현금수당 통합, 체계화 필요, 부모급여 금액) - 똑닥 등 민간 어플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의료 관련 온라인 인프라의 공공화 - 영유아 가족단위의 체험활동(놀이)을 지원하는 쿠폰 지급 -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0~1세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영아보다 유아, 유아보다 초등학생,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 또한 제고가 필요하다. - 주거비 지원 방향 - 종종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상상할 수 없는 고비용으로 고통을 겪는 아동 및 가족들이 많음) - 출산지원비 확대 - 부모급여와 같은 현물성 급여보다 부모가 아동과 관련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조건부로 제공되는 정책이 고안되어야 함. - 출생 후 많은 산모들이 사용하는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 태아-고교생까지의 의료실적 제출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교육·보육·돌봄 지원

가. 부모조사

1)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먼저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중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도우미,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간제 보육이 81.6%, 민간육아도우미 80.1%, 아이돌보미 71.0%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특히 어머니들의 경우 90.0%가 시간제보육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표 IV-2-1〉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 시간제 보육 | 계(수) |
|--------------|--------------------|----------------------|--------------|--------------|
| 전체 | 71.0 | 80.1 | 81.6 | 100.0 (1013) |
| 성별 | | | | |
| 남성 | 65.2 | 73.1 | 70.9 | 100.0 (443) |
| 여성 | 75.4 | 85.4 | 90.0 | 100.0 (570) |
| $\chi^2(df)$ | 12.593(1)*** | 23.626(1)*** | 60.790(1)*** | |
| 지역구분 | | | | |
| 대도시 | 68.4 | 79.1 | 77.3 | 100.0 (392) |
| 중소도시 | 71.6 | 81.0 | 83.4 | 100.0 (458) |
| 읍면 | 75.5 | 79.8 | 87.1 | 100.0 (163) |
| $\chi^2(df)$ | 2.977(2) | 0.500(2) | 9.149(2)* | |
| 연령 | | | | |
| 20대 | 42.9 | 85.7 | 85.7 | 100.0 (14) |
| 30대 | 71.5 | 81.9 | 83.7 | 100.0 (529) |
| 40대 이상 | 71.3 | 77.9 | 79.1 | 100.0 (470) |
| $\chi^2(df)$ | 5.453(2) | 2.754(2) | 3.661(2)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 | 73.8 | 79.4 | 81.3 | 100.0 (573) |
| 미취업 | 67.3 | 80.9 | 82.0 | 100.0 (440) |
| $\chi^2(df)$ | 5.182(1)* | 0.352(1) | 0.086(1)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73.8 | 80.3 | 81.6 | 100.0 (522) |
| 외벌이 | 68.0 | 79.8 | 81.7 | 100.0 (491) |
| $\chi^2(df)$ | 4.033(1)* | 0.029(1) | 0.001(1) | |

| 구분 |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 시간제 보육 | 계(수) |
|--------------|--------------------|----------------------|----------|--------------|
| 소득 기준 | | | | |
| 250만원 이하 | 65.2 | 82.6 | 78.3 | 100.0 (23) |
| 251-350만원 | 58.3 | 73.8 | 76.7 | 100.0 (103) |
| 351-500만원 | 68.3 | 81.4 | 84.2 | 100.0 (221) |
| 501-600만원 | 69.5 | 81.1 | 85.8 | 100.0 (190) |
| 601만원 이상 | 75.8 | 80.3 | 80.0 | 100.0 (476) |
| $\chi^2(df)$ | 14.894(4)** | 3.028(4) | 5.784(4) | |
| 첫째아 기준 | | | | |
| 영아부모 | 70.2 | 81.5 | 83.1 | 100.0 (178) |
| 유아부모 | 69.6 | 79.8 | 82.7 | 100.0 (415) |
| 초등부모 | 72.6 | 79.8 | 80.0 | 100.0 (420) |
| $\chi^2(df)$ | 0.960(2) | 0.266(2) | 1.306(2) | |

주: 1) 각 정책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정책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조사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어린이집(77.4%)과 유치원(43.3%)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3년/2024년 조사)

단위: %(명)

| 구분 | 2023년 조사 | | 2024년 조사 | |
|---------------------|----------|--------------|----------|--------------|
| | 이용률 | 계(수) | 이용률 | 계(수) |
|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 24.8 | 100.0 (1589) | 20.4 | 100.0 (719) |
| 2.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 25.2 | 100.0 (1660) | 19.6 | 100.0 (811) |
| 3. 어린이집 이용 | 89.2 | 100.0 (2000) | 77.6 | 100.0 (1013) |
| 4. 유치원 이용 | 53.6 | 100.0 (2000) | 43.3 | 100.0 (1013) |
| 5. 시간제보육 | 21.9 | 100.0 (1576) | 11.4 | 100.0 (827) |

주: 1)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정책의 이용 경험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57-58. 〈표 IV-1-1〉 육아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참조.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2023년 조사에 비하여 민간육아도우미를 제외하고 대체로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만족도가 각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 보육 3.7점, 아이돌보미 3.6점, 민간육아도우미가 3.4점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23년/2024년 조사)

단위: %(명), 점

| 구분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만족비율 | 5점 평균 | 계(수) | 만족비율 | 5점 평균 | 계(수) |
|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 56.0 | 3.58 | 100.0 (394) | 58.1 | 3.6 | 100.0 (148) |
| 2.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 50.5 | 3.44 | 100.0 (418) | 48.4 | 3.4 | 100.0 (159) |
| 3. 어린이집 이용 | 79.0 | 4.06 | 100.0 (1783) | 83.0 | 4.1 | 100.0 (743) |
| 4. 유치원 이용 | 86.8 | 4.00 | 100.0 (1072) | 82.4 | 4.1 | 100.0 (433) |
| 5. 시간제보육 | 59.7 | 3.69 | 100.0 (345) | 62.4 | 3.7 | 100.0 (165) |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57-61. 참조.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아이돌보미와 시간제보육의 경우 이용자격이 까다로움을 가장 불만족 하는 이유로 응답하였으며(42.9%/23.1%), 민간육아도우미와 유치원 이용의 경우 비용 부담(52.4%/47.1%)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낮은 서비스 질이라는 응답이 32.0%으로 가장 높았다.

〈표 IV-2-4〉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 비용이 부담됨 |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 기타 | 계(수) |
|----------------------|------------------|--------------|-------------|-----------------------|---------|------------------------------------|---------------------|-----|------------|
| 1.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 28.6 | 14.3 | 42.9 | - | - | - | 14.3 | - | 100.0 (14) |
| 2. 민간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 23.8 | 9.5 | 4.8 | 4.8 | 52.4 | - | 4.8 | - | 100.0 (21) |
| 3. 어린이집 이용 | 32.0 | 8.0 | 8.0 | 12.0 | 24.0 | - | 8.0 | 8.0 | 100.0 (25) |
| 4. 유치원 이용 | 5.9 | - | 5.9 | - | 47.1 | 5.9 | 29.4 | 5.9 | 100.0 (17) |
| 5. 시간제보육 | 15.4 | 15.4 | 23.1 | 15.4 | 7.7 | 7.7 | 15.4 | - | 100.0 (13) |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51.4%가 연장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가 취업한 경우 연장보육 경험이 62.2%, 맞벌이인 경우 61.1%가 연장보육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5〉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
| 전체 | 51.4 | 48.6 | 100.0 (743) |
| 성별 | | | |
| 남성 | 51.2 | 48.8 | 100.0 (324) |
| 여성 | 51.6 | 48.4 | 100.0 (419) |
| $\chi^2(df)$ | 0.007(1) | | |
| 지역구분 | | | |
| 대도시 | 50.3 | 49.7 | 100.0 (288) |
| 중소도시 | 52.2 | 47.8 | 100.0 (339) |
| 읍면 | 51.7 | 48.3 | 100.0 (116) |
| $\chi^2(df)$ | 0.222(2) | | |
| 연령 | | | |
| 20대 | 55.6 | 44.4 | 100.0 (9) |
| 30대 | 55.9 | 44.1 | 100.0 (404) |
| 40대 이상 | 45.8 | 54.2 | 100.0 (330) |
| $\chi^2(df)$ | 7.602(2)* (b) | | |
| 취업 여부 | | | |
| 취업 | 62.2 | 37.8 | 100.0 (437) |
| 미취업 | 35.9 | 64.1 | 100.0 (306) |
| $\chi^2(df)$ | 49.815(1)*** | | |
| 맞벌이 여부 | | | |
| 맞벌이 | 61.1 | 38.9 | 100.0 (401) |
| 외벌이 | 40.1 | 59.9 | 100.0 (342) |
| $\chi^2(df)$ | 32.706(1)*** | | |
| 소득 기준 | | | |
| 250만원 이하 | 60.0 | 40.0 | 100.0 (15) |
| 251~350만원 | 44.2 | 55.8 | 100.0 (77) |
| 351~500만원 | 44.2 | 55.8 | 100.0 (156) |
| 501~600만원 | 48.1 | 51.9 | 100.0 (135) |
| 601만원 이상 | 56.9 | 43.1 | 100.0 (360) |
| $\chi^2(df)$ | 10.273(4)* | | |
| 첫째아 기준 | | | |
| 영아부모 | 58.0 | 42.0 | 100.0 (100) |
| 유아부모 | 51.7 | 48.3 | 100.0 (381) |
| 초등부모 | 48.5 | 51.5 | 100.0 (262) |
| $\chi^2(df)$ | 2.656(2)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족도 평균은 4.1점이며 만족한다는 응답(만족+매우 만족)이 81.2%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연장보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나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4.2%로 나타났다.

〈표 IV-2-6〉 어린이집 연장보육 만족도

| | | | | | 단위: %(명), 점 |
|----------------|------|----------------|------|-------------|-------------|
| 구분 | 만족 | 불만족 | 보통 | 계(수) | 평균 |
| 전체 | 81.2 | 4.2 | 14.7 | 100.0 (382) | 4.1 |
| 성별 | | | | | |
| 남성 | 73.5 | 5.4 | 21.1 | 100.0 (166) | 3.9 |
| 여성 | 87.0 | 3.2 | 9.7 | 100.0 (216) | 4.3 |
| $\chi^2(df)/t$ | | 14.817(4)**(b) | | | -3.6*** |
| 지역구분 | | | | | |
| 대도시 | 76.6 | 4.1 | 19.3 | 100.0 (145) | 4.0 |
| 중소도시 | 83.6 | 5.1 | 11.3 | 100.0 (177) | 4.1 |
| 읍면 | 85.0 | 1.7 | 13.3 | 100.0 (60) | 4.3 |
| $\chi^2(df)/F$ | | 13.794(8)(b) | | | 3.7* |
| 연령 | | | | | |
| 20대 | 80.0 | - | 20.0 | 100.0 (5) | 4.0 |
| 30대 | 84.5 | 5.3 | 10.2 | 100.0 (226) | 4.2 |
| 40대 이상 | 76.2 | 2.6 | 21.2 | 100.0 (151) | 4.0 |
| $\chi^2(df)/F$ | | 15.178(8)(b) | | | 1.9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 | 79.8 | 4.4 | 15.8 | 100.0 (272) | 4.1 |
| 미취업 | 84.5 | 3.6 | 11.8 | 100.0 (110) | 4.2 |
| $\chi^2(df)/F$ | | 1.400(4)(b) | | | -0.6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80.4 | 3.7 | 15.9 | 100.0 (245) | 4.1 |
| 외벌이 | 82.5 | 5.1 | 12.4 | 100.0 (137) | 4.1 |
| $\chi^2(df)/F$ | | 1.586(4)(b) | | | 0.1 |
| 소득 기준 | | | | | |
| 250만원 이하 | 44.4 | 22.2 | 33.3 | 100.0 (9) | 3.3 |
| 251~350만원 | 82.4 | 2.9 | 14.7 | 100.0 (34) | 4.2 |
| 351~500만원 | 85.5 | 1.4 | 13.0 | 100.0 (69) | 4.3 |
| 501~600만원 | 81.5 | 7.7 | 10.8 | 100.0 (65) | 4.1 |
| 601만원 이상 | 81.0 | 3.4 | 15.6 | 100.0 (205) | 4.1 |
| $\chi^2(df)/F$ | | 25.743(16)(b) | | | 2.5* |
| 첫째아 기준 | | | | | |
| 영아부모 | 77.6 | 6.9 | 15.5 | 100.0 (58) | 4.1 |
| 유아부모 | 79.2 | 5.6 | 15.2 | 100.0 (197) | 4.1 |
| 초등부모 | 85.8 | 0.8 | 13.4 | 100.0 (127) | 4.2 |
| $\chi^2(df)/F$ | | 10.350(8)(b) | | | 0.3(a) |

주: 1)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 불만족비율은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2) 차이검증은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매우불만족~매우만족)평균에 따른 차이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과반 이상인 69.7%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용 부담이 낮아져서(18.1%), 보육의 질이 높아져서(10.3%), 기타(1.9%) 순이었다.

〈표 IV-2-7〉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 보육의 질이 높아서 | 비용 부담이 낮아서 | 기타 | 계(수) |
|--------------|--------------------|--------------|------------|-----|-------------|
| 전체 | 69.7 | 10.3 | 18.1 | 1.9 | 100.0 (310) |
| 성별 | | | | | |
| 남성 | 66.4 | 15.6 | 16.4 | 1.6 | 100.0 (122) |
| 여성 | 71.8 | 6.9 | 19.1 | 2.1 | 100.0 (188) |
| $\chi^2(df)$ | | 6.087(3)(b) | | | |
| 지역구분 | | | | | |
| 대도시 | 71.2 | 10.8 | 17.1 | 0.9 | 100.0 (111) |
| 중소도시 | 64.2 | 10.1 | 22.3 | 3.4 | 100.0 (148) |
| 읍면 | 82.4 | 9.8 | 7.8 | - | 100.0 (51) |
| $\chi^2(df)$ | | 9.561(6)(b) | | | |
| 연령 | | | | | |
| 20대 | 75.0 | 25.0 | - | - | 100.0 (4) |
| 30대 | 71.7 | 7.9 | 18.8 | 1.6 | 100.0 (191) |
| 40대 이상 | 66.1 | 13.9 | 17.4 | 2.6 | 100.0 (115) |
| $\chi^2(df)$ | | 5.038(6)(b) | | |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 | 67.7 | 10.1 | 19.8 | 2.3 | 100.0 (217) |
| 미취업 | 74.2 | 10.8 | 14.0 | 1.1 | 100.0 (93) |
| $\chi^2(df)$ | | 2.149(3)(b)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68.0 | 9.1 | 20.3 | 2.5 | 100.0 (197) |
| 외벌이 | 72.6 | 12.4 | 14.2 | 0.9 | 100.0 (113) |
| $\chi^2(df)$ | | 3.464(3)(b) | | | |
| 소득 기준 | | | | | |
| 250만원 이하 | 50.0 | 25.0 | 25.0 | - | 100.0 (4) |
| 251~350만원 | 75.0 | 10.7 | 14.3 | - | 100.0 (28) |
| 351~500만원 | 67.8 | 11.9 | 20.3 | - | 100.0 (59) |
| 501~600만원 | 75.5 | 9.4 | 13.2 | 1.9 | 100.0 (53) |
| 601만원 이상 | 68.1 | 9.6 | 19.3 | 3.0 | 100.0 (166) |
| $\chi^2(df)$ | | 5.853(12)(b)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영아부모 | 77.8 | 4.4 | 15.6 | 2.2 | 100.0 (45) |
| 유아부모 | 69.2 | 10.9 | 19.2 | 0.6 | 100.0 (156) |
| 초등부모 | 67.0 | 11.9 | 17.4 | 3.7 | 100.0 (109) |
| $\chi^2(df)$ | | 5.733(6)(b) | | | |

주: 연장보육에 만족(만족+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31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보육의 질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81.3%로 가장 많았고, 기타(12.5%),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 보육의 질이 낮아서 | 기타 | 계 (수) |
|--------------|--------------------|--------------|------|------------|
| 전체 | 6.3 | 81.3 | 12.5 | 100.0 (16) |
| 성별 | | | | |
| 남성 | - | 88.9 | 11.1 | 100.0 (9) |
| 여성 | 14.3 | 71.4 | 14.3 | 100.0 (7) |
| $\chi^2(df)$ | | 1.465(2)(b) | | |
| 지역구분 | | | | |
| 대도시 | 16.7 | 66.7 | 16.7 | 100.0 (6) |
| 중소도시 | - | 88.9 | 11.1 | 100.0 (9) |
| 읍면 | - | 100.0 | - | 100.0 (1) |
| $\chi^2(df)$ | | 2.154(4)(b) | | |
| 연령 | | | | |
| 30대 | 8.3 | 75.0 | 16.7 | 100.0 (12) |
| 40대 이상 | - | 100.0 | - | 100.0 (4) |
| $\chi^2(df)$ | | 1.231(2)(b) |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 | - | 91.7 | 8.3 | 100.0 (12) |
| 미취업 | 25.0 | 50.0 | 25.0 | 100.0 (4) |
| $\chi^2(df)$ | | 4.308(2)(b) |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 | 100.0 | - | 100.0 (9) |
| 외벌이 | 14.3 | 57.1 | 28.6 | 100.0 (7) |
| $\chi^2(df)$ | | 4.747(2)(b) | | |
| 소득 기준 | | | | |
| 250만원 이하 | 50.0 | - | 50.0 | 100.0 (2) |
| 251~350만원 | - | 100.0 | - | 100.0 (1) |
| 351~500만원 | - | 100.0 | - | 100.0 (1) |
| 501~600만원 | - | 80.0 | 20.0 | 100.0 (5) |
| 601만원 이상 | - | 100.0 | - | 100.0 (7) |
| $\chi^2(df)$ | | 12.615(8)(b) | | |
| 첫째아 기준 | | | | |
| 영아부모 | - | 50.0 | 50.0 | 100.0 (4) |
| 유아부모 | 9.1 | 90.9 | - | 100.0 (11) |
| 초등부모 | - | 100.0 | - | 100.0 (1) |
| $\chi^2(df)$ | | 7.105(4)(b) | | |

주: 연장보육에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6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유치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이용 경험에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7.6%로 대부분의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방과후 과정도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81.8%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9〉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
| 전체 | 77.6 | 22.4 | 100.0 (433) |
| 성별 | | | |
| 남성 | 73.1 | 26.9 | 100.0 (208) |
| 여성 | 81.8 | 18.2 | 100.0 (225) |
| $\chi^2(df)$ | 4.707(1)* | | |
| 지역구분 | | | |
| 대도시 | 75.6 | 24.4 | 100.0 (164) |
| 중소도시 | 79.0 | 21.0 | 100.0 (200) |
| 읍면 | 78.3 | 21.7 | 100.0 (69) |
| $\chi^2(df)$ | 0.617(2) | | |
| 연령 | | | |
| 20대 | 100.0 | - | 100.0 (1) |
| 30대 | 79.5 | 20.5 | 100.0 (210) |
| 40대 이상 | 75.7 | 24.3 | 100.0 (222) |
| $\chi^2(df)$ | 1.209(2)(b) | | |
| 취업 여부 | | | |
| 취업 | 80.8 | 19.2 | 100.0 (245) |
| 미취업 | 73.4 | 26.6 | 100.0 (188) |
| $\chi^2(df)$ | 3.362(1) | | |
| 맞벌이 여부 | | | |
| 맞벌이 | 81.1 | 18.9 | 100.0 (227) |
| 외벌이 | 73.8 | 26.2 | 100.0 (206) |
| $\chi^2(df)$ | 3.284(1) | | |
| 소득 기준 | | | |
| 250만원 이하 | 85.7 | 14.3 | 100.0 (7) |
| 251~350만원 | 75.0 | 25.0 | 100.0 (44) |
| 351~500만원 | 76.2 | 23.8 | 100.0 (84) |
| 501~600만원 | 74.1 | 25.9 | 100.0 (81) |
| 601만원 이상 | 79.7 | 20.3 | 100.0 (217) |
| $\chi^2(df)$ | 1.674(4) | | |
| 첫째아 기준 | | | |
| 유아부모 | 76.2 | 23.8 | 100.0 (227) |
| 초등부모 | 79.1 | 20.9 | 100.0 (206) |
| $\chi^2(df)$ | 0.528(1)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에게 만족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만족도는 4.1점이었으며, 부모의 82.1%가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유치원 방과후 과정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만족 | 불만족 | 보통 | 계(수) | 평균 |
|----------------|------|---------------|-------|-------------|--------|
| 전체 | 82.1 | 1.2 | 16.7 | 100.0 (336) | 4.1 |
| 성별 | | | | | |
| 남성 | 81.6 | 2.0 | 16.4 | 100.0 (152) | 4.0 |
| 여성 | 82.6 | 0.5 | 16.8 | 100.0 (184) | 4.2 |
| $\chi^2(df)/t$ | | 11.457(4)*(b) | | | -1.9 |
| 지역구분 | | | | | |
| 대도시 | 78.2 | 0.8 | 21.0 | 100.0 (124) | 4.0 |
| 중소도시 | 84.2 | 1.3 | 14.6 | 100.0 (158) | 4.1 |
| 읍면 | 85.2 | 1.9 | 13.0 | 100.0 (54) | 4.2 |
| $\chi^2(df)/F$ | | 10.634(8)(b) | | | 2.4 |
| 연령 | | | | | |
| 20대 | - | - | 100.0 | 100.0 (1) | 3.0 |
| 30대 | 83.2 | 1.8 | 15.0 | 100.0 (167) | 4.2 |
| 40대 이상 | 81.5 | 0.6 | 17.9 | 100.0 (168) | 4.1 |
| $\chi^2(df)/F$ | | 12.093(8)(b) | | | 2.3(a)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 | 80.8 | 2.0 | 17.2 | 100.0 (198) | 4.1 |
| 미취업 | 84.1 | - | 15.9 | 100.0 (138) | 4.1 |
| $\chi^2(df)/F$ | | 7.789(4)(b) | | | 0.5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80.4 | 2.2 | 17.4 | 100.0 (184) | 4.1 |
| 외벌이 | 84.2 | - | 15.8 | 100.0 (152) | 4.1 |
| $\chi^2(df)/F$ | | 9.825(4)*(b) | | | 0.5 |
| 소득 기준 | | | | | |
| 250만원 이하 | 50.0 | - | 50.0 | 100.0 (6) | 3.7 |
| 251~350만원 | 81.8 | - | 18.2 | 100.0 (33) | 4.1 |
| 351~500만원 | 84.4 | - | 15.6 | 100.0 (64) | 4.1 |
| 501~600만원 | 83.3 | - | 16.7 | 100.0 (60) | 4.2 |
| 601만원 이상 | 82.1 | 2.3 | 15.6 | 100.0 (173) | 4.1 |
| $\chi^2(df)/F$ | | 10.089(16)(b) | | | 0.6 |
| 첫째아 기준 | | | | | |
| 유아부모 | 82.1 | 2.3 | 15.6 | 100.0 (173) | 4.1 |
| 초등부모 | 82.2 | - | 17.8 | 100.0 (163) | 4.1 |
| $\chi^2(df)/F$ | | 4.245(4)(b) | | | 0.5 |

주: 1)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 불만족비율은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2) 차이검증은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매우불만족~매우만족)평균에 따른 차이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부모에게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교육 및 돌봄의 질이 높아서(3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가 33.0%, 비용 부담이 낮아서가 25.4%, 기타 1.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11〉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 교육 및 돌봄의 질이 높아서 | 비용 부담이 낮아서 | 기타 | 계(수) |
|--------------|--------------------|-----------------|------------|-----|-------------|
| 전체 | 33.0 | 39.9 | 25.4 | 1.8 | 100.0 (276) |
| 성별 | | | | | |
| 남성 | 33.9 | 39.5 | 24.2 | 2.4 | 100.0 (124) |
| 여성 | 32.2 | 40.1 | 26.3 | 1.3 | 100.0 (152) |
| $\chi^2(df)$ | | 0.642(3)(b) | | | |
| 지역구분 | | | | | |
| 대도시 | 29.9 | 43.3 | 24.7 | 2.1 | 100.0 (97) |
| 중소도시 | 36.1 | 35.3 | 26.3 | 2.3 | 100.0 (133) |
| 읍면 | 30.4 | 45.7 | 23.9 | - | 100.0 (46) |
| $\chi^2(df)$ | | 3.230(6)(b) | | | |
| 연령 | | | | | |
| 30대 | 32.4 | 42.4 | 25.2 | - | 100.0 (139) |
| 40대 이상 | 33.6 | 37.2 | 25.5 | 3.6 | 100.0 (137) |
| $\chi^2(df)$ | | 5.579(3)(b) | | |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 | 36.3 | 40.0 | 21.3 | 2.5 | 100.0 (160) |
| 미취업 | 28.4 | 39.7 | 31.0 | 0.9 | 100.0 (116) |
| $\chi^2(df)$ | | 4.778(3)(b)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36.5 | 39.9 | 20.9 | 2.7 | 100.0 (148) |
| 외벌이 | 28.9 | 39.8 | 30.5 | 0.8 | 100.0 (128) |
| $\chi^2(df)$ | | 5.049(3)(b) | | | |
| 소득 기준 | | | | | |
| 250만원 이하 | 33.3 | 33.3 | 33.3 | - | 100.0 (3) |
| 251~350만원 | 37.0 | 44.4 | 18.5 | - | 100.0 (27) |
| 351~500만원 | 24.1 | 42.6 | 33.3 | - | 100.0 (54) |
| 501~600만원 | 26.0 | 42.0 | 28.0 | 4.0 | 100.0 (50) |
| 601만원 이상 | 38.0 | 37.3 | 22.5 | 2.1 | 100.0 (142) |
| $\chi^2(df)$ | | 9.258(12)(b)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유아부모 | 31.7 | 45.1 | 22.5 | 0.7 | 100.0 (142) |
| 초등부모 | 34.3 | 34.3 | 28.4 | 3.0 | 100.0 (134) |
| $\chi^2(df)$ | | 5.043(3)(b) | | | |

주: 연장보육에 만족(만족+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31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반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및 돌봄의 질이 낮아서(5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와 비용 부담이 높아서가 각각 25.0%로 나타났다.

〈표 IV-2-12〉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 교육 및 돌봄의 질이 낮아서 | 비용 부담이 높아서 | 계 (수) |
|--------------|--------------------|-----------------|------------|-----------|
| 전체 | 25.0 | 50.0 | 25.0 | 100.0 (4) |
| 성별 | | | | |
| 남성 | 33.3 | 66.7 | - | 100.0 (3) |
| 여성 | - | - | 100.0 | 100.0 (1) |
| $\chi^2(df)$ | | 4.000(2)(b) | | |
| 지역구분 | | | | |
| 대도시 | - | - | 100.0 | 100.0 (1) |
| 중소도시 | 50.0 | 50.0 | - | 100.0 (2) |
| 읍면 | - | 100.0 | - | 100.0 (1) |
| $\chi^2(df)$ | | 5.000(4)(b) | | |
| 연령 | | | | |
| 30대 | 33.3 | 33.3 | 33.3 | 100.0 (3) |
| 40대 이상 | - | 100.0 | - | 100.0 (1) |
| $\chi^2(df)$ | | 1.333(2)(b) | | |

주: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4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다음으로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중 초등돌봄교실, 초등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마을공동체 돌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학교는 각각 96.9%, 96.4%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44.8%, 육아/마을공동체돌봄은 47.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경우 과반 이상이 모든 초등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3〉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 초등돌봄 교실 | 초등 방과후학교 | 지역아동 센터 | 다함께 돌봄센터 | 육아/마을 공동체 돌봄 | 늘봄학교 | 계(수) |
|-----------|--------------|-----------------|---------------|---------------|---------------|----------------|-------------|
| 전체 | 96.9 | 96.4 | 67.1 | 44.8 | 47.1 | 70.5 | 100.0 (420) |
| 성별 | | | | | | | |
| 남성 | 94.9 | 93.2 | 49.2 | 31.1 | 32.8 | 59.3 | 100.0 (177) |
| 여성 | 98.4 | 98.8 | 80.2 | 54.7 | 57.6 | 78.6 | 100.0 (243) |
| $x^2(df)$ | 4.037 (1)* | 9.143 (1)** | 44.881 (1)*** | 23.183 (1)*** | 25.368 (1)*** | 18.293 (1)*** | |
| 지역구분 | | | | | | | |
| 대도시 | 98.1 | 96.2 | 64.3 | 43.9 | 43.9 | 66.9 | 100.0 (157) |
| 중소도시 | 96.4 | 96.9 | 67.0 | 44.3 | 47.4 | 72.2 | 100.0 (194) |
| 읍면 | 95.7 | 95.7 | 73.9 | 47.8 | 53.6 | 73.9 | 100.0 (69) |
| $x^2(df)$ | 1.265(2) (b) | 0.278 (2) | 1.998 (2) | 0.319 (2) | 1.812 (2) | | |
| 연령 | | | | | | | |
| 20대 | 100.0 | 100.0 | 100.0 | 66.7 | 66.7 | - | 100.0 (3) |
| 30대 | 97.1 | 97.1 | 75.2 | 51.8 | 55.5 | 75.9 | 100.0 (137) |
| 40대 이상 | 96.8 | 96.1 | 62.9 | 41.1 | 42.9 | 68.6 | 100.0 (280) |
| $x^2(df)$ | 0.123(2) (b) | 0.384(2) (b) | 7.813 (2)*(b) | 4.889 (2)(b) | 6.339 (2)*(b) | 9.595 (2)**(b) | |
| 취업 여부 | | | | | | | |
| 취업 | 98.8 | 97.1 | 70.5 | 49.0 | 51.0 | 74.3 | 100.0 (241) |
| 미취업 | 94.4 | 95.5 | 62.6 | 39.1 | 41.9 | 65.4 | 100.0 (179) |
| $x^2(df)$ | 6.455 (1)* | 0.730 (1) | 2.957 (1) | 4.036 (1)* | 3.442 (1) | 3.920 (1)*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맞벌이 | 99.5 | 97.7 | 70.0 | 46.5 | 48.4 | 74.2 | 100.0 (217) |
| 외벌이 | 94.1 | 95.1 | 64.0 | 42.9 | 45.8 | 66.5 | 100.0 (203) |
| $x^2(df)$ | 10.388 (1)** | 2.094 (1) | 1.715 (1) | 0.577 (1) | 0.279 (1) | 2.982 (1) | |
| 소득 기준 | | | | | | | |
| 250만원 이하 | 85.7 | 85.7 | 64.3 | 57.1 | 50.0 | 57.1 | 100.0 (14) |
| 251-350만원 | 97.4 | 89.5 | 55.3 | 31.6 | 44.7 | 65.8 | 100.0 (38) |
| 351-500만원 | 96.3 | 97.6 | 78.0 | 46.3 | 50.0 | 63.4 | 100.0 (82) |
| 501-600만원 | 98.9 | 94.5 | 60.4 | 36.3 | 40.7 | 70.3 | 100.0 (91) |
| 601만원 이상 | 96.9 | 99.0 | 68.2 | 49.7 | 49.2 | 75.4 | 100.0 (195) |
| $x^2(df)$ | 7.168(4) (b) | 14.956 (4)**(b) | 8.857 (4) | 8.237 (4) | 2.279 (4) | 5.821 (4) | |

주: 1) 각 정책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정책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이용 경험이 83.2%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돌봄교실 49.1%, 늘봄학교 20.9%,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14.6%, 다함께돌봄센터 14.4% 순이었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육아/마을공동체 돌봄과 늘봄학교는 이용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다른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률(2023년/2024년 조사)

단위: %(명)

| 구분 | 2023년 조사 | | 2024년 조사 | |
|---------------------|----------|-------------|----------|-------------|
| | 이용률 | 계(수) | 이용률 | 계(수) |
| 1. 초등돌봄교실 | 52.2 | 100.0 (548) | 49.1 | 100.0 (407) |
|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 86.1 | 100.0 (570) | 83.2 | 100.0 (405) |
| 3. 지역아동센터 | 17.8 | 100.0 (393) | 10.3 | 100.0 (282) |
|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포함) | 17.0 | 100.0 (223) | 14.4 | 100.0 (188) |
|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 13.4 | 100.0 (187) | 14.6 | 100.0 (198) |
| 6. 늘봄학교 | 11.3 | 100.0 (177) | 20.9 | 100.0 (296) |

주: 1)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각 정책의 이용 경험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70. 〈표 IV-1-17〉 초등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참조.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하여 과반 이상이 만족한다고(매우만족+만족) 응답하였으나,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만족 비율은 2023년 78.2%에서 2024년 80.1%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외의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의 만족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만족비율은 2023년 만족 비율이 각각 72.9%와 78.9% 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4년에는 모두 58.6%로 만족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5〉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23년/2024년 조사)

단위: %(명), 점

| 구분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만족비율 | 5점 평균 | 계(수) | 만족비율 | 5점 평균 | 계(수) |
| 1. 초등돌봄교실 | 75.2 | 3.95 | 100.0 (286) | 73.5 | 3.9 | 100.0 (200) |
|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 78.2 | 3.99 | 100.0 (491) | 80.1 | 4.0 | 100.0 (337) |
| 3. 지역아동센터 | 72.9 | 3.94 | 100.0 (70) | 58.6 | 3.7 | 100.0 (39) |
|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포함) | 78.9 | 3.97 | 100.0 (38) | 63.0 | 3.8 | 100.0 (27) |
|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 72.0 | 3.84 | 100.0 (25) | 58.6 | 3.7 | 100.0 (29) |
| 6. 늘봄학교 | 75.0 | 4.00 | 100.0 (20) | 69.4 | 3.9 | 100.0 (62) |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만족비율이 6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70-75. 표 참조.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매우불만족+불만족)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이용자격이 까다로움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교육 및 돌봄의 질적 수준이 낮음이 25.0%,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주위에 가까이 없음이 50.0%, 육아/마을공동체 돌봄은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이 50.0%로 나타났다.

〈표 IV-2-16〉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교육 및 돌봄의 질적 수준이 낮음 | 이용 방법/절차가 복잡함 |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 비용이 부담됨 | 신청 후 실제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편스러움 | 기타 | 계(수) |
|---------------------|--------------------|---------------|-------------|----------------------|---------|-----------------------------------|---------------------|------------------------|---------------------------|-----|------------|
| 1. 초등돌봄교실 | 20.0 | 1.0 | 30.0 | - | - | - | 20.0 | 20.0 | - | - | 100.0(10) |
|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 25.0 | 16.7 | 8.3 | 8.3 | 8.3 | 16.7 | 8.3 | - | - | 8.3 | 100.0(12) |
| 3. 지역아동센터 | 20.0 | - | 20.0 | 20.0 | - | 20.0 | 20.0 | - | - | - | 100.0 (5) |
|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포함) | - | 25.0 | - | 50.0 | - | - | - | - | 25.0 | - | 100.0 (4) |
| 5. 육아/마을공동체 돌봄 | - | 50.0 | - | 25.0 | - | 25.0 | - | - | - | - | 100.0 (4) |
| 6. 늘봄학교 | 50.0 | - | - | - | 16.7 | - | 33.3 | - | - | - | 100.0 (6) |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3) 교육·보육·돌봄 정책 성과 평가

가)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19.5%),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16.8%), ‘유보통합’(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연령별로는 20대(7.1%), 30대(27.2%), 40대 이상(27.2%)가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을 선택하였는데, 20대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을 선택한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선택한 부모의 연령별 응답은 20대(35.7%), 30대(21.4%), 40대 이상(17.0%)로 나타났는데,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영유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을 선택한 부모는 영아부모(18.5%), 유아부모(27.5%), 초등부모(30.0%)로 나타났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선택한 부모는 영아부모(30.3%), 유아부모(19.5%), 초등부모(15.0%)로 나타났는데, 초등부모일수록 초등돌봄 정책에 해당하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을 선택하고, 영아부모일수록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IV-2-17〉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수 |
|--------------|------------|------|------|------|-----|-----|-----|-----|-----|---------------|
| 전체 | 15.0 | 19.5 | 16.8 | 26.9 | 5.0 | 3.7 | 2.7 | 4.5 | 5.8 | 100.0 (1,013)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15.6 | 16.7 | 18.5 | 26.0 | 5.6 | 5.0 | 2.7 | 3.8 | 6.1 | 100.0 (443) |
| 여성 | 14.6 | 21.8 | 15.4 | 27.7 | 4.6 | 2.6 | 2.6 | 5.1 | 5.6 | 100.0 (570) |
| $\chi^2(df)$ | 10.373(8) | | | | | | | | | |
| 지역구분 | | | | | | | | | | |
| 대도시 | 17.9 | 18.6 | 15.1 | 24.0 | 6.1 | 3.6 | 3.1 | 5.4 | 6.4 | 100.0 (392) |
| 중소도시 | 13.1 | 18.8 | 18.8 | 29.3 | 4.4 | 3.5 | 2.2 | 4.8 | 5.2 | 100.0 (458) |
| 읍면 | 13.5 | 23.9 | 15.3 | 27.6 | 4.3 | 4.3 | 3.1 | 1.8 | 6.1 | 100.0 (163) |
| $\chi^2(df)$ | 15.812(16) | | | | | | |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수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7.1 | 35.7 | 21.4 | 7.1 | 7.1 | - | 14.3 | - | 7.1 | 100.0 (14) |
| 30대 | 15.7 | 21.4 | 16.3 | 27.2 | 4.7 | 3.2 | 3.4 | 2.5 | 5.7 | 100.0 (529) |
| 40대 이상 | 14.5 | 17.0 | 17.2 | 27.2 | 5.3 | 4.3 | 1.5 | 7.0 | 6.0 | 100.0 (470) |
| $x^2(df)$ | 31.825(16)*(b) |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취업 | 14.5 | 19.4 | 16.9 | 30.0 | 3.8 | 3.1 | 1.9 | 4.4 | 5.9 | 100.0 (573) |
| 미취업 | 15.7 | 19.8 | 16.6 | 23.0 | 6.6 | 4.3 | 3.6 | 4.8 | 5.7 | 100.0 (440) |
| $x^2(df)$ | 12.439(8) | | | |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맞벌이 | 13.6 | 20.1 | 16.7 | 30.5 | 4.0 | 2.7 | 1.7 | 4.6 | 6.1 | 100.0 (522) |
| 외벌이 | 16.5 | 18.9 | 16.9 | 23.2 | 6.1 | 4.7 | 3.7 | 4.5 | 5.5 | 100.0 (491) |
| $x^2(df)$ | 15.251(8) | | | | | | | |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30.4 | 4.3 | 8.7 | 17.4 | - | 13.0 | 8.7 | - | 17.4 | 100.0 (23) |
| 251~350만원 | 11.7 | 20.4 | 22.3 | 21.4 | 4.9 | 6.8 | 3.9 | 1.9 | 6.8 | 100.0 (103) |
| 351~500만원 | 14.5 | 19.0 | 18.6 | 25.8 | 7.7 | 3.2 | 3.6 | 4.1 | 3.6 | 100.0 (221) |
| 501~600만원 | 16.8 | 21.1 | 12.6 | 24.7 | 4.7 | 3.7 | 2.6 | 5.8 | 7.9 | 100.0 (190) |
| 601만원 이상 | 14.5 | 19.7 | 16.8 | 30.0 | 4.2 | 2.7 | 1.7 | 5.0 | 5.3 | 100.0 (476) |
| $x^2(df)$ | 50.561(32)*(b)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영아부모 | 15.7 | 30.3 | 15.7 | 18.5 | 7.9 | 2.8 | 1.1 | 2.2 | 5.6 | 100.0 (178) |
| 유아부모 | 17.1 | 19.5 | 18.6 | 27.5 | 4.1 | 4.1 | 2.7 | 1.7 | 4.8 | 100.0 (415) |
| 초등부모 | 12.6 | 15.0 | 15.5 | 30.0 | 4.8 | 3.6 | 3.3 | 8.3 | 6.9 | 100.0 (420) |
| $x^2(df)$ | 56.283(16)*** | | | | | | | | | |

주: ① 유보통합 ②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④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⑤ 아동학대 방지 ⑥ 발달장애인 지원 ⑦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⑧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⑨ 교통안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보통합’이 2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14.2%),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22.8%)이 남성(16.7%)보다 ‘유보통합’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일수록 ‘유보통합’의 성과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IV-2-18〉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수 |
|-----------|---------------|------|------|------|------|-----|------|-----|------|---------------|
| 전체 | 20.1 | 10.7 | 14.2 | 12.8 | 10.3 | 6.5 | 7.3 | 7.8 | 10.3 | 100.0 (1,013)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16.7 | 10.2 | 14.2 | 12.0 | 9.3 | 6.3 | 8.4 | 9.5 | 13.5 | 100.0 (443) |
| 여성 | 22.8 | 11.1 | 14.2 | 13.5 | 11.1 | 6.7 | 6.5 | 6.5 | 7.7 | 100.0 (570) |
| $x^2(df)$ | 18.367(8)* | | | | | | | | | |
| 지역구분 | | | | | | | | | | |
| 대도시 | 20.2 | 11.2 | 14.3 | 14.0 | 10.2 | 6.1 | 5.4 | 7.1 | 11.5 | 100.0 (392) |
| 중소도시 | 20.5 | 10.9 | 16.2 | 11.4 | 9.8 | 5.9 | 7.0 | 9.2 | 9.2 | 100.0 (458) |
| 읍면 | 19.0 | 8.6 | 8.6 | 14.1 | 11.7 | 9.2 | 12.9 | 5.5 | 10.4 | 100.0 (163) |
| $x^2(df)$ | 22.324(16)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21.4 | - | 28.6 | 14.3 | - | 7.1 | - | - | 28.6 | 100.0 (14) |
| 30대 | 22.3 | 10.2 | 14.6 | 10.6 | 10.4 | 6.8 | 6.6 | 7.8 | 10.8 | 100.0 (529) |
| 40대 이상 | 17.7 | 11.5 | 13.4 | 15.3 | 10.4 | 6.2 | 8.3 | 8.1 | 9.1 | 100.0 (470) |
| $x^2(df)$ | 21.273(16)(b) |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취업 | 20.9 | 9.4 | 15.5 | 13.3 | 10.6 | 6.3 | 6.3 | 8.4 | 9.2 | 100.0 (573) |
| 미취업 | 19.1 | 12.3 | 12.5 | 12.3 | 9.8 | 6.8 | 8.6 | 7.0 | 11.6 | 100.0 (440) |
| $x^2(df)$ | 8.195(8) | | | |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맞벌이 | 20.5 | 9.8 | 15.9 | 13.6 | 10.9 | 6.3 | 5.7 | 8.4 | 8.8 | 100.0 (522) |
| 외벌이 | 19.8 | 11.6 | 12.4 | 12.0 | 9.6 | 6.7 | 9.0 | 7.1 | 11.8 | 100.0 (491) |
| $x^2(df)$ | 10.373(8) | | | | | | | |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21.7 | 8.7 | 17.4 | 8.7 | 8.7 | 4.3 | 13.0 | 4.3 | 13.0 | 100.0 (23) |
| 251~350만원 | 17.5 | 9.7 | 13.6 | 15.5 | 13.6 | 2.9 | 9.7 | 2.9 | 14.6 | 100.0 (103) |
| 351~500만원 | 19.5 | 11.3 | 13.1 | 10.9 | 9.5 | 7.7 | 6.3 | 7.7 | 14.0 | 100.0 (221) |
| 501~600만원 | 25.3 | 11.6 | 12.1 | 15.8 | 8.4 | 6.8 | 5.8 | 8.9 | 5.3 | 100.0 (190) |
| 601만원 이상 | 18.9 | 10.3 | 15.5 | 12.2 | 10.7 | 6.7 | 7.6 | 8.6 | 9.5 | 100.0 (476) |
| $x^2(df)$ | 30.110(32)(b)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영아부모 | 14.6 | 9.6 | 20.2 | 10.1 | 11.2 | 6.7 | 5.6 | 7.9 | 14.0 | 100.0 (178) |
| 유아부모 | 20.2 | 10.4 | 12.8 | 11.1 | 11.6 | 6.7 | 7.7 | 8.9 | 10.6 | 100.0 (415) |
| 초등부모 | 22.4 | 11.4 | 13.1 | 15.7 | 8.6 | 6.2 | 7.6 | 6.7 | 8.3 | 100.0 (420) |
| $x^2(df)$ | 22.849(16) | | | | | | | | | |

주: ①유보통합 ②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④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⑤아동학대 방지 ⑥발달장애인 지원 ⑦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⑧식생활 건강권 강화 ⑨교통안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다)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정책 부문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츰츰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19.7%),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16.1%), ‘유보통합’(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이지만, 부모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츰츰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보육서비스 질 제고’,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19〉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수 |
|--------------|------|------|------|------|-----|-----|-----|-----|------|-----------------|
| 전체 | 12.0 | 19.7 | 30.4 | 16.1 | 5.6 | 4.8 | 5.4 | 3.0 | 2.9 | 100.0 (1,013)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13.1 | 19.0 | 27.5 | 17.4 | 4.1 | 5.2 | 7.0 | 3.8 | 2.9 | 100.0 (443) |
| 여성 | 11.2 | 20.4 | 32.6 | 15.1 | 6.8 | 4.6 | 4.2 | 2.3 | 2.8 | 100.0 (570) |
| $\chi^2(df)$ | | | | | | | | | | 13.151(8) |
| 지역구분 | | | | | | | | | | |
| 대도시 | 12.8 | 23.5 | 28.1 | 12.8 | 6.9 | 5.6 | 4.8 | 3.3 | 2.3 | 100.0 (392) |
| 중소도시 | 11.4 | 17.2 | 33.4 | 18.8 | 4.1 | 3.5 | 4.8 | 2.8 | 3.9 | 100.0 (458) |
| 읍면 | 12.3 | 17.8 | 27.6 | 16.6 | 6.7 | 6.7 | 8.6 | 2.5 | 1.2 | 100.0 (163) |
| $\chi^2(df)$ | | | | | | | | | | 26.508(16)* |
| 연령 | | | | | | | | | | |
| 20대 | 7.1 | - | 71.4 | 7.1 | - | - | - | - | 14.3 | 100.0 (14) |
| 30대 | 14.0 | 22.5 | 29.7 | 14.7 | 5.9 | 4.0 | 5.1 | 1.5 | 2.6 | 100.0 (529) |
| 40대 이상 | 10.0 | 17.2 | 30.0 | 17.9 | 5.5 | 6.0 | 6.0 | 4.7 | 2.8 | 100.0 (470) |
| $\chi^2(df)$ | | | | | | | | | | 39.960(16)**(b) |
| 취업 여부 | | | | | | | | | | |
| 취업 | 11.7 | 19.9 | 30.0 | 18.7 | 4.9 | 4.5 | 4.7 | 2.8 | 2.8 | 100.0 (573) |
| 미취업 | 12.5 | 19.5 | 30.9 | 12.7 | 6.6 | 5.2 | 6.4 | 3.2 | 3.0 | 100.0 (440) |
| $\chi^2(df)$ | | | | | | | | | | 8.615(8)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맞벌이 | 11.3 | 20.7 | 31.2 | 19.2 | 5.2 | 3.8 | 3.4 | 2.7 | 2.5 | 100.0 (522) |
| 외벌이 | 12.8 | 18.7 | 29.5 | 12.8 | 6.1 | 5.9 | 7.5 | 3.3 | 3.3 | 100.0 (491) |
| $\chi^2(df)$ | | | | | | | | | | 18.749(8)*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수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13.0 | 8.7 | 21.7 | 8.7 | - | 17.4 | 26.1 | - | 4.3 | 100.0 (23) |
| 251~350만원 | 7.8 | 17.5 | 29.1 | 13.6 | 6.8 | 9.7 | 6.8 | 3.9 | 4.9 | 100.0 (103) |
| 351~500만원 | 14.5 | 17.6 | 29.9 | 16.3 | 7.2 | 3.6 | 5.9 | 2.3 | 2.7 | 100.0 (221) |
| 501~600만원 | 12.1 | 22.1 | 30.5 | 12.6 | 5.3 | 5.8 | 4.7 | 3.7 | 3.2 | 100.0 (190) |
| 601만원 이상 | 11.8 | 20.8 | 31.3 | 18.3 | 5.0 | 3.4 | 4.2 | 2.9 | 2.3 | 100.0 (476) |
| $\chi^2(df)$ | 52.968(32)*(b)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영아부모 | 11.8 | 28.1 | 32.6 | 9.6 | 4.5 | 3.4 | 3.4 | 2.2 | 4.5 | 100.0 (178) |
| 유아부모 | 15.4 | 20.5 | 30.1 | 17.6 | 4.8 | 4.6 | 5.1 | 1.0 | 1.0 | 100.0 (415) |
| 초등부모 | 8.8 | 15.5 | 29.8 | 17.4 | 6.9 | 5.7 | 6.7 | 5.2 | 4.0 | 100.0 (420) |
| $\chi^2(df)$ | 52.441(16)*** | | | | | | | | | |

주: ① 유보통합 ②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④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⑤ 아동학대 방지 ⑥ 발달장애인 지원 ⑦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⑧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⑨ 교통안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전문가 조사

1)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달성도가 높은 정책과제는 “교통안전”이 5.4점(긍정비율 68.0%)으로 가장 높았고, 유보통합이 3.9점(긍정비율 34.0%)로 가장 낮았다.

2023년 조사 대비 달성도가 상승한 정책과제들은 총 9개 과제 중,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4.1점→4.2점), “아동학대 방지”(4.1점→4.6점), “발달장애인 지원”(3.9점→4.4점),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4.2점→4.4점), “식생활 건강권 강화”(4.2점→4.7점), “교통안전”(4.4점→5.4점) 등 6개 과제로 나타났다.

〈표 IV-2-20〉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3년/2024년 조사)

단위: %(명), 점

| 정책과제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 유보통합 | - | 4.4 | 100.0(98) | 34.0 | 3.9 | 100.0(50)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 | 4.1 | 100.0(98) | 40.0 | 4.0 | 100.0(50) |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 | 4.1 | 100.0(98) | 48.0 | 4.2 | 100.0(50)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 | - | - | 62.0 | 4.7 | 100.0(50) |

| 정책과제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 아동학대 방지 | | 4.1 | 100.0(98) | 56.0 | 4.6 | 100.0(50) |
| 발달장애인 지원 | | 3.9 | 100.0(98) | 53.0 | 4.4 | 100.0(50) |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 | 4.2 | 100.0(98) | 50.0 | 4.4 | 100.0(50)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 4.2 | 100.0(98) | 63.0 | 4.7 | 100.0(50) |
| 교통안전 | | 4.4 | 100.0(98) | 68.0 | 5.4 | 100.0(50) |

주: 1) 긍정비율은 '⑥', '⑥', '⑦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105-106. <표 IV-2-6>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수행도 참조.

2)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성과가 큰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과제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유보통합”이다. 이 두 개 정책의 응답률을 합치면, 68.0%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1>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 정책과제 | 단위: %(명) | |
|------------------|-----------|--|
| | 2024년 조사 | |
| 유보통합 | 28.0 |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6.0 | |
| 층층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8.0 |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40.0 | |
| 아동학대 방지 | 2.0 | |
| 발달장애인 지원 | 2.0 | |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4.0 |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 | |
| 교통안전 | 10.0 | |
| 계(수) | 100.0(50)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학령기 부모의 요구가 높은 정책을 시행하였음, 취학 후 초등 돌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임, 초등저학년돌봄은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과제였음, 초등 저학년 자녀가정에서 1학년 입학시 매우 필요한 정책, 초등 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측면, 초등돌봄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6시 퇴근 후 아동을 인수하려면 일반적으로 7시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봄시간을 저녁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임, 여러 부처, 다양한 기관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초등시기 돌봄 문제를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등이 제시되었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분리 체제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용이하며, 교사 양성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보육관련업무와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짐, 가시적으로 주무부처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수년 이내에 통합교사와 통합기관이 시행될 것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2-22〉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교육·보육·돌봄 정책)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기 부모의 요구가 높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아동의 안전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여겨짐. - 취학 후 초등 돌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임. 다만 초기 도입 과정에서 살펴야 할 것과 체계를 잘 잡아가면 좋겠음 - 늘봄학교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 - 초등저학년돌봄은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과제였음 ·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저학년 아동의 최적 발달과 직장여성의 평등한 일자리 구현을 위해서도 늘봄확대는 꼭 필요함 - 실제로 확대됨 -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국가 주도로 해소하고 있으므로 - 초등 저학년 자녀가정에서 1학년 입학시 매우 필요한 정책이며 실제 주변에서 만족도가 큰 것을 느낌 - (실익은 정책 시행으로 현장은 훈란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초등 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방과 후 돌봄을 공공기관에서 책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함 - 늘봄학교로 초등학교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이 수월해 졌음. |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역대정부가 초등 방과후 교육·보육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했으나, 통합, 전면화 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 아직 정책성과가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돌봄 대기자수를 대폭 줄였고, 초등돌봄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봄.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은 너무 짧아 사교육을 조장하고 돌봄의 어려움을 심화함. 정규 수업시간 연장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교육과 유사한 프로그램 중심의 특별 활동 교육보다 아동 스스로 창의적인 환경에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아동 주도적 소집단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4시반 귀가초치되어 교동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6시 퇴근 후 아동을 인수하려면 일반적으로 7시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봄시간을 저녁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임. 늘봄학교가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임 - 그동안의 학교 내 돌봄 정책을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체제를 구축, 도입함. -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 공백을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채웠으나 늘봄학교를 운영하면 안심하고 이동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할 수 있음 - 여러 부처, 다양한 기관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초등시기 돌봄 문제를 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아동 또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여겨짐 -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으로 사교육의 과잉문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 활성화 되고 있음 - 일단 정책의 실행이 눈에 보였음. |
| 유보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을 위해 오래 전부터 함께 한 입장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열매를 맺어 가는 것 같아 기쁨. 아마도 유보 통합으로 보육 교육의 질이 더 향상될 것을 믿고 있음. - 유아 교육과 보육의 분리 체제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임.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용이하며, 교사 양성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부, 복지부 예산의 통합으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에 미비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됨.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교육 출발선 보장이 이루어지길 바램 - 유보통합의 가시적 성과 - 보육관련업무와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짐 - 영유아 시기부터 동일한 교육과정, 동일한 자격을 가진 우수한 교사로부터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우수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함 -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부모 입장에서 수월성이 |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p>높아지고 교육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수렴, 정책방향 수립, 법적·제도적 정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큰 틀을 세우는 작업이라 사료됨.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공정한 출발선 혜택을 받을 권리 있다 사료됨 이번이 아니면 더욱 어려워질 거라 염려가 큼 - 가시적으로 주무부처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수년 이내에 통합교사와 통합기관이 시행될 것임 - 아직 그 결실을 볼 수는 없으나 추후라도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너무나 많은 보육교사들이 교육대학원 유치원 정교사 2급 교사자격 취득으로 입학하고 자격취득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과연 유치원도 종일반을 한다면 유보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유치원의 보육시설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의적임. -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음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작은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로 “유보통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식생활 건강권 강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제 순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유보통합 정책을 성과가 큰 과제이면서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표 IV-2-23〉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작은 과제

| 정책과제 | 2024년 조사 |
|------------------|-----------|
| 유보통합 | 28.0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14.0 |
| 촉촉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6.0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8.0 |
| 아동학대 방지 | 4.0 |
| 발달장애인 지원 | 12.0 |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6.0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16.0 |
| 교통안전 | 6.0 |
| 계(수) | 100.0(5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 사항 없다고 판단됨, 각 기관의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라는 명분적 목적달성에 치중한다고 여겨짐,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미비,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이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안내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음, 관례체계 일원화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유보통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음,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등이 지적되었다.

「식생활 건강권 강화」는 식생활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고 생활 운동 놀이 시간의 확대경험이 부족함, 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식생활 건강권이 강화될 수 없음, 부모들의 식생활 이슈와 관련된 높은 관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함, 아동당 교사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 및 시간제보육은 크게 개선된 바 없음, 특히 장애가 있는 영유아당 교사 비율도 낮아서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등이 지적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 미흡,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부족하고 전문기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제한적임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2-24〉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교육·보육·돌봄 정책)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유보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체계적관리가 필요함. -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전혀 진척이 없음 - 유보통합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으나 실천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혼란만 야기됨. - 각 기관의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라는 명분적 목적달성에 치중한다고 여겨짐 -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미비 - 기대가 매우 높았던 정책만큼 유보통합 추진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한 실 |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p>망감이 매우 높아질 정책이 될까 우려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 사항 없다고 판단됨. -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보류된 상태에서 유예론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이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인내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음. - 유보 통합의 궁극적 목적이 '질' 개선이라면 교사 교육 및 처우에 대한 점이 적극적으로 준비되어야함. 이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해보임. - 관계체계 일원화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진전이 느리고 확실한 정책 실행이 눈에 보이지 않음. 구호만 있음 - 유보통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음.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콜라 탕후루 등 단 것, 탄수화물, 튀김 과다섭취와 체육활동 부족 등 식생활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고 생활 운동 놀이 시간의 확대경험이 부족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실외놀이 시간의 확대 지침과 과일 및 채소, 단백질 섭취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침이 급식에서 요구됨 -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체감도가 낮은 정책이라고 생각 - 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식생활 건강권이 강화될 수 없음 - 이미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서 더 개선하기 어려워 보임 - 급식문제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 부모들의 식생활 이슈와 관련된 높은 관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급식에 대한 좀 더 개인별 학생에 배려있는 급식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함. 더욱 더 국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 - 아동당 교사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음. 학부모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 및 교사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에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기관 및 단체는 없음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 및 시간제보육은 크게 개선된 바 없어 개선이 필요함.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무상보육 시행 이후 약간씩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보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보육기관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질적 개선,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 어린이집 아동당 보육교사의 비율은 여전히 높고 특히 장애가 있는 영유아당 교사 비율도 낮아서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보육교사자격 취득이 용이해 보육교사의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임 |
| 발달장애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 미흡 - 편견없는 통합교육의 어려움 - 장애조기 발견 및 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부족하고 전문기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제한적임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장애인 관련 지원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짐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나 정책 지원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장애조기발견은 영유아 건강검진체계와 연동되어 진행될 수 있는데 관련된 정책 시행 정보 얻기 어려우며 서비스 체계 구축은 유보통합 등의 정책과 연계되어 발표되어야 하는 데 관련된 정책제안이 부실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4)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역시, “유보통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보육서비스 질 제고”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 지원, 아동학대보다는 유보통합, 보육, 돌봄 정책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표 IV-2-25〉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정책과제 | 단위: %(명) |
|------------------|-----------|
| | 2024년 조사 |
| 유보통합 | 42.0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14.0 |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22.0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12.0 |
| 아동학대 방지 | 2.0 |
| 발달장애인 지원 | 4.0 |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2.0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 |
| 교통안전 | 2.0 |
| 계(수) | 100.0(5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은 행정 조직 통합 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사 자격 통합, 재정지원 통합, 운영방법에 대한 통합이 발표되어야 함,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정책 추진이 중요함,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의 질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등이 제시되었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화 구조화, 그리고 마을 중심의 신뢰체계 구축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됨,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등이 제시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교사의 질 제고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완화, 사교육 완화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2-26〉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교육·보육·돌봄 정책)

| 정책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유보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조직 통합 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사 자격 통합, 재정지원 통합, 운영방법에 대한 통합이 발표되어야 함. -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분야 간 조율해야할 부분이 다양 한데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갈등이 커지므로 신속하게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함 -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정책이므로 성인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며, 이를 위한 토대라고 생각함. - 유아교육,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 - 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 증진.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유보통합을 완성함으로써 보육, 교육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체계 확립 필요 - 유보통합정책이 잘 출발되고 있으나 실시되기까지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이 정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마무리하길 바람 - 시작된 유보통합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함 - 유보통합의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향후 보다 우선적으로 유보통합에 집중 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정책 추진이 중요함 - 유보통합은 사회적 효과는 크지만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제도통합이 어려움. 이해집단 간 갈등의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내 영유아기 교육의 공공성, 품질, 효율성을 강화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유보 통합의 완성 - 영유아 시기 수준 높은 영유아교육은 미래세대의 역량 향상에 필수적임 - 유보통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교사의 질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 -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을 확립해나가기 위하여 핵심적인 사항이며, 국가적 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국가 백년대계이면서 진행 중인 중요한 사업 - 격차없는 출발을 위해 - 국가 책임의 양질의 교육제도를 생의 초기부터 구축한다면 향후 교육의 방향을 그 토대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행복한 아동이 질 높은 교육제도 하에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정책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은 반드시 필요함. 허나 그동안 난제로 꼽혔던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이 미미한 상태임. - 동질의 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중요 |
| <p style="text-align: center;">총출한 아동돌봄체계 마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성장해서 이후에도 총출한아동 돌봄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부모가 국가를 믿고 아동을 맡길수 있으므로 -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화 구조화, 그리고 마을 중심의 신뢰체계 구축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됨 - 돌봄의 틈새를 메울수 있는 정책으로 필요 - 영유아 교육돌봄 정책은 현재 제도에서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될 듯 하지만 학령기 돌봄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내실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 모든 육아정책의 시작은 아동의 안전이며 이것은 온마을의 참여에 의한 총출한 돌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 현재 한국의 보육체계는 큰 기둥은 세워졌지만 틈새, 공백이 문제로 남아 있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일률적이기 보다는 지역별, 부모 상황별 다양한 옵션이 주어질 필요가 있고, 다관 직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양육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협력하여 실행할 때 효과성이 높아지므로 - 아동의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의 책무임. 학교에서의 돌봄, 놀봄이 아닌 지역에서의 총출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시급함 - 맞벌이 부모 증가로 인한 국가의 돌봄 기능 강화 필요 - 늘봄학교 도입과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늘봄 학교와 함께 다양한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원하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결혼 기피 등을 예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짐 |
| <p style="text-align: center;">보육서비스 질 제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개선을 통한 부모의 신뢰할 수 있는 보육 가능 -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아동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 2. 교사의 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처우 개선 없이 전문성 높은 교사 -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보내므로 질이 제고되어야 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한 제언을 함. - 어린이집이 부모들의 기대에 걸맞게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사교육비도 줄고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유보통합과 관련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된 지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상향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적 경과 조치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이 분야는 유보통합정책과 맞물려 가야한다고 생각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이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되어야 함. |
| <p style="text-align: center;">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장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 양질의 방과 후 돌봄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 늘봄학교로 인해 방과후나 사교육으로부터 부모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주변에 많음. -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완화, 사교육 완화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 - 무분별한 사교육에 대한 대비 및 아동의 발달 권리를 위해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5)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전문가들이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라고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에 지원되어야 할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가치가 대국민 홍보 강화, 분절된 돌봄의 통합체계 마련, 유보통합을 통한 교사의 처우 개선 정책, 지역사회 내 돌봄 커뮤니티(시니어와 영유아 매칭 놀이정원, 재능기부 공동육아 등) 활성화, 학교 방과시간 확대 및 놀이와 신체활동 시간 확대, 영유아 교사의 자격 일원화 및 질 관리, 늘봄학교 전문인력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2-27〉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교육·보육·돌봄 정책)

| 정책범주 |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
| 교육·보육·돌봄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빨리 발표되어야 함. -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국가자격증제 도입 - 교육부 여가부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학교돌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 흩어진 돌봄의 통합체계 마련 - 아이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등급을 관리하고 영유아, 아동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자격증화 모든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에 동일 비용 적용 -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4년제화 -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 환아지원을 위한 거점 돌봄기관 구축 등 - 필요시 초등교육 단계에서 홈스쿨링 허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또는 활성화) - 영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국가가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보육, 돌봄 정책 로드맵을 설정하고 단계별 적극 추진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일관성 있는 시행이 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 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 유보통합 - 유치원 교사 자격이 없는 보육교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 과정이 필요함, 특히 야간, 주말 등 보육교사와 병행하며 취득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 - 초등학교 등학교 시간을 전학년 동일하게 하는 제도 - 유보통합을 통한 교사의 처우 개선 정책 - 초등학교령기에 늘봄과 돌봄이 사교육을 대체제로 기능할 정도로 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에서 특정 가족형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다양성의 차원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이해를 토대로 가족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대신 돌봐주는 방식보다 부모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

| 정책범주 |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내 돌봄 커뮤니티(시니어와 영유아 매칭 놀이정원, 재능기부 공동육아 등) 활성화 - 학교 방과시간 확대 및 놀이와 신체활동 시간 확대 - 교육 보육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교사의 자격 일원화 및 질 관리 - 유보통합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양육자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지원 - 아동,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영유아 및 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방향이 아니라 부모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기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을 유초중등법으로 개정해야 함. 교육부 내 보육지원과와 교육지원로 전문화하여 지원해야 함. 영아 보육, 방과후 과정, 초등돌봄 등은 보육지원과에서 지원, 유아 교육, 초등 교육과정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으로 전문화. -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실제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교육하고 돌보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월급이 크게 상향되어야 함 - 영아기-대학까지의 무상교육 실천 - 영유아기에 지원되어야 할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가치가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사교육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감독이 마련되어야 함. - 늘봄학교 전문인력 확대 - 한부모 가정의 야간 돌봄 지원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자녀돌봄 시간지원

가. 부모조사

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이용경험 및 만족도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와 같다.

대부분의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 육아휴직(87.6%)과 모 출산휴가(87.3%), 부 출산휴가(81.5%)의 경우 80%가 넘는 부모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인지도는 57.7%로 가장 낮았다.

〈표 IV-3-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인지도(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단위: %(명)

| 구분 | 모 출산 휴가 | 부 출산 휴가 | 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모 육아 휴직 | 부 육아 휴직 | 계(수) |
|--------------|------------------|------------------|---------------------|---------------------|------------------|------------------|---------------|
| 전체 | 87.3 | 81.5 | 73.1 | 57.7 | 87.6 | 79.2 | 100.0 (1,013) |
| 성별 | | | | | | | |
| 남성 | 85.3 | 78.3 | 66.6 | 54.2 | 84.0 | 76.3 | 100.0 (443) |
| 여성 | 88.8 | 84.0 | 78.2 | 60.5 | 90.4 | 81.4 | 100.0 (570) |
| $\chi^2(df)$ | 2.662 (1) | 5.391 (1)* | 17.237 (1)*** | 4.120 (1)* | 9.310 (1)** | 3.940 (1)* | |
| 지역구분 | | | | | | | |
| 대도시 | 85.7 | 78.6 | 68.9 | 55.1 | 85.5 | 74.5 | 100.0 (392) |
| 중소도시 | 89.5 | 84.5 | 77.9 | 58.7 | 90.4 | 83.8 | 100.0 (458) |
| 읍면 | 84.7 | 80.4 | 69.9 | 61.3 | 84.7 | 77.3 | 100.0 (163) |
| $\chi^2(df)$ | 3.937 (2) | 5.106 (2) | 9.866 (2)** | 2.174 (2) | 6.220 (2)* | 11.617 (2)** | |
| 연령 | | | | | | | |
| 20대 | 71.4 | 85.7 | 64.3 | 64.3 | 71.4 | 71.4 | 100.0 (14) |
| 30대 | 90.4 | 84.1 | 79.4 | 61.4 | 89.8 | 80.9 | 100.0 (529) |
| 40대 이상 | 84.3 | 78.5 | 66.4 | 53.4 | 85.5 | 77.4 | 100.0 (470) |
| $\chi^2(df)$ | 11.548 (2)** | 5.369 (2) | 22.022 (2)*** | 6.830 (2)* | 7.540 (2)* | 2.323 (2) | |
| 취업 여부 | | | | | | | |
| 취업 | 92.1 | 83.6 | 78.9 | 60.6 | 92.8 | 81.5 | 100.0 (573) |
| 미취업 | 80.9 | 78.9 | 65.7 | 54.1 | 80.7 | 76.1 | 100.0 (440) |
| $\chi^2(df)$ | 28.282 (1)*** | 3.702 (1) | 22.083 (1)*** | 4.267 (1)* | 33.806 (1)*** | 4.343 (1)*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맞벌이 | 93.1 | 84.1 | 78.7 | 60.0 | 93.3 | 81.6 | 100.0 (522) |
| 외벌이 | 81.1 | 78.8 | 67.2 | 55.4 | 81.5 | 76.6 | 100.0 (491) |
| $\chi^2(df)$ | 33.028 (1)*** | 4.688 (1)* | 17.113 (1)*** | 2.161 (1) | 32.504 (1)*** | 3.883 (1)* | |
| 소득 기준 | | | | | | | |
| 250만원 이하 | 73.9 | 65.2 | 60.9 | 43.5 | 73.9 | 65.2 | 100.0 (23) |
| 251-350만원 | 76.7 | 67.0 | 57.3 | 49.5 | 74.8 | 64.1 | 100.0 (103) |
| 351-500만원 | 81.9 | 82.4 | 68.3 | 54.8 | 84.2 | 80.1 | 100.0 (221) |
| 501-600만원 | 89.5 | 83.2 | 75.8 | 62.1 | 90.5 | 84.2 | 100.0 (190) |
| 601만원 이상 | 91.8 | 84.5 | 78.4 | 59.9 | 91.4 | 80.7 | 100.0 (476) |
| $\chi^2(df)$ | 29.430 (4)*** | 21.669 (4)*** | 24.845 (4)*** | 7.955 (4) | 29.710 (4)*** | 20.634 (4)***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영아부모 | 91.6 | 83.7 | 80.9 | 61.2 | 91.6 | 83.1 | 100.0 (178) |
| 유아부모 | 86.7 | 80.0 | 73.5 | 56.1 | 86.7 | 77.6 | 100.0 (415) |
| 초등부모 | 86.0 | 82.1 | 69.5 | 57.9 | 86.7 | 79.0 | 100.0 (420) |
| $\chi^2(df)$ | 3.724 (2) | 1.311 (2) | 8.278 (2)* | 1.327 (2) | 3.192 (2) | 2.338 (2) | |

주: 1) 각 정책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정책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알고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의 출산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의 경우 49.6%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유연근무제 인지도(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단위: %(명)

| 구분 | 모 유연 근무제 (재택근로) | 부 유연 근무제 (재택근로) | 모 유연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 부 유연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 계(수) |
|--------------|-----------------------|-----------------------|-------------------------|-------------------------|---------------|
| 전체 | 55.6 | 49.6 | 57.4 | 52.3 | 100.0 (1,013) |
| 성별 | | | | | |
| 남성 | 54.9 | 48.8 | 58.2 | 53.5 | 100.0 (443) |
| 여성 | 56.1 | 50.2 | 56.7 | 51.4 | 100.0 (570) |
| $\chi^2(df)$ | 0.167(1) | 0.200(1) | 0.252(1) | 0.439(1) | |
| 지역구분 | | | | | |
| 대도시 | 52.3 | 48.0 | 56.9 | 52.0 | 100.0 (392) |
| 중소도시 | 57.9 | 50.2 | 59.0 | 53.3 | 100.0 (458) |
| 읍면 | 57.1 | 51.5 | 54.0 | 50.3 | 100.0 (163) |
| $\chi^2(df)$ | 2.821(2) | 0.735(2) | 1.268(2) | 0.445(2) | |
| 연령 | | | | | |
| 20대 | 50.0 | 50.0 | 50.0 | 50.0 | 100.0 (14) |
| 30대 | 57.1 | 50.3 | 58.8 | 55.0 | 100.0 (529) |
| 40대 이상 | 54.0 | 48.7 | 56.0 | 49.4 | 100.0 (470) |
| $\chi^2(df)$ | 1.114(2) | 0.243(2) | 1.130(2) | 3.213(2) | |
| 취업 여부 | | | | | |
| 취업 | 57.4 | 51.0 | 60.4 | 55.3 | 100.0 (573) |
| 미취업 | 53.2 | 47.7 | 53.4 | 48.4 | 100.0 (440) |
| $\chi^2(df)$ | 1.808(1) | 1.040(1) | 4.950(1)* | 4.769(1)* | |
| 맞벌이 여부 | | | | | |
| 맞벌이 | 58.0 | 50.6 | 60.5 | 55.2 | 100.0 (522) |
| 외벌이 | 53.0 | 48.5 | 54.0 | 49.3 | 100.0 (491) |
| $\chi^2(df)$ | 2.658(1) | 0.447(1) | 4.458(1)* | 3.513(1) | |
| 소득 기준 | | | | | |
| 250만원 이하 | 34.8 | 34.8 | 47.8 | 43.5 | 100.0 (23) |
| 251-350만원 | 44.7 | 36.9 | 42.7 | 41.7 | 100.0 (103) |
| 351-500만원 | 55.7 | 52.5 | 55.7 | 51.6 | 100.0 (221) |
| 501-600만원 | 58.9 | 55.3 | 57.9 | 52.1 | 100.0 (190) |
| 601만원 이상 | 57.6 | 49.4 | 61.6 | 55.5 | 100.0 (476) |
| $\chi^2(df)$ | 10.635(4)* | 11.857(4)* | 13.591(4)** | 7.271(4) | |
| 첫째아 기준 | | | | | |
| 영아부모 | 53.9 | 45.5 | 53.9 | 50.6 | 100.0 (178) |
| 유아부모 | 54.2 | 48.0 | 58.6 | 53.3 | 100.0 (415) |
| 초등부모 | 57.6 | 52.9 | 57.6 | 52.1 | 100.0 (420) |
| $\chi^2(df)$ | 1.215(2) | 3.426(2) | 1.108(2) | 0.371(2) | |

주: 1) 각 정책의 인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2) 각 정책 별 인지/미인지 간 차이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2024년 만족도를 살펴보면, 3.4점에서 3.8점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만족도(2023년/2024년)

단위: %(명), 점

| 구분 | 2023년 조사 | | 2024년 조사 | | | |
|----------------------|--------------------|------|--------------|------|-----|-------------|
| | 만족비율5점 평균 | 계(수) | 만족비율 5점 평균 | 계(수) | | |
|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1. 모 출산휴가 | 3.80 | 100.0 (886) | 59.2 | 3.6 | 100.0 (502) |
| | 2. 부 출산휴가 | 3.62 | 100.0 (766) | 47.3 | 3.4 | 100.0 (425) |
| | 3. 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3.78 | 100.0 (365) | 63.6 | 3.7 | 100.0 (231) |
| | 4. 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3.77 | 100.0 (186) | 60.2 | 3.8 | 100.0 (83) |
| | 5. 모 육아휴직 | 3.73 | 100.0 (789) | 58.6 | 3.6 | 100.0 (442) |
| | 6. 부 육아휴직 | 3.71 | 100.0 (321) | 55.0 | 3.5 | 100.0 (160) |
| | 7.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3.72 | 100.0 (129) | 54.7 | 3.6 | 100.0 (86) |
| | 8.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3.77 | 100.0 (93) | 56.3 | 3.6 | 100.0 (48) |
| | 9.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3.65 | 100.0 (175) | 63.2 | 3.7 | 100.0 (125) |
| | 10.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3.87 | 100.0 (134) | 66.7 | 3.8 | 100.0 (78) |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76-77, 82 참조.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가 가장 주된 불만족 이유로 꼽았고, 부 출산휴가,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 대하여는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를 주된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특히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 대하여는 70.6%가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비하여 아직 유연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3-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 기타 | 계(수) |
|----------------------|---------------------------------|---------------------|---|---------------------------------------|--|---------------------|------|------------|
| 1. 모 출산휴가 | 40.7 | - | 33.9 | 1.7 | 11.9 | 8.5 | 3.4 | 100.0 (59) |
| 2. 부 출산휴가 | 16.1 | 3.2 | 46.2 | 11.8 | 10.8 | 10.8 | 1.1 | 100.0 (93) |
| 3. 모 근로시간 단축 | 48.0 | 8.0 | 20.0 | 8.0 | 8.0 | 4.0 | 4.0 | 100.0 (25) |
| 4. 부 근로시간 단축 | 25.0 | - | 37.5 | 25.0 | 12.5 | - | - | 100.0 (8) |
| 5. 모 육아휴직 | 41.9 | - | 25.8 | 11.3 | 8.1 | 3.2 | 9.7 | 100.0 (62) |
| 6. 부 육아휴직 | 41.4 | - | 24.1 | 13.8 | 10.3 | 10.3 | - | 100.0 (29) |
| 7. 모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 31.3 | - | 37.5 | 18.8 | 12.5 | - | - | 100.0 (16) |
| 8. 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 28.6 | 28.6 | 28.6 | 14.3 | - | - | - | 100.0 (7) |
| 9.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 23.5 | - | 70.6 | 5.9 | - | - | - | 100.0 (17) |
| 10.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 20.0 | - | 20.0 | 20.0 | 20.0 | - | 20.0 | 100.0 (5) |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평가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4%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선택한 비율에 있어 남성(60.9%)이 여성(52.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 구분 |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계(수) | |
|-----------|-------------|-------------|-------|---------|
| 전체 | 43.6 | 56.4 | 100.0 | (1,013) |
| 성별 | | | | |
| 남성 | 39.1 | 60.9 | 100.0 | (443) |
| 여성 | 47.2 | 52.8 | 100.0 | (570) |
| $x^2(df)$ | 6.717(1)* | | | |
| 지역구분 | | | | |
| 대도시 | 45.7 | 54.3 | 100.0 | (392) |
| 중소도시 | 42.6 | 57.4 | 100.0 | (458) |
| 읍면 | 41.7 | 58.3 | 100.0 | (163) |
| $x^2(df)$ | 1.108(2) | | | |
| 연령 | | | | |
| 20대 | 35.7 | 64.3 | 100.0 | (14) |
| 30대 | 43.9 | 56.1 | 100.0 | (529) |
| 40대 이상 | 43.6 | 56.4 | 100.0 | (470) |
| $x^2(df)$ | 0.368(2) | |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 | 46.2 | 53.8 | 100.0 | (573) |
| 미취업 | 40.2 | 59.8 | 100.0 | (440) |
| $x^2(df)$ | 3.668(1) | |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46.4 | 53.6 | 100.0 | (522) |
| 외벌이 | 40.7 | 59.3 | 100.0 | (491) |
| $x^2(df)$ | 3.257(1) | | | |
| 소득 기준 | | | | |
| 250만원 이하 | 34.8 | 65.2 | 100.0 | (23) |
| 251~350만원 | 40.8 | 59.2 | 100.0 | (103) |
| 351~500만원 | 42.1 | 57.9 | 100.0 | (221) |
| 501~600만원 | 43.2 | 56.8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45.6 | 54.4 | 100.0 | (476) |
| $x^2(df)$ | 2.048(4) | | | |
| 첫째아 기준 | | | | |
| 영아부모 | 50.6 | 49.4 | 100.0 | (178) |
| 유아부모 | 41.4 | 58.6 | 100.0 | (415) |
| 초등부모 | 42.9 | 57.1 | 100.0 | (420) |
| $x^2(df)$ | 4.385(2)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3%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선택한 비율에 있어 중소도시(62.0%)가 대도시(50.8%), 읍면(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6〉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 구분 |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계(수) | |
|-----------|-------------|-------------|-------|---------|
| 전체 | 43.7 | 56.3 | 100.0 | (1,013) |
| 성별 | | | | |
| 남성 | 42.4 | 57.6 | 100.0 | (443) |
| 여성 | 44.7 | 55.3 | 100.0 | (570) |
| $x^2(df)$ | 0.535(1) | | | |
| 지역구분 | | | | |
| 대도시 | 49.2 | 50.8 | 100.0 | (392) |
| 중소도시 | 38.0 | 62.0 | 100.0 | (458) |
| 읍면 | 46.6 | 53.4 | 100.0 | (163) |
| $x^2(df)$ | 11.512(2)** | | | |
| 연령 | | | | |
| 20대 | 42.9 | 57.1 | 100.0 | (14) |
| 30대 | 47.1 | 52.9 | 100.0 | (529) |
| 40대 이상 | 40.0 | 60.0 | 100.0 | (470) |
| $x^2(df)$ | 5.060(2) | | | |
| 취업 여부 | | | | |
| 취업 | 43.6 | 56.4 | 100.0 | (573) |
| 미취업 | 43.9 | 56.1 | 100.0 | (440) |
| $x^2(df)$ | 0.006(1) | | | |
| 맞벌이 여부 | | | | |
| 맞벌이 | 41.4 | 58.6 | 100.0 | (522) |
| 외벌이 | 46.2 | 53.8 | 100.0 | (491) |
| $x^2(df)$ | 2.421(1) | | | |
| 소득 기준 | | | | |
| 250만원 이하 | 56.5 | 43.5 | 100.0 | (23) |
| 251-350만원 | 47.6 | 52.4 | 100.0 | (103) |
| 351-500만원 | 42.1 | 57.9 | 100.0 | (221) |
| 501-600만원 | 45.8 | 54.2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42.2 | 57.8 | 100.0 | (476) |
| $x^2(df)$ | 3.156(4) | | | |
| 첫째아 기준 | | | | |
| 영아부모 | 51.7 | 48.3 | 100.0 | (178) |
| 유아부모 | 42.4 | 57.6 | 100.0 | (415) |
| 초등부모 | 41.7 | 58.3 | 100.0 | (420) |
| $x^2(df)$ | 5.599(2)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나. 전문가 조사

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은 2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책과제의 달성도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 4.7점(긍정비율 66.0%),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긍정비율 48.0%)가 4.3점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작년 대비 0.8점 상승하였다.

〈표 IV-3-7〉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23년/2024년 조사)

단위: %(명), 점

| 정책과제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긍정 비율 | 7점 평균 | 계(수)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 | 3.9 | 100.0(98) | 66.0 | 4.7 | 100.0(50)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 | - | - - | 48.0 | 4.3 | 100.0(50) |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105-106. 〈표 IV-2-6〉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수행도 참조.

이들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성과를 낸 과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56.0%)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44.0%)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들 2개 정책과제 중 상대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로 나왔다.

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성과 및 미흡 정도

〈표 IV-3-8〉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성과 및 미흡 정도

단위: %(명)

| 정책과제 | 2024년 조사 | |
|-------------|-----------|------|
| | 성과 | 미흡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44.0 | 56.0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56.0 | 44.0 |
| 계(수) | 100.0(50)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육아휴직의 기간과 적용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반감 등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봄, 육아휴직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의 일자리 구현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늘어남, 현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6+6 제도실시로 인한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육아휴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하여 부모들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국민들에게 잘 안내되고 있고 활용도도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등이 제시되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다양한 근로 시간제도 활용과 유연 근무 활성화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동들을 좀 더 잘 돌보고, 삶을 안정되게 도와주어 일가정 양립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 자녀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여성의 재택근무, 시간제근무는 반드시 필요함, 최근 기업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지원이 가능해짐,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3-9〉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은 법적인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크며, 시행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보강이 이루어지면 완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됨.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기간과 적용 확대 - 예전에 비해 다양하게 일자리를 구현해 나가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함. 앞으로 더 세심한 제도가 구축될 것이라 믿고 있음. -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반감 등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봄. 최근에는 육아휴직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의 일자리 구현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늘어남 -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일단 제도가 확장되었으므로 체감도가 있음 - 육아에 있어 양성평등 인식 제고 |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 확대는 영아 초기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신뢰성 증진에 매우 유익함 - 가정 내 안정적 돌봄의 확대를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사회적 안정성 증진 - 직장에서 최근 가장 확대된 변화의 모습의 대표적 예가 육아휴직 등임 - 현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효용성,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성별근로공시제는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6+6 제도실시로 인한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기간확대, 급여확대로 일부 제도적 관대성이 확대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제도 확대, 제도 내 제도 활용 유인 강화(6+6 육아휴직제) 그로 인한 제도 활용자 수 증가,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상당한 성과로 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수준의 상향으로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 아직 직장 여건 및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출산, 육아 휴직 지원(임금, 기간 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됨. - 제도가 잘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봄 - 육아휴직의 적용이나 출산휴가 확대가 필요하였음 - 육아휴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하여 부모들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주변에서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상대적으로 성과가 크다고 생각함. 여전히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관련 제도나 정책은 많이 부족함. - 국민들에게 잘 안내되고 있고 활용도도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민간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함 - 배우자 모두 가능한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 -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시행 - 상대적으로 좀 더 나옴 - 두 가지 정책 중 비교적 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
| <p>근로시간 선택권 확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근로 시간제도 활용과 유연 근무 활성화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들들을 좀 더 잘 돌보고, 삶을 안정되게 도와주어 일가정 양립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함 - 자녀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여성의 재택근무, 시간제근무는 반드시 필요 - 최근 기업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이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응으로 여겨지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유연한 근무시간 다수 확보 - 연장근무, 유연근무 제도의 내실 - 맞춤형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점차 일과 양육의 양립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 정책은 선언보다 실현이 중요. 현재 설문 구조상 선택할 수 밖에 없어서 선택. |

| 정책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지원이 가능해짐 -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녀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이 다양한 것이 바람직함 - 근로시간 확대에 맞벌이 여성의 선택이 넓어졌다고 생각됨. -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노동권을 포기(?)하고 돌봄권을 선택하는 방식인 반면, 유연근무는 노동권과 돌봄권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현재는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근로시간 선택권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늘봄학교 정책이 나름대로 취지가 좋은 정책이지만 아동이 장시간 학교에만 머물러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돌봄은 부모 중 1인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통해 일찍 퇴근하여 아동을 인수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것임. 이를 위해 유연근무가 더 활성화되어야 함. -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족친화적인 양육 정책의 효과성이 높으므로 - 자신의 상황에 따라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 유연한 근무제는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미시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상황별로 접근 용이한 방향이라 여겨짐. 사업장별로 시행시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함 - 더 이상 '날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줄꺼'라는 정책은 적절하지 않음. 부모들은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지, 남에게 맡기고 싶어하지 않음.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수적인 정책임 - 각 가정의 양육 양성화 평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면 돌봄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음 - 과거에 비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 근로시간의 유연근무는 자녀의 돌봄에 실제적인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종일제, 엄마품, 24시간 보육과 탁아등 다양한 지원이 실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회의적인 청년 취업과 다양한 취창업 제도가 더 바람직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반면에 전문가들이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양성 평등 일자리 구현의 수혜자가 한정적이라고 생각됨, 중소기업 등에 강제력이나 지원책이 없어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 부분 일자리에만 해당됨, 육아휴직을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존재함, 특정 집단(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는 정책, 아빠의 육아휴직이 일상화 되고 있지 않아 눈치를 봐야하며 다자녀 출산 시 매우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임, 유연근무제보다 성과가 낮다고 여겨지는 정책임 등이 지적되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기업의 참여 없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어려움,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유연 근무제의 활성화 미흡, 제도는 있어도 직장분위기와 문화로 인해 쓰기 어려움, 제도는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선택권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3-10〉 해당 정책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 평등 일자리 구현의 수혜자가 한정적이라고 생각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간적 지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인 물리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 육아 휴직 급여 적용,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은 아직 우리 사회에 안착되지 못한 경향이 많음. 이에 더욱 실천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존재. - 여성고용지수 낮음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기간 등의 제도화 미흡, 실제 실행에서 차별적 요소 배제를 위한 가시적 노력이 필요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정책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보여짐. 더욱 더 기관 중심 영유아보육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이 정책들로 양성평등 일자리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육아휴직을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여간상 어려움이 존재함 - 중소기업 등에 강제력이나 지원책이 없어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만 해당됨 - 아직까지도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 기업-가정-지자체의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인식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특정 집단(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는 정책 - 유연근무제보다 성과가 낮다고 여겨지는 정책임. - 사업장 별로 상황이 다를수 있으므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효율성이 부족하다 여겨짐. 융통성 필요하다 여겨짐 - 그동안 제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님. 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불이익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 필요. - 필요한 정책이나, 체감도가 낮음 - 아버들의 육아휴직 등에 있어서 오히려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 - 대기업 중심에서 사회 전반의 일자리로, 특히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등 여성 취업이 많은 직장으로 하루 빨리 확대되어야 함 - 아버의 육아휴직이 일상화 되고 있는 않고 눈치를 봐야하며 다자녀 출산시 매우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임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참여 없이 확대는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효율성이 낮음. - 유연 근무제의 활성화 미흡 |

| 정책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 비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선택권이 생기는 하였으나 아직 까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사료됨 - 기업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재택근무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 기업에 따라 선택권이 불가능한 경우 많음 - 제도는 있어도 직장분위기와 문화로 인해 쓰기 어려움. - 아직은 소수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듯 - 자영업 등 직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혜대상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도활용에 대한 제한점이 있음 - 실질적 활용 가능성의 편차가 큼 - 1. 정책 수혜 대상자 소수(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만 이용 가능) 2. 다른 정책에 비해 홍보 미흡 - 의무화하지 않으면 직종, 기업에 따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근로시간 선택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일가정양립 및 노동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돌봄수요를 비롯해서 유연근무나 탄력근무제가 절실함.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제도는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선택권 미흡 - 기업, 기관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에 차이가 큼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직장의 경우 전혀 적용되지 않음 - 공기업이나 공무원 위주로 정책이 한정되어 실행되는 수준임 - 대상자의 눈높이에서 해당 사업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정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의 경우 코로나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본다 - 대기업 외에는 아직도 기업 운영상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이 있음.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나 재택근무 등은 기업의 협조없이 어려운 것으로서 일부 기관(공기관 대기업) 종사자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큼 - 타 범주의 정책들에 비해 잘 실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육아친화적 사회가 되기 위해 더 획기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이 요구됨. - 근로시간 유연제는 선진국의 출산률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된 유연근무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일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막대한 현실임 - 여성고용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도는 근로자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대책이 필요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향후 중점과제

자녀돌봄 시간지원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보다 더 많이 나왔다. 자녀돌봄을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3-11〉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단위: %(명) | |
|-------------|-----------|
| 정책과제 | 2024년 조사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40.0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60.0 |
| 계(수) | 100.0(50)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이미 제시된 정책이나 다수가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필요 있음, 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해야 함,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의 보장과 함께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지원 방안도 제시되어 보호를 받아야 함,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등이 제시되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기업규모나 업종별 차이 없이 자녀를 안정성 있게 돌보는 것이 중요함,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부모의 일-가정 균형 및 양육권 보장으로 일하는 부모의 행복도 증진, 다양한 근로시간의 확대로 부모가 양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됨, 회사의 경우 좀 더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 중 한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봄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3-12〉 해당 정책이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정책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은 법적으로 이미 완성도가 높으나 실행 측면에서 촘촘한 보완이 필요함. - 복유럽처럼 국가제도가 정립되어 의무화 한다면 맞벌이 부모 직장에서도 받아 들여 아동 양육 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아직 매우 낮은 단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불이익 발생 최소화해 필요한 과제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실현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축 - 여성 노동자 임신,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 - 요즘 세대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때 자녀양육과 자기실현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 정책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제시된 정책이나 다수가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필요 있음 - 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 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 등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기는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하므로 우선적인 집중이 필요한 정책임 - 노동시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돌봄 영역 모두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분배가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임. -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과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일자리 마련 필요 -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꾸준히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성의 경력과 사회 진출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자 할 것으로 생각됨 -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의 보장과 함께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지원 방안도 제시되어 보호를 받아야 함. - 저출산 극복에 도움 -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
| <p>근로시간 선택권 확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연함과 융통성을 갖추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사회적으로 상호 포용과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 유연근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자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임 - 자녀양육 시 필수 선행요소 -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 형식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 -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의 가장 큰 고충은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함께 해 주지 못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규모 및 업종별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여 관리하고 보조해야 함 - 근로와 양육의 유연성 확보. - 기업규모나 업종별 차이없이 자녀를 안정성 있게 돌보는 것이 중요함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직장가정을 병행할 수 있음 - 자녀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다양하게 사용가능해야 함 -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보기 위해 필요함. - 가족 친화적인 양육 실천이 효과성도 장기적인 유익이 크므로 -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간 및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함 - 부모의 일-가정 균형 및 양육권 보장으로 일하는 부모의 행복도 증진 |



| 정책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 근무제를 통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서 해소되어야 출산율 향상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수 있음 - 다양한 근로시간의 확대로 부모가 양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됨 - 회사의 경우 좀 더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 중 한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봄. - 사업장별로 실제 시행 가능한 중요 사업 - 0~초등 6학년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대상의 근로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 보장 필요 -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양육을 나누어 할 수 있어 건강한 가정 문화가 조성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 발달을 도울 수 있음 -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 - 육아기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출생율을 높일 수 있음. - 가정과 일의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양립을 위해서 - 양질의 육아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이 우선적으로 안정화되어야 하므로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전문가들이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향후 중점과제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지속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부모가 충실하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선택의 자율 확대, 자녀 돌봄은 다양한 근무처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부모 이외의 주 양육자에 대한 지원안도 필요함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3-13〉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정책범주 |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 대한 자녀돌봄의 사각지대 지원정책 -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수당을 국가가 더 지원하는 방안. 또는 최대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고 부모 모두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지속 확대 -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현재의 다양한 휴가, 휴직정책을 통합하고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 있음.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휴가제도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

| 정책범주 |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근로시간 조정만큼 중요한 것은 아동의 교육시간임.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연장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 부모 vs. 전일제 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이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아동을 유치원 등에서 일찍 데려와 돌볼 수 있도록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충실하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의 자율 확대. 시간지원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부모역할교육)필수 이수제. - 일-가정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선택제 활성화 - 유연 근무제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필요한 기업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실질적 지원과 법률 마련이 자녀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지원(비용) 확대 배우자육아휴직 의무제(미사용시 소멸) - 영유아 및 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방향이 아니라 부모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기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일반 다양한 직장으로 하루 빨리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일하는 부모일 경우 매우 꼼꼼한 자녀돌봄 시간 관찰, 점검 전업주부인데도 자녀를 종일제 어린이집에 넣고 국가예산을 타는 것은 말이 안됨 - 자녀 돌봄은 다양한 근무처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부모 이외의 주 양육자에 대한 지원안도 필요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4. 전체 육아정책 기준 평가

가. 부모 조사

1)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11.0%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급여 도입'은 1순위 기준으로 부모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되었고, 다른 정책과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 지역구분,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소득 기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 연령에 따라서

는 20대(78.6%), 30대(54.4%), 40대 이상(42.6%)로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부모급여 도입'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첫째아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부모(74.7%), 유아부모(53.3%), 초등부모(34.5%) 순으로 나타나 첫째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급여 도입'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이는 부모급여의 대상이 0-1세 영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가 1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12.4%,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연령별,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소득기준,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연령별로는 20대(35.7%), 30대(15.7%), 40대 이상(11.3%)로 나타나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11.2%), 미취업(17.5%)로 나타나, 미취업일수록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11.7%), 외벌이(16.3%)로 나타나, 외벌이일수록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251~350만원(13.6%), 351~500만원(19.0%), 501~600만원(12.1%), 601만원 이상(13.0%)로 나타나, 351만원~500만원 소득 수준에서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는 영아부모(26.4%), 유아부모(11.8%), 초등부모(10.7%)로 나타나, 영아부모일수록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표 IV-4-1)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전체 | 49.3 | 7.6 | 4.9 | 2.6 | 3.8 | 3.3 | 11.0 | 1.9 | 0.9 | 0.7 | 1.8 | 2.7 | 3.5 | 6.2 | 100.0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 남성 | 51.0 | 9.5 | 5.0 | 1.8 | 3.6 | 2.9 | 9.7 | 1.1 | 0.9 | 0.7 | 1.8 | 3.8 | 3.2 | 5.0 | 100.0 | (443) |
| 여성 | 47.9 | 6.1 | 4.9 | 3.2 | 4.0 | 3.5 | 11.9 | 2.5 | 0.9 | 0.7 | 1.8 | 1.8 | 3.7 | 7.2 | 100.0 | (570) |
| $\chi^2(df)$ | | | | | | | 16.015(13) | | | | | | | | |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47.4 | 9.2 | 5.4 | 1.5 | 3.8 | 2.0 | 9.9 | 1.8 | 0.3 | 1.3 | 2.6 | 2.6 | 5.1 | 7.1 | 100.0 | (392) |
| 중소도시 | 48.7 | 6.8 | 5.0 | 3.7 | 4.1 | 4.1 | 11.1 | 2.2 | 0.9 | 0.4 | 1.5 | 3.3 | 2.2 | 5.9 | 100.0 | (458) |
| 읍면 | 55.2 | 6.1 | 3.7 | 1.8 | 3.1 | 3.7 | 12.9 | 1.2 | 2.5 | - | 0.6 | 1.2 | 3.1 | 4.9 | 100.0 | (163) |
| $\chi^2(df)$ | | | | | | | 34.277(26)(b)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 | |
| 20대 | 78.6 | 14.3 | - | - | - | - | - | 7.1 | - | - | - | - | - | - | 100.0 | (14) |
| 30대 | 54.4 | 6.0 | 4.0 | 3.2 | 4.2 | 2.8 | 9.8 | 1.7 | 0.4 | 0.6 | 0.8 | 2.1 | 3.0 | 7.0 | 100.0 | (529) |
| 40대 이상 | 42.6 | 9.1 | 6.2 | 1.9 | 3.6 | 3.8 | 12.6 | 1.9 | 1.5 | 0.9 | 3.0 | 3.4 | 4.0 | 5.5 | 100.0 | (470) |
| $\chi^2(df)$ | | | | | | | 42.233(26)*(b) |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 취업 | 45.5 | 8.2 | 5.2 | 2.6 | 3.7 | 3.5 | 12.2 | 1.9 | 0.7 | 0.3 | 1.6 | 2.6 | 4.2 | 7.7 | 100.0 | (573) |
| 미취업 | 54.1 | 6.8 | 4.5 | 2.5 | 4.1 | 3.0 | 9.3 | 1.8 | 1.1 | 1.1 | 2.0 | 2.7 | 2.5 | 4.3 | 100.0 | (440) |
| $\chi^2(df)$ | | | | | | | 16.496(13) | | | |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 맞벌이 | 45.4 | 7.5 | 4.8 | 2.7 | 3.6 | 3.8 | 12.5 | 2.1 | 0.6 | 0.4 | 1.7 | 2.9 | 4.0 | 8.0 | 100.0 | (522) |
| 외벌이 | 53.4 | 7.7 | 5.1 | 2.4 | 4.1 | 2.6 | 9.4 | 1.6 | 1.2 | 1.0 | 1.8 | 2.4 | 2.9 | 4.3 | 100.0 | (491) |
| $\chi^2(df)$ | | | | | | | 16.742(13) | | | | | | |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60.9 | 4.3 | 4.3 | - | - | - | 8.7 | - | 4.3 | - | - | 8.7 | 4.3 | 4.3 | 100.0 | (23) |
| 251~350만원 | 50.5 | 8.7 | 7.8 | 2.9 | 2.9 | 3.9 | 7.8 | 1.0 | 1.0 | 1.9 | 1.0 | 2.9 | 1.9 | 5.8 | 100.0 | (103) |
| 351~500만원 | 52.9 | 7.7 | 6.3 | 1.4 | 5.0 | 2.7 | 10.9 | 3.2 | 0.9 | 0.9 | 0.5 | 1.8 | 3.2 | 2.7 | 100.0 | (221) |
| 501~600만원 | 51.6 | 5.8 | 4.2 | 2.6 | 3.7 | 2.6 | 11.1 | 1.6 | 2.1 | 1.1 | 3.7 | 3.2 | 1.6 | 5.3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45.8 | 8.2 | 4.0 | 3.2 | 3.8 | 3.8 | 11.8 | 1.7 | 0.2 | 0.2 | 1.9 | 2.5 | 4.6 | 8.4 | 100.0 | (476) |
| $\chi^2(df)$ | | | | | | | 55.537(52)(b)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74.7 | 4.5 | 1.7 | 1.7 | 2.8 | 2.8 | 2.2 | - | - | - | 0.6 | - | 2.8 | 6.2 | 100.0 | (178) |
| 유아부모 | 53.3 | 8.9 | 4.8 | 2.9 | 3.6 | 2.4 | 11.1 | 1.4 | 0.2 | 0.7 | 0.7 | 1.9 | 2.4 | 5.5 | 100.0 | (415) |
| 초등부모 | 34.5 | 7.6 | 6.4 | 2.6 | 4.5 | 4.3 | 14.5 | 3.1 | 1.9 | 1.0 | 3.3 | 4.5 | 4.8 | 6.9 | 100.0 | (420) |
| $\chi^2(df)$ | | | | | | | 115.779(26)*** (b)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아보호한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산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이통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 p < .05, *** p < .001.

(표 IV-4-2)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전체 | 6.9 | 13.9 | 6.2 | 6.9 | 10.5 | 8.0 | 12.4 | 4.6 | 1.9 | 2.5 | 3.9 | 3.9 | 6.0 | 12.2 | 100.0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 남성 | 6.8 | 12.6 | 7.9 | 6.1 | 11.3 | 10.2 | 11.3 | 5.0 | 2.3 | 2.9 | 4.7 | 4.3 | 4.7 | 9.9 | 100.0 | (443) |
| 여성 | 7.0 | 14.9 | 4.9 | 7.5 | 9.8 | 6.3 | 13.3 | 4.4 | 1.6 | 2.1 | 3.3 | 3.7 | 7.0 | 14.0 | 100.0 | (570) |
| $\chi^2(df)$ | | | | | | | 19.775(13) | | | | | | | | |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6.9 | 12.0 | 7.4 | 9.4 | 9.7 | 6.9 | 11.0 | 5.4 | 2.3 | 2.8 | 3.6 | 3.8 | 6.1 | 12.8 | 100.0 | (392) |
| 중소도시 | 7.9 | 14.0 | 5.5 | 5.7 | 10.7 | 8.5 | 13.1 | 4.6 | 1.1 | 2.2 | 4.4 | 4.4 | 6.8 | 11.4 | 100.0 | (458) |
| 읍면 | 4.3 | 18.4 | 5.5 | 4.3 | 11.7 | 9.2 | 14.1 | 3.1 | 3.1 | 2.5 | 3.7 | 3.1 | 3.7 | 13.5 | 100.0 | (163) |
| $\chi^2(df)$ | | | | | | | 24.183(26)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 | |
| 20대 | 7.1 | 35.7 | - | 7.1 | 7.1 | 7.1 | - | - | - | 7.1 | - | 14.3 | - | 14.3 | 100.0 | (14) |
| 30대 | 6.0 | 15.7 | 5.9 | 8.1 | 10.4 | 7.0 | 11.9 | 3.4 | 1.1 | 2.5 | 2.5 | 3.0 | 8.3 | 14.2 | 100.0 | (529) |
| 40대 이상 | 7.9 | 11.3 | 6.8 | 5.5 | 10.6 | 9.1 | 13.4 | 6.2 | 2.8 | 2.3 | 5.7 | 4.7 | 3.6 | 10.0 | 100.0 | (470) |
| $\chi^2(df)$ | | | | | | | 53.396(26)**(b) |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 취업 | 7.9 | 11.2 | 5.2 | 7.2 | 10.8 | 7.5 | 13.3 | 4.0 | 1.4 | 1.7 | 2.8 | 4.2 | 7.9 | 15.0 | 100.0 | (573) |
| 미취업 | 5.7 | 17.5 | 7.5 | 6.6 | 10.0 | 8.6 | 11.4 | 5.5 | 2.5 | 3.4 | 5.5 | 3.6 | 3.6 | 8.6 | 100.0 | (440) |
| $\chi^2(df)$ | | | | | | | 38.100(13)*** | | | | | | | |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 맞벌이 | 7.7 | 11.7 | 4.6 | 6.5 | 11.1 | 7.3 | 13.8 | 4.4 | 1.3 | 1.1 | 2.7 | 4.2 | 7.9 | 15.7 | 100.0 | (522) |
| 외벌이 | 6.1 | 16.3 | 7.9 | 7.3 | 9.8 | 8.8 | 11.0 | 4.9 | 2.4 | 3.9 | 5.3 | 3.7 | 4.1 | 8.6 | 100.0 | (491) |
| $\chi^2(df)$ | | | | | | | 42.762(13)***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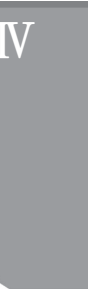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4.3 | - | 8.7 | 13.0 | 8.7 | 4.3 | 17.4 | 4.3 | 4.3 | 13.0 | 4.3 | - | 4.3 | 13.0 | 100.0 | (23) |
| 251~350만원 | 7.8 | 13.6 | 6.8 | 3.9 | 12.6 | 9.7 | 9.7 | 2.9 | 4.9 | 4.9 | 2.9 | 2.9 | 6.8 | 10.7 | 100.0 | (103) |
| 351~500만원 | 3.6 | 19.0 | 6.8 | 7.7 | 9.5 | 6.3 | 13.6 | 4.5 | 1.8 | 3.2 | 5.4 | 4.1 | 4.1 | 10.4 | 100.0 | (221) |
| 501~600만원 | 5.8 | 12.1 | 9.5 | 8.4 | 10.5 | 10.0 | 14.2 | 5.3 | 1.6 | - | 5.8 | 5.8 | 3.7 | 7.4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8.8 | 13.0 | 4.4 | 6.3 | 10.5 | 7.8 | 11.6 | 4.8 | 1.3 | 2.1 | 2.7 | 3.6 | 7.8 | 15.3 | 100.0 | (476) |
| $\chi^2(df)$ | 77.488(52)*(b) | | | | | |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6.2 | 26.4 | 5.6 | 8.4 | 11.2 | 4.5 | 6.7 | 3.4 | 0.6 | 1.7 | 2.2 | 1.7 | 9.0 | 12.4 | 100.0 | (178) |
| 유아부모 | 6.7 | 11.8 | 7.2 | 8.2 | 11.1 | 8.9 | 12.5 | 4.1 | 2.2 | 2.4 | 3.4 | 3.9 | 5.3 | 12.3 | 100.0 | (415) |
| 초등부모 | 7.4 | 10.7 | 5.5 | 5.0 | 9.5 | 8.6 | 14.8 | 5.7 | 2.1 | 2.9 | 5.2 | 5.0 | 5.5 | 12.1 | 100.0 | (420) |
| $\chi^2(df)$ | 54.737(26)** | | | | | |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총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4-3〉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1+2순위)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단위: %(명) 수 |
|-----------|------|------|------|------|------|------|------|------|------|------|-----|-----|------|-----|---------------|
| 전체 | 56.2 | 23.4 | 21.5 | 18.5 | 14.3 | 11.3 | 11.2 | 9.5 | 9.5 | 6.6 | 6.5 | 5.7 | 3.2 | 2.8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남성 | 57.8 | 21.0 | 22.1 | 14.9 | 14.9 | 13.1 | 12.9 | 7.9 | 7.9 | 8.1 | 6.1 | 6.5 | 3.6 | 3.2 | (443) |
| 여성 | 54.9 | 25.3 | 21.1 | 21.2 | 13.9 | 9.8 | 9.8 | 10.7 | 10.7 | 5.4 | 6.8 | 5.1 | 2.8 | 2.5 | (570)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대도시 | 54.3 | 20.9 | 21.2 | 19.9 | 13.5 | 8.9 | 12.8 | 11.0 | 11.2 | 6.4 | 7.1 | 6.1 | 4.1 | 2.6 | (392) |
| 중소도시 | 56.6 | 24.2 | 20.7 | 17.2 | 14.8 | 12.7 | 10.5 | 9.4 | 9.0 | 7.6 | 6.8 | 5.9 | 2.6 | 2.0 | (458) |
| 읍면 | 59.5 | 27.0 | 24.5 | 18.4 | 14.7 | 12.9 | 9.2 | 6.1 | 6.7 | 4.3 | 4.3 | 4.3 | 2.5 | 5.5 | (163) |
| 연령 | | | | | | | | | | | | | | | |
| 20대 | 85.7 | - | 50.0 | 14.3 | 7.1 | 7.1 | - | 7.1 | - | 14.3 | 7.1 | - | 7.1 | - | (14) |
| 30대 | 60.5 | 21.7 | 21.7 | 21.2 | 14.6 | 9.8 | 9.8 | 11.3 | 11.3 | 5.1 | 5.1 | 3.2 | 3.0 | 1.5 | (529) |
| 40대 이상 | 50.4 | 26.0 | 20.4 | 15.5 | 14.3 | 13.0 | 13.0 | 7.4 | 7.7 | 8.1 | 8.1 | 8.7 | 3.2 | 4.3 | (470)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취업 | 53.4 | 25.5 | 19.4 | 22.7 | 14.5 | 11.0 | 10.5 | 9.8 | 12.0 | 6.8 | 5.9 | 4.4 | 2.1 | 2.1 | (573) |
| 미취업 | 59.8 | 20.7 | 24.3 | 13.0 | 14.1 | 11.6 | 12.0 | 9.1 | 6.1 | 6.4 | 7.3 | 7.5 | 4.5 | 3.6 | (440)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맞벌이 | 53.1 | 26.2 | 19.2 | 23.8 | 14.8 | 11.1 | 9.4 | 9.2 | 11.9 | 7.1 | 6.5 | 4.4 | 1.5 | 1.9 | (522) |
| 외벌이 | 59.5 | 20.4 | 24.0 | 12.8 | 13.8 | 11.4 | 13.0 | 9.8 | 6.9 | 6.1 | 6.5 | 7.1 | 4.9 | 3.7 | (491)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65.2 | 26.1 | 4.3 | 17.4 | 8.7 | 4.3 | 13.0 | 13.0 | 8.7 | 8.7 | 4.3 | 4.3 | 13.0 | 8.7 | (23) |
| 251~350만원 | 58.3 | 17.5 | 22.3 | 16.5 | 15.5 | 13.6 | 14.6 | 6.8 | 8.7 | 5.8 | 3.9 | 3.9 | 6.8 | 5.8 | (103) |
| 351~500만원 | 56.6 | 24.4 | 26.7 | 13.1 | 14.5 | 9.0 | 13.1 | 9.0 | 7.2 | 5.9 | 7.7 | 5.9 | 4.1 | 2.7 | (221) |
| 501~600만원 | 57.4 | 25.3 | 17.9 | 12.6 | 14.2 | 12.6 | 13.7 | 11.1 | 5.3 | 8.9 | 6.8 | 9.5 | 1.1 | 3.7 | (190) |
| 601만원 이상 | 54.6 | 23.3 | 21.2 | 23.7 | 14.3 | 11.6 | 8.4 | 9.5 | 12.4 | 6.1 | 6.5 | 4.6 | 2.3 | 1.5 | (476)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수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80.9 | 9.0 | 30.9 | 18.5 | 14.0 | 7.3 | 7.3 | 10.1 | 11.8 | 1.7 | 3.4 | 2.8 | 1.7 | 0.6 | (178) |
| 유아부모 | 60.0 | 23.6 | 20.7 | 17.8 | 14.7 | 11.3 | 12.0 | 11.1 | 7.7 | 5.8 | 5.5 | 4.1 | 3.1 | 2.4 | (415) |
| 초등부모 | 41.9 | 29.3 | 18.3 | 19.0 | 14.0 | 12.9 | 11.9 | 7.6 | 10.2 | 9.5 | 8.8 | 8.6 | 3.8 | 4.0 | (420)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흡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2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진료체계 개선’ 12.8%, ‘유보통합’이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도입’은 1순위 기준으로 부모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되었는데, 부모급여를 성과가 큰 정책으로 선택하지 않는 부모들 중 일부가 부모급여를 성과가 작은 정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진료체계 개선’을 선택한 부모 중 여성(15.6%)이 남성(9.3%)보다 높았고, ‘유보통합’을 선택한 부모 중 여성(14.4%)이 남성(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중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진료체계 개선’ 및 ‘유보통합’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1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12.2%, ‘유보통합’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선택한 부모는 영아부모(15.2%), 유아부모(12.8%), 초등부모(11.2%)의 순으로 나타나, 영아부모일수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선택한 부모는 영아부모(16.3%), 유아부모(12.5%), 초등부모(10.2%)의 순으로 나타나, 영아부모일수록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부모일수록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유보통합’을 선택한 부모는 유아부모(11.3%), 초등부모(11.0%), 영아부모(5.1%)의 순으로 나타나 유아부모일수록 유보통합에 대해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4-4〉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1순위)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전체 | 20.0 | 10.1 | 12.8 | 12.4 | 4.5 | 3.8 | 5.5 | 5.5 | 2.0 | 3.3 | 3.7 | 4.7 | 5.8 | 5.7 | 1000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 남성 | 21.2 | 14.0 | 9.3 | 9.9 | 5.0 | 4.1 | 5.4 | 5.4 | 1.8 | 3.8 | 4.1 | 6.1 | 4.7 | 5.2 | 1000 | (443) |
| 여성 | 19.1 | 7.0 | 15.6 | 14.4 | 4.2 | 3.7 | 5.6 | 5.6 | 2.1 | 2.8 | 3.3 | 3.7 | 6.7 | 6.1 | 1000 | (570) |
| $\chi^2(df)$ | 31.197(13)** | | | | | | | | | | | | | | |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20.7 | 11.2 | 11.7 | 12.0 | 3.8 | 4.1 | 5.6 | 5.1 | 1.8 | 4.3 | 3.1 | 5.1 | 5.4 | 6.1 | 1000 | (392) |
| 중소도시 | 17.9 | 9.8 | 14.8 | 14.0 | 4.6 | 3.3 | 5.5 | 5.0 | 1.7 | 2.4 | 3.5 | 4.6 | 7.2 | 5.7 | 1000 | (459) |
| 읍면 | 24.5 | 8.0 | 9.8 | 9.2 | 6.1 | 4.9 | 5.5 | 8.0 | 3.1 | 3.1 | 5.5 | 4.3 | 3.1 | 4.9 | 1000 | (163) |
| $\chi^2(df)$ | 23.557(26) | | | | |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 | |
| 20대 | 14.3 | 14.3 | - | 14.3 | - | - | 7.1 | 7.1 | 7.1 | - | - | 7.1 | 7.1 | 21.4 | 1000 | (14) |
| 30대 | 20.6 | 9.8 | 11.9 | 14.2 | 4.5 | 4.0 | 4.7 | 5.1 | 2.1 | 3.2 | 2.8 | 4.3 | 7.2 | 5.5 | 1000 | (529) |
| 40대 이상 | 19.6 | 10.2 | 14.3 | 10.4 | 4.7 | 3.8 | 6.4 | 6.0 | 1.7 | 3.4 | 4.7 | 5.1 | 4.3 | 5.5 | 1000 | (470) |
| $\chi^2(df)$ | 25.037(26)(b) | | | | | | |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 취업 | 21.5 | 10.3 | 13.4 | 11.7 | 4.4 | 4.4 | 6.5 | 4.5 | 1.9 | 3.5 | 3.5 | 4.0 | 4.7 | 5.8 | 1000 | (573) |
| 미취업 | 18.2 | 9.8 | 12.0 | 13.4 | 4.8 | 3.2 | 4.3 | 6.8 | 2.0 | 3.0 | 3.9 | 5.7 | 7.3 | 5.7 | 1000 | (440) |
| $\chi^2(df)$ | 12.369(13) | | | | | | | | | | | | |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 맞벌이 | 22.0 | 9.4 | 12.6 | 12.5 | 4.4 | 4.4 | 6.9 | 4.2 | 1.9 | 3.4 | 3.6 | 3.8 | 5.0 | 5.7 | 1000 | (522) |
| 외벌이 | 17.9 | 10.8 | 13.0 | 12.4 | 4.7 | 3.3 | 4.1 | 6.9 | 2.0 | 3.1 | 3.7 | 5.7 | 6.7 | 5.7 | 1000 | (491) |
| $\chi^2(df)$ | | | | | | | 13.902(13) | | | | | | | |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39.1 | 8.7 | 4.3 | - | 13.0 | 8.7 | 4.3 | 4.3 | 4.3 | 4.3 | 4.3 | 4.3 | - | - | 1000 | (23) |
| 251~350만원 | 17.5 | 12.6 | 13.6 | 12.6 | 3.9 | 2.9 | 1.9 | 6.8 | 2.9 | 3.9 | 2.9 | 3.9 | 8.7 | 5.8 | 1000 | (100) |
| 351~500만원 | 17.6 | 11.8 | 13.6 | 12.2 | 3.6 | 3.2 | 4.1 | 6.8 | 1.8 | 2.7 | 3.2 | 5.9 | 6.8 | 6.8 | 1000 | (221) |
| 501~600만원 | 15.3 | 7.4 | 13.7 | 15.8 | 4.7 | 3.2 | 6.8 | 6.3 | 1.6 | 3.2 | 4.7 | 4.2 | 5.3 | 7.9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22.7 | 9.9 | 12.4 | 11.8 | 4.6 | 4.4 | 6.5 | 4.4 | 1.9 | 3.4 | 3.6 | 4.6 | 5.3 | 4.6 | 1000 | (476) |
| $\chi^2(df)$ | | | | | | | 43.306(52)(b)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17.4 | 11.2 | 14.6 | 11.2 | 5.1 | 2.8 | 5.1 | 7.9 | 1.1 | 2.8 | 1.7 | 2.8 | 7.3 | 9.0 | 1000 | (178) |
| 유아부모 | 18.6 | 10.6 | 12.5 | 13.0 | 4.3 | 4.6 | 4.1 | 6.0 | 1.9 | 3.4 | 3.6 | 7.0 | 6.0 | 4.3 | 1000 | (415) |
| 초등부모 | 22.6 | 9.0 | 12.4 | 12.4 | 4.5 | 3.6 | 7.1 | 4.0 | 2.4 | 3.3 | 4.5 | 3.3 | 5.0 | 5.7 | 1000 | (420) |
| $\chi^2(df)$ | | | | | | | 29.985(26)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산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표 IV-4-5〉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2순위)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전체 | 3.0 | 4.6 | 6.1 | 10.1 | 6.2 | 7.3 | 8.5 | 6.0 | 4.5 | 5.2 | 5.6 | 8.0 | 12.2 | 12.5 | 1000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 남성 | 2.0 | 6.3 | 5.4 | 10.4 | 6.8 | 7.7 | 6.8 | 5.6 | 4.3 | 5.9 | 6.1 | 9.3 | 13.5 | 9.9 | 1000 | (443) |
| 여성 | 3.7 | 3.3 | 6.7 | 9.8 | 5.8 | 7.0 | 9.8 | 6.3 | 4.7 | 4.7 | 5.3 | 7.0 | 11.2 | 14.6 | 1000 | (570) |
| $\chi^2(df)$ | 19.204(13) | | | | | | | | | | | | | | |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3.1 | 4.6 | 5.4 | 10.2 | 5.1 | 6.4 | 8.2 | 6.9 | 4.3 | 5.4 | 6.1 | 8.4 | 13.5 | 12.5 | 1000 | (392) |
| 중소도시 | 2.6 | 4.1 | 6.8 | 9.2 | 6.3 | 8.1 | 9.2 | 5.0 | 5.5 | 5.7 | 6.1 | 7.6 | 11.1 | 12.7 | 1000 | (458) |
| 읍면 | 3.7 | 6.1 | 6.1 | 12.3 | 8.6 | 7.4 | 7.4 | 6.7 | 2.5 | 3.7 | 3.1 | 8.0 | 12.3 | 12.3 | 1000 | (163) |
| $\chi^2(df)$ | 15.191(26) | | | | |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 | |
| 20대 | - | 7.1 | - | 14.3 | - | 14.3 | - | 7.1 | - | 7.1 | - | 28.6 | 14.3 | 7.1 | 1000 | (14) |
| 30대 | 2.8 | 5.1 | 6.8 | 9.8 | 4.9 | 5.1 | 8.3 | 5.9 | 4.9 | 5.9 | 6.4 | 7.8 | 13.4 | 12.9 | 1000 | (529) |
| 40대 이상 | 3.2 | 4.0 | 5.5 | 10.2 | 7.9 | 9.6 | 8.9 | 6.2 | 4.3 | 4.5 | 4.9 | 7.7 | 10.9 | 12.3 | 1000 | (470) |
| $\chi^2(df)$ | 29.699(26)(b) | | | | | | |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 취업 | 3.5 | 5.1 | 5.9 | 10.5 | 5.6 | 6.5 | 8.4 | 6.6 | 3.8 | 6.1 | 5.9 | 8.0 | 11.3 | 12.7 | 1000 | (573) |
| 미취업 | 2.3 | 4.1 | 6.4 | 9.5 | 7.0 | 8.4 | 8.6 | 5.2 | 5.5 | 4.1 | 5.2 | 8.0 | 13.4 | 12.3 | 1000 | (440) |
| $\chi^2(df)$ | 9.524(13) | | | | | | | | | | | | |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 맞벌이 | 3.6 | 4.6 | 5.9 | 10.3 | 5.4 | 6.9 | 9.0 | 6.9 | 3.8 | 6.1 | 5.9 | 8.2 | 10.5 | 12.6 | 1000 | (522) |
| 외벌이 | 2.2 | 4.7 | 6.3 | 9.8 | 7.1 | 7.7 | 7.9 | 5.1 | 5.3 | 4.3 | 5.3 | 7.7 | 14.1 | 12.4 | 1000 | (491) |
| $\chi^2(df)$ | | | | | | | 10.719(13) | | | | | | | |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8.7 | 4.3 | 8.7 | 8.7 | 4.3 | 13.0 | - | 4.3 | - | 13.0 | 4.3 | 4.3 | 8.7 | 17.4 | 1000 | (23) |
| 251~350만원 | 3.9 | 1.9 | 4.9 | 12.6 | 6.8 | 7.8 | 9.7 | 5.8 | 3.9 | 3.9 | 4.9 | 5.8 | 15.5 | 12.6 | 1000 | (103) |
| 351~500만원 | 0.9 | 6.8 | 6.8 | 10.4 | 5.4 | 6.3 | 8.1 | 5.4 | 4.1 | 3.2 | 4.1 | 10.0 | 14.9 | 13.6 | 1000 | (221) |
| 501~600만원 | 4.7 | 4.7 | 4.7 | 10.5 | 8.4 | 6.3 | 8.9 | 5.3 | 5.3 | 5.8 | 7.4 | 4.7 | 11.6 | 11.6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2.7 | 4.2 | 6.5 | 9.2 | 5.7 | 7.8 | 8.6 | 6.7 | 4.8 | 5.9 | 5.9 | 9.0 | 10.7 | 12.2 | 1000 | (476) |
| $\chi^2(df)$ | | | | | | | 40.071(52)(b)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1.7 | 6.7 | 5.1 | 5.1 | 5.6 | 5.6 | 3.9 | 4.5 | 5.6 | 4.5 | 8.4 | 11.8 | 16.3 | 15.2 | 1000 | (178) |
| 유아부모 | 2.4 | 4.6 | 8.2 | 11.3 | 5.3 | 6.0 | 7.0 | 7.2 | 4.8 | 5.3 | 4.1 | 8.4 | 12.5 | 12.8 | 1000 | (415) |
| 초등부모 | 4.0 | 3.8 | 4.5 | 11.0 | 7.4 | 9.3 | 11.9 | 5.5 | 3.8 | 5.5 | 6.0 | 6.0 | 10.2 | 11.2 | 1000 | (420) |
| $\chi^2(df)$ | | | | | | | 50.851(26)** | | | | | | | | | |

주: ①부모급여도입 ②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유보통합 ⑤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충만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아동학대 방지
 ⑨발달장애인 지원 ⑩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교통안전 ⑬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표 IV-4-6〉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1+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 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
| 전체 | 23.0 | 22.5 | 19.0 | 18.3 | 18.1 | 14.7 | 14.0 | 12.7 | 11.5 | 11.2 | 10.8 | 9.3 | 8.5 | 6.5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남성 | 23.3 | 20.3 | 14.7 | 15.1 | 18.3 | 20.3 | 12.2 | 15.3 | 11.1 | 11.7 | 11.7 | 10.2 | 9.7 | 6.1 | (443) |
| 여성 | 22.8 | 24.2 | 22.3 | 20.7 | 17.9 | 10.4 | 15.4 | 10.7 | 11.9 | 10.7 | 10.0 | 8.6 | 7.5 | 6.8 | (570)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대도시 | 23.7 | 22.2 | 17.1 | 18.6 | 18.9 | 15.8 | 13.8 | 13.5 | 12.0 | 10.5 | 8.9 | 9.2 | 9.7 | 6.1 | (392) |
| 중소도시 | 20.5 | 23.1 | 21.6 | 18.3 | 18.3 | 14.0 | 14.6 | 12.2 | 10.0 | 11.4 | 10.9 | 9.6 | 8.1 | 7.2 | (458) |
| 읍면 | 28.2 | 21.5 | 16.0 | 17.2 | 15.3 | 14.1 | 12.9 | 12.3 | 14.7 | 12.3 | 14.7 | 8.6 | 6.7 | 5.5 | (163) |
| 연령 | | | | | | | | | | | | | | | |
| 20대 | 14.3 | 28.6 | - | 28.6 | 21.4 | 21.4 | 7.1 | 35.7 | 14.3 | 14.3 | - | - | 7.1 | 7.1 | (14) |
| 30대 | 23.4 | 24.0 | 18.7 | 18.3 | 20.6 | 14.9 | 13.0 | 12.1 | 11.0 | 9.1 | 9.5 | 9.3 | 9.1 | 7.0 | (529) |
| 40대 이상 | 22.8 | 20.6 | 19.8 | 17.9 | 15.1 | 14.3 | 15.3 | 12.8 | 12.1 | 13.4 | 12.6 | 9.6 | 7.9 | 6.0 | (470)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취업 | 25.0 | 22.2 | 19.4 | 18.5 | 16.1 | 15.4 | 14.8 | 12.0 | 11.2 | 10.8 | 9.9 | 9.4 | 9.6 | 5.8 | (573) |
| 미취업 | 20.5 | 23.0 | 18.4 | 18.0 | 20.7 | 13.9 | 13.0 | 13.6 | 12.0 | 11.6 | 11.8 | 9.1 | 7.0 | 7.5 | (440)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맞벌이 | 25.7 | 22.8 | 18.6 | 18.4 | 15.5 | 14.0 | 15.9 | 12.1 | 11.1 | 11.3 | 9.8 | 9.6 | 9.6 | 5.7 | (522) |
| 외벌이 | 20.2 | 22.2 | 19.3 | 18.1 | 20.8 | 15.5 | 12.0 | 13.4 | 12.0 | 11.0 | 11.8 | 9.0 | 7.3 | 7.3 | (491)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수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47.8 | 8.7 | 13.0 | 17.4 | 8.7 | 13.0 | 4.3 | 8.7 | 8.7 | 21.7 | 17.4 | 8.7 | 17.4 | 4.3 | (23) |
| 251~350만원 | 21.4 | 25.2 | 18.4 | 18.4 | 24.3 | 14.6 | 11.7 | 9.7 | 12.6 | 10.7 | 10.7 | 7.8 | 7.8 | 6.8 | (103) |
| 351~500만원 | 18.6 | 22.6 | 20.4 | 20.4 | 21.7 | 18.6 | 12.2 | 15.8 | 12.2 | 9.5 | 9.0 | 7.2 | 5.9 | 5.9 | (221) |
| 501~600만원 | 20.0 | 26.3 | 18.4 | 19.5 | 16.8 | 12.1 | 15.8 | 8.9 | 11.6 | 9.5 | 13.2 | 12.1 | 8.9 | 6.8 | (190) |
| 601만원 이상 | 25.4 | 21.0 | 18.9 | 16.8 | 16.0 | 14.1 | 15.1 | 13.7 | 11.1 | 12.2 | 10.3 | 9.5 | 9.2 | 6.7 | (476)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19.1 | 16.3 | 19.7 | 24.2 | 23.6 | 18.0 | 9.0 | 14.6 | 12.4 | 8.4 | 10.7 | 10.1 | 7.3 | 6.7 | (178) |
| 유아부모 | 21.0 | 24.3 | 20.7 | 17.1 | 18.6 | 15.2 | 11.1 | 15.4 | 13.3 | 10.6 | 9.6 | 7.7 | 8.7 | 6.7 | (415) |
| 초등부모 | 26.7 | 23.3 | 16.9 | 16.9 | 15.2 | 12.9 | 19.0 | 9.3 | 9.5 | 12.9 | 11.9 | 10.5 | 8.8 | 6.2 | (420)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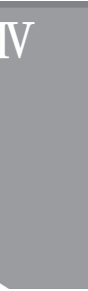
3)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3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 진료체계 개선' 10.5%,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성별 기준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46.0%)이 여성(27.5%)보다 부모급여를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부모 연령별로는 20대(71.4%), 30대(39.7%), 40대 이상(30.0%)로 나타나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33.5%), 미취업(38.4%)로 나타나, 미취업일수록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33.5%), 외벌이(37.9%)로 나타나, 외벌이일수록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251~350만원(47.8%)에서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는 영아부모(49.4%), 유아부모(40.5%), 초등부모(25.0%)로 나타나, 영아부모일수록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급여가 영아 대상 현금지원 정책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영아 부모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1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5.3%,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2순위로 선택한 응답 역시 여성(14.7%)이 남성(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선택한 부모는 영아부모(19.1%)가 유아부모(14.5%) 및 초등부모(14.5%)보다 높게 나타나, 영아부모일수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선택한 부모 역시 영아부모(14.6%)가 유아부모(11.3%) 및 초등부모(11.9%)보다 높게 나타나, 영아부모일수록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부모 특히 어머니일수록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7〉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1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전체 | 35.6 | 10.4 | 10.5 | 3.0 | 6.3 | 8.9 | 7.0 | 1.7 | 1.9 | 1.7 | 0.9 | 0.7 | 5.4 | 6.1 | 1000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 남성 | 46.0 | 13.3 | 8.6 | 2.3 | 5.2 | 6.8 | 6.3 | 0.9 | 0.9 | 1.4 | 1.4 | 0.2 | 2.3 | 4.5 | 1000 | (443) |
| 여성 | 27.5 | 8.1 | 11.9 | 3.5 | 7.2 | 10.5 | 7.5 | 2.3 | 2.6 | 1.9 | 0.5 | 1.1 | 7.9 | 7.4 | 1000 | (570)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35.2 | 10.5 | 11.5 | 3.1 | 7.9 | 8.4 | 5.1 | 0.8 | 2.0 | 1.5 | 0.5 | 0.3 | 6.6 | 6.6 | 1000 | (392) |
| 중소도시 | 35.4 | 10.5 | 9.0 | 3.3 | 5.5 | 9.4 | 8.1 | 2.2 | 1.5 | 1.3 | 1.3 | 1.1 | 5.0 | 6.6 | 1000 | (488) |
| 읍면 | 37.4 | 9.8 | 12.3 | 1.8 | 4.9 | 8.6 | 8.6 | 2.5 | 2.5 | 3.1 | 0.6 | 0.6 | 3.7 | 3.7 | 1000 | (163)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 | |
| 20대 | 71.4 | 7.1 | 7.1 | - | - | 14.3 | - | - | - | - | - | - | - | - | 1000 | (14) |
| 30대 | 39.7 | 9.5 | 8.3 | 3.8 | 5.9 | 7.8 | 6.6 | 1.1 | 1.3 | 1.5 | - | 0.8 | 6.6 | 7.2 | 1000 | (529) |
| 40대 이상 | 30.0 | 11.5 | 13.0 | 2.1 | 7.0 | 10.0 | 7.7 | 2.3 | 2.6 | 1.9 | 1.9 | 0.6 | 4.3 | 5.1 | 1000 | (470)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 취업 | 33.5 | 9.6 | 8.4 | 3.1 | 6.6 | 9.2 | 8.6 | 1.6 | 1.7 | 1.6 | 0.7 | 1.0 | 6.6 | 7.7 | 1000 | (573) |
| 미취업 | 38.4 | 11.4 | 13.2 | 2.7 | 5.9 | 8.4 | 5.0 | 1.8 | 2.0 | 1.8 | 1.1 | 0.2 | 3.9 | 4.1 | 1000 | (440)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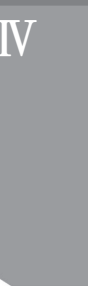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 맞벌이 | 33.5 | 8.6 | 8.4 | 3.4 | 7.3 | 9.6 | 8.4 | 1.7 | 1.7 | 1.0 | 0.8 | 0.8 | 6.3 | 8.4 | 1000 | (522) |
| 외벌이 | 37.9 | 12.2 | 12.6 | 2.4 | 5.3 | 8.1 | 5.5 | 1.6 | 2.0 | 2.4 | 1.0 | 0.6 | 4.5 | 3.7 | 1000 | (491) |
| $\chi^2(df)$ | 29.596(13)** | | | | | | | | | | | | | |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47.8 | 4.3 | - | - | 4.3 | - | 8.7 | - | 8.7 | 17.4 | - | 8.7 | - | - | 1000 | (23) |
| 251~350만원 | 35.0 | 12.6 | 11.7 | 2.9 | 6.8 | 10.7 | 5.8 | - | 2.9 | 1.0 | - | 1.0 | 6.8 | 2.9 | 1000 | (103) |
| 351~500만원 | 37.6 | 13.1 | 15.8 | 0.9 | 4.5 | 8.6 | 5.0 | 1.4 | 0.9 | 0.9 | 0.9 | 0.5 | 3.6 | 6.3 | 1000 | (221) |
| 501~600만원 | 35.8 | 8.4 | 8.9 | 5.3 | 6.3 | 10.0 | 5.8 | 2.6 | 2.6 | 2.1 | 0.5 | - | 6.3 | 5.3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34.2 | 9.7 | 8.8 | 3.2 | 7.1 | 8.6 | 8.6 | 1.9 | 1.5 | 1.3 | 1.3 | 0.6 | 5.9 | 7.4 | 1000 | (476) |
| $\chi^2(df)$ | 111.704(52)*** (b) | | | | | | | | | | | | | | | |
| 차별여 기준 |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49.4 | 10.7 | 6.7 | 4.5 | 6.2 | 3.4 | 1.1 | 1.1 | - | 0.6 | - | - | 9.6 | 6.7 | 1000 | (178) |
| 유아부모 | 40.5 | 10.4 | 10.8 | 2.9 | 5.1 | 8.0 | 6.3 | 1.4 | 1.7 | 1.9 | 0.5 | 0.2 | 4.8 | 5.5 | 1000 | (415) |
| 초등부모 | 25.0 | 10.2 | 11.7 | 2.4 | 7.6 | 12.1 | 10.2 | 2.1 | 2.9 | 1.9 | 1.7 | 1.4 | 4.3 | 6.4 | 1000 | (420) |
| $\chi^2(df)$ | 85.973(26)*** (b) | | | | | |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산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4-8〉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전체 | 4.8 | 7.1 | 6.1 | 5.3 | 9.1 | 16.1 | 9.1 | 5.1 | 2.9 | 2.3 | 1.9 | 2.8 | 12.1 | 15.3 | 1000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 남성 | 6.5 | 7.9 | 5.9 | 7.7 | 8.4 | 15.3 | 10.8 | 4.5 | 3.6 | 2.9 | 2.9 | 3.4 | 8.8 | 11.3 | 1000 | (443) |
| 여성 | 3.5 | 6.5 | 6.3 | 3.5 | 9.6 | 16.7 | 7.7 | 5.6 | 2.3 | 1.8 | 1.1 | 2.3 | 14.7 | 18.4 | 1000 | (570)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30(13)***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 대도시 | 5.6 | 7.9 | 7.7 | 5.6 | 8.7 | 14.0 | 8.2 | 5.6 | 3.3 | 2.8 | 2.3 | 2.6 | 13.0 | 12.8 | 1000 | (392) |
| 중소도시 | 3.3 | 5.7 | 5.5 | 4.8 | 10.3 | 16.4 | 10.0 | 4.8 | 2.8 | 2.2 | 1.7 | 3.7 | 11.6 | 17.2 | 1000 | (488) |
| 읍면 | 7.4 | 9.2 | 4.3 | 6.1 | 6.7 | 20.2 | 8.6 | 4.9 | 1.8 | 1.2 | 1.2 | 0.6 | 11.7 | 16.0 | 1000 | (163)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23(26) |
| 연령 | | | | | | | | | | | | | | | | |
| 20대 | 7.1 | 14.3 | - | - | - | 42.9 | - | - | - | - | - | 7.1 | 7.1 | 21.4 | 1000 | (14) |
| 30대 | 4.3 | 8.1 | 6.8 | 4.9 | 9.8 | 14.9 | 7.9 | 4.7 | 3.2 | 1.3 | 0.9 | 1.7 | 14.4 | 16.8 | 1000 | (529) |
| 40대 이상 | 5.3 | 5.7 | 5.5 | 6.0 | 8.5 | 16.6 | 10.6 | 5.7 | 2.6 | 3.4 | 3.0 | 3.8 | 9.8 | 13.4 | 1000 | (470)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998(26)*(b)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 취업 | 4.4 | 5.6 | 4.9 | 5.1 | 8.6 | 15.9 | 9.8 | 4.9 | 3.1 | 2.1 | 1.2 | 2.8 | 15.7 | 16.1 | 1000 | (573) |
| 미취업 | 5.5 | 9.1 | 7.7 | 5.7 | 9.8 | 16.4 | 8.2 | 5.5 | 2.5 | 2.5 | 2.7 | 2.7 | 7.5 | 14.3 | 1000 | (440) |
| $\chi^2(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521(13)*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계 | 수 |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 맞벌이 | 3.6 | 5.4 | 4.8 | 5.0 | 9.2 | 16.1 | 10.5 | 5.2 | 3.1 | 1.9 | 1.1 | 2.7 | 15.1 | 16.3 | 1000 | (522) |
| 외벌이 | 6.1 | 9.0 | 7.5 | 5.7 | 9.0 | 16.1 | 7.5 | 5.1 | 2.6 | 2.6 | 2.6 | 2.9 | 9.0 | 14.3 | 1000 | (491) |
| $\chi^2(df)$ | | | | | 26.115(13)* | | | | | | | | | |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13.0 | 8.7 | 8.7 | 8.7 | 8.7 | 21.7 | 8.7 | - | - | 8.7 | - | - | 8.7 | 4.3 | 1000 | (23) |
| 251~350만원 | 5.8 | 6.8 | 7.8 | 4.9 | 6.8 | 13.6 | 6.8 | 8.7 | 2.9 | 2.9 | 4.9 | 1.9 | 7.8 | 18.4 | 1000 | (103) |
| 351~500만원 | 8.1 | 10.9 | 6.8 | 3.6 | 8.1 | 14.9 | 10.0 | 5.0 | 2.7 | 2.7 | 1.4 | 1.8 | 10.9 | 13.1 | 1000 | (221) |
| 501~600만원 | 3.7 | 6.3 | 6.8 | 7.4 | 12.1 | 17.4 | 10.0 | 4.2 | 3.7 | 1.1 | 1.1 | 4.2 | 10.5 | 11.6 | 1000 | (190) |
| 601만원 이상 | 3.2 | 5.7 | 5.0 | 5.3 | 8.8 | 16.4 | 8.8 | 5.0 | 2.7 | 2.1 | 1.9 | 2.9 | 14.5 | 17.6 | 1000 | (476) |
| $\chi^2(df)$ | | | | | | 59.788(52)(b) | | | | | | | | | |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4.5 | 11.8 | 5.6 | 4.5 | 9.6 | 15.2 | 6.2 | 3.4 | 1.1 | 1.1 | 1.7 | 1.7 | 14.6 | 19.1 | 1000 | (178) |
| 유아부모 | 4.8 | 6.7 | 5.8 | 7.7 | 10.4 | 14.9 | 9.6 | 4.8 | 4.6 | 1.9 | 1.0 | 1.9 | 11.3 | 14.5 | 1000 | (415) |
| 초등부모 | 5.0 | 5.5 | 6.7 | 3.3 | 7.6 | 17.6 | 9.8 | 6.2 | 1.9 | 3.1 | 2.9 | 4.0 | 11.9 | 14.5 | 1000 | (420) |
| $\chi^2(df)$ | | | | | | 43.779(26)* |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4-9〉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1+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
| 전체 | 40.5 | 25.0 | 21.4 | 17.6 | 17.5 | 16.6 | 16.1 | 15.4 | 8.3 | 6.8 | 4.7 | 3.9 | 3.5 | 2.8 | (1,013) |
| 성별 | | | | | | | | | | | | | | | |
| 남성 | 52.6 | 22.1 | 15.8 | 11.1 | 21.2 | 14.4 | 17.2 | 13.5 | 9.9 | 5.4 | 4.5 | 4.3 | 3.6 | 4.3 | (443) |
| 여성 | 31.1 | 27.2 | 25.8 | 22.6 | 14.6 | 18.2 | 15.3 | 16.8 | 7.0 | 7.9 | 4.9 | 3.7 | 3.3 | 1.6 | (570) |
| 지역구분 | | | | | | | | | | | | | | | |
| 대도시 | 40.8 | 22.4 | 19.4 | 19.6 | 18.4 | 19.1 | 13.3 | 16.6 | 8.7 | 6.4 | 5.4 | 4.3 | 2.8 | 2.8 | (392) |
| 중소도시 | 38.6 | 25.8 | 23.8 | 16.6 | 16.2 | 14.4 | 18.1 | 15.7 | 8.1 | 7.0 | 4.4 | 3.5 | 4.8 | 3.1 | (458) |
| 읍면 | 44.8 | 28.8 | 19.6 | 15.3 | 19.0 | 16.6 | 17.2 | 11.7 | 8.0 | 7.4 | 4.3 | 4.3 | 1.2 | 1.8 | (163) |
| 연령 | | | | | | | | | | | | | | | |
| 20대 | 78.6 | 57.1 | 21.4 | 7.1 | 21.4 | 7.1 | - | - | - | - | - | - | 7.1 | - | (14) |
| 30대 | 44.0 | 22.7 | 24.0 | 21.0 | 17.6 | 15.1 | 14.6 | 15.7 | 8.7 | 5.9 | 4.5 | 2.8 | 2.5 | 0.9 | (529) |
| 40대 이상 | 35.3 | 26.6 | 18.5 | 14.0 | 17.2 | 18.5 | 18.3 | 15.5 | 8.1 | 8.1 | 5.1 | 5.3 | 4.5 | 4.9 | (470) |
| 취업 여부 | | | | | | | | | | | | | | | |
| 취업 | 37.9 | 25.1 | 23.7 | 22.3 | 15.2 | 13.3 | 18.3 | 15.2 | 8.2 | 6.5 | 4.9 | 3.7 | 3.8 | 1.9 | (573) |
| 미취업 | 43.9 | 24.8 | 18.4 | 11.4 | 20.5 | 20.9 | 13.2 | 15.7 | 8.4 | 7.3 | 4.5 | 4.3 | 3.0 | 3.9 | (440) |
| 맞벌이 여부 | | | | | | | | | | | | | | | |
| 맞벌이 | 37.2 | 25.7 | 24.7 | 21.5 | 14.0 | 13.2 | 19.0 | 16.5 | 8.4 | 6.9 | 4.8 | 2.9 | 3.4 | 1.9 | (522) |
| 외벌이 | 44.0 | 24.2 | 17.9 | 13.4 | 21.2 | 20.2 | 13.0 | 14.3 | 8.1 | 6.7 | 4.7 | 5.1 | 3.5 | 3.7 | (491)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수 |
|-----------|------|------|------|------|------|------|------|------|------|-----|-----|------|-----|-----|--------|
|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250만원 이하 | 60.9 | 21.7 | 4.3 | 8.7 | 13.0 | 8.7 | 17.4 | 13.0 | 8.7 | - | 8.7 | 26.1 | 8.7 | - | (23) |
| 251~350만원 | 40.8 | 24.3 | 21.4 | 14.6 | 19.4 | 19.4 | 12.6 | 13.6 | 7.8 | 8.7 | 5.8 | 3.9 | 2.9 | 4.9 | (103) |
| 351~500만원 | 45.7 | 23.5 | 19.5 | 14.5 | 24.0 | 22.6 | 14.9 | 12.7 | 4.5 | 6.3 | 3.6 | 3.6 | 2.3 | 2.3 | (221) |
| 501~600만원 | 39.5 | 27.4 | 16.8 | 16.8 | 14.7 | 15.8 | 15.8 | 18.4 | 12.6 | 6.8 | 6.3 | 3.2 | 4.2 | 1.6 | (190) |
| 601만원 이상 | 37.4 | 25.0 | 25.0 | 20.4 | 15.3 | 13.9 | 17.4 | 16.0 | 8.4 | 6.9 | 4.2 | 3.4 | 3.6 | 3.2 | (476) |
| 첫째아 기준 | | | | | | | | | | | | | | | |
| 영아부모 | 53.9 | 18.5 | 25.8 | 24.2 | 22.5 | 12.4 | 7.3 | 15.7 | 9.0 | 4.5 | 1.1 | 1.7 | 1.7 | 1.7 | (178) |
| 유아부모 | 45.3 | 22.9 | 20.0 | 16.1 | 17.1 | 16.6 | 15.9 | 15.4 | 10.6 | 6.3 | 6.3 | 3.9 | 2.2 | 1.4 | (415) |
| 초등부모 | 30.0 | 29.8 | 21.0 | 16.2 | 15.7 | 18.3 | 20.0 | 15.2 | 5.7 | 8.3 | 4.8 | 5.0 | 5.5 | 4.5 | (420)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모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생아 등록률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나. 전문가 조사

1)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정책과제들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 1순위로 ①부모급여도입을 꼽았으며 ④유보통합, ⑦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순으로 선택하였다. 전공, 직종, 전문분야, 경력 등 모든 변인에서 ①부모급여도입을 성과가 가장 큰 육아정책 1순위로 나왔다.

〈표 IV-4-10〉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1순위)

| | | | | | | | | | | | 단위: %(명)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수) |
| 전체 | 46.0 | 6.0 | 2.0 | 18.0 | 2.0 | 2.0 | 10.0 | 2.0 | 6.0 | 6.0 | 100.0 (50) |
| 전공 | | | | | | | | | | | |
| 유아교육 | 42.1 | 10.5 | - | 31.6 | - | - | 5.3 | - | - | 10.5 | 100.0 (19) |
| 보육 | 42.1 | 5.3 | 5.3 | 10.5 | 5.3 | 5.3 | 15.8 | - | 10.5 | - | 100.0 (19) |
| 기타 | 58.3 | - | - | 8.3 | - | - | 8.3 | 8.3 | 8.3 | 8.3 | 100.0 (12) |
| $\chi^2(df)$ | | | | | | | | | | | 18.020(18)(b) |
| 직종 | | | | | | | | | | | |
| 대학 교수 | 42.2 | 6.7 | 2.2 | 20.0 | 2.2 | 2.2 | 8.9 | 2.2 | 6.7 | 6.7 | 10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 | 100.0 | - | - | - | 100.0 (1) |
| 현장전문가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 (1) |
| 기타전문가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 (3) |
| $\chi^2(df)$ | | | | | | | | | | | 14.135(27)(b) |
| 전문분야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48.1 | 11.1 | 3.7 | 22.2 | - | - | 3.7 | - | - | 11.1 | 100.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40.0 | - | - | 13.3 | 6.7 | 6.7 | 20.0 | - | 13.3 | - | 100.0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50.0 | - | - | 12.5 | - | - | 12.5 | 12.5 | 12.5 | - | 100.0 (8) |
| $\chi^2(df)$ | | | | | | | | | | | 22.783(18)(b)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5~10년 미만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 (1) |
| 10~15년 미만 | 20.0 | 20.0 | - | 20.0 | - | - | 20.0 | - | 20.0 | - | 100.0 (5) |
| 15~20년 미만 | 27.3 | 9.1 | - | 9.1 | 9.1 | 9.1 | 9.1 | - | 9.1 | 18.2 | 100.0 (11) |
| 20년 이상 | 54.5 | 3.0 | 3.0 | 21.2 | - | - | 9.1 | 3.0 | 3.0 | 3.0 | 100.0 (33) |
| $\chi^2(df)$ | | | | | | | | | | | 20.627(27)(b)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
 초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⑨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전체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1순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도입」은 0세와 1세의 최선의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하는 가정을 위해 양육의 물적 지원을 국가적으로 적극 개입한 것임, 부모가 영아를 기관에 보내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됨, 출산예정 가정에 실질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고 심적 안정감 제공효과 큼,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어 아동 양육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어린 아동을 둔 가정일수록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지원이 필요함, 아이 양육으로 당장 돈 쓸 곳이 많은 부모에게 부모급여라는 현금 지원은 효용성이 높고, 이로 인한 정책 지원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등이 제시되었다.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이나 단계적 유보 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게 판단함, 유보통합의 방향성 천명, 교육과정 통합에 이어 주무부처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것 등을 제시하였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을 결정한 점,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의 문제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웰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반면, 영유아 돌봄에 비해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덜 강조된 주제라는 점, 학교내 늘봄학교 도입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 사교육비 절감 등 국가의 교육, 돌봄을 위한 책임이 강화됨, 가시적으로 정책 실행이 눈에 보임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4-11〉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 선택 이유: 1순위

| 정책 | 선택 이유 |
|---------|---|
| 부모급여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기준에 맞추어 지원하므로 수혜자의 만족도가 큼 - 점차 부모급여를 늘려가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보육 교육 시설을 보내는데 부담을 줄여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 0세와 1세의 최선의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하는 가정을 위해 양육의 물적 지원을 국가적으로 적극 개입한 것임 -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꺼리는 원인 중 가장 영향이 높은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함. 부모급여의 대폭적인 확대에 대한 반발이 있겠지만 다른 해결방안도 그다지 긍정적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급여의 확대가 실효적 성과가 있다 |

| 정책 | 선택 이유 |
|------|--|
| | <p>고 봄. 특히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자녀출산을 선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계층에게는 부모급여가 출산의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영아를 기관에 보내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됨 - 부모급여 집행율, 이행율 높음. - 부모들은 현금성 지원에 만족도가 높으므로 - 출산예정 가정에 실질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고 심적 안정감 제공효과 큼 -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어 아동 양육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는 장기적으로는 가정 내 출산과 가족형성을 촉진하여 인구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아이 양육으로 당장 돈 쓸 곳이 많은 부모에게 부모급여라는 현금 지원은 효용성이 높고, 이로 인한 정책 지원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보편적 제도라는 점에서 육아휴직의 대상자가 아닌 부모에게 확대하는 것 긍정적 평가 -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명칭 변경하면서 현금 지원을 증액하여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음 - 영유아 부모들에게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들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어린 아동을 둔 가정일수록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지원이 필요함.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모든 자녀출생 가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이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완화 및 부모 선택권 보장으로 저출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모에게 가정양육과 기관양육의 선택권을 제공함.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영영아기 특성을 고려할 때 가정 양육의 비율이 높아짐 - 급여액이 높으므로 아동 양육하는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됨 -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정책체감도가 높고, 금액 또한 보다 현실화하였다고 여겨짐 - 부모들에게 피부감 있는 실제적인 지원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현금 지원은 실제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준에 따른 실질적 지원 시행 - 부모급여도입과 실행은 목표달성했으나, 좋은 정책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 유보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통합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저출산율을 고려하면 더욱 그 필요성이 간절함. 역대 정부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이나 단계적 유보 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게 판단함. - 유보통합의 방향성 천명 - 유보통합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유보 통합정책은 꼭 실현되어야 함 |



| 정책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이나 교육과정 지원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 유보통합을 통하여 유아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의 지원 방향성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 여러 단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차분히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다 여겨짐. 계속 진행되기 희망함 - 교육과정 통합에 이어 주무부처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것 |
| <p style="text-align: center;">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란이 있지만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을 결정한 점. - 아직은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초등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 중이기 때문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의 문제는 양육자 뿐만 아니라 아동의 웰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반면, 영유아 돌봄에 비해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덜 강조된 주제임.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의 문제를 완화하고 초등학생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학교내 늘봄학교 도입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 사교육비 절감 등 국가의 교육, 돌봄을 위한 책임이 강화됨. - 가시적으로 정책 실행이 눈에 보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2순위로 성과가 큰 육아정책으로는 1순위에 비해 의견이 골고루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18.0%로 가장 많았고, “부모급여 도입”(12.0%)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12.0%)가 동일하게 다음으로 성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3개 정책이 10.0%로 동일하게 나왔는데,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유보통합”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 이에 해당한다. 전공별로는 유아교육 전문가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정책을 26.3%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보육 전문가는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동일하게 21.1%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기타 전문가는 선택한 정책 과제들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수, 20년 이상 고경력 전문가들은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표 IV-4-12〉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2순위)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계(수) |
|---------------------|---------------|-------|------|-----|-------|------|------|-----|------|------|------|----------|
| 전체 | 12.0 | 10.0 | 10.0 | 4.0 | 10.0 | 18.0 | 4.0 | 2.0 | 8.0 | 10.0 | 12.0 | 1000(50) |
| 전공 | | | | | | | | | | | | |
| 유아교육 | 10.5 | 10.5 | 5.3 | 5.3 | 15.8 | 26.3 | 10.5 | - | 5.3 | - | 10.5 | 1000(19) |
| 보육 | 10.5 | 5.3 | 10.5 | - | - | 10.5 | - | 5.3 | 15.8 | 21.1 | 21.1 | 1000(19) |
| 기타 | 16.7 | 16.7 | 16.7 | 8.3 | 16.7 | 16.7 | - | - | - | 8.3 | - | 1000(12) |
| $x^2(df)$ | 22.517(20)(b) | | | | | | | | | | | |
| 직종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13.3 | 8.9 | 11.1 | 4.4 | 8.9 | 20.0 | 4.4 | 2.2 | 8.9 | 6.7 | 11.1 | 1000(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100.0 | - | - | - | - | - | - | 1000(1) |
| 현장전문가 | -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1) |
| 기타전문가 | - | - | - | - | - | - | - | - | - | 66.7 | 33.3 | 1000(3) |
| $x^2(df)$ | 32.074(30)(b) |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11.1 | 11.1 | 3.7 | 3.7 | 14.8 | 25.9 | 7.4 | 3.7 | 11.1 | 3.7 | 3.7 | 1000(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13.3 | 6.7 | 13.3 | 6.7 | - | 6.7 | - | - | 6.7 | 13.3 | 33.3 | 1000(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12.5 | 12.5 | 25.0 | - | 12.5 | 12.5 | - | - | - | 25.0 | - | 1000(8) |
| $x^2(df)$ | 23.034(20)(b) | | | | | | | | | |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1) |
| 10~15년 미만 | - | 20.0 | - | - | - | 20.0 | - | - | 20.0 | - | 40.0 | 1000(5) |
| 15~20년 미만 | 27.3 | 9.1 | 18.2 | - | 27.3 | - | - | - | - | 9.1 | 9.1 | 1000(11) |
| 20년 이상 | 9.1 | 6.1 | 9.1 | 6.1 | 6.1 | 24.2 | 6.1 | 3.0 | 9.1 | 12.1 | 9.1 | 1000(33) |
| $x^2(df)$ | 29.795(30)(b) | |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유보통합 ④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⑥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⑦ 아동학대 방지 ⑧ 발달장애인 지원 ⑨ 교통안전 ⑩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⑪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전체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2순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방과후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초등전일제는 맞벌이 부모에게 양육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돌봄서비스에서 사각

지대가 많았던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돌봄문제를 공교육(학교)에서 담당하여 학부모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현재 전국 2,838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중이며,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될 것임 등이 제시되었다.

「부모급여 도입」은 부모급여 도입은 정책인지도가 매우 높고 양육 초기 가족의 양육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급여가 낮은 상황에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함, 부모급여 도입을 통하여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가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여겨지며, 수혜자 만족도 높다 사료됨 등이 제시되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실제로 인식 개선도 좋아지고,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됨, 근로권과 가족돌봄권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정책임, 저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의 협조와 함께하는 기업문화는 필수적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해당 정책이 발빠르게 국민들에게 안내되고 있음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4-13〉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 선택 이유: 2순위

| 정책 | 선택 이유 |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의 돌봄은 반드시 국가적 공적 지원이 필요하며 적극 실행되어야 함 -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 -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 큰 편이므로 - 방과후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 늘봄학교 도입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초등전일제는 맞벌이 부모에게 양육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아동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사교육 비도 줄일 수 있고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안정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동안 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많았던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돌봄문제를 공교육(학교)에서 담당하여 학부모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현재 전국 2,838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중이며,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될 것임 -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 도입함 |
| 부모급여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별 현금 지원의 순차적 확대 - 부모급여 도입은 정책인지도가 매우 높고 양육 초기 가족의 양육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급여가 낮은 상황에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함. 다만, 향후 현금수당은 통합,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 정책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책 중 돈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가 큼 - 부모급여 도입을 통하여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 가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여겨지며, 수혜자 만족도 높다 사료됨 - 부모급여를 통해 현금지원을 확대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인식 개선도 좋아지고,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됨 - 근로권과 가족돌봄권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정책임. 자녀돌봄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에까지 확대될 필요도 있어 보임 - 저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의 협조와 함께하는 기업문화는 필수적임 -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해당 정책이 발빠르게 국민들에게 안내되고 있음. - 재택근무의 유연근무가 실제적인 자녀돌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앞서 고찰한 문항을 종합한 1, 2순위를 합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58.0%)이 “부모급여도입”이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은 “유보통합”(28.0%)과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28.0%) 동일한 비율로 나왔으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18.0%)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16.0%)와 “교통안전”(16.0%) 정책이 뒤를 이었다. 전공별로 공통으로 “부모급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보통합”(36.8%)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보육전문가는 “교통안전”(31.6%)을 기타 전문가는 “유보통합”(25.0%),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25.0%) 등 2개 정책을 다음으로 많이 선택했다. 전공에 따라 전문가의 성과 평가가 다른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직종, 전문분야, 고경력일수록 공통으로 “부모급여”를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부모급여”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대표적인 육아정책으로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4-14〉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정책(1+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
| 전체 | 58.0 | 16.0 | 2.0 | 28.0 | 6.0 | 12.0 | 28.0 | 4.0 | 2.0 | 2.0 | 8.0 | 16.0 | 18.0 | (50) |
| 전공 | | | | | | | | | | | | | | |
| 유아교육 | 52.6 | 21.1 | - | 36.8 | 5.3 | 15.8 | 31.6 | 10.5 | - | - | 5.3 | - | 21.1 | (19) |
| 보육 | 52.6 | 10.5 | 5.3 | 21.1 | 5.3 | 5.3 | 26.3 | - | 5.3 | - | 15.8 | 31.6 | 21.1 | (19) |
| 기타 | 75.0 | 16.7 | - | 25.0 | 8.3 | 16.7 | 25.0 | - | - | 8.3 | 0.0 | 16.7 | 8.3 | (12)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수) |
|---------------------|-------|-------|-----|------|------|-------|-------|-----|-----|------|------|------|------|------|
| 직종 | |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55.6 | 15.6 | 2.2 | 31.1 | 6.7 | 11.1 | 28.9 | 4.4 | 2.2 | 2.2 | 8.9 | 13.3 | 17.8 |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100.0 | 100.0 | - | - | - | - | - | - | (1) |
| 현장전문가 | 100.0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1) |
| 기타전문가 | 100.0 | - | - | - | - | - | - | - | - | - | - | 66.7 | 33.3 | (3) |
| 전문분야 | | |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59.3 | 22.2 | 3.7 | 25.9 | 3.7 | 14.8 | 29.6 | 7.4 | 3.7 | - | 11.1 | 3.7 | 14.8 |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53.3 | 6.7 | - | 26.7 | 13.3 | 6.7 | 26.7 | - | - | - | 6.7 | 26.7 | 33.3 |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62.5 | 12.5 | - | 37.5 | - | 12.5 | 25.0 | - | - | 12.5 | - | 37.5 | - | (8)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 |
| 5~10년 미만 | 100.0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1) |
| 10~15년 미만 | 20.0 | 40.0 | - | 20.0 | - | - | 40.0 | - | - | - | 20.0 | 20.0 | 40.0 | (5) |
| 15~20년 미만 | 54.5 | 18.2 | - | 27.3 | 9.1 | 36.4 | 9.1 | - | - | - | - | 18.2 | 27.3 | (11) |
| 20년 이상 | 63.6 | 9.1 | 3.0 | 30.3 | 6.1 | 6.1 | 33.3 | 6.1 | 3.0 | 3.0 | 9.1 | 15.2 | 12.1 | (33)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
 초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놀음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한 정책으로는 “유보통합”정책이 28.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진료체계 개선”이 26.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유보통합”정책은 성과가 높은 정책의 앞 순위로 나왔는데, 미흡한 과제로도 많이 나왔다. 현 정부의 “유보통합”정책은 교육부로 부처 통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시한 로드맵을 기준으로(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30.)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및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 진료체계 개선”정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의대생 증원 등 의료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 전문가는 “아동 진료체계 개선”을 보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을 추진이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꼽았다. 유아교육/교육 및 아동보육/가족/여성 전문가는 “유보통합”정책을 가장 성과가 적은 정책으로 평가한 반면, 사회복지/정책/행정/

경제 기타는 “아동 진료체계 개선”을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응답했다. 20년 이상 고경력 전문가들도 “유보통합”(30.3%), “아동 진료체계 개선”(21.2%)을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4-15〉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1순위)

| | | | | | | | | | | | | | | 단위: %(명) |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계(수) | |
| 전체 | 2.0 | 2.0 | 26.0 | 28.0 | 6.0 | 4.0 | 4.0 | 4.0 | 8.0 | 4.0 | 4.0 | 4.0 | 4.0 | 1000(50) | |
| 전공 | | | | | | | | | | | | | | | |
| 유아교육 | - | - | 36.8 | 31.6 | - | - | - | 5.3 | 15.8 | 5.3 | 5.3 | 0.0 | 0.0 | 1000(19) | |
| 보육 | 5.3 | - | 15.8 | 26.3 | 10.5 | 10.5 | 5.3 | - | 5.3 | - | 5.3 | 5.3 | 10.5 | 1000(19) | |
| 기타 | - | 8.3 | 25.0 | 25.0 | 8.3 | - | 8.3 | 8.3 | - | 8.3 | - | 8.3 | 0.0 | 1000(12) | |
| $\chi^2(df)$ | | | | | | | | | | | | | | 23.799(24)(b) | |
| 직종 | | |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2.2 | 2.2 | 26.7 | 26.7 | 4.4 | 4.4 | 4.4 | 4.4 | 8.9 | 4.4 | 4.4 | 2.2 | 4.4 | 1000(45) |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1) | |
| 현장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 | 1000(1) | |
| 기타전문가 | - | - | 33.3 | 33.3 | 33.3 | - | - | - | - | - | - | - | - | 1000(3) | |
| $\chi^2(df)$ | | | | | | | | | | | | | | 32.373(36)(b)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 | - | 29.6 | 33.3 | 3.7 | 3.7 | 3.7 | 3.7 | 7.4 | 3.7 | 3.7 | 3.7 | 3.7 | 1000(27) | |
| 아동보육/가족/여성 | 6.7 | - | 13.3 | 26.7 | 6.7 | 6.7 | - | 6.7 | 6.7 | 6.7 | 6.7 | 6.7 | 6.7 | 1000(15) |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 | 12.5 | 37.5 | 12.5 | 12.5 | - | 12.5 | - | 12.5 | - | - | - | - | 1000(8) | |
| $\chi^2(df)$ | | | | | | | | | | | | | | 16.689(24)(b)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100.0 | - | - | - | - | - | - | - | - | - | - | 1000(1) | |
| 10~15년 미만 | 20.0 | - | 20.0 | 40.0 | 20.0 | - | - | - | - | - | - | - | - | 1000(5) | |
| 15~20년 미만 | - | - | 36.4 | 18.2 | - | 9.1 | 9.1 | - | 9.1 | - | 18.2 | - | - | 1000(11) | |
| 20년 이상 | - | 3.0 | 21.2 | 30.3 | 6.1 | 3.0 | 3.0 | 6.1 | 9.1 | 6.1 | - | 6.1 | 6.1 | 1000(33) | |
| $\chi^2(df)$ | | | | | | | | | | | | | | 29.586(36)(b)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놀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전체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1순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은 법적인 유보통합을 이루어졌으나 교사양성체계, 현직 교사들의 통합문제, 기관의 재정 문제 등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음, 현재 부처간 통합만 이루



어졌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 산재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가시적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음, 유보통합 자체에 열매이기 보다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육의 질 개선 등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 정책 내용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지 못함, 관련된 대국민 홍보의 절대적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아동 진료체계 개선」은 지역에 따라 전문기관과 인력 인프라에 따른 편차가 발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비함, 의정갈등과 의료수가의 문제로 소아과의 폐원이 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는 수가 적음 등이 지적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 미흡, 다른 정책,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성과가 크지 않음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4-16〉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낮음) 정책 선택 이유: 1순위

| 정책 | 선택 이유 |
|------|--|
| 유보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 유보통합을 이루어졌으나 교사양성체계, 현직 교사들의 통합문제, 기관의 재정 문제 등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음. -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의지가 없어 보임 - 오랜시간 노력의 결과로 현재 부처간 통합만 이루어졌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 산재되어 있음. - 전혀 진척 사항이 없음 - 양 기관의 상황과 제도 차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없이 유보통합이라는 명분적 달성에 치중하는 것 같아 원래 추진하는 목적달성과는 괴리가 있다고 여겨짐 -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가시적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음 - 유보통합의 논리성과 필요성을 좀더 면밀히 살피어야 하며, 평균상향화가 아닌 평균하향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시도로 보여짐. 따라서 유보통합 자체에 열매이기 보다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육의 질 개선 등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정책이 즐기차게 추진되는 듯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 정책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 -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고유의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비해 구체적 정책 내용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지 못함. -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음 - 관련된 대국민 홍보의 절대적 부재, 정책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4년 5월 말 현재 23년 대비 발표된 바가 딱히 없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와 계획 부재 - 가장 이슈가 컸고 주목을 받았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음. 아직도 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의사 파업과 연관되어 아동 진료의 긴급하고 꼼꼼한 진료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맞물려 의료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지역에 따라 전문기관과 인력 인프라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비함 - 의정갈등과 의료수가의 문제로 소아과의 폐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아직 시범사업단계에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는 수가 적음. 지역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아동의료 인프라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 의료센터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함 - 실제로 아동진료에 어려움이 있음.(의료 파업 전후 동일함) - 실제로 달라진 부분을 못 느끼며 여전히 아동 진료가 어려움 - 아동 주치의 등은 급박한 요구사항은 아님 |
| 발달장애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 미흡 - 다른 정책,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성과가 크지 않음. -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짐 -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 특별히 더 발전하고 좋아졌다는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성과가 작은 육아정책 2순위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12.0%)로 가장 많이 나왔고, “춤춤한 아동돌봄체계”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아동학대 방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이 10.0%로 동일하게 나왔다.

유아교육과 기타 전문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보육전문가는 “아동 진료체계 개선”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전문분야별, 경력별에 따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성과가 적은 육아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응답이 분산되었다는 것은 대체로 추진 중인 육아정책들이 성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급여” 외에 뚜렷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육아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4-17〉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 계(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
| 전체 | 2.0 | 4.0 | 8.0 | 6.0 | 6.0 | 10.0 | 10.0 | 10.0 | 6.0 | 6.0 | 6.0 | 4.0 | 10.0 | 12.0 | 1000(50) |
| 전공 | | | | | | | | | | | | | | | |
| 유아교육 | - | 10.5 | - | 5.3 | 10.5 | 10.5 | 10.5 | 10.5 | 5.3 | 5.3 | 10.5 | 0.0 | 5.3 | 15.8 | 1000(19) |
| 보육 | - | - | 15.8 | 10.5 | 5.3 | 10.5 | 5.3 | 10.5 | 5.3 | 5.3 | 10.5 | 15.8 | - | - | 1000(19) |
| 기타 | 8.3 | - | 8.3 | - | - | 8.3 | 16.7 | 8.3 | 8.3 | 8.3 | - | - | 8.3 | 25.0 | 1000(12) |
| $\chi^2(df)$ | 23.447(26)(b) | | | | | | | | | | | | | | |
| 직종 | | |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 | 4.4 | 4.4 | 4.4 | 6.7 | 11.1 | 11.1 | 11.1 | 4.4 | 6.7 | 6.7 | 4.4 | 11.1 | 13.3 | 1000(45) |
| 연구기관 연구원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1) |
| 현장전문가 | - | -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1000(1) |
| 기타전문가 | - | - | 33.3 | 33.3 | - | - | - | - | 33.3 | - | - | - | - | - | 1000(3) |
| $\chi^2(df)$ | 75.185(39)***(b) | | | |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3.7 | 7.4 | 3.7 | 3.7 | 3.7 | 11.1 | 11.1 | 7.4 | 11.1 | 3.7 | 11.1 | - | 11.1 | 11.1 | 1000(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 | - | 13.3 | 13.3 | 13.3 | 6.7 | 6.7 | 6.7 | - | 13.3 | 0.0 | 13.3 | 6.7 | 6.7 | 1000(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 | - | 12.5 | - | - | 12.5 | 12.5 | 25.0 | - | - | - | - | 12.5 | 25.0 | 1000(8) |
| $\chi^2(df)$ | 24.275(26)(b) | | | | | | | | | | | | |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1) |
| 10~15년 미만 | - | - | 20.0 | - | - | 20.0 | - | - | 20.0 | - | - | 20.0 | - | 20.0 | 1000(5) |
| 15~20년 미만 | - | - | - | 18.2 | - | - | 27.3 | 18.2 | - | 18.2 | - | - | - | 18.2 | 1000(11) |
| 20년 이상 | 3.0 | 6.1 | 9.1 | 3.0 | 6.1 | 12.1 | 6.1 | 9.1 | 6.1 | 3.0 | 9.1 | 3.0 | 15.2 | 9.1 | 1000(33) |
| $\chi^2(df)$ | 45.081(39)(b) | | | | |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
 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전체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2순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폭 개선, 재택근무 규정 도입, 유연근무 활성화 시도는 하고 있으나,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한 제도 실행 기반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제도는 확대되었으나 실효성 미흡, 정책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음,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없는 일부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함 등이 지적되었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대기업에서만 시행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정부가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 있다 여겨짐,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의 수준이 부족함 등이 지적되었다.

〈표 IV-4-18〉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 선택 이유: 2순위

| 정책 | 선택 이유 |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를 주요 타겟으로 한 노동시장정책들은 대체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대기업을 제외하고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폭 개선, 재택근무 규정 도입, 유연근무 활성화 시도는 하고 있으나,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한 제도 실행 기반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 - 제도는 확대되었으나 실효성 미흡 - 국가 정책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음 -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없는 일부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재함.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에서만 시행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시간 지원만으로는 어려우며 물리적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육아 휴직 급여 적용,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정책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열거된 정책으로 양성평등 일자리가 구현된다고 보지 않음. 보완적 제도. - 정부가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 있다 여겨짐. - 융통성있게 기관별, 사업장별 대안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짐 -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의 수준이 부족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관 확대 및 의무화 등이 필요함 |
| 총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돌봄체계가 체계적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가장 중요한 과제는 1) 누구나 2) 가까운 곳에 3) 원하는 시간에 4) 믿을만한 돌봄서비스에 접근하고 얻을 수 있는가하는 것 |



| 정책 | 선택 이유 |
|--------------|--|
| | 임. 그 지역마다 특수성을 적용하는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민간 돌봄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출산전, 출산후, 어린이집 위탁 이전 이후, 초등학교 돌봄, 중고생 돌봄까지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이 각개 전투라서 연계성 절연된 상태로 국가예산 낭비와 누수가 큼 - 아이돌봄 관련 전문인력을 국가수준에서 양성하여야 하고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관련된 정책 제시가 미비함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국민 홍보 및 정보 제공이 미흡함 - 갑작스러운 추진으로 교육현장에서 부적응, 갈등이 있음.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 등 관련 인력의 정규직화 대책이 없음. - 교육의 목적전도 현상을 가중시키는 정책. 교육의 본질인 교수-학습을 훼손 - 초등 부모들이 유연한 근로시간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함 - 아이들을 하루종일 학교에 두는 것이 과연 아동들에게 유익한 정책인지 검토 필요함 - 늘봄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자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함. 이미 어린이집 등에서도 정규 프로그램 이후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 아동학대 방지 | - 피학대 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 미흡 - 사후 수사, 처벌에 급급하고 예방적 조치 미흡 -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음. 철저한 예방과 엄벌이 필요함. - 다른 정책,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정책효과가 크지 않음. - 좋은 정책이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인프라가 빈약하고 성과도 낮고 여전히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음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표 IV-4-19〉 정부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1+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 | (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
| 전체 | 4.0 | 6.0 | 34.0 | 34.0 | 12.0 | 14.0 | 14.0 | 14.0 | 14.0 | 10.0 | 10.0 | 8.0 | 10.0 | 16.0 | (50) |
| 전공 | | | | | | | | | | | | | | | |
| 유아교육 | - | 10.5 | 36.8 | 36.8 | 10.5 | 10.5 | 10.5 | 15.8 | 21.1 | 10.5 | 15.8 | - | 5.3 | 15.8 | (19) |
| 보육 | 5.3 | - | 31.6 | 36.8 | 15.8 | 21.1 | 10.5 | 10.5 | 10.5 | 5.3 | 10.5 | 15.8 | 15.8 | 10.5 | (19) |
| 기타 | 8.3 | 8.3 | 33.3 | 25.0 | 8.3 | 8.3 | 25.0 | 16.7 | 8.3 | 16.7 | - | 8.3 | 8.3 | 25.0 | (12) |
| 직종 | | |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2.2 | 6.7 | 31.1 | 31.1 | 11.1 | 15.6 | 15.6 | 15.6 | 13.3 | 11.1 | 11.1 | 6.7 | 11.1 | 17.8 |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100.0 | - | - | 100.0 | - | - | - | - | - | - | - | - | - | - | (1) |
| 현장전문가 | - | - | 100.0 | - | - | - | - | - | - | - | - | 100.0 | - | - | (1) |
| 기타전문가 | - | - | 66.7 | 66.7 | 33.3 | - | - | - | 33.3 | - | - | - | - | - | (3)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수)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3.7 | 7.4 | 33.3 | 37.0 | 7.4 | 14.8 | 14.8 | 11.1 | 18.5 | 7.4 | 14.8 | 3.7 | 11.1 | 14.8 |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6.7 | - | 26.7 | 40.0 | 20.0 | 13.3 | 6.7 | 13.3 | 6.7 | 20.0 | 6.7 | 20.0 | 6.7 | 13.3 | (15) |
| 사회복지/정책행정/경제/기타 | - | 12.5 | 50.0 | 12.5 | 12.5 | 12.5 | 25.0 | 25.0 | 12.5 | - | - | - | 12.5 | 25.0 | (8)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100.0 | - | 100.0 | - | - | - | - | - | - | - | - | - | (1) |
| 10~15년 미만 | 20.0 | - | 40.0 | 40.0 | 20.0 | 20.0 | - | - | 20.0 | - | - | 20.0 | - | 20.0 | (5) |
| 15~20년 미만 | - | - | 36.4 | 36.4 | - | 9.1 | 36.4 | 18.2 | 9.1 | 18.2 | 18.2 | - | - | 18.2 | (11) |
| 20년 이상 | 3.0 | 9.1 | 30.3 | 33.3 | 12.1 | 15.2 | 9.1 | 15.2 | 15.2 | 9.1 | 9.1 | 9.1 | 15.2 | 15.2 | (33)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식생활 건강권 강화 ⑫ 교통안전 ⑬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⑭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3) 육아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

〈표 IV-4-20〉 육아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

| 정책범주 | 단위: %(명) | |
|----------------|-----------|--|
| | 2024년 조사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4.0 | |
| 교육·보육·돌봄 정책 | 72.0 |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4.0 | |
| 계(수) | 100.0(50)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육아정책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보육·돌봄 정책」은 안정된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동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 사교육 시장에 밀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출생으로 매우 적게 태어난 미래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육 보육 및 돌봄이 모두 질 높은 최적의 지원체제와 지원인력 및 예산과 실행을 갖추어야 함, 교육 보육 돌봄 정책은 가족 및 사회의 안정과 발전,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노동시장의 생산성향상 및 경제적 성장촉진,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대비 등의 이유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영유



아가 어떠한 양육 환경에 있던 발달에 적합한 지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은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과 초등학령기아동의 돌봄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함 등이 제시되었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현금 및 의료비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됨,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라고 느낌, 현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높고 실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함, 수요자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경제적 지원 관련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되어야 함,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음 등이 제시되었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은 이제는 부모에게 직접돌봄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기본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직접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부모들은 양육 초기 직접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은 휴가, 휴직으로 그 이후는 초등학생까지 시간 단축, 유연 및 탄력 근무 등과 병행해야 함, 돌봄인프라는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으나 시간지원 정책은 기업문화 변화에서부터 아직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큼,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므로 돌봄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등이 실시되어야 함, 현금지원 및 서비스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등을 제시하였다.

〈표 IV-4-21〉 육아정책 중 중요도 높은 정책범주 선택 이유

| 정책범주 | 선택 이유 |
|-------------|---|
| 교육·보육·돌봄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아동 양육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 국가 발전을 위해 미래 인적자원 중요하고, 인적자원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건강한 성장 건강한 성장은 미시적으로는 가정,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이 중요함. 안정된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동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정책이 사교육 시장에 밀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정책의 일관성 부재 - 저출생으로 매우 적게 태어난 미래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육 보육 및 돌봄이 모두 질높은 최적의 지원체제와 지 |

| 정책범주 | 선택 이유 |
|------|---|
| | <p>원인력 및 예산과 실행을 갖추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보육, 돌봄 정책은 초 저 출산 시대를 종식하는 기초적인 정책이라 생각함. - 아직까지 출산을 원하는 가임연령의 국민들은 자녀출산 후 돌봄과 교육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긴다고 생각함. 부모 모두의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 보육, 교육서비스의 체계화가 중요함 - 교육이 국간의 근간이 되는 주요 정책사업이므로. -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 -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보육, 교육 부담을 들 수 있음 - 교육 보육 돌봄 정책은 가족 및 사회의 안정과 발전,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노동시장의 생산성향상 및 경제적 성장촉진,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대비 등의 이유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 사회적인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범주이기 때문 - 1.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 양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 2.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 3.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 -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발선 평등을 위해 매우 중요함 - 기본적인 돌봄 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돌봄 책임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임. -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가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보육, 돌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므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됨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과 돌봄 정책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점점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함 - 영유아 돌봄에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동시에 초등돌봄에서 늘봄학교 등이 교육현장에 정착육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현금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교육, 보육 정책을 통해 부모의 교육에 대한 실제적,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인류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 - 저출산,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 - 출산과 더불어 자녀 양육 교육 보육의 현재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영역이라 봄. - 교육, 보육, 돌봄은 다음세대의 출산, 양육, 미래인재 양성 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정책임 - 아이들이 매일 접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적 방향성 설정과 관리, 평가 등이 적절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자했으나 저출산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므로 교육 보육 돌봄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출산율과 아동돌봄에 많은 영향력 갖고 있다 여겨짐 |

| 정책범주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내 돌봄기관이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음. 이 기관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함 - 교육(및 보육과 돌봄)정책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부모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분야임 -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출생율을 높일 기가 될 것인데,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조기교육,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 미해결로 인한 사교육 활성화 등임.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문성있게 접근할 수 있는 범주이며, 저출산의 국가적 사활 측면에서 교육, 보육, 돌봄 정책이 중요도가 매우 높음. - 자녀 임신, 출산, 교육, 양육의 평생지원의 꼼꼼한 체계적 연계 정책 필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최소한 경제 부담을 주지 말것 프랑스 육아 정책 참조할 필요 있음. - 영유아가 어떠한 양육 환경에 있던 발달에 적합한 지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은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과 초등학교기아 등의 돌봄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함. 구체적인 유보통합정책관련 가이드와 돌봄 정책에 대한 부모와 교사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정책 이 시급함 - 이는 미래에 필요한 기초 역량 계발,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함. - 교육 보육 서비스 내용이 가장 핵심 - 국민의 대다수와 관련된 정책이고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직접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현금 및 의료비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고 사료됨 -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라고 느낌 -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육아비용 부담이라고 볼 때 영아기 초기 육아비용의 현금지급확대로 일차적 유도를 하여 저출생 제고를 추진할 필요 있음(아기 낳기 좋은 사회가 1순위고 다음이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라고 봄) -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은 현금성 지원임 - 현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높고 실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함 - 수요자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경제적 지원 관련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되어야 함 -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음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는 부모에게 직접돌봄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맞벌이가 많은 현실에서 실제 돌봄에 사용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 기본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직접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부모들은 양육 초기 직접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임.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은 휴가, 휴직으로 그 이후는 초등학교까지 시간 단축, 유연 및 탄력 근무 등과 병행 |

| 정책범주 | 선택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인프라는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고, 현 금성 지원은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간지원 정책은 기업문화 변화에서부터 아직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임. 따라서 돌봄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등이 실시되어야 함. -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4) 육아정책 정책과제 중요도

현 정부의 육아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아동학대 방지”가 평균 6.1점으로 가장 높았다. 긍정비율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더 높았으며 2023년도 조사에도 1순위로 나왔다. 평균 점수는 2023년 대비 하락하였다(6.4점→6.1점).

중요도가 가장 낮은 육아정책과제는 5.2점인 “부모급여 도입”이다. 2023년에 중요도가 가장 낮은 정책과제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4.1점)이었는데 2024년도 조사에서는 5.7점으로 중요도가 상승하였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에 2,000개 이상,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교육부 보도자료, 2024.2.5.)을 발표하는 등 초등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늘봄학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평균 점수가 상승한 육아정책과제들은 부모급여(5.0점→5.2점), 유보통합(5.4점→5.9점),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4.1점→5.7점), 식생활 건강권 강화(5.3점→5.4점), 교통안전(5.6점→5.8점) 등이다.

〈표 IV-4-22〉 정부 육아정책 정책과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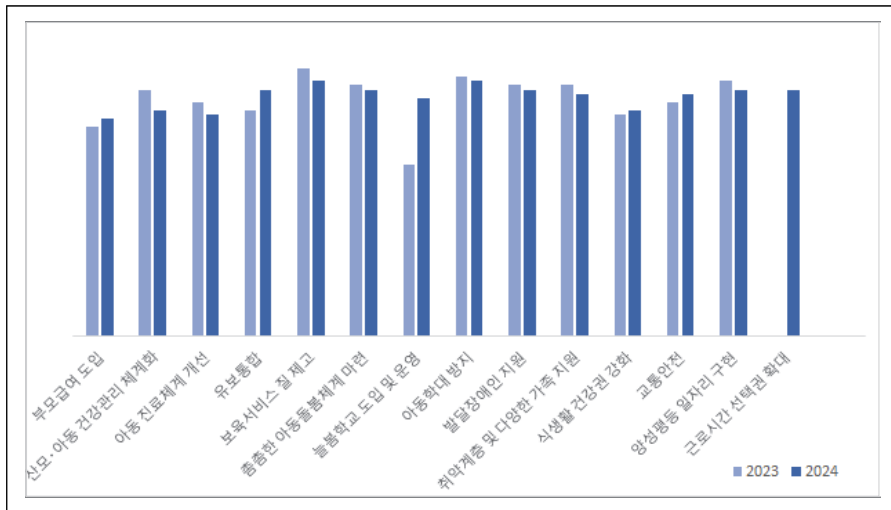
| 구분 | 2023년 조사 | | | | 2024년 조사 | | | |
|----------------|----------|-----|-------|------|----------|-----|-------|------|
| | 긍정 | 평균 | 계 | (수) | 긍정 | 평균 | 계 | (수) |
| 부모급여 도입 | - | 5.0 | 100.0 | (98) | 70.0 | 5.2 | 100.0 | (50)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 | 5.9 | 100.0 | (98) | 84.0 | 5.4 | 100.0 | (50) |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 | 5.6 | 100.0 | (98) | 78.0 | 5.3 | 100.0 | (50) |
| 유보통합 | - | 5.4 | 100.0 | (98) | 90.0 | 5.9 | 100.0 | (50)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 | 6.4 | 100.0 | (98) | 96.0 | 6.1 | 100.0 | (50) |
| 충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 | 6.0 | 100.0 | (98) | 84.0 | 5.9 | 100.0 | (50) |

| 구분 | 2023년 조사 | | | 2024년 조사 | | | |
|------------------|----------|-----|------------|----------|-----|------------|-------|
| | 긍정 | 평균 | 계 (수) | 긍정 | 평균 | 계 (수) | 계 (수)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 | 4.1 | 100.0 (98) | 84.0 | 5.7 | 100.0 (50) | |
| 아동학대 방지 | - | 6.2 | 100.0 (98) | 90.0 | 6.1 | 100.0 (50) | |
| 발달장애인 지원 | - | 6.0 | 100.0 (98) | 90.0 | 5.9 | 100.0 (50) | |
|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 | 6.0 | 100.0 (98) | 88.0 | 5.8 | 100.0 (50) | |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 | 5.3 | 100.0 (98) | 76.0 | 5.4 | 100.0 (50) | |
| 교통안전 | - | 5.6 | 100.0 (98) | 88.0 | 5.8 | 100.0 (50) | |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 | 6.1 | 100.0 (98) | 84.0 | 5.9 | 100.0 (50) |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 | - | - | 88.0 | 5.9 | 100.0 (50) | |

주: 1) 7점 척도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점: 매우 중요하다)
 2) 긍정비율은 '⑥', '⑦', '⑧'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연구소. pp. 102-103. <표 IV-2-4> 육아 관련 국정과제 정책과제 중요도 참조.

앞으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육아정책 1순위는 “유보통합”(32.0%)인 것으로 나왔다. 이어서 “부모급여”(16.0%), “보육서비스 질 제고”(14.0%)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V-4-1] 정부 육아정책 정책과제 중요도(2023년·2024년 비교)



자료: <표 IV-4-22>를 도식화함.

전공, 전문분야, 고경력 등 모든 변인의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사회복지/정책/행정/경제/기타 전공 전문가들은 유보통합뿐 아니라 “부모급여”도 같은 비율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앞서 가장 추진이 미흡한 과제로 “유보통합”을 1순위로 꼽았는데, 중요도에서는 가장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오랜 숙원 과제인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기대를 읽을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표 IV-4-23〉 정부 육아 정책 중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수) |
|---------------------|-------|------|-------|------|------|---------------|------|-----|-----|------|------------|
| 전체 | 16.0 | 4.0 | 6.0 | 32.0 | 14.0 | 10.0 | 8.0 | 2.0 | 2.0 | 6.0 | 100.0 (50) |
| 전공 | | | | | | | | | | | |
| 유아교육 | 21.1 | 5.3 | 5.3 | 42.1 | 10.5 | 5.3 | 5.3 | - | - | 5.3 | 100.0 (19) |
| 보육 | 10.5 | 5.3 | 5.3 | 31.6 | 21.1 | 5.3 | 10.5 | 5.3 | 5.3 | - | 100.0 (19) |
| 기타 | 16.7 | - | 8.3 | 16.7 | 8.3 | 25.0 | 8.3 | - | - | 16.7 | 100.0 (12) |
| $\chi^2(df)$ | | | | | | 14.620(18)(b) | | | | | |
| 직종 | | | | | | | | | | | |
| 대학 교수 | 13.3 | 4.4 | 4.4 | 33.3 | 15.6 | 8.9 | 8.9 | 2.2 | 2.2 | 6.7 | 100.0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100.0 | - | - | - | - | 100.0 (1) |
| 현장전문가 | 100.0 | - | - | - | - | - | - | - | - | - | 100.0 (1) |
| 기타전문가 | 33.3 | - | 33.3 | 33.3 | - | - | - | - | - | - | 100.0 (3) |
| $\chi^2(df)$ | | | | | | 20.593(27)(b)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18.5 | 3.7 | 11.1 | 25.9 | 11.1 | 14.8 | 7.4 | - | - | 7.4 | 100.0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6.7 | - | - | 46.7 | 20.0 | 6.7 | 6.7 | 6.7 | 6.7 | - | 100.0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25.0 | 12.5 | - | 25.0 | 12.5 | - | 12.5 | - | - | 12.5 | 100.0 (8) |
| $\chi^2(df)$ | | | | | | 15.996(18)(b) | | | |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100.0 | - | - | - | - | - | - | - | 100.0 (1) |
| 10~15년 미만 | 40.0 | - | - | 20.0 | 20.0 | - | 20.0 | - | - | - | 100.0 (5) |
| 15~20년 미만 | - | - | - | 36.4 | 9.1 | 18.2 | 9.1 | - | 9.1 | 18.2 | 100.0 (11) |
| 20년 이상 | 18.2 | 6.1 | 6.1 | 33.3 | 15.2 | 9.1 | 6.1 | 3.0 | - | 3.0 | 100.0 (33) |
| $\chi^2(df)$ | | | | | | 31.795(27)(b)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출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발달장애인 지원 ⑨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육아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정책(1순위)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은 행정기관 간의 통합만을 발표한 후 실제적인 재정문제, 교사 수급 문제, 커리큘럼 문제 등이 전혀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음, 유보통합은 아동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의 핵심 전략, (교사 처우개선이 담보되지 않는 유보통합은 실효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보장,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 계층간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정책임 등이 제시되었다.

「부모급여 도입」은 영아초기에 부모에 대한 현금지급은 시의적절한 방향으로 여겨짐, 부모급여는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금전적인 혜택이므로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함,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음 등이 제시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시설 확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유보통합의 논의 중 중요한 부분은 교사 근무 여건과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자녀의 요구에 적절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등이 제시되었다.

〈표 IV-4-24〉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1순위

| 정책과제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이유 |
|------|--|
| 유보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간의 통합만을 발표한 후 실제적인 재정문제, 교사 수급 문제, 커리큘럼 문제 등이 전혀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음. - 유보통합이 체계적으로 잘 완성되어 안정된 돌봄과 조기 교육이 질 높게 이루어짐으로써 미래 인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임 - 반드시 유보 통합이 이루어 지길 바람. 점차 줄어 가는 출생율을 고려하며, 영유아를 그들의 입장에서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임. -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 1. 유보통합은 아동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의 핵심 전략 2. (교사 처우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 유보통합은 실효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른 정부보다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나, 현 정부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지어야 국가적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저출생 예방에 기여할수 있음 - 시작된 유보통합을 완성하여 보육, 교육, 돌봄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 정책과제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보장,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 계층간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정책임 - 30년 난제라고 불리웠던 국가책임 유보통합을 선언하였음. 국가책임의 강화를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인지발달, 학습, 성장 및 발달에 있어 체계적 서비스가 가능할 것임. - 교육과 돌봄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유보통합이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국가에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진행중인 중요한 정책이므로 향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사료됨 - 격차없는 출발이 이루어져야함. 국가예산의 측면에서도 일원화가 효율적임 -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생의 초기부터 과열된 사교육 열풍 등을 잠재우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생의 초기의 교육적 경험을 양질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임. 기존의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사안이기때, 출발점이 세팅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어떤 정책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 법체계 등으로 교사 자격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격차 저하 등 많은 문제 발생함.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유보통합 추진이 필요한데, 현재는 교사양성 체제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보육이 교육으로 인정받아 전국 영유아와 교사에게 동질의 교육서비스와 대우가 제공되어야 함 |
| 부모급여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부모가 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는 면이 보육 교육비 이므로 국가에서 자녀를 낳기 전부터 공공정책으로 양육 교육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사료됨 -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키는 단기적으로 실효성있고 가시적인 정책으로 집중이 필요함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선적 정책은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볼 때 영아초기에 부모에 대한 현금지급은 시의적절한 방향으로 여겨짐 - 부모급여는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금전적인 혜택이므로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함 - 부모들이 100만원을 쥐도 애를 낳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100만원의 지원금은 많은 도움이 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현금 지원에 대한 실제 효과가 큼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음 - 단순한 수입구조에 따른 지원보다는 질적인 부모자녀관계 관찰, 점검, 유지, 발전 등의 심화된 관찰 필요. 주변인들의 평가와 대리양육기관에서의 부모평가제도 도입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함. - 시설 확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 이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부모에 대한 영유아 발달 교육 뿐 아니라 |



| 정책과제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이유 |
|------|--|
| | 교권침해 관련 교육 필요하다고 봄. -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이 맞벌이(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보장 위해)를 하기 위해 '보육서비스'는 필수적인 기관임. 많은 아이들을 큰 집단으로 보육하는 후진국형 보육에서,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 양육을 제공하는 선진국형으로의 개선은 저출산 극복 및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 - 유보통합의 논의 중 중요한 부분은 교사 근무 여건과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자녀의 요구에 적절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많고 이들을 잘 성장시키는게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육아정책은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18.0%),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16.0%), “유보통합”(14.0%)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및 기타 전문가는 2순위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다면, 보육전문가는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문분야별로는 유아교육/교육 전문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아동보육/가족/여성 전문가는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을, 사회복지/정책/행정/경제/기타 전문가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해서 전공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력별로도 응답한 2순위가 달랐다.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는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2순위 과제로 꼽았다면, 15~20년 미만 전문가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을 2순위 과제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표 IV-4-25〉 정부 육아 정책 중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2순위)

| 구분 | 단위: %(명) | | | | | | | | | | | | 계(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
| 전체 | 4.0 | 4.0 | 2.0 | 14.0 | 10.0 | 18.0 | 12.0 | 8.0 | 2.0 | 6.0 | 4.0 | 16.0 | 1000(50) |
| 전공 | | | | | | | | | | | | | |
| 유아교육 | 5.3 | - | - | 15.8 | 5.3 | 5.3 | 21.1 | 15.8 | 5.3 | 5.3 | - | 21.1 | 1000(19) |
| 보육 | - | 10.5 | 5.3 | 21.1 | 15.8 | 26.3 | - | 5.3 | - | 5.3 | 5.3 | 5.3 | 1000(19) |
| 기타 | 8.3 | - | - | - | 8.3 | 25.0 | 16.7 | - | - | 8.3 | 8.3 | 25.0 | 1000(12) |
| $\chi^2(df)$ | | | | | | | | | | | | 24.386(22)(b) |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계(수) |
|---------------------|---------------|------|-----|------|------|-------|------|-------|-----|-------|------|------|----------|
| 직종 |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4.4 | 2.2 | 2.2 | 15.6 | 11.1 | 13.3 | 13.3 | 8.9 | 2.2 | 4.4 | 4.4 | 17.8 | 1000(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1000(1) |
| 현장전문가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1000(1) |
| 기타전문가 | - | 33.3 | - | - | - | 66.7 | - | - | - | - | - | - | 1000(3) |
| $\chi^2(df)$ | 34.444(33)(b) | | | | | | | | | | | | |
| 전문분야 | |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7.4 | - | - | 11.1 | 11.1 | 14.8 | 11.1 | 11.1 | 3.7 | 11.1 | 3.7 | 14.8 | 1000(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 | 6.7 | 6.7 | 20.0 | 13.3 | 26.7 | - | 6.7 | - | - | - | 20.0 | 1000(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 | 12.5 | - | 12.5 | - | 12.5 | 37.5 | - | - | - | 12.5 | 12.5 | 1000(8) |
| $\chi^2(df)$ | 22.147(22)(b) | | | | | | | | | | | |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1000(1) |
| 10~15년 미만 | - | - | - | 20.0 | - | 60.0 | 20.0 | - | - | - | - | - | 1000(5) |
| 15~20년 미만 | 18.2 | 9.1 | 9.1 | 9.1 | - | - | 27.3 | 9.1 | - | - | - | 18.2 | 1000(11) |
| 20년 이상 | - | 3.0 | - | 15.2 | 15.2 | 18.2 | 6.1 | 6.1 | 3.0 | 9.1 | 6.1 | 18.2 | 1000(33) |
| $\chi^2(df)$ | 40.620(33)(b) | | | | | | | | | | | |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총
 출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
 족 지원 ⑪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⑫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문가들이 육아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정책(2순위)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총출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은 가정의 다양한 상황과 아동의 안정된 양육을 위
 해서는 공적 기관(보육/유아교육/초등돌봄) 이용 시간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므
 로 돌봄의 개별화와 유연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
 필요, 늘봄학교 체계와 다른 돌봄체계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할 것임, 이미 다양한
 돌봄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체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야 함,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체계 간 연결고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등이 제시되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 등 근무시간 유연화에 차이가 나기 때문,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비교적 사업장별로 융통성 있게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 생각됨, 유연근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태임 등이 제시되었다.

「유보통합」은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정책으로 유보통합을 완성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로드맵 구축 필요, 2024년 교육부로의 보육업무 이관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에는 교사자격, 교사양성과정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영유아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 다음세대 출생 및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유보통합을 통해 전체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등이 제시되었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자녀들의 돌봄, 교육정책이 교육격차와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됨, 영유아 돌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돌봄은 상당히 제도화, 체계화가 미흡한 비어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초등 전일제 교육이 정착을 통해 공교육 강화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급한 과제임, 도입 초기인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 필요, 초등저학년 시기는 부모들이 가장 육아부담을 느끼는 시기임 등이 제기되었다.

〈표 IV-4-26〉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2순위

| 정책과제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이유 |
|---------------|--|
| 충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가정의 다양한 상황과 아동의 안정된 양육을 위해서는 공적 기관(보육/유아교육/초등돌봄) 이용 시간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함: 돌봄의 개별화와 유연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축 필요 - 맞벌이 부모에게 충충한 아동 돌봄 제도까지 갖춘다면 교육의 질 격차도 해소 될 수 있으므로 - 아동돌봄 문제가 국가적 중요한 문제라는데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마을 중심으로 공동육아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해 보는 것이 필요함. 지금까지 민간 시장 중심의 돌봄서비스나 부분적 시간제 아동돌보미서비스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함. - 충충한 아동돌봄체계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들이 미래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 늘봄학교 체계와 다른 돌봄체계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할 것임. 이미 다양한 돌봄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체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야 함.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체계 간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정책과제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필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 육아 도우미는 아니라고 봄. -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생의 초기부터 과열된 사교육 열풍 등을 잠재우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 중 하나가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이 놀이 중심, 여가 중심, 예술적 경험 중심으로 즐겁게 아동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부터 초등시기까지 맞벌이 부모 등 부모의 직접적인 육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책임의 양질의 돌봄제도가 구축되어야 함. -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방과후의 과정이 유아-고등학생까지의 연계된 서류와 공유 등 개인사적 권한으로 인해 전혀 다음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불필요한 국가세금 누수와 체계된 정보활용의 미흡을 보완할 것 -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 |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문제 해결책 중 하나임 - 자녀양육의 필수 선행요소 -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 등 근무시간 유연화에 차이가 나기 때문 -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일-가정 균형 및 부모의 양육권 보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제도 - 비교적 사업장별로 융통성 있게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 사료됨 - 유연근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태임. |
| 유보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복지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유보통합을 완성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로드맵 구축 필요 - 2024년 상반기 기준 교육부로의 보육업무 이관이 확정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교사자격, 교사양성과정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영유아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 다음세대 출생 및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유보통합을 통해 전체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부모 및 영유아들의 안정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 유보통합정책은 향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아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위한 여론수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일과 양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 상 하교 후 사립기관에 맡겨지는 현실에서 살피볼 때 양질의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정책 추진은 매우 중요함 - 정책의도는 바람직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행 해야 함. - 자녀들의 돌봄, 교육정책이 교육격차와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됨. - 영유아 돌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돌봄은 상당히 제도화, 체계화가 미흡한 비어 있는 부분임. 따라서 향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일제 교육이 정착을 통해 공교육 강화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급한 과제임. - 도입 초기인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 필요 - 부모들이 가장 육아부담을 느끼는 시기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의 1, 2순위를 합친 결과, “유보통합”이 46.0%로 가장 많이 나왔고,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28.0%), “보육서비스 질 제고”(24.0%),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22.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을 절반 이상이 중요한 과제로 응답한 반면, 기타 전문가는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50.0%)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하였다. 전문분야별, 경력이 많을수록 “유보통합”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표 IV-4-27〉 정부 육아 정책 중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1+2순위)

단위: %(명)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수) |
|------------------|-------|------|-------|------|------|-------|------|-------|-----|-------|------|------|------|
| 전체 | 20.0 | 8.0 | 8.0 | 46.0 | 24.0 | 28.0 | 20.0 | 8.0 | 4.0 | 6.0 | 6.0 | 22.0 | (50) |
| 전공 | | | | | | | | | | | | | |
| 유아교육 | 26.3 | 5.3 | 5.3 | 57.9 | 15.8 | 10.5 | 26.3 | 15.8 | 5.3 | 5.3 | - | 26.3 | (19) |
| 보육 | 10.5 | 15.8 | 10.5 | 52.6 | 36.8 | 31.6 | 10.5 | 5.3 | 5.3 | 5.3 | 10.5 | 5.3 | (19) |
| 기타 | 25.0 | - | 8.3 | 16.7 | 16.7 | 50.0 | 25.0 | - | - | 8.3 | 8.3 | 41.7 | (12) |
| 직종 | | | | | | | | | | | | | |
| 대학 교수 | 17.8 | 6.7 | 6.7 | 48.9 | 26.7 | 22.2 | 22.2 | 8.9 | 4.4 | 4.4 | 6.7 | 24.4 | (45) |
| 연구기관 연구원 | - | - | - | - | - | 100.0 | - | - | - | 100.0 | - | - | (1) |
| 현장전문가 | 100.0 | - | - | - | - | 100.0 | - | - | - | - | - | - | (1) |
| 기타전문가 | 33.3 | 33.3 | 33.3 | 33.3 | - | 66.7 | - | - | - | - | - | - | (3) |
| 전문분야 | | | | | | | | | | | | | |
| 유아교육/교육 | 25.9 | 3.7 | 11.1 | 37.0 | 22.2 | 29.6 | 18.5 | 11.1 | 3.7 | 11.1 | 3.7 | 22.2 | (27) |
| 아동보육/가족/여성 | 6.7 | 6.7 | 6.7 | 66.7 | 33.3 | 33.3 | 6.7 | 6.7 | 6.7 | - | 6.7 | 20.0 | (15) |
| 사회복지/정책 행정/경제/기타 | 25.0 | 25.0 | - | 37.5 | 12.5 | 12.5 | 50.0 | - | - | - | 12.5 | 25.0 | (8) |
| 해당분야 경력 | | | | | | | | | | | | | |
| 5~10년 미만 | - | - | 100.0 | - | - | - | - | 100.0 | - | - | - | - | (1) |
| 10~15년 미만 | 40.0 | - | - | 40.0 | 20.0 | 60.0 | 40.0 | - | - | - | - | - | (5) |
| 15~20년 미만 | 18.2 | 9.1 | 9.1 | 45.5 | 9.1 | 18.2 | 36.4 | 9.1 | - | - | 9.1 | 36.4 | (11) |
| 20년 이상 | 18.2 | 9.1 | 6.1 | 48.5 | 30.3 | 27.3 | 12.1 | 6.1 | 6.1 | 9.1 | 6.1 | 21.2 | (33) |

주: ① 부모급여도입 ②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③ 아동 진료체계 개선 ④ 유보통합 ⑤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⑥ 츄츄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⑦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⑧ 아동학대 방지 ⑨ 발달장애인 지원 ⑩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⑪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⑫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5. 소결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조사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65.5%로 가장 높았다. 부모 연령별로는 20대(85.7%), 30대(72.6%), 40대 이상(57.0%)로 나타나,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급여 도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첫째아 연령 기준으로는 영아부모(83.7%), 유아부모(69.9%), 초등부모(53.6%)로 나타나, 영아부모일수록 「부모급여 도입」을 성과가 가장 큰 과제로 선택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 진료체계 개선」이 48.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3.3%)이 남성(41.1%)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일수록 「아동 진료체계 개선」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50.0%로 가장 높았고 「아동 진료체계 개선」 30.3%,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부모급여」는 74.0%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2개 정책과제는 응답률에서 현저히 낮았다.

「부모급여 도입」은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책 수혜자 누락 가능성 미미하며, 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3개 과제 중에서 가장 미흡한 과제는 「아동 진료 체계 개선」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포함한 아동 진료체계 개선 사업이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의대증원 관련한 의정갈등이 영향을 많이 끼

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과제 중에서 향후 중점과제로는 「부모급여」(44%), 「아동진료체계 개선」(36%),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2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도입」은 예비부모에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영유아 보육 교육비가 기 때문,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추후에는 만2세의 현금 지원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라는 측면(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괄),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금 지원이 필요함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나. 교육·보육·돌봄 정책

1) 부모조사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19.5%),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16.8%), 「유보통합」(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보통합」이 2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14.2%),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19.7%),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16.1%), 「유보통합」(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이지만, 부모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보육서비스 질 제고」,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2) 전문가 조사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과제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유보통합」(28%)이다. 이 두 개 정책의 응답율을 합치면, 68.0%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학령기 부모의 요구가 높은 정책을 시행하였음, 취학 후 초등 돌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임, 초등저학년돌봄은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과제였음, 초등 저학년 자녀가정에서 1학년 입학시 매우 필요한 정책, 초등 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측면, 초 등돌봄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 체제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용이하며, 교사 양성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보육관련업무와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로 「유보통합」(2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식생활 건강권 강화」(16%) 「보육서비스 질 제고」(14%) 「발달장애인 지원」(12%) 순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유보통합 정책을 성과가 큰 과제이면서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 평가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 사항 없다고 판단됨, 각 기관의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라는 명분적 목적달성에 치중한다고 여겨짐,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미비,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안이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안내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음, 관례체계 일원화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유 보통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음,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등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식생활 건강권 강화」는 식생활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고 생활 운동 놀이 시간의 확대경험이 부족함, 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식생

활 건강권이 강화될 수 없음, 부모들의 식생활 이슈와 관련된 높은 관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함, 아동당 교사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 및 시간제보육은 크게 개선된 바 없음, 특히 장애가 있는 영유아당 교사 비율도 낮아서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등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 미흡,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부족하고 전문기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제한적임 등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역시, 「유보통합」(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22%) 「보육서비스 질 제고」(1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12%) 순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은 행정 조직 통합 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사 자격 통합, 재정지원 통합, 운영방법에 대한 통합이 발표되어야 함,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정책 추진이 중요함,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의 질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화 구조화, 그리고 마을 중심의 신뢰체계 구축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됨,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교사의 질 제고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완화, 사교육 완화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부모조사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 출산휴가, 모 근로시간 단축, 모 육아휴직, 부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가 가장 주된 불만족 이유로 꼽았고, 부 출산휴가, 부 근로시간 단축,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 대하여는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를 주된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특히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 대하여는 70.6%가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비하여 아직 유연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4%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선택한 비율에 있어 남성(60.9%)이 여성(5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3%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고, 특히 남성의 선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2)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를 낸 과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56.0%)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44.0%)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다양한 근로 시간제도 활용과 유연 근무 활성화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동들을 좀 더 잘 돌보고, 삶을 안정되게 도와주어 일가정 양립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 자녀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여성의 재택근무, 시간제근무는 반드시 필요함, 최근 기업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지원이 가능해짐,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자녀돌봄 시간지원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보다 더 많이 나왔다. 자녀돌봄을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기업규모나 업종별 차이 없이 자녀를 안정성 있게 돌보는 것이 중요함,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부모의 일-가정 균형 및 양육권 보장으로 일하는 부모의 행복도 증진, 다양한 근로시간의 확대로 부모가 양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됨, 회사의 경우 좀 더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 중 한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봄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라. 전체 육아정책 기준 평가

1) 부모조사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11.0%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급여 도입」은 1순위 기준으로 부모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되었고, 다른 정책과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 지역구분,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소득 기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 연령에 따라서는 20대(78.6%), 30대(54.4%), 40대 이상(42.6%)로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부모급여 도입」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첫째아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부모(74.7%), 유아부모(53.3%), 초등부모(34.5%) 순으로 나타나 첫째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급여 도입」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이는 부모급여의 대상이 0-1세 영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2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진료체계 개선」 12.8%, 「유보통합」이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도입」은 1순위 기준으로 부모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되었는데, 부모급여를 성과가 큰 정책으로 선택하지 않는 부모들 중 일부가 부모급여를 성과가 작은 정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급여」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유아 부모 및 초등 부모는 「부모급여」에 대한 선호가 낮을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진료체계 개선」을 선택한 부모 중 여성(15.6%)이 남성(9.3%)보다 높았고, 「유보통합」을 선택한 부모 중 여성(14.4%)이 남성(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중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진료체계 개선」 및 「유보통합」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3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 진료체계 개선」 10.5%,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성별 기준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46.0%)이 여성(27.5%)보다 부모급여를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부모 연령별로는 20대(71.4%), 30대(39.7%), 40대 이상(30.0%)로 나타나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33.5%), 미취업(38.4%)로 나타나, 미취업일수록 「부모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영아부모일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전문가 조사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정책과제들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 1순위로 「부모급여 도입」(46%)을 꼽았으며 「유보통합」(18%)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10%) 순으로 선택하였다. 전공, 직종, 전문분야, 경력 등 모든 변인에서 「부모급여 도입」을 성과가 가장 큰 육아정책 1순위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조사

에서 「부모급여 도입」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전문가들이 전체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1순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도입」은 0세와 1세의 최선의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하는 가정을 위해 양육의 물적 지원을 국가적으로 적극 개입한 것임, 부모가 영아를 기관에 보내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됨, 출산예정 가정에 실질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고 심적 안정감 제공효과 큼,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어 아동 양육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어린 아동을 둔 가정일수록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지원이 필요함, 아이 양육으로 당장 돈 쓸 곳이 많은 부모에게 부모급여라는 현금 지원은 효용성이 높고, 이로 인한 정책 지원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등이 제시되었다.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이나 단계적 유보 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게 판단함, 유보통합의 방향성 천명, 교육과정 통합에 이어 주무부처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것 등을 제시하였다.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을 결정한 점,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의 문제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웰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반면, 영유아 돌봄에 비해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덜 강조된 주제라는 점, 학교내 늘봄학교 도입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 사교육비 절감 등 국가의 교육, 돌봄을 위한 책임이 강화됨, 가시적으로 정책 실행이 눈에 보임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한 정책으로는 「유보통합」정책이 28.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진료체계 개선」이 26.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유보통합」 정책은 성과가 높은 정책의 앞 순위로 나왔는데, 미흡한 과제로도 많이 지적되었다.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부로 부처 통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시한 로드맵을 기준으로(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30.)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및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 진료체계 개선」정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의대 증원 등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전체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1순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은 법적인 유보통합을 이루어졌으나 교사양성체계, 현직 교사들의 통합문제, 기관의 재정 문제 등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음, 현재 부처간 통합만 이루어졌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 산재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가시적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음, 유보통합 자체에 열매이기 보다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육의 질 개선 등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 정책 내용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지 못함, 관련된 대국민 홍보의 절대적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아동 진료체계 개선」은 지역에 따라 전문기관과 인력 인프라에 따른 편차가 발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비함, 의정갈등과 의료수가의 문제로 소아과의 폐원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는 수가 적음 등이 지적되었다.

앞으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육아정책 1순위는 「유보통합」(34.0%)인 것으로 나왔다. 이어서 「부모급여」(16.0%), 「보육서비스 질 제고」(14.0%)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앞서 가장 추진이 미흡한 과제로 「유보통합」을 1순위로 꼽았는데, 중요도에서는 가장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기대를 읽을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 (국제지표를 중심으로)

- 01 심층분석의 필요성
- 02 인구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 03 저출산과 가족구성(family formation)에 관한 이론
- 04 저출산 담론 분석
- 05 심층분석의 성과지표
- 06 정책 성과분석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1. 심층분석의 필요성

저출산 대책의 골든타임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8로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합계출산율 1.3 미만)에 처음으로 돌입한 2002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 중 체코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합계출산율은 한국 0.81, 체코 1.83으로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OECD Statistics, Total Fertility Rate).

한국은 2002년 초저출산에 들어선 이후 20년이 넘게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의 반등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에 이어 2023년 합계출산율(잠정치)은 0.72를 기록하였고,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4a: 1). 이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며,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이미 골든타임이 2000년대 초반에 지났으며, 저출산이 반복되는 자기강화(self-enforcing) 메커니즘인 저출산함정(low fertility trap)에 빠진 상태(Lutz & Testa, 2006; 엄동욱, 2009; 조영태, 2021)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로 인해 장래에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출생아 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

(65세 이상)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30년 1,298만명, 2072년 1,727만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통계청, 2023a: 7).

초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유아교육·보육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기업이 영향을 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인구위기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가 유아교육·보육인 것이다. 이재희 외(2023)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저위가정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을 및 취원율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시 5년 이후인 2028년에는 2022년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감소 수는 12,416개, 2022년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감소율은 31.4%에 달한다고 전망하였다(이재희 외, 2023: 44).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율의 반등도 이루지 못하고,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결과는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2024년 1월 18일 발표한 저출산 관련 총선 공약에는 인구부(국민의힘), 인구위기대응부(더불어민주당) 신설 공약이 포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MBC뉴스, 2024.2.20).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에 대응하는 기획 부처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MBC뉴스, 2024.2.20).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정성호, 2018: 51).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과(outcome)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결과(outcome) 지표가

구성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획·설계(planning & design), 거버넌스(governance),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input) 지표를 구성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아교육·보육 정책(ECEC)를 포함한 육아정책은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로 저출산 대책의 핵심적인 분야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괄목한 만한 정책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구성하는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육아정책을 접근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20년 넘게 초저출산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구정책과 육아정책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구정책에서 육아정책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거시적 접근의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기술한 일반 성과평가는 산출(input)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심층분석은 결과(outcome)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outcome)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심층분석에서 국제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결과(outcome) 지표 중심으로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심층분석은 후술할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과(outcome) 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제시할 것이다.

2. 인구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가. 인구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인구정책(population policy)의 개념에 대해서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 The French Institute for Demographic Studies)에서는 명시적(explicitly) 또는 묵시적(implicitly)으로 인구(population)의 규모(population size), 성장(growth), 배치(distribution) 및 구성(compo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으로 규정한다 (<https://www.ined.fr/en/glossary/population-policy/>). May(2012, pp.1-2)는 인구정책을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 간 불균형을 방지, 지연, 혹은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취하는 공공정책으로 정의한다(우해봉·장인수, 2017, p.35에서 재인용). Demeny(2010, p.295)는 인구정책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인구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혹은 수정한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arrangements)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우해봉·장인수, 2017, p.35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들을 고려할 때 인구정책은 인구변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변동의 기본 요소는 출생, 사망, 이동이고, 이들은 인구정책의 대상이 된다(우해봉·장인수, 2017, p.36). 한 국가의 인구의 증감에 대해서는 출산력(fertility), 사망력(mortality),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을 기본 요소로 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핵심 지표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기대수명(life expectancy), 국제순이동(net migration rate)이 된다(통계청, 2023a: 3). 그러나 사망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출생과 인구가동이 인구정책의 핵심 목표 변수가 된다(Demeny, 2010, p.295; 우해봉·장인수, 2017, p.36에서 재인용). 인구변동의 기본 요소 중 출생과 인구가동이 인구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은 인구변동(특히 출생과 인구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국제인구가이동인 이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정책이 포함되었으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외국인 정책이 제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2023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이르러서야 외국인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p.4), 이민자의 정착·정주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p.35).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인구정책은 국제인구가이동인 이민을 다루지 않고, 출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은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

할 수 있다(조영태, 2021). 완화(mitigation)는 출산을 제고 또는 이민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고, 적응(adaptation)은 생산연령인구가 저출산으로 줄어들지만 여성 및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방안,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인프라 붕괴에 대한 대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930년대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발간된 Myrdal(1934)은 이러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완화(mitigation)에서는 이민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출산율 제고는 실패하였으며, 적응(adaptation)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인구정책은 정책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저출산과 저출생의 구별

한국의 인구정책이 출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저출생이 성평등적인 용어이고 저출산은 성차별적인 용어라고 주장한 이후 의식적으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정재훈, 2024: 15). 해당 자료에서는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출산과 저출생은 인구학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고, 저출생은 조출생률(crude birth rate)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을 말한다(통계청, 2023b: 43). 조출생률은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통계청, 2023b: 43),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할 때 의미가 있는 지표이고, 조출생률은 지역소멸 및 지역 인프라 등의 의제를 분석할 때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소멸지역은 가임여성 인구가

희소하기 때문에 여성 1명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수준이어도 해당 지역의 조출생률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 아닌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 / Below-replacement fertility)은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합계출산율 2.1) 미만의 출산율을 의미한다. 대체출산율은 이민을 수용하지 않고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율을 말한다. 출생시 자연적인 성비는 남성 105명, 여성 100명으로 나타나고,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을 고려하여, UN Population Division 등에서는 대체출산율을 합계출산율 2.1로 보고 있다(2015 World Fertility Report Highlights, United Nations, 조영태, 2021: 20).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 (lowest-low fertility)이라 하게 되는데, 초저출산을 저출산과 구분하는 이유는 초저출산이 발생하게 되면 출산율이 반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조영태, 2021: 20).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8이 된 이후 초저출산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다.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관계

기존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기존의 인구정책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국가가 시민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에서 가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정재훈, 2023).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현재의 사회적 인구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시각은 기존의 인구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인구정책(population policies)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민을 동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 기반하여,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이상림 외, 2022: 66-77; 박선권 외, 2023: 239-240).

그러나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그 범주와 목표가 다른 정책이라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은 출생, 사망, 이주를 다루고 가족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행복추구를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생은 가족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이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정책은 이민정책,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적응하는 지역 인프라 정비,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주여건 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는 범주가 동일하지 않다 (조영태, 2022).

무엇보다 근대 인구정책 및 인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부터가 가족관계의 재구성을 매우 중시하였다.

근대 인구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는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맬서스의 문제의식은 다른 어떤 사회정책보다 인구변동(population change)이 시민의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것이다.

맬서스주의(Malthusianism)에서 출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산이 늘어나면 한정된 자원의 1인당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시민의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이 하락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는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고, 그 수단으로 가족관계의 재구성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제고, 가족관계의 재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인구정책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근대 인구정책이 나타난 시기부터 이미 가족관계의 재구성은 인구정책의 핵심 주제였다고 볼 수 있다.

3. 저출산과 가족구성(family formation)에 관한 이론

가. 서론

경제발전에 따라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1차 인구변천(first demographic transition)이 일어난 선진국(post-transitional societies)의 가족 구성(결혼, 출산 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은 게리 베커(Gary Becker)의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과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에 중점을 두는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on & Billari, 2015: 1). 그 이외에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저출산 대책, 특히 고용 및 주거지원을 통해 결혼을 늘림으로써 저출산에 대처하려는 청년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과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나.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에 대해서는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1798)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맬서스는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이 향상되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보았다(Galor & Weil, 2000).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의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는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므로, 만혼과 비혼을 통해 출산을 억제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맬서스는 만혼과 비혼을 통해 출산을 통제하는 것을 예방적 억제(preventive check)라고 명시하였고, 예방적 억제(preventive check)를 통해 출산이 통제되지 않으면,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부족으로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적극적 억제(positive check)라고 명시하였다.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이 향상되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보는 시각이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의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는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므로, 만혼과 비혼을 통해 출산을 억제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할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과 함께 맬서스 모델은 출산에 미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강조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만혼과 비혼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주거 및 고용 등의 청년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맬서스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보다 주관적인 행복도를 포함한 개념이라 구분되지만 주거 및 고용 등 청년지원정책에 중점을 두는 방향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도 맬서스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3-1〉 국민 삶의 질 2020 지표(통계청·통계개발원)

| 영역 | 객관적 지표(42) | 주관적 지표(29) |
|----------|------------|------------|
| 가족·공동체 | 독거노인 비율 | 가족관계 만족도 |
| | 사회적 고립도 | 지역사회 소속감 |
| | 사회단체 참여율 | - |
| 건강 | 기대수명 | 주관적 건강상태 |
| | 건강수명 | 스트레스 인지율 |
| | 신체활동 실천율 | - |
| | 비만율 | - |
| | 자살율 | - |
| 교육 | 유아교육 취원율 | 학교교육의 효과 |
| | 고등교육 이수율 | 학교생활 만족도 |
| | 대학졸업자 취업률 | 교육비 부담도 |
| 고용·임금 | 고용률 | 일자리 만족도 |
| | 실업률 | - |
| | 월평균 임금 | - |
| | 근로시간 | - |
| | 저임금근로자 비율 | - |
| 소득·소비·자산 | 1인당 국민총소득 | 소득만족도 |
| | 가구중위소득 | 소비생활 만족도 |
| | 가구순자산 | - |
| | 가계부채비율 | - |
| | 상대적 빈곤율 | - |

| 영역 | 객관적 지표(42) | 주간적 지표(29) |
|------------|-----------------|---------------|
| 여가 | 여가시간 | 여가생활 만족도 |
| | 1인당 여행일수 | 여가시간 충분도 |
| | 문화여가 지출률 | - |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 |
| 주거 | 1인당 주거면적 | 주거환경 만족도 |
| | 통근시간 | - |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
| | 주택임대료 비율 | - |
| 환경 | 자가점유가구 비율 | - |
| | 미세먼지 농도 | 기후변화 불안도 |
| | 1인당 도시공원 비율 | 대기질 만족도 |
|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수질 만족도 |
| | - | 토양환경 만족도 |
| | - | 소음 만족도 |
| 안전 | - | 녹지환경 만족도 |
| | 가해에 의한 사망률 | 야간보행 안전도 |
|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 | 범죄피해율 | - |
|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 |
| | 산재사망률 | - |
| | 화재사망자수 | - |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 |
| 시민참여 | 선거투표율 | 정치적 역량감 |
|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시민의식 |
| | - | 부패인식지수 |
| | - | 대인신뢰도 |
| | - | 기관신뢰도 |
| 주관적 웰빙 | - | 삶의 만족도 |
| | - | 긍정정서 |
| | - | 부정정서 |

자료: 통계청·통계개발원(2021), 국민 삶의 질 2020, pp.14-15.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은 총 48조1,677억원이다. 이중 직접지원(출산 및 양육지원) 예산은 21조2,274억원(44%)이고, 간접지원(청년 고용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을 조성) 예산은 26조9,403억원(56%)이다. 이중 주거, 일자리·직장,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은 23조8,388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의 49.5%에 달한다. 이러한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의 구성은 생활 수준(standard of living)의 향상이 결혼 및 출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에 기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3-2〉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 구분 | 영역 구분 | 주요 사업 | 2023년 예산 (총 48조1,677억원) | |
|--|---------|---|----------------------------|----------------|
| 직접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 보육·돌봄 | 유아교육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 12조1,845억원 | 21조 2,274억원 |
| | 자녀수당 |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 7조502억원 | |
| | 모성보호 |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1조8,279억원 | |
| | 출산·건강지원 |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난임우울증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예방접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1,648억원 | |
| 간접지원 (청년 고용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을 조성) | 주거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다가구매입임대, 공공임대 용자(출자),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 21조3,570억원 | 26조 9,403억원 |
| | 일자리·직장 | 청년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지원 등 | 1조5,344억원 | |
| | 사회환경·기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1조8,717억원 | |
| | 자산형성 | 청년내일채움공제, 보호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 | 9,474억원 | |
| | 교육 | 교육급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 1조2,298억원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b),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전략, p.22의 표를 재구성

그러나 후술하듯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결혼을 증가시키므로써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식이 성공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한국의 혼인 증가에 중점을 둔 정책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봐야 한다.

맬서스의 이론에 근거한 접근 중 지역균형발전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접근이 있다. 조영태(2021)는 맬서스의 이론에 기반하여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를 높여 청년 세대의 경쟁을 격화시키므로써 출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지만,



다른 시도도 모두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잠정)에서는 모든 시도가 합계출산율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통계청, 2024a). 수도권 집중이 경쟁을 격화시켜 출산을 감소시켰다면 수도권 이외의 시도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아야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시도에서도 합계출산율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표 V-3-3〉 시·도별 합계출산율

| 구분 | 2021 | 2022 |
|----|------|------|
| 전국 | 0.81 | 0.78 |
| 서울 | 0.63 | 0.59 |
| 부산 | 0.73 | 0.72 |
| 대구 | 0.78 | 0.76 |
| 인천 | 0.78 | 0.75 |
| 광주 | 0.90 | 0.84 |
| 대전 | 0.81 | 0.84 |
| 울산 | 0.94 | 0.85 |
| 세종 | 1.28 | 1.12 |
| 경기 | 0.85 | 0.84 |
| 강원 | 0.98 | 0.97 |
| 충북 | 0.95 | 0.87 |
| 충남 | 0.96 | 0.91 |
| 전북 | 0.85 | 0.82 |
| 전남 | 1.02 | 0.97 |
| 경북 | 0.97 | 0.93 |
| 경남 | 0.90 | 0.84 |
| 제주 | 0.95 | 0.92 |

자료: 통계청(2023b). 2022년 출생 통계.

이에 대해 서울에 가지 못한 지방의 청년들이 자신만 뒤처지는 듯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밀도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도 있다(조영태, 2021: 95). 그러나 후술하듯이 한국사회는 제1차 인구변천(first demographic transition) 시기에 자리잡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유일한 가족유형(single family model)인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를 내재화하고 있다.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재정적 기반이 없으면 결혼을

해서는 안되고(no marriage without solid financial basis or prospects), 결혼을 하지 않고는 출산을 해서는 안된다는(procreation strictly within wedlock),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로 순서화된 생애경로 이행(highly ordered life-course transitions)이다(Lesthaeghe, 2010: 218).

결혼을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 높은 수준의 소득, 주택 마련 등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이러한 안정된 결혼을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혼을 통한 출산만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문화에서는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보다 지역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진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줄어들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은 분리되는 추세이다. 더 큰 문제는 후술하듯이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가치관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만혼 및 비혼은 한국 뿐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에서 일어나는 추세이며,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한다고 해도 결혼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서스 모델(Malthus model)의 접근은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주거 및 고용 지원으로 구성된 청년지원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지원정책의 근거 중 하나는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하락시켰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를 보면 가장 높았던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서울 204.0이지만 전남, 전북, 경북 등은 40미만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율 하락은 설명할 수 있으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낮은 시도의 출산율 하락은 설명하지 못한다.

〈표 V-3-4〉 주택구입부담지수

| 구분 | 2021년 2분기 | 2022년 2분기 | 2023년 2분기 |
|----|-----------|-----------|-----------|
| 전국 | 68.3 | 84.9 | 68.0 |
| 서울 | 172.9 | 204.0 | 165.2 |
| 부산 | 68.6 | 83.7 | 71.7 |
| 대구 | 72.3 | 76.6 | 62.2 |
| 인천 | 72.2 | 94.1 | 72.4 |
| 광주 | 48.1 | 62.2 | 57.3 |
| 대전 | 69.3 | 84.1 | 67.6 |

| 구분 | 2021년 2분기 | 2022년 2분기 | 2023년 2분기 |
|----|-----------|-----------|-----------|
| 울산 | 54.2 | 61.8 | 53.0 |
| 세종 | 140.4 | 133.3 | 100.3 |
| 경기 | 93.4 | 115.8 | 88.0 |
| 강원 | 32.1 | 41.2 | 39.9 |
| 충북 | 33.4 | 41.3 | 37.5 |
| 충남 | 35.6 | 43.7 | 39.1 |
| 전북 | 29.7 | 37.8 | 35.4 |
| 전남 | 29.2 | 33.3 | 31.5 |
| 경북 | 27.2 | 34.6 | 32.2 |
| 경남 | 38.1 | 45.8 | 42.3 |
| 제주 | 66.8 | 85.0 | 82.7 |

주: K-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 주택구입부담지수

- 서울 K-HAI 90.1은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 지역의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부담액(소득의 약25%)의 90.1%를 주택구입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자료: 주택구입부담지수(한국주택금융공사)

2015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21년 4분기의 명목 주택가격(nominal house price)를 보면 OECD 평균이 153.1이지만 한국은 120.86에 불과하다. 전국을 기준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중 예산상으로는 50% 이상을 차지하는(국회예산정책처, 2023a: 24) 청년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V-3-5〉 House price index (OECD) (2015=100)

| country | Nominal | Real | PIR |
|----------------|---------|-----------|-----------|
| Australia | 143.56 | 123 | 115 |
| Austria | 161.89 | 138 | 135 |
| Belgium | 129.81 | 116 | 109 |
| Canada | 167.84 | 144 | 134 |
| Chile | 172.31 | 128(2020) | 126(2020) |
| Colombia | 147.80 | 112(2020) | 111(2020) |
| Czech Republic | 200.92 | 161 | 132 |
| Denmark | 139.70 | 130 | 117 |
| Estonia | 163.61 | 132 | 109 |
| Euro area | | 125 | 117 |
| Finland | 111.70 | 105 | 100 |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 country | Nominal | Real | PIR |
|-----------------|---------|-----------|-----------|
| France | 128 | 118 | 109 |
| Germany | 161.91 | 141 | 133 |
| Greece | 122.79 | 112(2020) | 107(2020) |
| Hungary | 224.19 | 167 | 128 |
| Iceland | 187.79 | 157 | |
| Ireland | 154.53 | 133 | 111 |
| Israel | 132.53 | 122 | |
| Italy | 104.68 | 99 | 95 |
| Japan | 118.25 | 114 | 107 |
| Korea | 120.86 | 108 | 99 |
| Latvia | 172.21 | 140 | 110 |
| Lithuania | 176.36 | 142 | 104 |
| Luxembourg | 179.96 | 157 | 140 |
| Mexico | 160.46 | 119 | |
| Netherlands | 175.61 | 131(2020) | 124(2020) |
| New Zealand | 193.68 | 134(2020) | 117(2020) |
| Norway | 137.48 | 117 | 112 |
| OECD-Total | 153.10 | 129 | 118 |
| Poland | 155.29 | 129 | 103 |
| Portugal | 177.24 | 158 | 142 |
| Slovak Republic | 162.68 | 138 | 117 |
| Slovenia | 160.76 | 140 | 112 |
| Spain | 136.23 | 124 | 120 |
| Sweden | 139.08 | 122 | 113 |
| Turkiye | 290.23 | 112 | |
| Switzerland | 127.39 | 122 | 118 |
| United Kingdom | 134.22 | 120 | 117 |
| United States | 167.68 | 141 | 121 |

주: House price nominal 2021 Q4

Real house price index 2021: nominal house prices deflated by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2015=base

Price-to-income ratio (OECD) 2021: nominal house price divided by nominal income per head, 2015=base year

자료: OECD Statistics.

후술할 베커 모델(Becker model) 및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은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이 왜 현대사회에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

이스털린 모델(Easterlin)은 Richard Easterlin이 제시한 이론으로 여기에서는 Easterlin(1976, 1978)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은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 코호트 크기(birth cohort size)가 감소하면 청년 남성(young male)의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 증가하여 출산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소득은 부모세대와 비교한 청년세대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출산율이 하락하여 청년세대의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들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모델이다.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은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청년지원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7). 이스털린 모델에서 제시하는 가정은 청년이 경험해온 생활수준보다 향후 자신의 생활수준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출산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2019) 이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주거, 고용 지원 등 청년지원 예산은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24). 이스털린 모델 자체에는 청년을 지원해서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개념은 없지만 저출산 대책 예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지원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하락하여 청년세대의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들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모델인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은 다음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민 규제(immigrant restriction), 통화 및 재정정책(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을 통해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 전통적 성 역할(traditional gender roles)의 유지(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male breadwinner model)이라는 전제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Easterlin, 1978).

그러나 세계화(globalization)와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의 진행으로 인해 위의 전제 조건은 현재 모두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스털린 모델은 1970년대에 등장한 이론으로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다.

남성은 소득이 증가할 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후술할 베커 모델(Becker model)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 성역할(traditional gender roles)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이 증가하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증가하여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게 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서 이인소득자 모델(dual earner model)로 이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스털린 모델은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은 1970년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 청년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는 비경력직(non-career jobs)을 전제하고, 언제든지 고령 여성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Easterlin, 1978: 403).

한국의 35-64세 남성 인구 대비 20-34세 남성 인구 비율을 보면 2000년은 0.714였으나, 2020년은 0.425로 감소하였다(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산). 2000년 대비 2020년은 35-64세 남성 인구 대비 20-34세 남성 인구 비율은 0.595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스털린 모델에 따르면 청년 남성 인구가 감소하였으므로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어 청년 남성의 소득이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도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2000년 합계출산율은 1.48이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런 점을 볼 때 이스털린 모델은 현대 한국사회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베커 모델(Becker model)

베커 모델은 게리 베커(Gary Becker)가 제시한 이론으로 여기에서는 Becker(1992)와 Becker & Lewis(1973)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베커 모델(Becker model)은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과 여성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이수 확대에 의해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에서는 출산 및 양육의 비용(cost of children)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멜서스주의에서는 개인의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이 향상되면 결혼 및 출산도 증가한다고 보았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생활수준이 향상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게리 베커(Gary Becker)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였다.

멜서스 및 이스털린이 소득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구성한 반면, 베커는 출산 및 양육의 비용(cost of children)이 출산에 미치는 가격효과(price effect)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구성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이득(benefit)보다 출산과 양육의 가격(price)이 더 높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었고, 아동노동(child labor)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비용(cost)이 낮았던 반면, 사회보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해야만 했으므로, 자녀를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수준이 높아져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늘어났다. 출산 및 양육의 비용(cost of children)은 직접 비용(direct cost)과 간접 비용(indirect co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비용(direct cost)은 자녀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of children) 투자를 위한 비용(교육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간접비용(indirect cost)은 부모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of parents) 특히 엄마의 교육수준 상승에 기인한 시장임금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구성된다. 현대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증가가 야기하는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가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압도하여 자녀에 대한 수요(demand for children)가 감소함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Becker & Lewis(1973)는 자녀의 양과 질의 교환(quantity and quality trade-off)로 설명하는데, 소득이 높아지면 양육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자녀의 수를 줄이는 대신 높아진 소득으로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조덕상·한정민, 2024: 2; 이영욱 외, 2024: 20). 이는 자녀의 수(quantity of children)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은 자녀의 질(quality of children)보다 높지만, 자녀의 수(quantity of children)

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은 자녀의 질(quality of children)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Becker & Lewis, 1973: 86). 따라서 자녀 양육의 비용이 증가할 수록 자녀 교육비를 줄이기보다는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를 늘리기보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에서 가정하는 소득 증가로 인한 출산 증가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줄이기 위해 후술하는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의 일가정 양립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베커 모델(Becker model)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주목하는데, 2020년 기준 25-34세 여성(76%)과 55-64세 여성(18%)의 고등교육 이수율 차이는 한국이 58%로 OEC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어머니 세대보다 딸 세대가 고등교육 이수율이 4배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2020년 기준 25-34세 여성과 55-64세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 차이는 OECD에서 2위인 폴란드는 34%로 한국과 큰 격차가 있고, 미국 11%, 일본 22%, 프랑스 26%, 독일 13%, 스웨덴 18%, 영국 19%, OECD 평균 23%, EU 평균 24%으로 한국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3-6〉 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group and gender (2020).

단위: %

| country | 25-34 | | | 55-64 | | | diff |
|----------------|-------|-------|-------|-------|-------|-------|-------|
| | Men | Women | Total | Men | Women | Total | Women |
| Korea | 64 | 76 | 70 | 33 | 18 | 25 | 58 |
| United States | 47 | 57 | 52 | 43 | 46 | 44 | 11 |
| Japan | 59 | 64 | 62 | 47 | 42 | 44 | 22 |
| Sweden | 40 | 58 | 49 | 25 | 40 | 33 | 18 |
| Germany | 33 | 36 | 35 | 32 | 23 | 28 | 13 |
| France | 46 | 53 | 49 | 26 | 27 | 26 | 26 |
| United Kingdom | 52 | 59 | 56 | 39 | 40 | 29 | 19 |
| OECD | 39 | 52 | 45 | 28 | 29 | 29 | 23 |
| EU22 | 37 | 52 | 45 | 26 | 28 | 27 | 24 |
| G20 | 37 | 44 | 40 | 26 | 25 | 26 | 19 |
| Italy | 23 | 35 | 29 | 13 | 13 | 13 | 22 |
| Spain | 41 | 54 | 47 | 29 | 27 | 28 | 27 |
| Portugal | 35 | 49 | 42 | 15 | 19 | 17 | 30 |

| country | 25-34 | | | 55-64 | | | diff |
|-----------------|-------|-------|-------|-------|-------|-------|-------|
| | Men | Women | Total | Men | Women | Total | Women |
| Denmark | 39 | 56 | 47 | 26 | 35 | 31 | 21 |
| Norway | 42 | 60 | 51 | 33 | 36 | 34 | 24 |
| Finland | 37 | 53 | 45 | 36 | 50 | 43 | 3 |
| Australia | 47 | 62 | 55 | 34 | 39 | 36 | 24 |
| New Zealand | 39 | 49 | 44 | 32 | 31 | 32 | 18 |
| Belgium | 41 | 56 | 49 | 32 | 33 | 32 | 23 |
| Netherlands | 47 | 57 | 52 | 36 | 29 | 32 | 28 |
| Estonia | 33 | 55 | 43 | 29 | 48 | 39 | 7 |
| Poland | 33 | 53 | 42 | 14 | 19 | 17 | 34 |
| Greece | 37 | 51 | 44 | 27 | 21 | 24 | 30 |
| Israel | 37 | 58 | 47 | 45 | 48 | 46 | 10 |
| Ireland | 54 | 62 | 58 | 32 | 35 | 33 | 27 |
| Austria | 37 | 46 | 41 | 30 | 21 | 25 | 25 |
| Canada | 56 | 73 | 64 | 46 | 53 | 50 | 20 |
| Chile | 30 | 37 | 34 | 17 | 16 | 16 | 21 |
| Colombia | 26 | 34 | 30 | 16 | 16 | 16 | 18 |
| Costa Rica | 31 | 35 | 32 | 21 | 21 | 21 | 14 |
| Hungary | 25 | 36 | 31 | 18 | 23 | 20 | 13 |
| Iceland | 31 | 47 | 38 | 29 | 33 | 31 | 14 |
| Latvia | 34 | 55 | 44 | 22 | 35 | 29 | 20 |
| Lithuania | 46 | 68 | 56 | 25 | 36 | 31 | 32 |
| Mexico | 53 | 64 | 58 | 38 | 30 | 34 | 34 |
| Slovak Republic | 29 | 49 | 39 | 18 | 17 | 17 | 32 |
| Slovenia | 36 | 57 | 45 | 22 | 26 | 24 | 31 |
| Turkey | 35 | 36 | 35 | 13 | 8 | 11 | 28 |
| Czech Republic | 26 | 40 | 33 | 19 | 16 | 18 | 24 |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 지속될 수 없게 만든다. 일본 내각부에서 7개 국가 13-2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International survey of youth attitude 2018(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의 문항 중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Men should work outside of the home and women stay home and take care of it)에 대한 반대 응답은 한국이 85.7%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일가정양립이 안될 시 베커 모델(Becker model)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표 V-3-7〉 International survey of youth attitude 2018(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13-29세)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Men should work outside of the home and women stay home and take care of it.) 에 대한 응답

단위: %

| country | Agree | Disagree | Don't know |
|----------------|-------|----------|------------|
| Korea | 8.2 | 85.7 | 6.1 |
| Japan | 14.6 | 48.5 | 36.9 |
| United States | 35.7 | 55.7 | 8.7 |
| United Kingdom | 26.1 | 65.4 | 8.6 |
| Germany | 20.1 | 72.4 | 7.4 |
| France | 22.2 | 71.5 | 6.3 |
| Sweden | 17.4 | 76.6 | 6.0 |

자료: International survey of youth attitude 2018(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마.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에 대해서는 Esping-Anderson & Billari(2015), 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ard(2015), Mcdonald(2013)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은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은 2단계로 진행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의 1단계(first phase)는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 여성이 진입하는 단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의 2단계(second phase)는 사적 영역(private sphere)에 남성이 진입하는 단계로 육아와 가사(childcare and housework)를 남성이 분담하는 시기이다.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의 1단계(first phase)에서는 전통적 성역할(traditional gender roles)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이 되지 않으므로 여성이 일과 가정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나, 2단계(second phase)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에 따라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다시 상승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베커 모델과 연계해 보면 젠더 혁명의 1단계에서는 일가정양립이 되지 않아 여성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상승하므로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2단계에서는 일가정양립이 가능하여 여성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하락하므로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 진행에 따라 출산율은 U자형(U-shaped)을 그리게 된다(Esping-Anderson & Billari, 2015).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2019년 한국이 57%로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OECD 4번째로 낮다(미국 70.0%, 일본 70.6%(2018), 스웨덴 86.1%, 독일 73.2%, 프랑스 73.0%, 영국 74.2%, 이스라엘 77.0%, OECD 평균 70.9%, EU 평균 73.0%).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3-8〉 Employment rates (%) for all mothers (15-64 year olds) with at least one child under 15

단위: %

| country | 2000 | 2010 | 2019 |
|----------------|------------|------------|------------|
| Germany | - | 65.8 | 73.2 |
| Lithuania | - | 71.8 | 80.8 |
| Estonia | 63.5 | 61.8 | 71.0 |
| Canada | - | - | 76.8 |
| Italy | - | 54.7 | 57.5 |
| Hungary | 54.8 | 52.3 | 63.4 |
| Chile | - | 51.0(2011) | 59.4(2017) |
| Ireland | - | 56.4 | 68.4 |
| Portugal | 75.5 | 73.4 | 83.8 |
| United Kingdom | 63.3 | 64.7 | 74.2 |
| New Zealand | 56.3 | 61.3 | 72.6 |
| Luxembourg | 56.2 | 69.0 | 76.4 |
| Israel | 56.9(2001) | 64.9 | 77.0 |
| France | - | 72.0 | 73.0 |
| Netherlands | 64.8 | 77.7 | 80.1 |
| Slovenia | - | 83.8 | 86.6 |
| Czech Republic | - | 57.3 | 67.0 |
| Latvia | - | 67.8 | 78.3 |
| Greece | 50.7 | 57.9 | 59.9 |
| Belgium | 67.3 | 72.0 | 73.5 |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자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 country | 2000 | 2010 | 2019 |
|-----------------|------|------------|------------|
| Spain | 45.4 | 59.3 | 67.5 |
| Poland | - | 65.5(2011) | 70.3 |
| Mexico | - | 42.2 | 46.6 |
| Finland | - | 73.5 | 76.4 |
| Australia | 56.8 | 61.6 | 68.8 |
| Austria | - | 73.1 | 77.6 |
| United States | - | 64.5 | 70.0 |
| Sweden | - | 79.9 | 86.1 |
| Denmark | - | 83.0(2011) | 81.7 |
| Slovak Republic | - | 56.0 | 61.8 |
| Iceland | - | 77.2 | 81.7 |
| Japan | 49.9 | 57.4 | 70.6(2018) |
| Switzerland | - | 70.0 | 77.7 |
| Turkiye | - | 25.9 | 30.0 |
| Costa Rica | 38.1 | 49.2 | 52.1 |
| Korea | - | - | 57.0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5-29세와 35-39세의 성별 고용률 차이는 2018년 기준 한국이 33.78%로 OEC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2위인 일본 11.52%의 3배 가까운 차이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도 한국에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V-3-9〉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단위: %

| country | sex | 25-29 | diff | 35-39 | diff | diff-in-diff |
|-----------|-------|-------|-------|-------|-------|--------------|
| Australia | men | 84.67 | 8.86 | 89.25 | 15.64 | 6.78 |
| | women | 75.81 | | 73.61 | | |
| Austria | men | 84.01 | 6.72 | 90.20 | 8.98 | 2.26 |
| | women | 77.29 | | 81.22 | | |
| Belgium | men | 79.28 | 7.45 | 84.45 | 7.17 | -0.28 |
| | women | 71.83 | | 77.28 | | |
| Canada | men | 82.94 | 3.79 | 88.63 | 10.28 | 6.49 |
| | women | 79.15 | | 78.35 | | |
| Chile | men | 75.99 | 14.52 | 87.57 | 21.38 | 6.86 |
| | women | 61.47 | | 66.19 | |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country | sex | 25-29 | diff | 35-39 | diff | diff-in-diff |
|----------------|-------|-------|-------|-------|-------|--------------|
| Colombia | men | 86.74 | 25.83 | 91.98 | 23.52 | -2.31 |
| | women | 60.91 | | 68.46 | | |
| Czech Republic | men | 90.53 | 23.38 | 96.06 | 18.47 | -4.91 |
| | women | 67.15 | | 77.59 | | |
| Denmark | men | 77.70 | 5.77 | 89.72 | 10.43 | 4.66 |
| | women | 71.93 | | 79.29 | | |
| Estonia | men | 89.34 | 19.65 | 90.28 | 12.97 | -6.68 |
| | women | 70.19 | | 77.31 | | |
| Finland | men | 79.15 | 8.82 | 87.92 | 9.06 | 0.24 |
| | women | 70.33 | | 78.86 | | |
| France | men | 79.77 | 8.12 | 87.65 | 11.12 | 3.0 |
| | women | 71.65 | | 76.53 | | |
| Germany | men | 82.49 | 5.75 | 90.71 | 11.85 | 6.1 |
| | women | 76.74 | | 78.86 | | |
| Greece | men | 66.28 | 14.13 | 82.31 | 21.42 | 7.29 |
| | women | 52.15 | | 60.89 | | |
| Hungary | men | 86.86 | 19.11 | 92.18 | 18.21 | -0.9 |
| | women | 67.75 | | 73.97 | | |
| Iceland | men | 86.52 | 4.09 | 92.67 | 4.76 | 0.67 |
| | women | 82.43 | | 87.91 | | |
| Ireland | men | 78.72 | 1.96 | 87.47 | 12.42 | 10.46 |
| | women | 76.76 | | 75.05 | | |
| Israel | men | 73.94 | -0.56 | 87.13 | 8.42 | 8.98 |
| | women | 74.55 | | 78.71 | | |
| Italy | men | 61.12 | 13.29 | 83.39 | 21.44 | 8.15 |
| | women | 47.83 | | 61.95 | | |
| Japan | men | 90.31 | 9.39 | 93.88 | 20.91 | 11.52 |
| | women | 80.92 | | 72.97 | | |
| Korea | men | 69.52 | -1.37 | 91.61 | 32.41 | 33.78 |
| | women | 70.89 | | 59.20 | | |
| Latvia | men | 81.50 | 5.95 | 89.55 | 12.29 | 6.34 |
| | women | 75.55 | | 77.26 | | |
| Lithuania | men | 87.87 | 6.65 | 88.83 | 5.28 | -1.37 |
| | women | 75.55 | | 83.55 | | |
| Luxembourg | men | 81.54 | 4.86 | 91.42 | 9.37 | 4.51 |
| | women | 76.86 | | 82.05 | | |
| Mexico | men | 88.06 | 36.26 | 93.54 | 38.27 | 2.01 |
| | women | 51.87 | | 55.27 | | |
| Netherlands | men | 85.57 | 2.92 | 91.31 | 10.82 | 7.9 |
| | women | 82.65 | | 80.49 | | |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 country | sex | 25-29 | diff | 35-39 | diff | diff-in-diff |
|-----------------|-------|-------|-------|-------|-------|--------------|
| New Zealand | men | 88.44 | 12.25 | 91.35 | 13.97 | 1.72 |
| | women | 76.19 | | 77.38 | | |
| Norway | men | 80.37 | 1.56 | 89.13 | 9.45 | 7.89 |
| | women | 78.81 | | 79.68 | | |
| Poland | men | 88.00 | 17.8 | 91.16 | 14.49 | -3.31 |
| | women | 70.20 | | 76.67 | | |
| Portugal | men | 80.40 | 1.24 | 90.41 | 4.35 | 3.11 |
| | women | 79.16 | | 86.06 | | |
| Slovak Republic | men | 83.14 | 19.23 | 89.63 | 18.33 | -0.9 |
| | women | 63.91 | | 71.30 | | |
| Slovenia | men | 84.36 | 9.37 | 91.58 | 2.44 | -6.93 |
| | women | 74.99 | | 89.14 | | |
| Spain | men | 69.73 | 5.48 | 83.98 | 12.0 | 6.52 |
| | women | 64.25 | | 71.98 | | |
| Sweden | men | 82.51 | 5.05 | 91.17 | 6.42 | 1.37 |
| | women | 77.46 | | 84.75 | | |
| Switzerland | men | 88.09 | 4.21 | 92.48 | 11.64 | 7.43 |
| | women | 83.88 | | 80.84 | | |
| Turkiye | men | 80.28 | 41.31 | 88.24 | 45.88 | 4.57 |
| | women | 38.97 | | 42.36 | | |
| United Kingdom | men | 87.38 | 10.65 | 90.83 | 13.82 | 3.17 |
| | women | 76.73 | | 77.01 | | |
| United States | men | 84.03 | 10.55 | 88.31 | 16.07 | 5.52 |
| | women | 73.48 | | 72.24 | | |
| Costa Rica | men | 82.60 | 26.98 | 90.48 | 24.52 | -2.46 |
| | women | 55.62 | | 65.96 | | |
| OECD | men | 82.41 | 14.46 | 89.58 | 20.54 | 6.08 |
| | women | 67.95 | | 69.04 | | |

자료: OECD Statistics.

2019년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한국이 32.48%로 2위 이스라엘 24.32%, 3위 일본 23.48%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미국 18.47%, 영국 16.1%, 독일 13.99%, 프랑스 11.82%(2018), 스웨덴 7.58%, OECD average 12.6%) 2021년 기준으로는 한국 31.1%, OECD 평균 11.9%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V-3-10〉 Gender wage gap (median) for full time employees

단위: %

| country | 2000 | 2010 | 2019 |
|-----------------|-------------|------------|-------------|
| Italy | 8.52 | 5.64 | 7.64 |
| Latvia | - | 19.06 | 19.76 |
| Portugal | - | 16.02 | 11.42 |
| Chile | 6.07 | 9.09(2009) | 8.6(2020) |
| Ireland | 19.73 | 14.35 | 8.28(2018) |
| Canada | 23.88 | 18.98 | 17.61 |
| Slovenia | - | 0.99 | 8.19(2018) |
| Israel | 27.97(2001) | 20.39 | 24.32 |
| Greece | - | 9.91 | 5.91 |
| Netherlands | - | 17.89 | 13.4 |
| Germany | 19.54 | 16.69 | 13.99 |
| France | 14.57 | 9.12 | 11.82(2018) |
| Poland | 14.3(2001) | 7.19 | 8.69(2020) |
| Czech Republic | 16.88(2001) | 15.8 | 14.71 |
| Mexico | - | 11.63 | 18.75 |
| Switzerland | 23.79 | 20.05 | 13.8(2020) |
| Luxembourg | - | 4.59 | - |
| Turkiye | - | 3.1 | 9.98(2018) |
| Finland | 20.43 | 18.88 | 17.16 |
| Korea | 41.65 | 39.61 | 32.48 |
| New Zealand | 7.17 | 7.01 | 6.51 |
| United States | 23.09 | 18.81 | 18.47 |
| United Kingdom | 26.28 | 19.23 | 16.1 |
| Sweden | 12.37 | 9.36 | 7.58 |
| Spain | - | 13.5 | 8.09(2020) |
| Belgium | 13.6 | 7.04 | 3.8 |
| Japan | 33.86 | 28.68 | 23.48 |
| Estonia | - | 27.8 | 19.6(2020) |
| Slovak Republic | - | 14.85 | 13.87 |
| Denmark | - | 8.9 | 5.06 |
| Iceland | - | 16.46 | 12.9(2018) |
| Norway | 9.23 | 7.24 | 4.37 |
| Austria | 23.14 | 19.19 | 14.01 |
| Hungary | 14.1 | 6.38 | 12.75 |
| Australia | 17.2 | 14.04 | 15.31 |
| Lithuania | - | 10.64 | 9.33(2020) |
| Colombia | - | 6.43 | 4.0 |
| Costa Rica | - | 0 | 0 |

주: 2021 OECD average 11.9, Korea 31.1
 자료: OECD Statistics.

15-64세 남성의 돈을 벌지 않는 시간(가사, 육아 등) 대비 돈을 버는 시간을 비교하면 OECD 평균이 2.33배인 반면, 한국은 8.55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남성이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에서 제시한 가사 및 육아에서의 성평등 정도가 한국의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3-11〉 Time spent in unpaid/paid work (2022 or latest year) (Men, 15-64)

| country | unpaid work | paid work | times |
|----------------|-------------|-----------|-------|
| Australia | 171.6 | 304.1 | 1.77 |
| Austria | 135.3 | 364.8 | 2.70 |
| Belgium | 144.2 | 273.7 | 1.90 |
| Canada | 148.1 | 340.5 | 2.30 |
| Denmark | 186.1 | 260.1 | 1.40 |
| Finland | 157.5 | 248.6 | 1.58 |
| France | 134.9 | 235.1 | 1.74 |
| Germany | 150.4 | 289.5 | 1.92 |
| Greece | 95.1 | 274.3 | 2.88 |
| Hungary | 162.3 | 272.7 | 1.68 |
| Ireland | 127 | 340.8 | 2.68 |
| Italy | 130.7 | 220.8 | 1.69 |
| Japan | 40.8 | 451.8 | 11.07 |
| Korea | 49 | 419 | 8.55 |
| Mexico | 131.4 | 478.3 | 3.64 |
| Netherlands | 145.4 | 284.9 | 1.96 |
| New Zealand | 141 | 338 | 2.40 |
| Norway | 168.5 | 277.4 | 1.65 |
| Poland | 158.8 | 314.8 | 1.98 |
| Portugal | 96.3 | 372.3 | 3.87 |
| Spain | 145.9 | 236.2 | 1.62 |
| Sweden | 171 | 313 | 1.83 |
| Turkiye | 67.6 | 358.3 | 5.30 |
| United Kingdom | 140.1 | 308.6 | 2.20 |
| United States | 165.8 | 331.7 | 2.00 |
| Estonia | 160.2 | 264.1 | 1.65 |
| Latvia | 129.7 | 376.9 | 2.91 |
| Slovenia | 166.5 | 299.8 | 1.80 |
| Luxembourg | 121.1 | 330 | 2.73 |
| Lithuania | 151.6 | 354.3 | 2.34 |
| OECD | 136.5 | 317.8 | 2.33 |

자료: OECD Statistics.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부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이다. 이는 일가정양립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성평등 이론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성평등 이론에 근거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첫번째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역시 성평등 이론에 근거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에 근거한 부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가면 위치가 달라진다. 2022년 기준 모성보호지원사업(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예산은 2조772억이고, 그중 육아휴직급여는 1조6,614억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28). 그에 비해 주거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기준 23.4조원으로 2022년 저출산 시행계획에 따른 총예산의 4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96). 2022년 기준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은 주거지원사업 예산의 8.9%에 불과하다. 또한 2022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주거지원사업 예산의 7.2%에 불과하다. OECD family database의 paid parental leave and home care leave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에 불과하고,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7개국 중 17위에 불과하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육아휴직 활성화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에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성평등 이론에 근거한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평등 이론이 선진국의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성평등(gender equity)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들에서도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미만 수준(subreplacement level)인 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향상적인 저출산 추세를 설명하는 별도의 이론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에 소개할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바.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지금까지 소개한 이론들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저출산을 분석하였으나,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이론은 가치관의 변화(ideational change)의 관점에서 저출산을 분석하였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1986년 Ron Lesthaeghe와 Dirk van de Kaa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Lesthaeghe(2010, 2014, 2020)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은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과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이수 확대에 따라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에서는 가치관의 변화(ideational change)가 일어났다고 본다.

가치관의 변화(Ideational change)는 Maslow(1954)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물질적 욕구(material needs)가 충족되면 상위수준의 욕구(higher-order needs)를 추구함에 따라 발생한다.

상위수준의 욕구(Higher-order needs)는 자기실현(self-realization)과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 추구 등으로 구성된다.

상위수준의 욕구(higher-order needs)를 추구함에 따라 개인은 전통적 가치관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이에 따라 다음의 특성이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에서 나타난다.

- ① 지속적인 저출산(sustained subreplacement fertility)
 -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 일어난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에서는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에 따라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합계출산율 2.1) 미만의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이 지속된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기준 OECD 38개 국가들 중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이스라엘 뿐이다.
- ② 결혼 이외 생활 양식의 다양화(a multitude of living arrangements other

than marriage)

-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에 따라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됨에 따라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와 같은 결혼 이외의 생활 양식이 증가한다.

③ 결혼과 출산의 분리(a disconnection between marriage and procreation)

- 비혼동거 증가에 따라 비혼출산(births outside marriage)이 증가하게 된다. 출산은 더 이상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출산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은 42%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출산이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을 통하지 않은 출산이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④ 고정적이지 않은 인구 변동(no stationary population)

- 앞에서 소개한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에서는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스털린 모델에서는 경제 회복에 따른 출산율 회복에 의해 인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서는 가치관의 변화(ideational change)에 의해 출산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구가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감소할 수 있다.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서는 대체출산율 미만의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은 지속되지만 비혼출산(births outside marriage)이 출산율 하락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한성민 외, 2021). 서구 사회와 동아시아 국가들은 만혼과 비혼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서구 사회는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가 일반화되어 있어 결혼을 통하지 않은 출산이 수용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혼동거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아 결혼을 통하지 않은 출산이 용인되지 않는 문화이다. 서구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아

도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가 가능하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만혼과 비혼은 서구와 동아시아가 유사하게 나타남에도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서는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immigrants) 확대에 따른 다문화 및 다인종 사회(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ociety)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앞에서 소개한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과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은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이 지속되느냐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ard, 2015).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은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의 2단계(second phase)가 되면 가사와 육아의 남성 분담에 의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져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 이상으로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성평등 이론에서는 젠더 혁명 진전에 따라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이민 확대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서는 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이민확대는 불가피하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평등 이론이 상당부분 반영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민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성평등 이론에 따라 향후 대체출산율 이상으로 출산율이 회복될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OECD 국가의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 자료 및 외국 국적 인구(foreign population) 자료를 보면 한국의 외국 국적 인구(foreign population) 인구는 2022년 3.5%로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민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V-3-12〉 Stocks of foreign-born population

단위: %

| country | 2022 |
|-----------------|-------------------------|
| Australia | 29.2(2021) |
| Austria | 20.6 |
| Belgium | 18.4 |
| Canada | 22.0(2021) |
| Chile | 7.5 |
| Colombia | 3.8(2020) |
| Costa Rica | 10.3(2020) |
| Czech Republic | 4.3 |
| Denmark | 11.0 |
| Estonia | 15.1 |
| Finland | 8.0 |
| France | 12.8 |
| Germany | 16.8 |
| Greece | 11.2 |
| Hungary | 6.3 |
| Iceland | 19.3 |
| Ireland | 20.3 |
| Israel | 19.1 |
| Italy | 10.4 |
| Japan | 2.2(foreign population) |
| Korea | 3.5(foreign population) |
| Latvia | 11.9 |
| Lithuania | 6.0 |
| Luxembourg | 49.8 |
| Mexico | 1.0(2020) |
| Netherlands | 14.5 |
| Norway | 16.6 |
| Poland | 2.5 |
| Portugal | 10.7 |
| Slovak Republic | 4.2 |
| Slovenia | 14.0 |
| Spain | 15.6 |
| Sweden | 20.1 |
| Switzerland | 30.7 |
| Turkiye | 3.9 |
| United Kingdom | 14.3(2021) |
| United States | 14.3 |

주: 1) 한국과 일본은 foreign-born population 자료가 없으므로 foreign population 자료 사용

2) foreign-born population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출생 인구
foreign population은 외국 국적 인구

자료: OECD Statistics.

현재 성평등(gender equity)이 높은 수준을 달성한 북유럽 국가들도 대체출산을 미만의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이 지속된다는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의 전망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30대 미혼인구 비율을 보면 2000년에는 30대 미혼인구가 13.4%이었으나, 2020년에는 42.5%로 30대 미혼인구 비율이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더 이상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3-13〉 성별 미혼인구 비율(30-39세)

| 구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1990 | 9.5 | 4.1 | 6.8 |
| 2000 | 19.2 | 7.5 | 13.4 |
| 2010 | 37.9 | 20.4 | 29.2 |
| 2020 | 50.8 | 33.6 | 42.5 |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인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을 보면 2019년 OECD 평균 4.6 한국 4.7이고 2020년 OECD 평균 3.7 한국 4.2로 나타난다. 이는 비혼 추세가 한국 뿐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한국의 2배에 달한다. 이는 결혼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을 늘리려는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표 V-3-14〉 Crude marriage rate (per 1,000 people)

| country | 1995 | 2019 | 2020 |
|---------------|------|------|------|
| United States | 8.9 | 6.1 | 5.1 |
| Denmark | 6.6 | 5.3 | 4.9 |
| Israel | 6.5 | 5.3 | |
| Estonia | 4.9 | 5.0 | 4.6 |
| Germany | 5.3 | 5.0 | 4.5 |
| Austria | 5.4 | 5.2 | 4.4 |
| Japan | 6.4 | 4.8 | 4.3 |
| Korea | 8.7 | 4.7 | 4.2 |
| Switzerland | 5.8 | 4.5 | 4.1 |

| country | 1995 | 2019 | 2020 |
|----------------|------|------|------|
| Finland | 4.6 | 4.0 | 4.0 |
| Poland | 5.4 | 4.8 | 3.8 |
| EU-27 | 5.4 | 4.8 | 3.8 |
| OCED-32 | 5.6 | 4.6 | 3.7 |
| Sweden | 3.8 | 4.7 | 3.6 |
| Norway | 5.0 | 4.0 | 3.3 |
| New Zealand | 5.6 | 3.8 | 3.3 |
| Australia | 6.1 | 4.5 | 3.1 |
| Greece | 6.0 | 4.4 | 2.9 |
| Netherlands | 5.3 | 3.7 | 2.9 |
| United Kingdom | 5.6 | 3.7 | |
| Luxembourg | 5.1 | 3.5 | 2.9 |
| Belgium | 5.1 | 3.9 | 2.8 |
| France | 4.4 | 3.3 | 2.2 |
| Ireland | 4.3 | 4.1 | 1.9 |
| Spain | 5.1 | 3.5 | 1.9 |
| Portugal | 6.6 | 3.2 | 1.8 |
| Italy | 5.1 | 3.1 | 1.6 |
| Czech Republic | 5.3 | 5.1 | 4.2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비혼출산율을 보면 2020년 기준 OECD 평균 41.9%에 달하지만 한국은 2019년 기준 2.3%에 불과하다(2022년 3.9%). 이는 한국의 출산은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혼과 비혼 증가가 출산 감소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다른 국가들 역시 만혼과 비혼 추세는 다르지 않지만, 가족 구성의 다양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출산 감소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한성민 외, 2021).

〈표 V-3-15〉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단위: %

| country | 1980 | 1990 | 2000 | 2010 | 2019 |
|-------------|------|------|------|------|------|
| Latvia | 12.5 | 16.9 | 40.4 | 44.4 | 38.4 |
| Greece | 1.4 | 2.2 | 4.0 | 7.3 | 12.4 |
| Chile | | | | 68.5 | 75.1 |
| Netherlands | 4.1 | 11.4 | 24.9 | 44.3 | 52.4 |
| Lithuania | 6.3 | 7.0 | 22.6 | 25.7 | 26.8 |
| Canada | | | 31.7 | 32.3 | 33.2 |
| Portugal | 9.2 | 14.7 | 22.2 | 41.3 | 56.8 |
| Italy | 4.3 | 6.5 | 9.2 | 21.8 | 35.4 |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 country | 1980 | 1990 | 2000 | 2010 | 2019 |
|-----------------|-----------|------|------|------|------------|
| Israel | | | | 5.8 | 8.1 |
| Ireland | 5.9 | 14.6 | 31.5 | 33.8 | 38.4 |
| Germany | 11.9 | 15.3 | 23.4 | 33.3 | 33.3 |
| Czech Republic | 5.6 | 8.6 | 21.8 | 40.3 | 48.2 |
| Mexico | | 33.2 | 41.6 | 59.4 | 70.9 |
| France | | | 43.6 | 55.0 | 61.0 |
| Switzerland | 4.7 | 6.1 | 10.7 | 18.6 | 26.5 |
| Luxembourg | 6.0 | 12.8 | 21.9 | 34.0 | 40.4 |
| Poland | 4.8 | 6.2 | 12.1 | 20.6 | 25.4 |
| Slovenia | 13.1 | 24.5 | 37.1 | 55.7 | 57.7 |
| Turkiye | | | | 2.6 | 2.8 |
| Belgium | 4.1 | 11.6 | 28.0 | 45.7 | 52.4(2018) |
| Korea | 1.1(1981) | 1.0 | 1.2 | 2.1 | 2.3 |
| Finland | 13.1 | 25.2 | 39.2 | 41.1 | 45.4 |
| Sweden | 39.7 | 47.0 | 55.3 | 54.2 | 54.5 |
| Spain | 3.9 | 9.6 | 17.7 | 35.5 | 48.4 |
| United States | 18.4 | 28.0 | 33.2 | 40.8 | 40.0 |
| New Zealand | 21.5 | 34.0 | 43.2 | 48.9 | 47.6 |
| United Kingdom | 11.5 | 27.9 | 39.5 | 46.9 | 48.5 |
| Japan | 0.8 | 1.1 | 1.6 | 2.1 | 2.3 |
| Austria | 17.8 | 23.6 | 31.3 | 40.1 | 40.6 |
| Hungary | 7.1 | 13.1 | 29.0 | 40.8 | 38.7 |
| Estonia | | 27.2 | 54.5 | 59.1 | 53.7 |
| Denmark | 33.2 | 46.4 | 44.6 | 47.3 | 54.1 |
| Slovak Republic | 5.7 | 7.6 | 18.3 | 33.0 | 40.1 |
| Iceland | 39.7 | 55.2 | 65.2 | 64.3 | 69.4 |
| Norway | 14.5 | 38.6 | 49.6 | 54.8 | 57.6 |
| Australia | 12.4 | 21.9 | 29.2 | 34.4 | 35.6 |
| Costa Rica | | 38.5 | 52.7 | 67.4 | 72.4 |

주: 2020 EU average 41.9, OECD average 41.9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임희진·황여정, 2023)에서는 2023년 전국 초5-고3 청소년 7,718명 대상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문항의 찬성 응답 비율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29.5%),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81.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19.8%),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60.6%),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52.0%)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세대에서는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수용하는 가치관이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표 V-3-16〉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청소년 가치관(2023년)

단위: %

| 문항 | 찬성 응답 |
|----------------------------|-------|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29.5 |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 81.3 |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19.8 |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60.6 |
|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 52.0 |

자료: 임희진·황여정(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35, 140.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은 2012년 73.2%에서 2023년 29.5%로 44%p가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급속히 확산했음을 보여준다. 혼인 증가에 중점을 두었던 한국의 저출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3-17〉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변화

단위: %

| 구분 | 2012 | 2023 |
|----|------|------|
| 전체 | 73.2 | 29.5 |
| 남성 | 82.3 | 39.5 |
| 여성 | 63.1 | 18.8 |

자료: 임희진·황여정(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37.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는 청년의 가치관 변화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의 가치관 변화는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통계청, 2023c)의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연령 기준에 따라 19~34세이다.

결혼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20%p 이상 감소하였다. 비혼동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80.9%로 20%p 가까이 증가하였다. 청소년 세대 뿐 아니라 청년 세대에서도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3-18〉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청년의 가치관 변화

단위: %

| 구분 | 2012 | 2022 |
|------------------|-------------|------|
| 결혼 '긍정적' | 56.5 | 36.4 |
| 비혼 동거 '동의함' | 61.8 | 80.9 |
|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 없음 | 46.4(2018년) | 53.5 |
| 비혼 출산 '동의함' | 29.8 | 39.6 |

자료: 통계청(2023c).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pp.1-3.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을 안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혼자금 및 고용상태로 구성된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이유의 비율을 보면 20-29세 남자(51.9 / 48.1), 20-29세 여자(33.8 / 66.2), 30-39세 남자(51.9 / 48.1), 30-39세 여자(32.8 / 67.2)로 나타났다. 2030대 남자는 경제적 이유가 비경제적 이유보다 약간 높으나, 2030대 여자는 비경제적 이유가 경제적 이유보다 2배 정도 높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응답 항목 중 높게 나왔다고 경제적 이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비경제적 이유가 경제적 이유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는 앞에서 소개한 베커 모델(Becker model)과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3-19〉 결혼을 안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기타 |
|-----------|------|------|-----|------|------|-----|------|-----|------|-----|
| 20-29세 남자 | 39.0 | 12.9 | 4.8 | 10.3 | 7.5 | 0.6 | 8.7 | 0.5 | 15.3 | 0.6 |
| 20-29세 여자 | 25.7 | 8.1 | 9.2 | 12.1 | 8.8 | 0.6 | 10.3 | 1.4 | 23.8 | 0.2 |
| 30-39세 남자 | 41.0 | 10.9 | 4.6 | 8.9 | 13.2 | 0.2 | 8.1 | 0.6 | 12.0 | 0.5 |
| 30-39세 여자 | 25.7 | 7.1 | 8.8 | 13.7 | 15.2 | 0.3 | 10.7 | 1.8 | 16.7 | 0.1 |

주: ①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이 부족 ②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③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 ④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⑤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⑥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⑦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⑧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⑨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3세 이상 인구)

원자료: 통계청(2023). 2022년 사회조사.

제2차 인구변천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특성에는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의 증가가 있다. 비혼동거는 법률혼 외의 가족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혼동거에 대해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인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에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이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41).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은 「비혼·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64).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 연구·검토를 내용으로 한다(대한민국정부, 2015: 74). 또한 추진계획 중 「포용적 가족관 형성」은 “가족의 미래 변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민법(친족법, 혼인법 등),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주요 내용 반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74).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포함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추진과제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을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43). 이에 대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로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범위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해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제3차 및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도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없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오히려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의 측면에서 후퇴한 부분이 보인다. 기본계획 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예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가칭) 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 등을 명문화)”에 대해 2023년 추진계획은 “평등법 논의의 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의 저출산 정책이나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 및 실효성이 크지

않음”이라고 기술하였고, 추진일정에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과의 관련성이 낮아 향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시 제외 요청”으로 기술하였다(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1076). 이러한 방향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청년이 자립·결혼·출산에 이르는 이행기에 주요 생애 이벤트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안정 지원, 일자리 진입 지원 등 삶의 기반 강화”(관계부처합동, 2020: 42),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기반 강화”(관계부처합동, 2020: 118),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기반 강화”(관계부처합동, 2020: 135) 등으로 결혼을 삶의 이행기에 포기해서는 안되는 주요 생애 이벤트로 규정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자립·결혼·출산”이라는 생애 이벤트는 출산은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을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1차 인구변천(first demographic transition) 시기에 자리 잡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유일한 가족유형(single family model)인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나타내는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로 순서화된 생애경로 이행(highly ordered life-course transitions)을 전제한 것이다(Lesthaeghe, 2010: 218).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결혼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에 대처하는 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사. 소결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보면, 현재 한국사회는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에서 제안한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의 1단계(first phase)이고, 부분적 제2차 인구변천(partial SDT)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가정양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자리잡았으나, 가족 구성의 다양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론적 근거 및 관련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에서 볼 때 단일민족(이민에 대한 거부), 정상 가족(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낙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일가정양립 부재)에 기반한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저출산과 가족구성을 설명하는 5가지 이론,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 이스털린 모델(Easterlin model), 베커 모델(Becker model),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 중 한국 및 다른 OECD 국가들의 사회구조 및 가치관 변화(structural and ideational change)를 반영하는 베커 모델(Becker model),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 근거하여 심층분석의 결과(outcome) 지표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그 이전 단계 지표인 기획 및 설계(planning & design), 거버넌스(governance),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input) 지표를 구성하고 성과분석 및 향후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심층분석의 결과(outcome) 지표는 앞서 이론적 근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족구성 다양화는 법제도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지표는 정부가 관리하고 정책 추진을 하기에 적합하지만, 가족 구성의 다양화는 개인의 선택이자 문화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 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내재된 저출산 담론(discourse)의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담론의 분석은 저출산 대책에 내재된 방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정책 방향을 고찰하는데 필요하다.

4. 저출산 담론 분석

가. 혼인력(nuptiality)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담론

저출산 담론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기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담론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혼인력(nuptiality)을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처해야 한다는 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혼인력(nuptiality)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은 청년에 대한 주거 및 고용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결혼을 증가시켜 출산을 늘린다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이러한 결혼 중심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이어진다.

〈표 V-4-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혼인력(nuptiality) 증진 관련 언급

| 페이지 | 혼인력(nuptiality) 증진 관련 기술 |
|-----|--|
| 8 | -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시급 |
| 26 | - 만혼·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 인식·문화개선에 소극적, 일자리·주거·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 조성 노력 미흡 - 만혼·비혼화에 따른 결혼을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초래 |
| 37 |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 |
| 38 | - 만혼 문제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 |
| 41 |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 54 | -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인식·문화 개선 병행 |
| 55 | - 추진방향: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고용·주거 안정, 결혼친화 분위기) - 추진전략: 청년 고용 활성화,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 56 | - 만혼 추세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 -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 61 | - 만혼 추세 완화를 위해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인 신혼부부 주거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 예산 역시 만혼 및 비혼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을 강화하고, 결혼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2018년 예산 4.5조원에서 2020년 21.5조원으로 약 5배로 증가)(국회예산정책처, 2023a: 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작연도인 2016년도부터는 환경조성(청년 일자리, 주거지원, 사회문화 전반 등)과 관련된 예산이 저출산 대응 예산의 범주에 포함되기 시작(저출산 대응 예산의 약17%)하였고, 2019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계획부터는 그 비중이 5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24). 2021년 기준으로는 저출산 대응 예산의 61%가 청년(신혼부부 포함) 지원정책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영유아 지원 예산 26.1%, 양육가구 지원 예산이 6.4%로 변화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25).

이는 결혼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에 대처한다는 혼인력(nuptiality) 중심의 정책이 영유아 및 양육가구 지원 정책보다 우선하여 저출산 대책의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결혼 중심 저출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혼인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OECD 전체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추세이다. 결혼 장려 정책으로 결혼 및 출산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OECD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으로 저출산에 대처해야 한다는 담론(discourse)에 기반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이 향상되면 출산이 증가한다는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에 기반한 방향이다.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의 분석에서 현대 사회에서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이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제3차 및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담론의 주요 부분은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 및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이 향상되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보는 시각이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이고, 결혼과 출산의 강한 결

합,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야 결혼을 한다는 생애 경로(life course)를 따르는 것이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 근거에서 일가정 양립과 가족구성의 다양화가 저출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기술하였다.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가족구성의 다양화 수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성평등 이론(gender equity theory)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과 가족구성의 다양화는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어떻게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22년 기준 모성보호지원사업(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예산은 2조772억이고, 그중 육아휴직급여는 1조6,614억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28). 그에 비해 주거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기준 23.4조원으로 2022년 저출산 시행계획에 따른 총예산의 4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96). 2022년 기준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은 주거지원사업 예산의 8.9%에 불과하다. 또한 2022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주거지원사업 예산의 7.2%에 불과하다. OECD family database의 paid parental leave and home care leave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에 불과하고,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7개국 중 17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OECD에서 성별임금격차, 25-29세와 35-39세의 성별 고용률 차이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15-64세 남성의 돈을 벌지 않는 시간(가사, 육아 등) 대비 돈을 버는 시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OECD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도 아직도 OECD에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일가정양립을 비롯한 성평등 증진 정책이 포함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서 지금까지 주변화(marginalization)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족구성의 다양화 역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서 사실상 배제(exclusion)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정책(immigrant policy)이 배제(exclusion)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가정 양립이 주변화(marginalization)되고, 가족구성의 다양화 및 이민정책이 배제(exclusion)되었다면, 저출산 대책의 중심이 되는 담론(discourse)은 혼인력(nuptiality)에 중심을 두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혼인율과 유배우출산을 상승을 위한 유인 제공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계봉오 외, 2024: 45).

2023년 3월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도 초저출산 심화 원인으로 만혼과 비혼 증가,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3: 1)도 이러한 저출산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내재된 저출산 담론은 혼인력(nuptiality) 증가를 출산력(fertility) 증가보다 우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혼 중심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기의 담론 분석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가족(normal family)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결혼과 출산의 강한 결합, 재정적 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혼체제를 의미한다(Macfarlane, 2014; Lesthaeghe, 2010). 이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출산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재산이 없는 자는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서구 사회의 가구형성규칙(Macfarlane, 2014; 이성용, 2013)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비혼출산(nonmarital fertility)은 맬서스적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도덕적,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우해봉 외, 2021: 9).

말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가지는 특징은 자녀를 혜택(benefit)이 아닌 비용(cost)으로 본다는 것이다(Macfarlane, 2014: 110). 이러한 시각에 대해 Caldwell(1976)은 세대 간 부의 이전(intergenerational wealth flow)라는 개념으로 서구사회와 비서구 전통사회의 가족 개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비서구 전통사회에서는 부(wealth)의 이전 방향이 자녀에서 부모에게로 가는 반면, 서구 근대사회에서는 부(wealth)의 이전 방향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말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근대사회에서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형식에 가장 적합한 가족모델로 받아들여졌다(Macfarlane, 2014: 459). 또한 말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근대사회에서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에 유리한 가족모델이기도 하다(Macfarlane, 2014: 460).

이와 관련하여 Dumont(1890)은 사회적 모세관(social capillarity) 이론으로 유럽의 출산력(fertility) 하락에 대해 설명하였다(우해봉 외, 2021: 11, 재인용). 모세관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액체의 폭이 좁아져야 하듯이,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위해서는 가족의 규모가 작아져야만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출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와 그와 연관된 사회적 모세관(social capillarity) 이론의 적용은 특히 현대의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나. 해외 사례와의 비교

이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은 가족정책 지원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결과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밀도 및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보는데 유리하다.

2019년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4년제 대졸의 경우 1.284인 반면 고졸은 2.053, 중졸은 2.791이다. 중졸의 경우는 청소년 임신이 다수일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졸의 출산율은 4년제 대졸의 1.6배에 달한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인데 한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표 V-4-2〉 2019년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for all women, by educational attainment of mother: United States, 2019)

| 여성 교육수준 | 합계출산율 |
|--|-------|
| 12 th grade or less, no diploma | 2.791 |
| High school graduate | 2.053 |
| Some college credit, no degree | 1.808 |
| Associate's degree | 1.312 |
| Bachelor's degree | 1.284 |
| Master's degree | 1.405 |
| Doctorate or professional degree | 1.523 |

자료: Hamilton, BE. (2021). Total fertility rates, by matern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race and Hispanic origin: United States, 2019.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 70(5). p.3.

2015년 한국의 20-49세 여자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대졸이상은 1.32이지만 고졸은 1.02로 고졸의 출산율은 대졸이상의 77%에 불과하다.

〈표 V-4-3〉 20-49세 여자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2015)

| 교육수준 | 합계출산율 |
|------|-------|
| 전체 | 1.23 |
| 중졸이하 | 1.60 |
| 고졸 | 1.02 |
| 대졸이상 | 1.32 |

자료: 통계청(2017).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2000-2015년. p.9.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으로 비혼출산(nonmarital fertility)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2016년 18세 이상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출산율을 보면 중졸 62%, 고졸 59%, 전문대졸 43%, 4년제 대졸 이상 10%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에서는 비혼출산율이 약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4〉 1990-2016년 간 18세 이상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출산율 증가(Percent of births occurring to unmarried women age 18+ by all education levels)

| 여성 교육수준 | 비혼출산율(%) | |
|------------------------------------|----------|------|
| | 1990 | 2016 |
| Less than a high school degree | 46 | 62 |
| High school degree or GED | 29 | 59 |
| Associate's degree or some college | 17 | 43 |
| Bachelor's degree or higher | 5 | 10 |

자료: Wilsamith, E., Manlove, J. & Cook, E. (2018). Dramatic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from 1990 to 2016. Research Brief, Child Trends.

2016년 18세 이상 미국 여성의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의 인종별 차이를 보면 인종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고졸의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이 최소 5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5〉 1990-2016년 간 18세 이상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출산율 증가의 인종별 차이(Percent of births occurring to unmarried women age 18+ by education and race/ethnicity, 1990 and 2016)

단위: 비혼출산율(%)

| 여성 교육수준 | 백인 | | 흑인 | | 히스패닉 | |
|------------------------------------|------|------|------|------|------|------|
| | 1990 | 2016 | 1990 | 2016 | 1990 | 2016 |
| Less than a high school degree | 38 | 59 | 82 | 92 | 41 | 61 |
| High school degree or GED | 18 | 52 | 67 | 82 | 32 | 59 |
| Associate's degree or some college | 10 | 34 | 49 | 69 | 22 | 48 |
| Bachelor's degree or higher | 3 | 7 | 23 | 33 | 12 | 20 |

자료: Wilsamith, E., Manlove, J. & Cook, E. (2018). Dramatic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from 1990 to 2016. Research Brief, Child Trends.

미국 이외 국가의 사례로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첫째 아이 출생 시 기준 2000년대 핀란드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출산율을 보면 중졸 83%, 고졸 63%, 대졸 46%, 대학원졸 28%로 나타난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미국과 핀란드 모두 비혼출산율 정도는 다르지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혼출산율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높은 교육수준, 고소득, 자산이 많은 이들이 주로 하는 가족구성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같이 결혼을 통한 출산만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문화에서 교육,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결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표 V-4-6〉 첫째아이 출생 시 기준 1970-2009년 핀란드 여성의 교육수준별 비혼출산율 변화 (Percentage of nonmarital first births: mothers marital status at first birth 1970-2009)

단위: %

| 교육수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
| 전체(All) | 16 | 27 | 47 | 55 |
| 중졸 (Low-ed) | 23 | 44 | 71 | 83 |
| 고졸 (Medium-ed) | 14 | 27 | 52 | 63 |
| 대졸 (Lower tertiary-ed) | 5 | 14 | 36 | 46 |
| 대학원졸 (Upper tertiary-ed) | 5 | 12 | 22 | 28 |

자료: Schnor, C. & Jalovaara, M. (2020). The increase in non-marital childbearing and its link to educational expansion. *Acta Sociologica*, 63(4), 400-421. p.413.

2015년 한국의 교육수준별 혼인율을 보면 여성의 경우 대졸이상은 1천명당 28.6건인 반면, 고졸은 1천명당 10건으로 고졸 혼인율은 대졸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비혼출산율이 매우 낮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고졸의 출산율이 대졸보다 낮은 것은 고졸의 혼인율이 대졸보다 낮은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V-4-7〉 20세 이상 교육수준별 혼인율(2015)

단위: 해당인구 1천명 당 건

| 성별 | 교육수준 | 혼인율 |
|----|------|------|
| 남자 | 전체 | 15.1 |
| | 중졸이하 | 3.6 |
| | 고졸 | 9.8 |
| | 대졸이상 | 24.5 |
| 여자 | 전체 | 14.6 |
| | 중졸이하 | 2.3 |
| | 고졸 | 10.0 |
| | 대졸이상 | 28.6 |

자료: 통계청(2017).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2000-2015년. p.5.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은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국은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한국과 같이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출산율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2015년 여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은 대졸이상 1.32, 고졸, 1.02, 중졸 1.60으로 대졸이상을 1로 가정할 시 고졸 0.77, 중졸 1.21가 된다.

2020년 기준 25-34세 미국 여성 인구의 교육수준별 비율은 중졸 5%, 고졸 38%, 대졸 이상 57%이다(Educational attainment, by age group and gender(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이 비율을 2019년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자료에 적용하면, 2019년 미국 합계출산율 1.71에서 중졸, 고졸의 합계출산율을 빼고, 대졸이상 비율인 57%(0.57)로 나누면, 2019년 미국 대졸 이상(석사, 박사 포함)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387이다.

만약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산율 양상이 2015년 한국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중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대졸 이상 여성의 1.21배, 고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대졸 이상 여성의 0.77배가 된다.

이렇게 될 시 2019년 미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8이 된다.

$$[\text{중졸 } (0.05 \times 1.387 \times 1.21) + \text{고졸 } (0.38 \times 1.387 \times 0.77) + \text{대졸 이상 } (0.57 \times 1.387)] = 1.28$$

실제 2019년 미국 합계출산율은 1.71인데, 미국이 교육수준별 출산율이 한국과 같은 양상이라면 1.28이 되어 합계출산율이 0.43이 하락함으로써 최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국가가 되는 것이다. 2019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6인데,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과 같이 결혼을 통한 출산만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면, 고졸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한국과 같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 미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산율에 2015년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산율 비율을 적용할 시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최저출산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미국의 높은 합계출산율은 고졸 이하 여성이 합계출산



율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높다는 것에 기인하고, 이는 고졸 이하 여성의 높은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에 기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대학진학율은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애경로 이행(life course transition)의 표준화(standardization)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진학율이 높음에 따라 한국의 교육수익률(return to education)은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력 간 소득 격차가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도 고졸의 출산율이 대졸보다 높다는 것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생애경로 이행(life course transition)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OECD 데이터를 사용한 OLS 분석에서는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이 OECD 국가들 사이의 합계출산율 차이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성민 외, 2021: 55).

이러한 결과는 비혼출산의 사회적 수용이 합계출산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인구학자 David Coleman은 2023년 한국에서 한 강연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자체의 정신적인 태도, 규범,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 솔직히 말하자면, 돈의 힘보다는 문화의 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는데(한반도미래연구원, 2023: 46) 위의 결과는 경제적 지원 확대보다 문화의 변화가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담론과 같이 혼인력(nuptiality)에 중점을 두고 혼인율과 유배우출산율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결혼장려 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OECD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1차 인구변천(first demographic transition)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사회문화적인 의무로 간주되었고, 결혼과 출산의 강한 결합이 나타났으나, 낮은 혼인연령과 낮은 미혼율로 인해 대체출산율 유지가 가능하였다.

한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적 제2차 인구변천(partial SDT), 젠더 혁명(gender revolution)의 1단계(first phase)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의무도 아니고, 일가정 양립도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의 강한 결합, 재정적 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혼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강화되었다.

여기에 결혼은 가문 간의 결합이라는 전근대적인(premodern) 문화가 존속하고 있어 결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혼인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결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전근대(premodernity), 근대(modernity), 탈근대(postmodernity)가 혼재한다는 점이다. 가족구성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가족주의의 영향이 살아있는 동아시아, 남유럽 국가들은 OECD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속한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해체(deconstruction)되어 만혼과 비혼이 증가해도 평균 40%가 넘는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로 인해 출산율 하락의 완충이 가능하나, 한국은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 출산율 하락의 완충이 불가능하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의 의미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이끌어가는 저출산 담론은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의 유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는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이 향상되어도 출산을 하면 생활수준이 하락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안된다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는 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으로 전가하고 국가와 사회는 지원하면 안된다는 가치관이다. 다시 말해서 출산과 양육 비용의 개인화(individualizing the costs of children)를 의미한다.

이러한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를 내재화한 상태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도 증가한다는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이 늘어날 수 없게 된다.

맬서스주의(Malthusianism)에서 주장하는 대로 출산과 양육 비용의 개인화(individualizing the costs of children)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을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의 Myrdal이 1930년대 스웨덴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비용의 사회화(socializing the costs of children)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Myrdal, 2023).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에서는 앞서 이론적 근거들에서 살펴본 대로 인적자본(human capital) 확대에 의한 출산과 양육 비용(cost of children) 증가, 여성의 교육수준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증가,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 및 자기실현(self realization)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상황에서는 만혼과 비혼이 일반화됨에 따라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저출산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에서 출산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낮은 혼인연령과 낮은 미혼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Macfarlane, 2014: 57).

제1차 인구변천(first demographic transition) 시기에서는 낮은 혼인연령(lowering of ages at marriage) 및 낮은 미혼율(reduction in celibacy)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의 강한 결합(control of fertility within wedlock)에서도 대체출산을 유지가 가능하였다(Lesthaeghe, 2010: 211).

그러나 만혼과 비혼이 일반화된 상화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강한 결합, 결혼과 출산을 위한 높은 수준의 재정적 조건을 요구하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저출산을 유도하게 된다.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서유럽 가구형성규칙(Macfarlane, 2014; 이성용, 2013)이 되어, 근대국가의 유일한 가족 모델(single family mode)의 지위를 획득하고 정상가족(normal family)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사회에서는 정상가족(normal family) 이외의 가족 모델(family

model)은 비정상가족(abnormal family)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배제(exclusion)되어 왔다.

라. 생명권력(biopower)의 작동 및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의 규범화(normalization)

이러한 비정상가족(abnormal family)의 배제(exclusion)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생명권력(biopower)을 제시하였다..

생명권력(biopower)은 ‘인구(population)의 건강성(health)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를 조절(regulation) 및 통제(control)하는 권력 메커니즘의 총체’를 말한다(Foucault, 2011; Foucault, 2015; Foucault, 2020). 이러한 생명권력(biopower)은 근대 인구정책(population policies)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명권력(biopower)은 인구(population)의 건강성(health)을 유지하기 위한 비정상 인구(abnormal population)의 배제(exclusion)를 본질적 속성(fundamental mechanism)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생명권력(biopower)은 정상가족(normal family)에서 이루어지는 출생(birth)은 환영하지만 비정상가족(abnormal family)에서 이루어지는 출생(birth)은 환영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norms)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상가족(abnormal family)은 정상가족(normal family)이외의 다른 가족유형을 의미한다. 근대사회의 정상가족(normal family)은 앞서 언급한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를 통해 구성된 가족이다.

OECD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생명권력(biopower)의 배제 메커니즘(exclusion mechanism)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이민(immigration)과 비혼출산(nonmarital fertility)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로 인구위기에 대처해 왔다.

한국은 생명권력(biopower)의 배제 메커니즘(exclusion mechanism)이 해체(deconstruction)되지 않은 채로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OECD 다른 국가들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제1항은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건강가정"은 결혼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normal family)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결혼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가정은 비정상가족(abnormal family)이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것은 근대사회에서 인구의 건강성(health of population)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 인구(abnormal population)를 배제(exclusion)하려는 생명권력(biopower)의 작동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차 인구변천(first demographic transition) 시기에는 이러한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정착함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결혼 및 출산이 의무라는 가치관이 수용되고 있었고, 젠더역할(gender roles)에서도 육아의 책임을 여성이 전담하는 시스템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이인소득자 모델(dual earner model)이 중심이 된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시기에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를 유지하면서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OECD 국가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가족(normal family)에 대한 규범(norms)은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에서 개인의 생애 과정(life course)의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직업을 가진 후 결혼으로 이행하고 출산하는 표준화된 생애과정(생애과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생애과정(life course)의 표준화(standardization)는 가족모형(family model) 및 젠더역할(gender roles)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은기수, 2021).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이러한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생애과정(life course) 표준화(standardization)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에서는 생애과정(life course)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가 나타났고(은기수, 2021),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의 표준화(standardization)된 가족구성인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는 가족구성의 다양화에 의해 해체(deconstruction)되었다고 볼 수 있다.

Inglehart & Welzel(2011)과 Inglehart(2023)는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에서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로의 변동은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와 밀접하게 대응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의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는 앞에서 기술한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 젠더역할(gender roles), 가족모형(family model), 생애경로(life course transition)는 모두 연관되어 같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담론이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맬서스 모델(Malthus model)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의 규범화(normalization)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이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의 저출산 담론이 혼인율과 유배우출산율 증진을 중점적으로 주장한다는 점, 이러한 저출산 담론이 반영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결혼을 증진함으로써 저출산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가족구성의 다양화는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후순위에 놓여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가 정상가족(normal family)로 규범화한 사회(normalizing society)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상가족(normal family)이 규범화한 한국사회는 정상가족(normal family)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고 가족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삶에서 가족과 아이에게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고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정상가족(normal family)의 규범화의 바탕에 깔린 생각은 가족구성의 다양화는 가족 해체(family dissolution)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삶에서 가족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에서 2021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17개 국가 19,000여명을 대상으로 삶에 의미를 주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를 준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난 국가는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14개 국가였으나, 한국은 가족과 자녀가 3순위에 불과하였다. 한국에서는 삶에 의미를 준다고 응답한 것 중 1순위는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 2순위는 건강(health), 3순위가 가족과 자녀(family and children)로 나타났다.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를 준다고 응답한 비율의 중간값은 17개 국가 평균 38%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16%에 불과하였다.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를 주는 것 1순위로 나타난 국가들의 2020년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36.5%), 뉴질랜드(48.3%), 미국(40.5%), 영국(49.0%), 스웨덴(55.2%), 이탈리아(33.8%), 네덜란드(53.5%), 벨기에(52.4%), 프랑스(62.2%), 독일(33.1%)인데 비해,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를 주는 것 3순위로 나타난 한국은 2.5%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가족(normal family)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유일한 가족유형으로 간주하는 한국에서는 가족구성의 다양화가 수용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작 개인의 삶에서 가족과 자녀의 가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정상가족(normal family)에 대한 사회적 규범(norms)은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meaning)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burden)을 주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가 아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정상가족(normal family) 이데올로기는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유형을 수용하면 가족해체(family dissolution)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족해체(family dissolution)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어야 했고, 가족과 자녀의 가치

가 삶에 주는 의미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했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삶에서 가족과 자녀의 가치는 다른 OECD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구성(family formation)에서 정상가족(normal family)에 대한 집착이 삶에서 가족과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과 자녀가 삶에서 부담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V-4-8〉 가족과 자녀가 삶에 의미를 준다고 응답한 비율(who mention family and children as sources of meaning in life)

단위: %

| 국가 | 응답 비율 | 순위 |
|----------------|-------|----|
| Australia | 56 | 1 |
| New Zealand | 55 | 1 |
| Greece | 54 | 1 |
| U.S. | 49 | 1 |
| UK | 46 | 1 |
| Sweden | 45 | 1 |
| Italy | 43 | 1 |
| Canada | 42 | 1 |
| Netherlands | 38 | 1 |
| Belgium | 37 | 1 |
| Spain | 36 | 4 |
| France | 32 | 1 |
| Germany | 32 | 1 |
| Singapore | 29 | 1 |
| Japan | 26 | 1 |
| South Korea | 16 | 3 |
| Taiwan | 15 | 3 |
| overall median | 38 |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p.15.

〈표 V-4-9〉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에 대한 국가별 응답 순위(Ranked choice among 17 topics coded as part of what gives people meaning in life)

| 국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Australia | Family | Occupation | Friends | Material Well-being | |
| New Zealand | Family | Occupation | Friends | Material Well-being | |
| Sweden | Family | Occupation | Friends | Material Well-being/Health | |
| France | Family | Occupation | Health | Material Well-being | Friends |
| Greece | Family | Occupation | Health | Friends | Hobbies |
| Germany | Family | Occupation/Health | | Material Well-being/General Positive | |
| Canada | Family | Occupation | Material Well-being | Friends | Society |
| Singapore | Family | Occupation | Society | Material Well-being | Friends |
| Italy | Family/Health | | Material Well-being | Health | Friends |
| Netherlands | Family | Material Well-being | Health | Friends | Occupation |
| Belgium | Family | Material Well-being | Occupation | Health | Friends |
| Japan | Family | Material Well-being | Occupation/Health | | Hobbies |
| UK | Family | Friends | Hobbies | Occupation | Health |
| U.S. | Family | Friends | Material Well-being | Occupation | Faith |
| Spain | Health | Material Well-being | Occupation | Family | Society |
| South Korea | Material well-being | Health | Family | General Positive | Society/Freedom |
| Taiwan | Society | Material Well-being | Family | Freedom | Hobbies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p.9.

이런 점에서 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를 바꿀 수 없는 기본 전제로 보고 이에 기반한 정상가족(normal family) 이외의 가족 모델(family model)을 비정상가족(abnormal family)으로 간주하여 배제(exclusion)하는 생명권력(biopower)이 한국의 저출산 담론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생명권력(biopower)의 작동을 해체(deconstruction)하지 않고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산 대응에 있어 단기간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출산율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1.24로 최저로 떨어졌던 1994년에서 합계출산율이 1.50로 반등한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0.26이 증가하기까지 2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보면 합계출산율 1.24였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를 달성하겠다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대한민국정부, 2015: 41)가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0년 합계출산율 1.5라는 목표의 달성 근거로 관련 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47). 그러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로 유례없이 하락하였다. 이는 저출산 대책에서 실증분석 이전에 이론적 근거를 통한 방향성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심이 된 담론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혼인력(nuptiality)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주거 및 고용지원으로 구성된 청년지원정책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혼인력(nuptiality) 증가에 중점을 둔 저출산 대책 방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이어졌고, 출산율 하락은 견잡을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력(nuptiality) 증가에 중점을 둔 저출산 담론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에 기반한 것이다. 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를 유지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에 기반한 저출산 담론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

일부 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는데 PACS(프랑스), Sambo(스웨덴) 등 등록동거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사회문

화적 반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족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 개발은 중단되었다(이삼식 외, 2022: 81). 그 이후 제3,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가족구성의 다양화 수용이 포함되었으나, 실제로 진행되는 정책은 없이 사실상 저출산 대책에서 배제(exclusion)된 상태이다. 이는 이민정책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정책화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구성의 다양화 수용을 통해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의 규범화(normalization)를 해체(deconstruction)하는 것을 비혼출산(nonmarital fertility)의 장려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OECD의 어느 국가도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 및 비혼출산(nonmarital fertility)을 장려하지 않는다.

등록동거제도를 규정한 프랑스의 PACS와 스웨덴의 Sambo의 사례를 보면, PACS가 입법화된 1998년 프랑스의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 rate)은 41.7%, Sambo가 입법화된 1987년 스웨덴의 비혼출산율(nonmarital fertility rate)은 49.9%이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는 등록동거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비혼출산(nonmarital fertility)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체 출산의 40% 이상으로 증가한 비혼출산(nonmarital fertility)을 법제도 내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가 등록동거제도를 입법화한 것도 출산 장려를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을 하느냐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자체에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은 이미 법률혼과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커플의 의사에 따라 함께 사는 것이 우선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정재훈, 2024: 111).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출생했을 시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아이를 기준으로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의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혼가정(한부모, 비혼동거 등)은 혼인가정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에 처하기 쉽다. 근대사회의 맬서스주의 결혼체제(Malthusian marriage system)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구 전체의 건강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비혼가정의 출산을 배제하려 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대체출산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 없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비혼가정의 아이는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육아정책 및 가족정책의 역할은 어떤 가정의 아이는 태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순조롭게 성장, 발달하고, 부모의 삶의 질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은 혼인 중심 가족 지원이 아니라 아이 중심 가족 지원이다(정재훈, 2024: 112). 혼인을 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 아이가 태어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저출산 대책은 혼인 중심 가족 지원이 아니라 아이 중심 가족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5. 심층분석의 성과지표

심층분석의 성과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V-5-1〉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성과지표

| 단계 | 지표명 | 지표에 대한 설명 | 지표 미적용 사업군 |
|----|----------------------|--|---------------------------|
| 설계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지원(보호)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도 | |
| |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된 집단에 사업군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 영유아 보육 사업군,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
| |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조사, 통계 등)이 존재하는지 유무 | |
| |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 대상자 설정에 있어 대상자층의 중첩이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중첩이 존재할 때 보장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파악 | |
| 집행 | 투입의 충분성 |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규모와 보호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 |
| | 지원 방식의 적절성 | 급여 및 서비스 유형, 지원 단위의 사업별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 |

| 단계 | 지표명 | 지표에 대한 설명 | 지표 미적용 사업군 |
|----|--------------------------|---|---------------|
|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 자원 투입이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욕구에 비례하여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 | |
| | 추진 방식의 적절성 | 지원을 위한 적절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 | |
| | 모니터링의 체계성 | 사업별 설계 단계에서 모니터링 방법(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하였는가를 평가 | |
| 산출 | 수급자 비율 | 대상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 대비 실제 급여를 받는 자의 비율 | |
| | 요구 충족률 (또는 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 | 실제 급여 혹은 서비스를 수급한 자의 급여액(수급액) 혹은 서비스 등이 사업군이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평가 | |
| 성과 |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 |
| |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 성과 관리와 관련된 객관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영향 | 간접적 파급 효과 | 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미친 영향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

자료: 최호미 외(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사회보장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pp. 61-62.

재인용 문헌: 강신욱·강해규·노대명·이현주·이병재(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행연구중 육아정책 성과분석 과제 3차년도 연구인 김근진·박창현·김희수 (2020)에서 사용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V-5-2〉 김근진·박창현·김희수(2020)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 단계 | 지표 | 내용 |
|----------------------|-------------------------|--|
| 집행 (input & process) | 재정 (투입의 충분성) | -예산충분성 -예산의 안정성 -GDP 대비 육아정책 재정 비율 |
| | 전달체계 | -법적 근거 -전달체계의 통일성 |
| | 인력관리 | -종사자 직업 안정성 -종사자 자격관리 및 양성체계 -종사자 전문성 관리 및 지원체계(보수교육) |
| | 접근성 (access, diversity) | -서비스 접근성(시간, 거리, 비용적 측면)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편차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
| | 공공성 (publicness) | -국공립기관 비율 -국공립기관 이용률 |

V. 심층분석: 인구위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및 양육지원체계 성과분석(국제지표를 중심으로)

| 단계 | 지표 | 내용 |
|-----------------|-----------------|---|
| | | -사립/민간기관: 공공성 확보 여부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 비율 |
| 산출 (output) | 수급자 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을 서비스 이용률, 아동수당 수급률 -지원의 사각지대 및 형평성(equity)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
| | 지원의 충분성 | -부모 및 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 정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원 여부 -아동수당의 충분성 |
| | 만족도 (서비스의 질) |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여부 |
| 성과 (outcome) | 목표대비 성과 달성 정도 | -각 부처가 제시한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
| | 파급 효과 | -간접적/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미친 영향 -현금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 특정 정책이 미치는 영향 분석 -방임/방과후 방치 비율 감소 -아동빈곤율 감소 -영유아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
| | 증상기 영향 | -육아정책이 아동 및 부모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 |

자료: 김근진·박창현·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4.

본 연구에서 심층분석의 성과지표는 선행연구 및 윤수재(2022), 황혜신 외(2021)를 참조하여, 설계 및 기획(design & planning), 거버넌스(governance),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지표로 구성하였다.

설계 및 기획(design & planning)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 체제의 개편 방향에 대해 점검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투입(input)은 저출산 대책 예산 중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구분 및 재구성,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 현금 및 서비스 예산 비중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과정(process)은 전달체계의 문제로서,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의 장기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의한 육아 인프라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점검한다. 윤석열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도 이 지표에서 점검할 것이다.



산출(output)은 결과(oucome)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 지표로 어떤 지표가 필요한가를 검토하여 구성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이 산출 지표에 해당될 것이다.

결과(outocme)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률, 25-29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고용률 격차, 성별 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남성 임금·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연간 평균노동시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족구성의 다양화 수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표를 포함한다.

6. 정책 성과분석

가. 설계 및 기획(design & planning)

설계 및 기획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정책의 목적 및 대상에서 시작한다.

현재 한국의 육아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의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론적 근거와 저출산 담론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대상자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와 비혼가정의 아동을 배제(exclusion)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자에 대한 현재의 육아정책을 보면,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인은 육아정책(현금, 서비스, 시간)의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한다(난민 인정자 예외).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12.)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에 한정한다(난민 및 아프간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2024.2.)의 지원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이다(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외국인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2023.12)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은 기존의 외국인정책에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으로 전환하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향후 20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충격을 완화·지연하는 보완책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지난 15년)에서는 적극적 정주 유도가 미흡하였으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사회통합 및 정착·정주 유도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이민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구정책에서 이민정책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인구학계의 분석에 의하면 이민 확대는 생산가능인구의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에는 대처할 수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를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우해봉·임지영, 2023: 125). 그 이유는 이민자 역시 수용국의 출산 추세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민자도 수용국의 출산율이 낮은 경우에는 수용국의 출산율과 유사하게 낮은 출산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De Haas, 2024: 333).

이런 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출산 및 육아친화 사회 건설 역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및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할 시 향후 한국사회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육아정책 관련 법체제는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는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에 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정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영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에 한정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과제 수행은 진전이 없다.

2024.6.19.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 검토’가 포함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48). 그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와 함께 “경찰인구 확충 등을 위해 현재의 이민정책 방향을 비숙련단기인력 도입 중심에서 고속성장기체류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48).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금년 내 이민정책 수립 및 이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병행”이 제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48).

그러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된 이민정책 방향에는 현재 육아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정책은 육아정책에서 외국인 영유아를 배제하고 있으나 지자체 정책에서는 육아정책을 외국인 영유아에게 확대하는 사례가 있다.

2022년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의 6개 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월 35만원, 공립유치원 월 15만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베이비뉴스, 2024. 4.2). 경상북도는 2024년 7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인 영유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1인당 월

28만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경상북도, 2024: 146).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교육부 지침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조선일보, 2023.07.18).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한국의 육아정책이 이민정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육아정책과의 연계가 긴밀하게 요구된다.

나. 거버넌스(governance)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과제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였다(2020년:19%, 2021년: 12%)(김근진·유해미·조혜주, 2021: 297).

이와 같이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2024.8.30.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에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8.30.: 13).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합동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8.30.: 13).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같은 컨트롤 타워 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다. 투입(input)

1)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간접지원은 Malthus model 및 Easterlin model에 근거하여 주거 및 고용 지원을 하면 결혼이 증가하여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는 이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인구정책에서 제외하고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은 총 48조1,677억원이다. 이중 직접지원(출산 및 양육지원) 예산은 21조2,274억원(44%)이고, 간접지원(청년 고용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을 조성) 예산은 26조9,403억원(56%)이다.

〈표 V-6-1〉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 | 영역 구분 | 주요 사업 | 2023년 예산 (총 48조1,677억원) | |
|--|---------|---|----------------------------|----------------|
| 직접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 보육·돌봄 | 유아교육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 12조1,845억원 | 21조 2,274억원 |
| | 자녀수당 |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 7조502억원 | |
| | 모성보호 |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1조8,279억원 | |
| | 출산·건강지원 |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난임우울증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예방접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1,648억원 | |
| 간접지원 (청년 고용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을 조성) | 주거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다가구매입임대, 공공임대 융자(출자),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 21조3,570억원 | 26조 9,403억원 |
| | 일자리·직장 | 청년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지원 등 | 1조5,344억원 | |
| | 사회환경·기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1조8,717억원 | |
| | 자산형성 | 청년내일채움공제, 보호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 | 9,474억원 | |
| | 교육 | 교육급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 1조2,298억원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b).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전략, p.22의 표를 재구성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간접지원, 특히 주거지원이 주로 대출 및 용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영준(2022)은 2018년 기준 MZ세대(1980-1995년생), X세대(1965-1979년생), BB세대(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과 부채를 2000년 기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였는데, MZ세대의 경우 2000년 동일 연령대에 비해 근로소득은 1.4배가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4.3배로 증가하여 근로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최영준, 2022: 9-10). 통계청·통계개발원(2023)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8년 대비 2021년 20대의 근로소득은 9.0%가 감소하였으나, 2018년 대비 2022년 20대의 부채는 93.5%가 증가하였다(통계청·통계개발원, 2023: 202-203).

이런 점에서 청년지원정책 그 중에서도 주거 지원은 대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의 소득과 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년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산이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다.

향후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청년지원정책은 분리하여 보편적사회보장제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저출산 대책은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정재훈, 2024: 195). 특히 주거 지원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아이가 있는 가정,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대한 지원만 저출산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2) 예산 총액 및 현금지원 비중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1.56%로 OECD 38개국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국, 스페인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2019년 OECD 평균 2.29%).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OECD에서 하위권이다.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은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현금지원 비중은 2019년 0.32%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0.50%로 확대되었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 2023년 부모급여 도입, 한국 GDP 2022년 2,161조8천억원,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 3조 2,691억원(24년 예산)(보건복지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으로 GDP의 0.15%이기 때문에 현금지원 GDP 비중 0.6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19년 0.32%의 2배로 증가하였으나(2024년 기준), 2019년 OECD 평균 1.1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표 V-6-2〉 2019년 가족지원정책 공적 예산 GDP 대비 비율(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2019), % of GDP)

| country | total | cash | services | tax breaks |
|-----------------|-------|------|----------|------------|
| France | 3.44 | 1.34 | 1.38 | 0.73 |
| Sweden | 3.42 | 1.29 | 2.13 | 0.00 |
| Luxembourg | 3.36 | 2.30 | 1.06 | 0.00 |
| Poland | 3.35 | 2.30 | 0.72 | 0.33 |
| Estonia | 3.34 | 1.03 | 2.32 | 0.00 |
| Iceland | 3.34 | 1.03 | 2.32 | 0.00 |
| Denmark | 3.31 | 1.27 | 2.04 | 0.00 |
| Norway | 3.28 | 1.22 | 1.96 | 0.09 |
| Germany | 3.24 | 1.08 | 1.34 | 0.82 |
| Belgium | 3.18 | 1.66 | 1.11 | 0.41 |
| Hungary | 3.09 | 1.36 | 1.03 | 0.70 |
| Finland | 2.89 | 1.11 | 1.78 | 0.00 |
| New Zealand | 2.65 | 1.44 | 1.21 | 0.00 |
| EU | 2.56 | 1.35 | 0.98 | 0.23 |
| Austria | 2.54 | 1.77 | 0.74 | 0.03 |
| United Kingdom | 2.49 | 1.44 | 0.97 | 0.08 |
| Israel | 2.46 | 0.99 | 1.07 | 0.40 |
| Lithuania | 2.46 | 1.47 | 0.99 | 0.00 |
| Australia | 2.34 | 1.39 | 0.96 | 0.00 |
| OECD | 2.29 | 1.12 | 0.99 | 0.19 |
| Latvia | 2.27 | 1.37 | 0.88 | 0.01 |
| Switzerland | 2.22 | 1.19 | 0.54 | 0.49 |
| Slovak Republic | 2.14 | 1.13 | 0.66 | 0.35 |
| Czech Republic | 2.13 | 1.43 | 0.67 | 0.03 |
| Japan | 1.95 | 0.66 | 1.08 | 0.20 |
| Canada | 1.87 | 1.48 | 0.28 | 0.11 |
| Italy | 1.87 | 0.76 | 0.66 | 0.45 |
| Netherlands | 1.86 | 0.72 | 0.85 | 0.29 |
| Slovenia | 1.81 | 1.17 | 0.65 | 0.00 |
| Greece | 1.77 | 1.40 | 0.37 | 0.00 |
| Chile | 1.76 | 0.72 | 1.02 | 0.01 |
| Colombia | 1.75 | 0.25 | 1.50 | 0.00 |
| Ireland | 1.70 | 1.09 | 0.54 | 0.06 |
| Portugal | 1.68 | 0.83 | 0.38 | 0.47 |
| Korea | 1.56 | 0.32 | 1.05 | 0.19 |
| Spain | 1.48 | 0.54 | 0.73 | 0.20 |
| United States | 1.04 | 0.06 | 0.56 | 0.42 |
| Costa Rica | 1.02 | 0.49 | 0.49 | 0.04 |
| Mexico | 0.63 | 0.10 | 0.53 | 0.00 |
| Turkiye | 0.54 | 0.20 | 0.34 | 0.00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앞에서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현금지원 정책 예산 비중은 서비스 지원 정책 예산과 비교했을 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확대되는 사례를 보면 저출산 심화에 따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이 확대되어 왔으나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제 지자체에 정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현금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산과 관련하여 영유아 수 감소는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예산 총액에 미치는 부담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영유아 수 감소 추세는 1인당 지원금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예상된다.

라. 과정(process)

과정(process)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달체계의 문제로서,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의 장기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의한 육아 인프라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점검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희 외(2023)은 장래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기준으로 2024-2028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영유아 수 추이와 2022년 시도별 기관당 재원 영유아 수 평균 통계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수 추이를 산출하였다(이재희 외, 2023: 48) 그 결과 장래인구추계 저위 가정에서는 2028년 기준 2022년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감소율이 31.4%에 달했다(이재희 외, 2023: 51).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39,000개 수준인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장래인구추계 저위 가정에서는 2028년에 12,000개가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이재희 외, 2023: 51).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가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를 붕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의 붕괴는 유아교육·보육(ECEC) 기관에 대한 영유아의 접근성(access)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영유아와 부모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감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과 「세계 최고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교육부)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을 0세반 1:2, 3-5세반 1:8을 목표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 28; 교육부, 2024.6: 7). 그 이후 진행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4.7: 6). 물론 이러한 교사 대 영유아 수 감축은 우선적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quality)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 대 영유아 수 감축은 교육·보육의 질 제고(quality)와 접근성 확보(access)모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대 영유아 수 감축은 비용 지원과 직결되는데 현재의 표준 유아교육비(유치원)와 표준보육비용(어린이집)은 3-5세 유아의 경우 3세반 15명, 4-5세반 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준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인데 이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할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유보통합 실행계획 상 3-5세반 1:8을 기준으로 할 경우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은 재정 상황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 산출(output)

산출 지표는 앞에서 살펴본 국정과제에 포함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이 산출 지표에 해당될 것이다.

바. 결과(outcome)

결과 지표에 대해서 2024.8.30.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은 2030년 초 합계출산율 1.0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8.30.: 12). 이러한 목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20년 합

계출산율 1.5를 목표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합계출산율 목표가 실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목표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제고를 결과 지표로 하는 것보다 성별 임금격차,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률, 25-29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고용률 격차, 성별 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남성 임금·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연간 평균노동시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가족구성의 다양화 수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표 등 출산과 양육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의 개선을 결과 지표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VI

해외 정책 사례 분석 (독일 가족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 01 가족의 변화
- 02 가족정책의 흐름
- 03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04 결론

VI. 해외 정책 사례 분석 (독일 가족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해외 정책 사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 독일 가족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24.6.19.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5장은 OECD 국제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면, 6장은 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가족정책 동향을 가족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가족의 변화에서는 특히 가족 내 성별역할분리규범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 양상,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알아본다. 가족정책의 흐름은 전통적인 성별역할분리를 전제로 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러한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1. 가족의 변화

가. 성별역할분리 규범의 변화

1970년대까지 독일은 ‘가장과 주소득자로서 남편, 조력자와 보완적 소득자로서 아내’라는 성별역할분리 규범에 입각한 이른바 전업주부혼(Hausfrauenehe)에 기초한 가족 형태를 법률을 통해 유지하였다. 그러한 부부관계에 토대를 둔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형적이며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서 정상적 사회규범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1950년대 여성가족부가 생겨난 이유도 가사·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족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1953년 당시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의 집권 기독교민주연합(CDU)은 가족문제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frage)를 설치하여 가

족정책을 국가정책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여성의 전통적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가족부 설치에 반대하는 사회민주당(SPD)과 자유민주당(FDP)과 타협점을 찾기 위하여 무임소 체제로서 가족부 도입이 이루어졌다. 일종의 정무장관실 체제이다. 가족부 자체가 입법권이나 예산권 없이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수준이었다.

초기 가족부의 최대 정책 과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너진 가족의 복원에 있었다. 수백만 명의 독일군 포로가 연합국에 억류된 채 맞이한 전후 재건 과정에서 독일 사회는 전례없는 '아버지 없는 가정'을 경험하였다. 1955년 소련에서의 마지막 포로들이 돌아왔지만, 심지역 자녀의 탄생조차 보지 못하고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버지들의 전쟁 트라우마 극복과 가족생활에의 적응은 독일 사회가 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가족부 사업의 주요 목표는 돌보는 엄마와 가족을 부양하는 아빠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초대 가족부 장관 프란츠-요제프 뷔어멜링(Franz-Josef Wurmeling)이 한 “한 명의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마련한 자가용, 오디오 시스템, 해외여행 기회를 대체할 수 있다.”¹⁾는 말은 당시 매우 유명하였다. 가족문제부(BMF) 보다는 가족보호부(Bundesministerium zum Schutze der Familie) 장관 소리를 듣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뷔어멜링의 주 관심사는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와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의 역할 복원이었다. 서독이 경험한 전후 경제부흥 과정에서 급증한 노동력 수요를 여성인력 활용보다 외국인 노동자(Gastarbeiter) 유입으로 대체한 연방정부 정책의 흐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에서 여성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때이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황정 체제의 붕괴 이후 등장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산물이다. 최초 참정권 획득 직후 실시된 독일 국회(die deutsche Nationalversammlung) 의원 423명 중 여성은 37명이었다. 9%의 비율이다. 이렇게 시작한 여성 정치 참여는 1933년 나치 히틀러 정권 출범과 더불어 금지되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부활하였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는 3조 2항에서 “남성과

1) “Eine Mutter daheim ersetzt vielfach Autos, Musiktruhen und Auslandsreisen.”
출처: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wuermeling-mutter-kind-100.html>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²⁾라고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평등권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형성된 자산·소득을 관리하고 부인의 취업 활동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는 1958년까지 유지되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인의 취업 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1958년 남녀평등법(Gesetz über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이 실시되면서 기혼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열고 취업 활동도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사·돌봄은 여성의 과제’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사·돌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부인의 취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것이다.

1977년 결혼권리법(Das Ehegesetz)이 발효되면서 이른바 전업주부혼(Hausfrauenehe)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법률에서 규정했던 성별역할분리 규범이 사라진 것이다. 다양한 가족 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자유화(Liberalisierung)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이다. 가사·돌봄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여성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도 유책주의(Schuldprinzip)에서 파탄주의(Zerrüttungsprinzip)로 바뀌었다. 프리이센 제국에서 1794년부터 시작되었던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르는 규정 역시 바뀌어서 1976년부터는 자신의 성을 쓰거나 남편 성과 자신의 성을 함께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이 반대한다면 여전히 남편의 성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1991년에 이르러야 여성이 독자적인 결정으로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부터는 동일노동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주어야 하는 법률도 시행되었다. 1994년에는 고용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차별을 없애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 1994년에는 기본법(=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함도 명시하는 헌법 개정도 있었다.³⁾

2) Grundgesetz Art.3(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3) Grundgesetz Art.3 (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고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가족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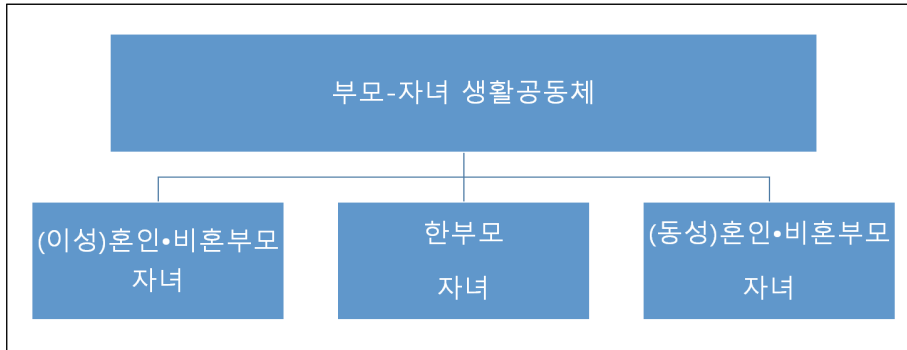
2005년을 기점으로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StBA)의 통계 조사에서 적용하는 가족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 2002년 인구 센서스에서 적용하는 가족 개념을 ‘거주를 함께 하는 무자녀·유자녀 부부, 독신부모(StBA,2002.5:87)’로 보았던 것이다.⁴⁾ 이전에 적용하던 가족의 기준으로서 혼인 여부를 삭제한 것이다. 혼인 여부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구성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가족 개념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은 법률혼·사실혼으로 구성된 생활공동체와 한부모가족으로 정의되었다. 여기에는 동성 배우자 가족도 포함되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들의 생활공동체로서 가족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아동을 입양하였거나 일시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으로서 인정받는다(StBA,2006:27).⁵⁾ 여기에 더하여 2018년부터는 동성혼이 법률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사실혼으로서가 아니라 법률혼으로서 동성혼 가족 개념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한다면 가족을 구성한 경로와 관계없는 아이 중심 가족 개념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남녀가 만났든 동성이 만났든, 직접 낳은 아이든 아니든, 미성년 자녀를 성인(들)이 양육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2005년 이후 법률혼을 기초한 ‘부부-자녀’ 중심 전통적 가족 개념이 자녀 양육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로서 가족 개념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4) "Als Familie im Sinne der amtlichen Statistik zählen - in Anlehnung an den im Grundgesetz verankerten Familienbegriff - Ehepaare ohne und mit Kindern sowie allein erziehende Väter und Mütter, die mit ihren ledigen Kindern im gleichen Haushalt zusammenleben(StBA,2002:87)."

5) "Zu den Familien zählen alle Eltern-Kind-Gemeinschaften, das heißt Paare - Ehepaare, nichteheliche(gemischtgeschlechtliche) und gleichgeschlechtliche Lebensgemeinschaften - sowie allein erziehende Mütter und Väter mit ledigen Kindern im Haushalt. Einbezogen sind in diesen Familienbegriff - neben leiblichen Kindern - auch Stief-, Pflege- und Adoptivkinder(StBA,2006:27)."

[그림 VI-1-1] 가족 개념의 재구성(2005년 연방통계청 인구조사)



출처: Nöthen(2005:27)을 토대로 재구성.

자녀양육 중심 가족으로의 개념 변화 후 2017년부터는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으며 같은 해 나온 개인지위권(Personenstandrecht) 위헌 판결에 따라 2019년부터 간성(intersexuell)을 인정하는 변화도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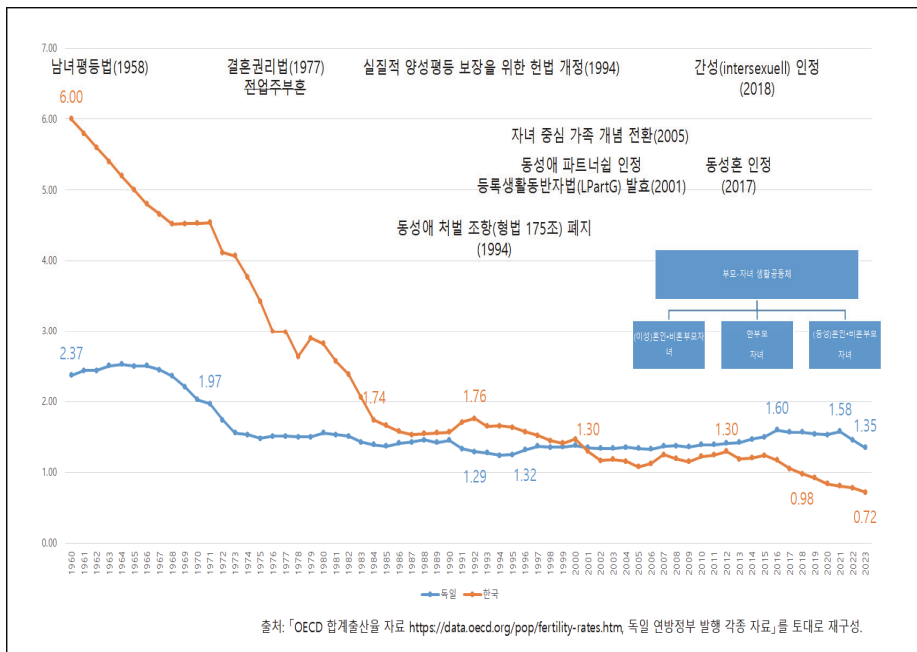
이미 프라이센 제국 시대부터 동성애는 처벌 대상이었다. 그리고 극우 나치 정권은 1872년 만들어졌던 동성애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수많은 동성애 성향 남성을 잡아들였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체제에서도 동성애는 형법 175조에 근거하여 처벌받는 행위였다. 1969년 21세 이상 성인의 동성애는 처벌을 하지 않는 형법 개정이 있었으며 1973년에는 처벌하지 않는 연령 상한선이 18세로 낮아졌다. 1994년 3월에 이르러서야 형법 175조가 폐지되고 동성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1년에는 「등록생활동반자법(Das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kurz Lebenspartnerschaftsgesetz: LPartG)이 발효되면서 동성애자 간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동성애에 기초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6월 30일에는 독일 연방의회(Der Bundestag)에서 ‘모든 이에게 결혼을(Ehe für alle)’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혼으로서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다. 곧 다가왔던 총선 과정에서 이미 보수 기독교 민주/사회연합(CDU/CSU)을 제외한 사민당(SPD),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좌파정당(Die Linke), 자유민주당(FDP)이 동성혼 인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기독교 민주/사회연합의 수상 후보였던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이 동성혼 투표 찬반을 당론이 아닌 개인 투표로 결정하면서 일어난 변화이기도 하다. 동성혼 인정 법률은 2017년 7월 28일 발효되었다.

2017년 11월에는 남녀로만 성별을 구분하는 개인지위권법(Personenstandgesetz)이 기본법의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하도록 연방의회에 통보하였다. 이른바 간성(間性, intersexuell)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당시 판결은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인권과 존재를 인정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연간 출생아 수가 약 70만 명 수준인 독일에서 해마다 150~200명 정도가 양성의 특징을 갖고서, 즉 간성으로서 태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형태 중 하나를 제도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2018년 12월 개인지위권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신고서 양식 중 성별란에 '남성(männlich), 여성(weiblich)'에 더하여 '다양한(divers)'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림 VI-1-2] 가족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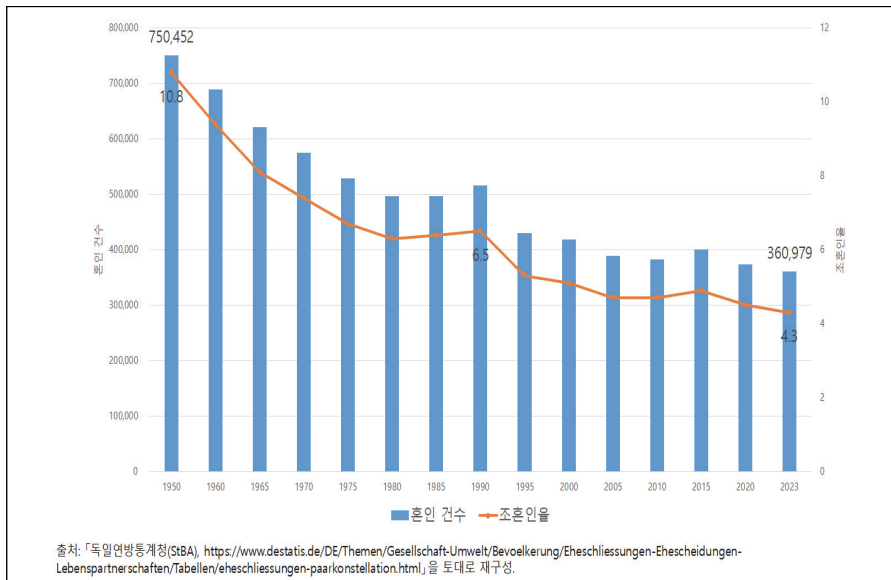


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

성별역할분리 규범과 남편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률에 남아 있던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사고 방식으로부터의 탈피, 동성혼이나 간성을 인정하는 등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 관련 정상성(正常性) 개념의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독일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삶의 형태의 다양성이 보편화되는 상황과 연결된다.

가족 구성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결혼이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가족 구성의 가능성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 70여년간 독일에서 혼인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의 결혼 건수는 1950년 결혼 건수의 약 48% 수준이다. 조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현재 청년 세대는 절반 정도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던 해와 비교해도 약 70% 수준이다. 당시에 10명이 결혼했다면 지금은 7명이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인구 천명당 혼인 건수로서 조혼인율은 1950년 10.8, 1990년 6.5에서 2023년에는 4.3으로 낮아졌다. 역대 최저 수준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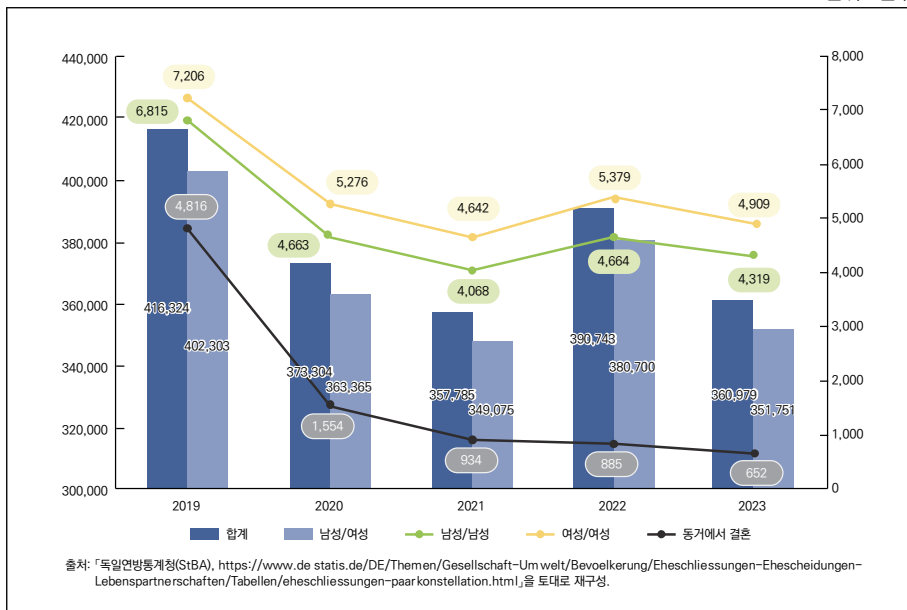
[그림 VI-1-3] 혼인 추이



남녀 성별로 본 결혼 유형은 동성혼의 합법화 이후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 결혼이 절대적 다수를 보이고 있다. 결혼하는 사람들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결혼을 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성애에 기초한 결혼이 된다. 2019년 416,324건의 결혼이 있었으며 그 중 402,303건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었다. 같은 해 남성/남성 결혼은 7,206건, 여성/여성 결혼은 6,815건, 동거에서 결혼으로 옮겨온 경우는 4,816건이었다. 2023년 결혼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3.3%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결혼 건수에서 남성/여성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97.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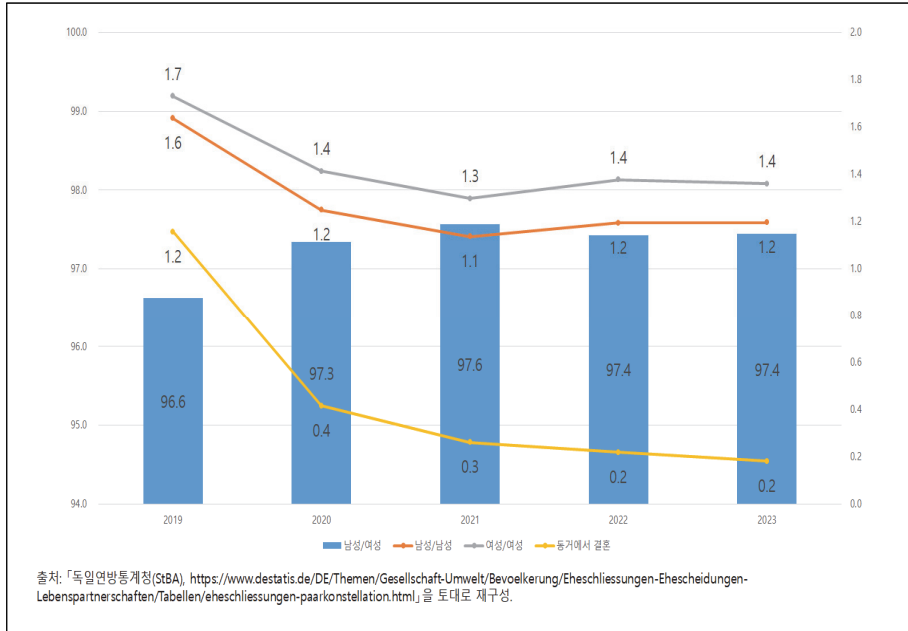
[그림 VI-1-4] 결혼 유형의 변화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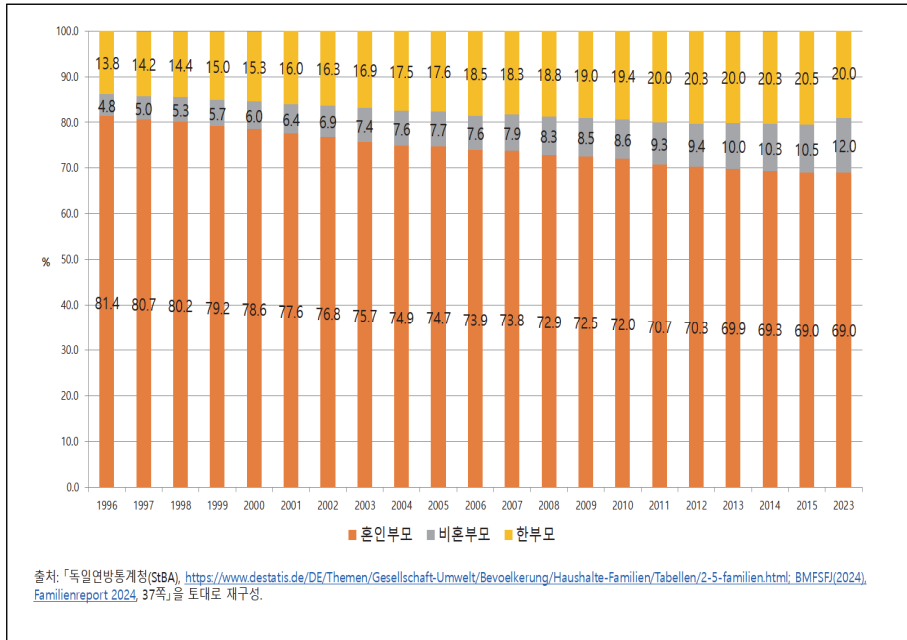
[그림 VI-1-5] 결혼 유형의 변화

단위: 비율, %



2023년에는 미성년 자녀양육 가족 수가 850만에 이르렀다. 2013년에는 그 수가 810만이었다. 미성년 양육 가족의 대다수는 여전히 혼인부모가족이다. 다만 그 비율이 1996년 81.4%에서 2023년에는 69%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혼부모 비율은 같은 기간 4.8%에서 12%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3년과 비교해도 약 81만의 비혼부모가족이 있었는데 2023년에 그 수는 약 100만 수준이다.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1990년대 말 15% 수준에서 2010년 이후 20%로 상승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VI-1-6] 가족 유형의 변화



2. 가족정책의 흐름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은 두 사람 이상의 만남에서 출발하여 가족 구성원 간 양육과 돌봄, 경제적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하는 삶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가족의 첫 번째 형태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삶의 공동체이다. 둘째, 부모 혹은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공동체를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삶의 공동체 역시 가족이다. 이러한 삶의 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가능케 하는 국가의 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정책이 성·유지하고자 하는 삶의 공동체로서 가족의 모습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해당 사회의 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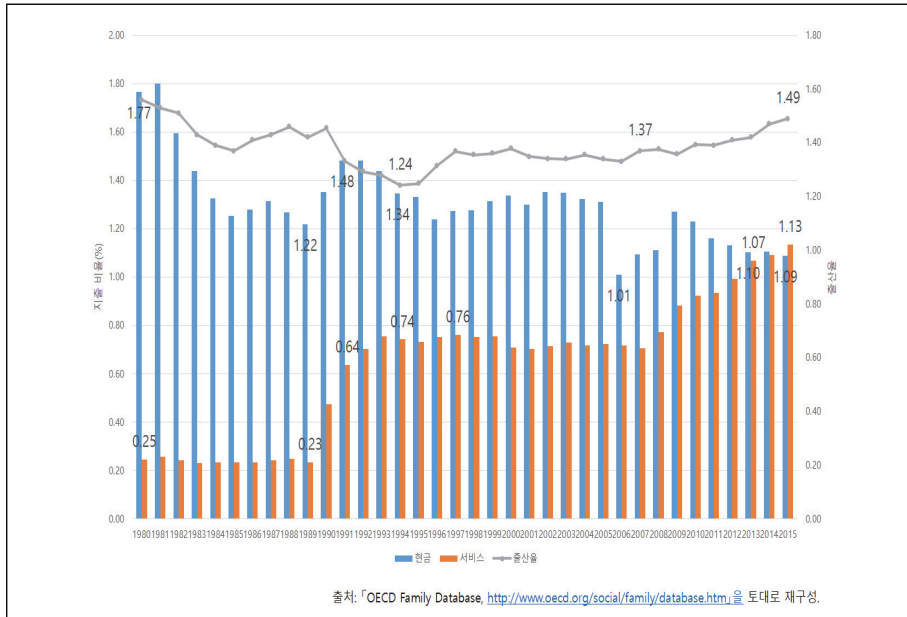
제이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사회는 ‘부모-자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 주소득자로서 남성, 전업주부로서 여성을 전제로 하는 성별역할분리’를 전제로 하는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맞벌이 부부’를 전제로 하는 가족정책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 전통적 정책 패러다임의 시대

가족정책의 목표는 전업주부로서 엄마의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성별역할분리 규범을 유지·강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별역할분리 규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보다는 가족의 돌봄비용 부담을 현금으로써 덜어주어 가능한 한 엄마가 집에서 자녀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지향하였다(정재훈·박은정, 2012).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지출 비율에서 현금급여 비중이 컸던 흐름이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흐름을 반영한다.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그리고 연금 크레딧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를 가족정책을 통해 제공하였다.

1981년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급여 비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인 반면 서비스 비율은 0.26%에 불과하였다. 1989년까지 상대적으로 현금급여의 절대수준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 비율은 0.2% 대를 유지하였다. 가족정책 급여 형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비스에 비해 5~6배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서비스보다 현금을 통한 가족 지원 규모가 일곱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현금급여와 서비스의 비율 격차는 1990년대말까지 세 배 정도 수준을 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적 돌봄체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급여 비율이 상승하였고 현금급여와 서비스 간 격차는 두 배 정도로 좁혀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킨더가르텐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가 1~2세로 확대되고 전일제학교가 증가하는 등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작된 후 현금급여와 서비스 간 비중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서비스 비율이 1.13%, 현금급여 비율이 1.09로서 독일 가족정책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급여의 비율이 현금급여 비율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VI-2-1]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지출 비율의 구성 변화



나.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가족 돌봄비용 지원을 통한 성별역할분리 고착을 목표로 했던 가족정책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저출산 대응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연금크레딧 등 현금급여 중심 비용지원정책에서 사회적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부모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함으로써 여성 취업활동 확대에 따라 사라져 가는 성별역할분리 규범에 대응하는 시간정책(Zeitpolitik)으로서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1)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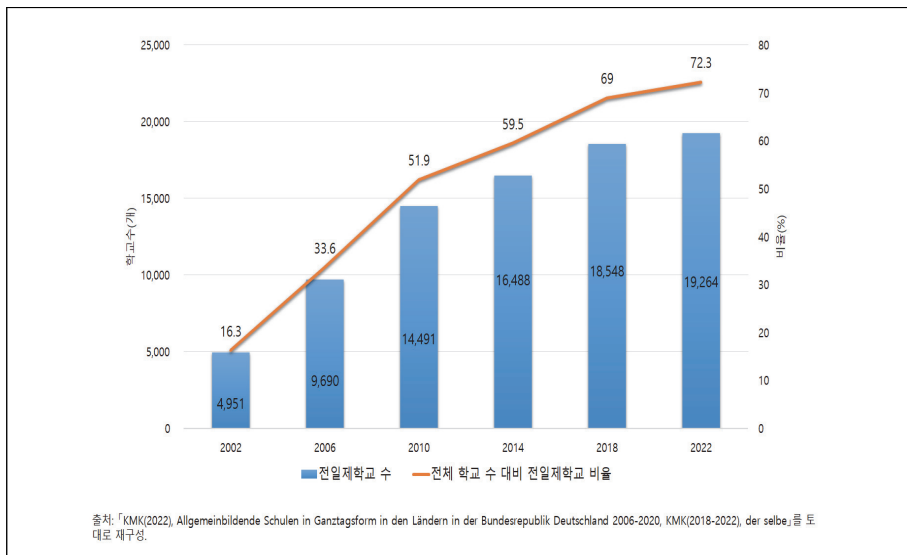
1996년 3세 이상 아동의 킨더가르텐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3세 이상 미취학 자녀를 주변에서 맡길 수 있는 킨더가르텐 자리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부모의 돌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결국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킨더가르텐을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일어났다. 2013년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1~2세 아동 킨더가르텐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이 시작되었다. 자녀 출

생 직후 1년은 육아휴직으로써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는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로서 킨더가르텐 확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그룬트슐레(Grundschule)에서 오후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전일제학교 도입으로 인하여 자녀 출생 직후 부모의 직접 돌봄, 영유아기 킨더가르텐, 취학아동기 전일제학교로 이어지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구축이 완성되어 가는 변화를 가족정책이 주도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 본격적인 확대 과정에 들어간 독일 전일제학교는 20여년이 지난 현재 그 규모 면에서 네 배 이상의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전체 학교 수의 16.3%, 즉 10개 학교 중 2개교가 채 안되는 비율로 전일제학교가 있었다. 2022년 현재 동 비율은 72.3%까지 상승하였다. 10개의 학교 중 7개가 전일제학교 운영하는 중이다. 2003년 「투자 프로그램 ‘교육과 돌봄의 미래(IZBB)’」 사업의 시작, 2021년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진을 위한 법률(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Ganztagsförderungsgesetz. 전일제촉진법 GaFoG)’ 제정 등 변화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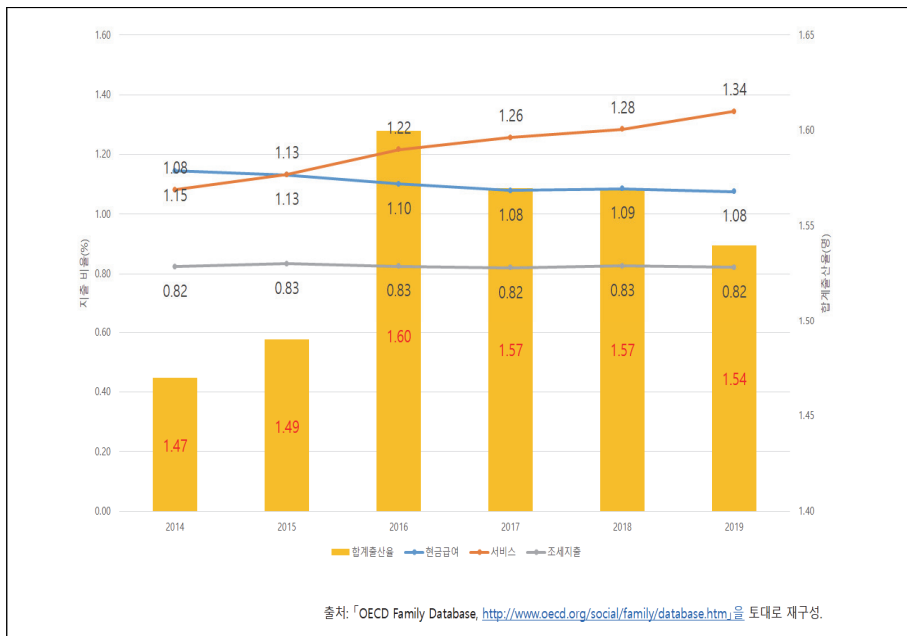
[그림 VI-2-2] 전일제학교 확대 추이



전업주부로서 엄마를 전제로 하면서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급여 중심 가족정책의 흐름은 일하는 엄마를 전제로 하는 일·가정양립 지원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구축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가족복지지 지출 구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의 비중보다 낮아진 이후 계속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까지 서비스보다 높았던 현금급여 비중은 2015년 1.3%로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후 서비스 지출의 비율은 2019년 1.34%까지 높아졌다. 킨더가르텐과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확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현금급여가 가족복지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8%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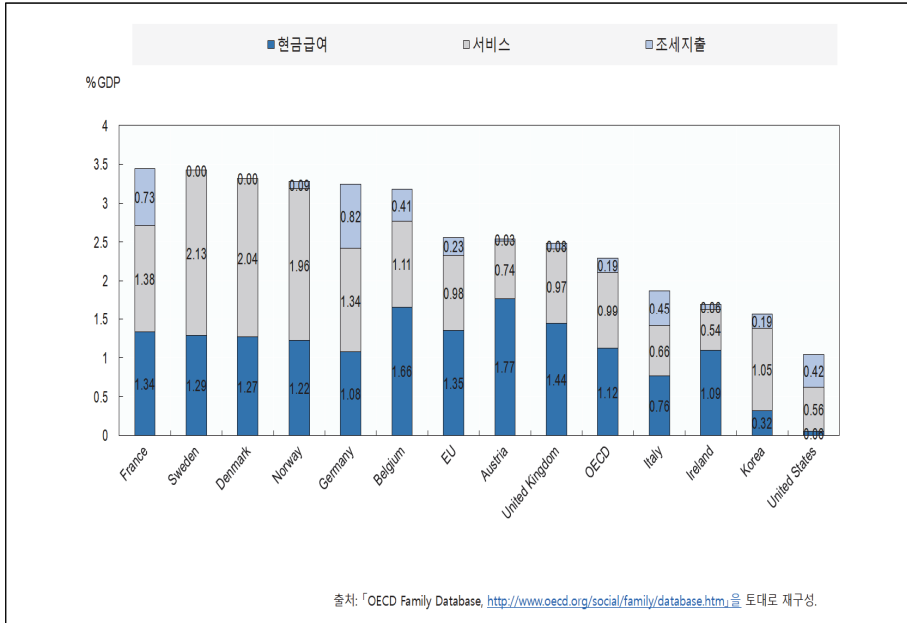
[그림 VI-2-3] 현금에서 서비스로의 비중 변화



2019년 현재 독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비 지출 비율은 3.24%로서 유럽 연합 평균 2.56%와 OECD 평균 2.2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유형 별 가족복지비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조세지출 0.82%, 서비스급여 1.34%, 현금급여 1.08%.

[그림 VI-2-4] OECD 주요 회원국 가족복지비 지출 비율

단위: %



2) 가족친화기업의 확대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확대와 더불어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가족정책 영역 중 하나가 가족친화기업의 확대이다. 2007년 아빠의 돌봄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모시간제(Elternzeit)를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는 부모시간제를 활용하는 부모들의 조속한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부모시간 Plus(Elternzeit Plus)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부모시간제를 비롯한 독일 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가족친화경영 확대는 독일의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 나와 유럽연합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기 시작한 주요 동력이 되었다. 부모시간제도의 확대에 의하여 아빠 돌봄참여가 확대되었으며 가족친화경영으로 인하여 부모의 일·가정양립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 부모시간제도

1986년부터 실시한 아동보육휴가(Kindererziehungszeit)의 명칭이 2001년부터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바뀌었다. 두 제도 모두 육아휴직을 의미하는데,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행위를 ‘휴가’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자녀 돌봄에 있어서 부모 역할을 하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부모시간’이 된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모시간이 부모가 갖는 취업 활동과 가족 생활 병행에 대한 욕구를 아동보육휴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아이가 태어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부모는 공동으로 부모시간을 얻을 수 있음.
- 부모시간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모나 부가 각각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여 취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음.
- 부모가 보육휴가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주당 19시간 이하 취업 활동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주당 60시간이 되는) 부모의 취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양육수당을 얻기 위해 취업 활동을 제한받아야 했던 문제를 부모시간 규정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봄.
- 사용자 동의를 얻을 경우, 부모는 아동 연령이 3세부터 8세 사이에 모두 합쳐 1년의 부모시간을 가질 수 있음.

2001년 보육휴가를 대체한 부모시간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정재훈·박은정, 2012). 취업 활동을 중단하고 보육을 하는 시기를 ‘휴가(Urlaub)’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가족 내 돌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개념이 ‘휴가’라는 것이다. 취업 활동에 비하여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었던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보육휴가 대신 부모시간(Elternzeit)을 사용함으로써 돌봄노동이 취업 활동과 동일한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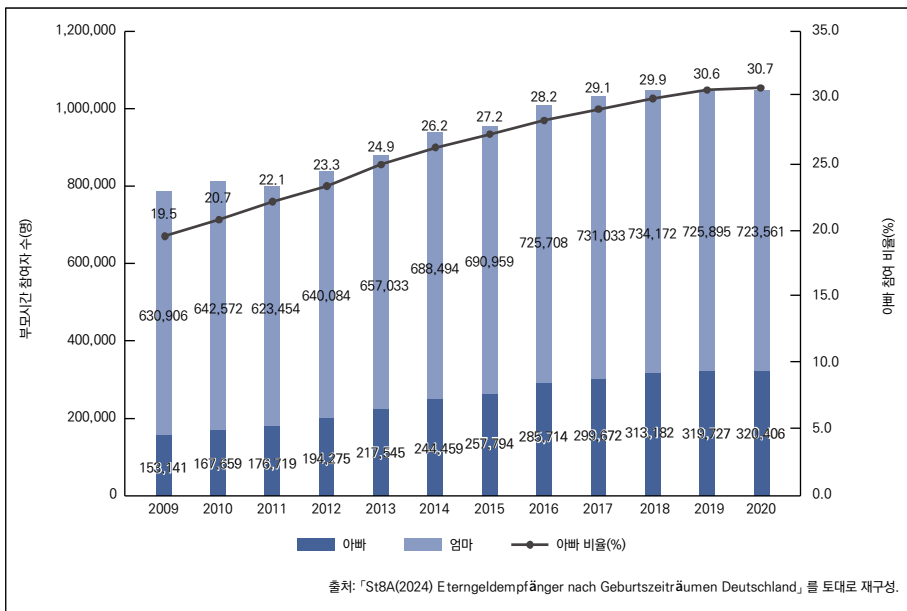
부모시간제도는 아동 돌봄으로 인한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시간제 노동 제한 시간 연장을 통하여 시간제 취업 노동 기회 확대, 부모시간을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도 가졌다. 아동보육 주체를 더 이상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부모로 확대한 표현이 부모시간이다. 부모시간 이전의 아동보육휴가에서 지급하였던 아동양육수당제도가, 사실상 시간제 취업 활동

을 제한함으로써 여성이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실제 정책 목표였을 뿐이다. 반면 개정된 아동양육수당제도는 시간제 취업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파트너십에 입각한 부모의 평등한 아동양육 분담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부모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길이 열렸다. 다만 유급 부모시간 기간은 1년에서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1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모시간을 14개월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부모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짧은 기간 휴직하는 한 명이 최소 2개월은 휴직을 하여야만 했다. 결국 부모시간제의 본격적 도입이 갖는 목표는 상대적으로 돌봄노동 참여율이 낮은 아버지의 부모시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아버지 할당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시간 참여에서 부모가족의 참여도가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자녀가 출생한 해에 부모시간을 사용한 부모 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 약 80만 명 수준이었다. 이 중 아버지는 약 15만여 명으로서 19.5%의 비율을 보였다. 2020년까지 부모시간 사용 부모 수는 100만 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버지는 32만여 명으로서 30.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VI-2-5] 부모시간 참여자 수 추이



자녀 출생 직후 1년을 부모시간제도를 활용하여 부모가 아이와 집중적으로 교감 하면서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후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일·가정양립을 하는 과제를 갖는다.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시작하는 초기 시간을 부모시간제도가 제공하였다면 이후에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가능케 하는 수단은 사회적 교육·돌봄체제와 지속적인 가족친화기업 환경이다. 확대된 킨더가르텐과 전일제학교가 일·가정양립으로 하는 하나의 길을 열어준다면 가족친화기업은 일·가정양립으로 향하는 또다른 중요한 길이다.

나) 가족친화경영

독일 가족친화경영의 특징은 기업이 주도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흐름이다. 독일 연방상공회의소(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kammer)가 2007년 연방 가족부(Bundesfamilienministerium)와 유럽사회기금(die Europäische Sozialfond)의 재정 지원을 받아 100% 재정 지원을 받아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소로서 가족’(Das Unternehmensnetzwerk ‘Erfolgsfaktor Familie’)」을 구축하고 가족친화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 전략의 하나로써 채택하였다(홍승아·정재훈 외, 2012). 2007년은 경제(Wirtschaft)와 정치(Politik)가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소로서 가족’(Das Unternehmensnetzwerk ‘Erfolgsfaktor Familie’)」을 통해 독일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은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였다. 그러나 하르쯔 개혁(Hartz-Reform)과 더불어 10% 이상이었던 실업률, 500만 명 이상이었던 실업자가 감소하면서 직업훈련(berufliche Ausbildung) 과정에서 배출해 내는 전문인력(Fachkraft)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정재훈, 2010). 1970년대부터 지속된 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노동력 규모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노동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의 주요 전략으로서 가족친화성(Familienfreundlichkeit)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가족친화전략이 우선 주목한 대상 집단은 여성이었다. 2014년 당시 취업여성의 절반 가량인 45%가 양육과 돌봄을 이유로 하고 주당 18.6시간의 노동만 하고 있

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일제 근무 기준인 주당 38.5시간 노동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정재훈, 2020). 여성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반면 여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성별역할분리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에서 엄마로서 일·가정양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취업활동 여성이 일·가정양립 책임 주체로서 갖는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출산 이후 회사를 그만 두면, 결국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인력정책상 손실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다(정재훈, 2010). 2004년 당시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 루트비히 게오르크 브라운(Ludwig Georg Braun)은 지속적 저출산의 심각한 결과로서 노동력 부족 및 노동력 질 저하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서 가족친화경영을 강조하였다.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중산층 고학력 여성(AkademikerInnen)을 기업이 필요한 현재의 노동력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출산하고 양육하는 후세대를 통해 미래의 전문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연방 상공회의소의 가족친화경영 전략 제시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여성이 경력 단절하지 않고 일하게 되면 기업의 인력 훈련 비용 등 인사관리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기업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방 상공회의소 주도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소로서 가족」에 연방사용자협회(Bundesverband der Arbeitsgeber: BDA), 독일연방산업협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V. - Startseite: BDI), 독일기술자중앙협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 ZDH)등 경제단체와 더불어 독일노동조합연합회(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도 참여함으로써 가족친화경영의 브랜드화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2013년 이후 연방 상공회의소도 네트워크 운영 비용의 20%를 부담하기 시작하는 등 기업 주도 지향을 확대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경제계와 노동계를 포함하면서 독일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하여 가족친화경영을 독일 경제의 대표적 상품(Markenzeichen)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독일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지역가족연대(Lokale

Bundnisse für Familie)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소로서 가족」⁶⁾은 거대 경제단체와 노동계의 협력하에 가족친화경영 실천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방 상공 회의소에 회원 기업이 되려면 직업훈련으로서 이중체계(das Duale System)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그러나 기업 네트워크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조건이나 가입 비용이 없다. 2024년 초 현재 기업 네트워크 가입 회원 기업은 8,600여 개이다.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 네트워크는 신규 가입 기업을 이미 가족친화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회원 기업과 연결하여 기업 간 노우하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업을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네트워크 가입 기업을 가족친화경영 확대 사업을 위한 일종의 풀(Pool)로서 조직화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블로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세미나, 워크숍, 연초에 개별 회원 기업 초대 행사 등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사례 및 모델 제시 등이다.

경제계와 국가가 가족친화경영 확대를 위한 홍보와 계몽, 교육을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소로서 가족」을 통해 주도한다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민간 공익재단인 헤르티 재단(Hertie Stiftung)에서 하고 있다. 헤르티 재단은 1974년에 연구, 교육, 시민교육 촉진 및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재단 소속 헤르티 유한공익재단(Hertie-Stiftung gGmbH)의 사업 중 하나로서 가족친화기업 인증 업무를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하고 있다. 일명 「직업과 가족 및 가족친화적 대학교 심사(audit berufundfamilie bzw. familiengerechte hochschule」⁷⁾라는 이름 하에 기업과 대학교의 가족친화 수준을 평가하고 가족친화 여부를 인증하는 사업을 하는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연합 회원국 가족친화인증 업무 대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의 목표는 기업이 미래지향적 인사정책(zukunftsfähige

6) 기업 네트워크 관련 내용은 「Erfolgsfaktor Familie 홈페이지<https://www.erfolgsfaktor-familie.de/>」를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7) 이하에서 「직업과 가족」으로 표기함.

Personalpolitik)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berufundfamilie,2024). 일·생활 균형, 일·가족양립이 유능한 전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본다. 일·생활 균형과 일·가정양립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과 가족」은 미래지향적 기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교육, 평가와 인증,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이 주체가 될 때,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일·가정양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직업과 가족」의 역할은 근로자에게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기업이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과 가족」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이 필요하다(berufundfamilie,2024).

- 독일 기업의 47%가 전문노동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36년경 현재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30% 정도가 은퇴를 하게 될 것임.
- 현재 약 496만 명 수준의 가족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 규모가 2030년 경에는 575만 명으로, 2050년경 725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임.
- 독일 기업 근로자의 다수가 유연탄력근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85%가 탄력적 근로시간을 바라고 있음.
- 40세 이하 근로자의 60% 정도가 주중 근무의 일부를 재택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음.
- 아빠 근로자의 48%가 배우자와 동등하게 자녀 돌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2010년대 초반 출생인구를 지칭하는 이른바 Z세대의 경우 73%가 사용자(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의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대학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2.4%에 달하며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비혼모 학생이나 부부 학생에 대한 가족친화적 학사 운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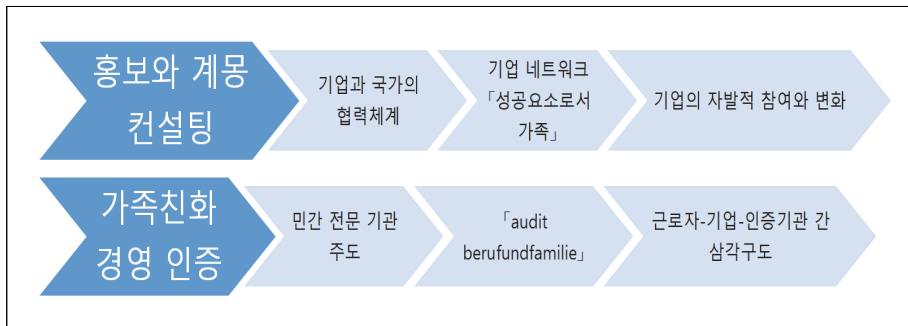
「직업과 가족」은 기업과 학교가 구성원이 갖는 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유연탄력 근무, 가족돌봄 지원 인력 확보, 관리직 영역에서의 시간제 근무 등에 대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근로자와 학생에 대한 기업과 학교의 호감도와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가족정책으로서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확대 노력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전문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여 기업이 국가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기업주도적 가족친화기업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둘째, 이 과정에서 경제와 국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의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경제계와 국가가 가족친화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 컨설팅, 교육, 행사 등을 협력하여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이 전문노동력 확보, 전문노동력의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기업 대상 컨설팅을 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국가가 하지 않으며 민간 전문기관에서 국가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네트워크의 운영 목적은 가입 회원 수 증가가 아니라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따라서 가입 조건이 없으며 가족친화인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가족친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소로서 가족」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은 민간 기관으로서 「직업과 가족」이 주도한다. 가족친화기업 확대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VI-2-6] 독일 가족친화기업 확대 전략



3.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⁸⁾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여 정책 용어로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 각종 정책 및 법률 개정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다. 여성 개인이 낳는 아이 수 자체보다 전체 출생아 수의 급감에 주목하는 저출생 개념이 대책의 기본 전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0.7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 여성 개인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 자체보다는 인구(출생아 수) 증가 그 자체에 주목하는 정책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욕구의 형성, 여성이 아닌 부모의 일·가정양립 가능성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2024년 6월 정부는 이른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2015년 만들었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2020년도 ‘합계출산율 1.5 달성’ 목표를 제시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저출생 대응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구 지원, 예비·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 안정 지원, 아이돌봄 정책, 육아휴직 확대와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로 구성되었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요지의 인식이 확대될 정도로⁹⁾ 가족 관련 인식과 가치관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족에 주목하고 가족에서 출발하는 정책 비전과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대응이다. 또한 아빠의 돌봄참여 확대가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예방에 어떻게 연결될 지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지 못하는 대응이기도 하다. 가족·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구 규모 자체만을 관리하겠다는 대응은 마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족)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시들어 가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의 면적(=인구 규모) 유지만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이루며, 이루어

8) 이하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근 정책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9)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삶의 의미?’…14개국은 ‘가족’, 한국만 ‘물질’이라 답했다.” 2021. 11. 21. — 한국인들이 물질적 풍요(19%)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로 꼽은 요소는 건강(17%)이다. 14개 국가에서 1순위로 꼽힌 가족은 3순위(16%)에 기록됐다.

진 가족들이 모여서 인구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출발은 가족정책이어야 하는데, 현재 저출생 대응은 가족을 보지 않은 채 인구에 시선을 맞춘 모양새라고 볼 수 있다.

가. 육아휴직 확대와 아빠의 참여

육아휴직 급여 수준 향상이 진행 중이다. 아빠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6+6부모육아휴직, 아빠 출산휴가, 부모모두 육아휴직’ 등 제도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아빠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참여 확대 방안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부모의 지속가능한 근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에 대한 전망은 제한적이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친화경영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기 어렵다. 대다수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을 예방하거나 관련 불안감 해소도, 그렇다면, 어려울 것이다.

[그림 VI-2-7] 저출생 대책으로서 육아휴직과 아빠 육아 참여



나. 아이돌봄 정책

유보통합을 시작하였으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2026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사회적 돌봄체계에서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의 확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보니 ‘돌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국가의 초등 돌봄 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이 아니라 “국가의 초등 교육·돌봄 브랜드로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강화다.”라는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돌봄을 여성의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여전히 보인다.

[그림 VI-2-8] 저출생 대책으로서 아이돌봄 정책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곳+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가 시행중이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 후모듬에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고민을 덜고 시교육비를 줄여겠다는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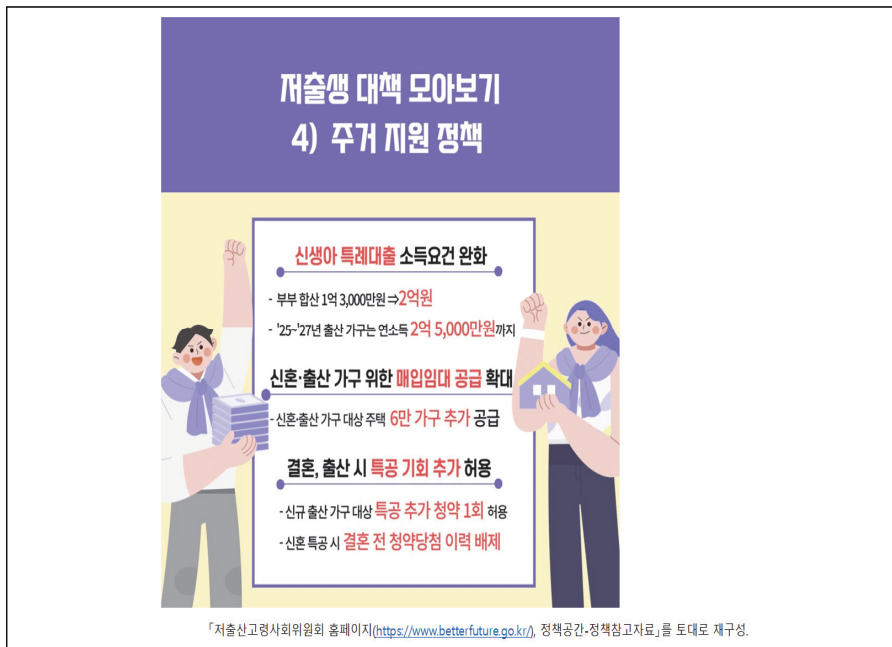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강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betterfuture.go.kr/>), 정책공간-정책참고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다. 주거 지원

법률혼 지원의 틀을 유지한 채 출산을 전제로 한 주거 지원 확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대출 중심 지원이 실제 주거 지원으로서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혼·출산, 결혼·출산’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의 전제로서 결혼을 강조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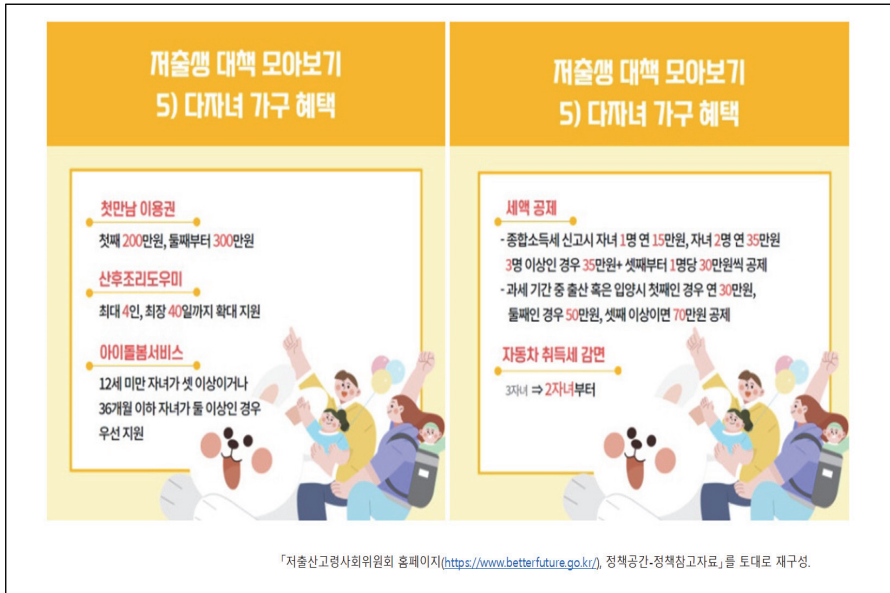
[그림 VI-2-9] 저출생 대응으로서 주거 지원



라.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의 기준이 두 명으로 바뀌었다. 첫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도우미,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녀 가구 대상 세액 공제 확대 폭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다자녀 지원은 가족 구성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 중심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포함한다면 향후 가족 구성의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 VI-2-10] 저출생 대응으로서 다자녀가구 지원



4. 결론

독일은 오랜 시간동안 ‘남성 = 가장, 주소득자; 여성 = 전업주부, 보완적 소득자’라는 전통적 성별역할분리 규범 유지를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지속해왔다. 반면 여성 사회진출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일과 가정의 경계에 서서 선택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사회적 경력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가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이다. 가족 개념의 재구성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가족 구성의 경로로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 형태 또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여 독일 가족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였다. 전업주부혼(Hausfrauenehe)에서 맞벌이부부를 전제로 한 가족정책의 변화이다. 그 결과가 사회적 교육·돌봄 체계의 구축과 가족친화경영의 확산이다.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가능케 하는 경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 ‘선택과 집중’이라는 저출생 대응의 방향 제시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을 우리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선 바람직한 변화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지나치게 낮아졌던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기울음소리가 커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다양성, 다양한 삶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일관되면서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아버지의 참여가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예방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아이돌봄 정책이 단순한 돌봄이 아닌 교육과 돌봄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주거 지원의 전제로서 전형적(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탈피하여 아이 중심 지원이라는 변화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구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도 아이 중심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약 20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치고 초저출산율까지 경험했던 독일은 2000년대 이후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이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회복하였다. 독일보다 더 오랜 시간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이다. 인구정책 틀에 고착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에서 시작하여 인구정책을 구성하는 저출산·저출생 대응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이 주는 시사점이다.

VII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01 일반 성과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02 심층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VII.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일반 성과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도입은 국정과제에서 만0~1세 아동 현금지원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23→’24년)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급여 도입」이 65.5%로 2/3에 가까운 부모 응답자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부모급여 도입」을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49.3%로 절반에 가까운 부모가 전체 육아정책 중 「부모급여 도입」을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부모급여」는 7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육아정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전문가의 46%는 「부모급여 도입」을 성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조사 및 전문가 조사 공통으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부모급여 도입」임을 보여준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영아 부모들은 연령이 낮은 관계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 현금지원의 체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부모급여 이전에 도입된 아동수당을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만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0-2세는 월 1만5천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월 1만엔을 지급하며,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월 3만엔을 지급한다(SBS 뉴스, 2023.12.12.).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박은정 외, 2022: 196). 현금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영유아기를 넘어서 공교육 단계에서 들어가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김형주 외, 2024: 497).

부모급여의 경우 0-1세 영아에 지원을 한정하고 있으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청소년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동수당과 연계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부모급여는 0-1세 영아에 현금지원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영아가구의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박은정 외, 2022: 193). 육아휴직제도에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급여는 취약한 영아가구 대상 지원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득구간을 나누어 급여액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일 경우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박은정 외, 2022: 194). 부모급여가 영아기 현금지원에 집중한다면 아동수당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존재하는 중고등학생 시기인 청소년기로 적용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둘째아 부터는 아동수당 금액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김나영 외, 2022: 284)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는 국정과제에서 임신·출산 모바일업 고도화, 난임 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는 부모조사 및 전문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약 18%의 지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에 대해 난임부부의 의료비에 대한 지

원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였고, 임신 및 산모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발생가능한 출생 전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 불식, 매년 임신기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의 수 및 실제 경제적 지원의 증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출산 후 전문인력 지원의 실현, 산모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의 경우 보건소, 병원 등과 잘 연계되어 있어 산모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성과로 제시되었다.

3) 아동진료체계 개선

아동 진료체계 개선은 국정과제에서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부모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 진료체계 개선」이 48.0%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3개 과제 중에서 가장 미흡한 과제는 「아동 진료 체계 개선」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전체 육아정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전문가들의 26.0%가 「아동 진료체계 개선」을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으로 선택하여 2번째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포함한 아동 진료체계 개선 사업이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의대증원 관련한 의정갈등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 진료체계 인프라인 소아청소년과가 줄어들고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 조사에서 「아동진료체계 개선」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로 지적되었다.

아동진료체계 개선은 초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인프라의 붕괴 및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 전달체계의 불안정성 심화가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 및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나. 교육·보육·돌봄 정책

1)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를 포함한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보통합」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19.7%),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16.1%), 「유보통합」(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이지만, 부모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충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보육서비스 질 제고」,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로 「유보통합」(2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평가에서도 「유보통합」정책을 28.0%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들의 28%는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2번째로 성과가 큰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유보통합의 성과가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반대로 유보통합의 성과가 작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진 후 정책 추진이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역시, 「유보통합」(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체 육아정책 대상으로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육아정책 1순위는 「유보통합」

(34.0%)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과 달리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치원 원장 면담조사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칭)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관 유형 및 규모가 다양하지만 시범사업은 이러한 기관 유형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현장과의 소통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유보통합 추진의 성과가 낮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통합법 제정,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영유아교육보육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확보 방안 등 유보통합의 세부 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국정과제에서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을 포함한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19.5%)는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19.7%)는 역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은 「유보통합」보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 조사에서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14%)는 3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함, 아동당 교사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 및 시간제보육은 크게 개선된 바 없음, 특히 장애가 있는 영유아당 교사 비율도 낮아서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등이 지적되었다.

어린이집 원장 면담조사에서는 보조교사 공급이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점이 성과

로 제시되었다. 보조교사 확대 정책은 어린이집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반면에 대체교사를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사가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교사 공급이 현재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 면담조사에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는 부모교육 및 시간제 보육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구체화된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현재 유보통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2024년 6월 27일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는 0세반은 교사 대 영아수를 점진적으로 1:2로 적용하고, 3-5세반은 교사 유아수를 1:8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4.6.: 12). 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4.7: 6). 향후 이러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교사 교육 강화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등의 확대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은 국정과제에서 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포함한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늘봄학교가 추진됨에 따라 학교 밖 돌봄이 학교 안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도록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은 국정과제에서 초등전일제 교육을 의미한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부모급여 도입」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이 11.0%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과제는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령기 부모의 요구가 높은 정책을 시행하였음, 취학 후 초등 돌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임, 초등저학년돌봄은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과제였음, 초등 저학년 자녀가정에서 1학년 입학시 매우 필요한 정책, 초등 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측면, 초등돌봄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늘봄학교 도입 성과는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 감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월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5만명이었는데,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만명의 대기자가 2024년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2,741교에서 발생하였으나, 해당 2,741개교는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2023년 돌봄교실 대기자의 대부분이 해소되었다(교육부 보도참고자료, 2024.3.12.: 2). 각 학교별로 2024년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 결과, 전국의 초1 학생 34.8만명 중 28만명(80.0%)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였고 희망자 전원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초1 돌봄 대기는 완전히 해소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8.14.: 1).

늘봄학교에 대한 향후 과제는 전담인력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늘봄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교직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늘봄학교 전담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을 2025년부터 지방공무원을 순증하여 배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8.14.: 3). 2024년 7월까지 전국 시도 함께

2,500명의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제출되었고, 교육부는 정원을 2-3년 분산 반영하여,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현직 교사 중에서 정해진 임기인 2년 동안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사를 선발하여 임기 동안만 교육연구사로 전직하고,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사 직책으로 재전직)로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8.14.: 3). 향후 늘봄지원실장 등 늘봄학교 전담인력이 원활히 배치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은 국정과제에서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를 포함한다.

전문가 조사에서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로 「발달장애인 지원」(12%)은 4번째로 성과가 미흡한 정책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정책과 적용 미흡, 장애조기 발견 및 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부족하고 전문기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제한적임 등이 지적되었다.

6)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은 국정과제에서 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를 의미한다.

전문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로는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이 포함된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1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은 별로 고려되지 못하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 육아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가족 단위의 사각지대가 잘 메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은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가족 중 두 가지 예시에 불과함에도 가족다양성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족다양성은 매우 다양한 차원과 층위가 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정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7) 식생활 건강권 강화

식생활 건강권 강화는 국정과제에서 급식 국가관리 확대를 의미한다.

전문가 조사에서 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과제로 「식생활 건강권 강화」(16%)는 2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식생활 건강권 강화」는 식생활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고 생활 운동 놀이 시간의 확대경험이 부족함, 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식생활 건강권이 강화될 수 없음, 부모들의 식생활 이슈와 관련된 높은 관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급식 국가관리 확대가 현재 수요자 체감도 및 급식 종사자 관리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 면담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조리사 고용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조리사의 근로 시간이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전일제로 일하는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아 고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식생활 건강권 강화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보육시설에서의 급식 종사자 채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44.0%)은 전문가 조사에서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56.0%)보다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양성 평등 일자리 구현의 수혜자가 한정적이라고 생각됨, 중소기업 등에 강제력이나 지원책이 없

어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만 해당됨, 육아휴직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존재함, 특정 집단(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는 정책, 특정 집단(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는 정책,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일상화 되고 있는 않고 눈치를 봐야하며 다자녀 출산 시 매우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임, 유연근무제보다 성과가 낮다고 여겨지는 정책임 등을 지적하였다.

2024년부터 '6+6 육아휴직제' 시행 등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3.12.3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0.8.)되는 등 정책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도 2010년 모 10.1명, 부 0.1명에서 2022년 모 30.0명, 부 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안수지, 2024). 그러나 전문가 조사의 결과는 아직도 육아휴직 사용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집중되고 아직도 문화적으로 실제 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국정과제에서 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포함한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4%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선택한 비율에 있어 남성(60.9%)이 여성(5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56.3%로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고, 특히 남성의 선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가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과를 낸 과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56.0%)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44.0%)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선택한 이유로 다양한 근로 시간제도 활용과 유연 근무 활성화는 맞벌이 부모에게 아동들을 좀 더 잘 돌보고, 삶을 안정되게 도와주어 일가정 양립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 자녀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여성의 재택근무, 시간제근무는 반드시 필요함, 최근 기업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지원이 가능해짐,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육아휴직의 장기간 사용은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중시하는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2년 제25차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이경희 외(2023)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10,429명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유연근무제 관련 조사에서 2022년에 유연근무제가 새로 도입된 경우 3.2%, 원래부터 직장에 유연근무제가 있는 경우는 5.6%, 원래 있던 유연근무제가 없어진 경우 5.6%,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85.6%로 91.2%의 임금근로자가 유연근무제가 없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외, 2023: 162).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가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듯이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대응에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의 노동시간이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일가정 양립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부모 및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온 것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보다 일상의 근로시간 운영에서 유연근무제 확대가 정책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심층분석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가. 설계 및 기획(design & planning)

설계 및 기획은 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앞에서 살펴본 <표 V-3-13> 성별 미혼인구 비율(30-39세)를 보면 30대 미혼율은 1990년 6.8%, 2000년 13.4%, 2010년 29.2%, 2020년 42.5%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보도자료(2024.10.30.)에 따르면 30대 미혼율은 2023년 51.3%로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4.10.30.: 4).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통계청 보도자료, 2024.10.30.: 4)인 30대 미혼율이 2020년 42.5%에서 2023년 51.3%로 빠르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라는 특수성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서 살펴본 제2차 인구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결혼을 선택하는 개인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으로 보여준다. 2023년 기준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의 미혼율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출산율이 반등되어도 유의미한 수준까지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목적과 대상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한국의 육아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의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론적 근거와 저출산 담론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대상자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와 비혼가정의 아동을 배제(exclusion)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민자에 대한 현재의 육아정책을 보면,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육아정책(현금, 서비스, 시간)의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2024.6.19.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 검토’가 포함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48). 그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와 함께 “경찰인구 확충 등을 위해 현재의 이민정책 방향을 비숙련단기인력

도입 중심에서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48).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금년 내 이민정책 수립 및 이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병행”이 제시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48).

그러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된 이민정책 방향에는 현재 육아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향후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외국인에게도 육아정책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및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할 시 향후 한국사회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육아정책 관련 법체계는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과제 수행은 진전이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 국가들 중에 혼인을 통한 출산만으로 대체출산율을 유지하는 사례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혼인을 통한 출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국제비교를 한 결과는 법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지원에 한정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육아정책의 대상 범위는 법적 혼인관계에 한정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다양성을 수용한 확대가 요구된다.

나. 거버넌스(governance)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과제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였다(2020년:19%. 2021년:12%)(김근진·유해미·조혜주, 2021: 297).

이와 같이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2024.8.30.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에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8.30.: 13).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합동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8.30.: 13).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같은 컨트롤 타워 강화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 정책결정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할 직접지원에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정책효과성 및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투입(input)

1)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간접지원은 Malthus model 및 Easterlin model에 근거하여 주거 및 고용 지원을 하면 결혼이 증가하여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는 이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인구정책에서 제외하고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2023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은 총 48조1,677억원이다. 이중 직접지원(출산 및 양육지원) 예산은 21조2,274억원(44%)이고, 간접지원(청년 고용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을 조성) 예산은 26조9,403억원(56%)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간접지원, 특히 주거지원이 주로 대출 및 용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영준(2022)은 2018년 기준 MZ세대(1980-1995년생), X세대(1965-1979년생), BB세대(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과 부채를 2000년 기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였는데, MZ세대의 경우 2000년 동일 연령대에 비해 근로소득은 1.4배가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4.3배로 증가하여 근로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최영준, 2022: 9-10). 통계청·통계

개발원(2023)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8년 대비 2021년 20대의 근로소득은 9.0%가 감소하였으나, 2018년 대비 2022년 20대의 부채는 93.5%가 증가하였다(통계청·통계개발원, 2023: 202-203).

이런 점에서 청년지원정책 그 중에서도 주거지원은 대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의 소득과 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년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산이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다.

향후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청년지원정책은 분리하여 보편적사회보장제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저출산 대책은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정재훈, 2024: 195). 특히 주거 지원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아이가 있는 가정,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대한 지원만 저출산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2024년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 대응 예산에서 직접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만 별도 관리한다는(2023년 기준 신혼·출산·다자녀 주거지원 7.5조원) 방향을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6.19.: 7). 저출산 대응 예산을 직접지원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방향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2) 예산 총액 및 현금지원 비중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1.56%로 OECD 38개국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국, 스페인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2019년 OECD 평균 2.29%).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OECD에서 하위권이다.

한국의 가족지원 예산은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현금지원 비중은 2019년 0.32%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0.50%로 확대되었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 2023년 부모급여 도입, 한국 GDP 2022년 2,161조8천억원,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 3조 2,691억원(24년 예산)(보건복지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 2024)으로 GDP의 0.15%이기 때문에 현금지원 GDP 비중 0.6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19년 0.32%의 2배로 증가하였으나(2024년 기준), 2019년 OECD 평균 1.1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앞에서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현금지원 정책 예산 비중은 서비스 지원 정책 예산과 비교했을 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자료에서는 가족지출 중 현금비중, 그리고 현금비중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비중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이영숙 외, 2023: 166).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에서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대응에 매우 중요하고, 현금지원 중 육아휴직 급여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금지원은 가족지원 지출 중 현금지원 비중이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현금지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비중이 17.6%로 네덜란드(3.0%), 영국(10.1%)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영숙 외, 2023: 166).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금지원 비중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현금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확대되는 사례를 보면 저출산 심화에 따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이 확대되어 왔으나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제 지자체에 정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현금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산과 관련하여 영유아 수 감소는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예산 총액에 미치는 부담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영유아 수 감소 추세는 1인당 지원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예상된다.

라. 과정(process)

과정(process)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달체계의 문제로서,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의 장기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의한 육아 인프라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점검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재희 외(2023)은 장래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기준으로 2024-2028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영유아 수 추이와 2022년 시도별 기관당 재원 영유아 수 평균 통계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수 추이를 산출하였다(이재희 외, 2023: 48) 그 결과 장래인구추계 저위 가정에서는 2028년 기준 2022년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감소율이 31.4%에 달했다(이재희 외, 2023: 51).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39,000개 수준인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장래인구추계 저위 가정에서는 2028년에 12,000개가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이재희 외, 2023: 51).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가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를 붕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의 붕괴는 유아교육·보육(ECEC) 기관에 대한 영유아의 접근성(access)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영유아와 부모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의 확충은 육아정책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완화(mitigation)의 관점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출산율 및 영유아 인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적응(adapt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보육(ECEC)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감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교육부)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을 0세반 1:2, 3-5세반 1:8을 목표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 28; 교육부, 2024: 7). 그 이후 진행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4.7: 6). 물론 이러한 교사 대 영유아 수 감축은 우선적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quality)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 대 영유아 수 감축은 교육·보육의 질 제고(quality)와 접근성 확보(access)모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대 영유아 수 감축은 비용 지원과 직결되는데 현재의 표준 유아교육비(유치원)와 표준보육비용(어린이집)은 3-5세 유아의 경우 3세반 15명,

4-5세반 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준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인데 이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할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유보통합 실행계획 상 3-5세반 1:8을 기준으로 할 경우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은 재정 상황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인구감소지역 등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 산출(output)

산출 지표는 앞에서 살펴본 국정과제에 포함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이 산출 지표에 해당될 것이다.

바. 결과(outcome)

결과 지표에 대해서 2024.8.30.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은 2030년 초 합계출산율 1.0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4.8.30.: 12). 이러한 목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20년 합계출산율 1.5를 목표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합계출산율 목표가 실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목표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출산 대응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초저출산을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합계출산율 반등은 1994년 1.24에서 2015년 1.50으로 합계출산율 0.26이 증가하는데 2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국과 같이 초저출산이 오랫동안 지속된 국가가 단기간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난 사례는 국제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여 2030년에 합계출산율 1.0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초저출산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계출산율 1.0은 여전히 OECD 최저 출산율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제고를 결과 지표로 하는 것보다 성별 임금격차,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률, 25-29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고용률 격차, 성별 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남성 임금·비임금 노동 시간 격차, 연간 평균노동시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가족구성의 다양화 수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표 등 출산과 양육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의 개선을 결과 지표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강혜규·노대명·이현주·이병재(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상북도(2024).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 계봉오·최슬기·권다은·고영선·김나영·김영철·양준모·이혜경·변수정(2024).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고용노동부(2023).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0.8).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노동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3.12.31.).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교육부(2023). 2023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교육부(2024.2.).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 교육부(2024.6.).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 교육부(2024.7.).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
- 교육부 보도자료(2024.2.5.).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교육부 보도자료(2024.4.3.).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4.8.1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 교육부 보도자료(2024.10.15.).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4.3.12.). 늘봄학교, 초1학년 12.8만명 혜택 본다.
- 교육부·보건복지부(2023.1.30.).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 국가통계포털(KOSIS).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3세 이상 인구)(원자료: 통계청 (2023). 2022년 사회조사)
- 국회예산정책처(2023a). 2022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1) 인구위기 대응

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3b).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김근진·박창현·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근진·유해미·조혜주(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최윤경·김희수(202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이윤진·김영민(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 서울대 출판부.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189-226.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2024).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성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2022.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1.22.), ‘온가족보듬사업’으로 가족서비스를 통합지원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879>, (2024.6.10.인출).

동아일보(2024.1.18). “가족단위 이민 늘자 출산을 반등… 육아휴직 정부가 지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18/123106260/1> (2024.6.10.인출).

메디칼월드뉴스medicalworldnews(2024.1.2.)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1월1일부터 시행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선권·김상미·안수지·이상직(2023).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 법무부(2023.12.).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
- 베이비뉴스(2024.04.02.). 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 보건복지부(2023). 2024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2024). 2024년 부모급여 인사!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 날짜 알아보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3320112972>, (2024.6.10.인출).
- 안수지(2024).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Futures Brief 24-09호.
- 엄동욱(2009).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진 것인가? - 저출산함정 가설의 검증과 함의-. 한국인구학, 32(2), 141-159.
-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여성가족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 우해봉·임지영(2023).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장인수(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외(2021).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심층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10-02.
- 윤수재(2022). 해외 평가·성과관리 동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총서 2022-1. 대영문화사.
- 은기수(2021). 후기산업사회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보건복지포럼(20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희·이지은·신선옥·정현상·권익성(2023). 제25차(2022)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 이삼식·엄애선·오경림(2022).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상림 외(2022).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14-01.
- 이성용(2013). 서유럽 특유의 가구형성규칙과 맬서스주의자의 항상성 모형: 인구학 패러다임의 탈중속화. 한국인구학, 36(2), 1-26.
- 이영숙·김지민·국중호·전승훈·김은경·고숙자(2023).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 재정의 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욱·조덕상·이경배·한영은(2024). 인구정책 성과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양미선·윤소정·김종근·구형모(2023).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II):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철희(2024).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위즈덤하우스.
- 임희진·황여정(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혜영·정재훈(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 가족정책전망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3.3.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4.8.30.).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한국인구학, 41(3), 41-63.
- 정재훈(2010). “독일의 저출산 문제 등장 배경과 정책적 대응 양상”, 민족연구 2010년 3월, 41호, 168-198쪽.
- 정재훈(202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적 대응과 출산 현상의 변화, KDI 학예연구 2020-01.
- 정재훈(2023).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출발 - 인구정책에서 가족정책으로의 전환 -. 한국가족복지학, 70(4), 215-233.

- 정재훈(2024).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21세기북스.
- 정재훈·박은정(2012), “가족정책 유형에 따른 독일 가족정책 변화 분석”, 가족과 문화 제24집 1호(봄호), 1-31쪽.
- 조덕상·한정민(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KDI Focus, 132.
- 조선일보(2023.07.18.) 인권위 “국내 거주 외국인 유아 학비, 정부가 지원해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18/BJIGV3MBUFEXTDUH6MLUMWW5XU. (2024.6.10.인출).
- 조영태(2021). 인구 미래 공존. 북스톤.
- 조영태(2022). 인구정책은 가족복지정책인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중앙일보(2021.11.22.) "삶의 의미?"...14개국은 '가족', 한국만 '물질'이라 답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718>. (2024.6.10.인출).
- 최영준(2022).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BOK 이슈노트 제2022-13호. 한국은행.
- 최윤경·김나영·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동훈·김근진·이윤진·이삼식·정익중·김기현·김승연·조혜주·염혜경(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사회보장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7).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2000-2015년.
- 통계청(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 통계청(2023a).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통계청(2023b). 2022년 출생통계.
- 통계청(2023c).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통계청(2024a).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 통계청(2024b). 2023년 12월 인구동향.
- 통계청(2024c). 2023년 출생 통계.
- 통계청 보도자료(2023.2.22.).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 통계청 보도자료(2024.10.30.). 인구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제공 확대

- 매년 혼인상태별 인구, 노년부양비 등 주요 인구지표, 다문화가구 MD 등 제공.

통계청·통계개발원(2021). 국민 삶의 질 2020.

통계청·통계개발원(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한성민 외(202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황혜신·이도석·윤태원·황덕연(2021).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장안 연구 III: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홍승아·장혜경·문미경·이인선·정재훈(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57.

SBS 뉴스(2023.12.12.). 일본,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무상교육에 고교생까지 아동수당 지급.

Becker, G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olumbia University an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9-240.

Becker, GS. (1992). Fertility and the econom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5(3), 185-201.

Becker, GS. & Lewis,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279-288.

Berufundfamilie(2024), Broschuere_berufundfamilie.

Caldwell, JC.(1976). Toward a restatement of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4), 321-366.

David Coleman 초청 학술행사 자료집. (2023.05.17.-18). Korea and its birth rates: Herald of a fast-shrinking world, or unique special case?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De Haas, H. (2024).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How migration really works). (김희주 옮김). 서울: 세종서적(주). (원서출판, 2023).

Demeny, P.(2010). Population policy, in Zeng, Y. (ed). *Demography: Encycyclopedia of Life Support Systems (Vol.II)*. Oxford: EOLSS Publishers/UNESCO, 294-313.

- Dumont, Arsene. (1890). *Depopulation et civilisation: Etude demographique*. Paris: Vigot Freres editeur.
- Easterlin, RA. (1976). The conflict between aspirations and resour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4), 417-425.
- Easterlin, RA. (1978). What will 1984 be lik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recent twists in age structure. *Demography*, 15(4), 397-432.
- Education at a glance(2021). OECD.
- Esping-Anderson, G. & Billari, F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Galor, O. & Weil, D.N. (2000). Population, technology, and growth: From Malthusian stagnation to the demographic transition and beyon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806-828.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a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Foucault, M.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1978년 (Securite, territoire, population: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77~1978). 서울: 난장. (오르트망(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옮김).
- Foucault, M.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1976년 (“II faut defendre la societe”: Cours au College de France 1975~1976). 서울: 난장. (김상운 옮김).
- Foucault, M. (2020).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Histoire de la sexualite 1: La volonte de savoir). (이규현 옮김). 경기도: 나남. (원서출판, 1976).
- Hamilton, BE. (2021). Total fertility rates, by matern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race and Hispanic origin: United States, 2019.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 70(5).
- KMK(2002). Allegemeinbildende Schulen in Ganztagsform in den Länd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6-2020,

KMK(2018-2022), des selbe.

- Inglehart, R. (2023). 조용한 혁명: 탈물질주의 가치의 출현과 정치 지형의 변화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박형신 옮김). 경기도: 한울아카데미. (원서출판, 1977).
- Inglehart, R. & Welzel, C. (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지은주 옮김). 경기도: 김영사. (원서출판, 2005).
- International survey of youth attitude 2018.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sthaeghe, R. (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is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NAS*, 111(51).
- Lesthaeghe, R. (2020).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1986-2020: sub-replacement fertility and rising cohabitation - a global update. *Genus*.
- Lutz, W., Skirbekk, V. & Testa, M.R.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167-192.
- Macfarlane, A. (2014). 잉글랜드에서의 결혼과 사랑(Marriage and Love in England). (이성용·윤희환 옮김). 서울: 나남. (원서출판, 1986).
- Malthus, T. R. (2011).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이서행 옮김). 서울: 동서출판사. (원서출판, 1798).
- Maslow, A.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rper and Row.
- May, J. F.(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Washington, DC: Springer.
- MBC 뉴스(2024.5.9.). 윤 대통령 “저출생대응부 신설..저출생 극복 국가역량 총동원”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6676_36431.html.

- Mcdonald, P. (2013). Societal foundations for explaining low fertility: Gender equity. *Demographic Research*, 28(4).
- Myrdal, A. & Myrdal, G. (2023). 인구위기(Kris I befolkningsfrågen). (홍재웅·최정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원서출판, 1934).
- Nöthen, M. (2005). Von der "traditionellen Familie" zu "neuen Lebens - formen" - Neuerungen in der Familien - berichter - stattung des Mikrozensus. In: *Wirtschaft und Statistik* 1/2005: S. 25-40.
- Pew Research Center(2021).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 Schnor, C. & Jalovaara, M. (2020). The increase in non-marital childbearing and its link to educational expansion. *Acta Sociologica*, 63(4), 400-421.
- Wilsamith, E., Manlove, J. & Cook, E. (2018). Dramatic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from 1990 to 2016. Research Brief, Child Trends.
- United Nations(2015). 2015 World Fertility Report Highlights.
- Beck-Gernsheim, Elisabeth(1998), Was kommt nach der Familie: Ein Blick in neue Lebensformen, Verlag C.H. Beck, München.
- Bertram, Hans u.a.(2006), Wem gehört die Familie der Zukunft? Expertisen zum 7. Familienbericht der Bundesregierung, Verlag Barbara Budrich.
- BMFSFJ(2010.11), Familien mit Migrationshintergrund.
- Buhrkart, Günter(2007), "Zukünfte des Geschlechterverhältnisse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g. 36, H.5, Oktober 2007, S.401-405.
- Der Spiegel(2004년 2호), Wie schafft ihr das bloss, S.49-53.
- Firestone, Shulamith(1970), *The Dialectic of Sex*, William Mortow and Company.
- Görres, Stefan(2011), Pflegenotstand in der Langzeitpflege: Welche Gegenstrategien sind möglich? Gesundheitspolitisches Kolloquium 18.5.2011 Universität Bremen.

- Hochschild, Arlie Russell(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ECD(2008.12.19.), The Future of the Family to 2030 - A Scoping Report.
- Pilkahn, Ulf(2007), Trends und Szenarien als Werkzeug zur Strategieentwicklung, Publicis Publishing.
- Rosky, Thomas(2010), Hartz IV. Alles, was Sie wissen müssen, Weltbild.
- Rürup-Kommission(2003). Nachhaltigkeit in der 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ungssysteme : Bericht der Kommission. Berlin.
- Sarrazin, Thilo(2010), Deutschland schafft sich ab: Wie wir unser Land aufs Spiel setzen, Deutsche Verlags-Anstalt.
- StBA(2002.5), Leben und Arbeiten in Deutschland. Ergebnisse der Mikrozensus 2001.
- StBA(2006.6), Kinderlosigkeit von Akademikerinnen.
- StBA(2009.11),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60.
- StBA(2011), Pflegestatistik Deutschland.
- Textor, Martin(2009), Die Familie in Gegenwart und Zukunft : Positionen, Provokationen, Prognosen, Norderstedt.
- Thilo Sarazin(2010), Deutschland schafft sich ab, DVA
- Titmuss, Richard(1979), Commitment to Welfare.
- Voß, Dieter(2009), Anforderungen der Pflegekassen an die zukünftige Versorgung der Demenzkranken, MDS-Pflegeforum(14.12.2009).

관련 웹사이트

- 가족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www.erfolgsfaktor-familie.de>
- 독일 연방통계청(StBA). <https://www.destatis.de/DE/Themen/Branchen-Unternehmen>
- 독일방송문화 홈페이지.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wuermeling-mutter-kind-100.html>, (2024.6.10.인출).

- 법제처 사이트, <https://www.moleg.go.kr/>, 한부모가족지원법, (2024.6.10.인출).
- 베를린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berlinonline.de/berliner-zeitung/archiv/bin/dump.fcgi/2003/1122/meinung/0019/index.html>. (2024.6.10.인출).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이트, <https://dietary4u.mfds.go.kr/>
- 연방 가족여성부 홈페이지, www.bmfsfj.de.
- 저출산고령사회의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policyReference.do>.
- 정부업무평가포털사이트 <https://www.evaluation.go.kr/web/index.do>,
- 주택금융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houstat.hf.go.kr/research/portal/theme/indexStatPage.do#none>, (2024.6.10.인출).
- 프랑스 국립 인구통계학 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ined.fr/en/glossary/population-policy/>
- OECD Statistics 홈페이지, <https://www.oecd.org/en/data.html>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19호, 2021. 4. 13.,

일부개정]

Grundgesetz Art.3(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Grundgesetz Art.3 (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Policy Performance and Tasks of ECEC(II): Focusing on the Outcome Evaluation of the National Plan of ECEC

Keun Jin Kim, Yunjin Lee , Eunyoung Park, Jaehoon Jung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key area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in Korea, focusing on national policy achievements.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in Korea,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five-year national agenda. It assessed the desig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utcomes of these policies. This analysis helped identify significant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areas where the plans fell short or were not implemented. The study also proposed future improvements.

This study classified the main three areas as cash assistance and medical support,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parenting time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has analyzed population policies response for childrearing and evaluated past outcome of Korean government's population policies and suggest macroscopic directions for the combination of population policy and childrearing policy.

The detailed research content includes: First, developing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level of government initiativ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and nurturing over a five-year period. Second,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se initiatives over the past year.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policy outcomes, 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and proposing future enhancements.

In addition to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nsultation based on the policy plans proposed by each ministry and the degree of achievement against the annual targets, we examined how the goals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mplemented are felt from the perspectives of parents and experts, and reflected in the child-rearing process and environment as a whol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balanced support polic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emphasizing the integration and elimination of redundancies between policies and services. It also recommends prioritizing policies that ensure the safety of young children as a fundamental direction.

The policy suggestions focus on enhanc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through various approaches:

The study proposes various policies: cash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extension of cash support age, and additional vouchers. Service support policies include enhancing childcare service quality, reviewing educational programs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mproving treatment for childcare workers, and adjusting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services. Time support policies suggest promoting systems for work-life balance post-childbirth and increasing maternity leave benefits.

Keywor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analysis,
Outcome Evaluation

부록 1. 부모 설문지

육아정책 성과분석 부모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일반과제인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Ⅱ):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분석과 향후 제언을 위해 자녀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부모님들의 의견과 주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문2.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 주세요. _____년

문3. 귀하의 혼인여부를 다음 중 선택해 주세요.

1. 미혼 2.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3. 사별 4. 이혼 5. 기타 ()

문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명 수를 기입해 주세요.

1. 자녀 있음 _____명
2. 자녀 없음 → 조사 중단

문5. 귀하의 자녀의 출생년도를 작성해 주십시오 (셋째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 자녀 | 출생연도 |
|-------|--------|
| 첫째 자녀 | _____년 |
| 둘째 자녀 | _____년 |
| 셋째 자녀 | _____년 |

문6.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3. 중소도시(특별·광역·특별자치시 이외 시 소재) 4. 군(읍·면 지역)

문7. 귀댁의 근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1. 맞벌이 가구(본인 근로) 2. 맞벌이 가구(배우자 근로) 3. 외벌이 가구

문8. 귀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은 세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기타소득에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 본인 근로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 2) 배우자 근로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 3) 기타 가구 소득(기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정부지원금 등 포함) 월 평균 _____만원
- 4) 월 가구 총 소득 _____만원

문9. 귀댁의 월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녀양육비의 경우,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 등은 제외하고, 자녀 고유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대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나이대 자녀 합산).

- 1) 취학 전(만 0~6세)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_____만원
- 2) 취학 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_____만원
- 3) 월 가구 총 자녀양육 비용 _____만원



II.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1. 최근 2년 이내에 (2023~2024년)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인지 여부 | | 이용 경험 | | 만족도 | | | | |
|----------------------------|-------|-------|-------|----|--------|-----|----|----|-------|
| | 알고 있음 | 알지 못함 | 있음 | 없음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1. 공공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2.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3. 어린이집 이용 | | | 1 | 2 | 1 | 2 | 3 | 4 | 5 |
| 4. 유치원 이용 | | | 1 | 2 | 1 | 2 | 3 | 4 | 5 |
| 5. 시간제보육 | 1 | 2 | 1 | 2 | 1 | 2 | 3 | 4 | 5 |

문1-1. 해당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
|-----------|--|
| 보기 | ① 교육 및 돌봄의 질적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실제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기타() |
|-----------|--|

1. 공공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
3. 어린이집 이용
4. 유치원 이용
5.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시간이 2020년 3월부터 12시간(7:30~19:30)에서 7시간(9:00~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보육시간은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되었으나,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실시되는 연장보육(16:00~19:30)은 자격심사를 통해 이용가능하고, 시간당 1,000~3,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1-2. 귀하는 최근 2년 이내에 (2023~2024년)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 1-2-1로 이동
2. 아니오 -> 문 1-3으로 이동

문1-2-1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2 | 3 | 4 | 5 |

문1-2-1-1.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대해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2. 보육의 질이 높아서
3. 비용 부담이 낮아서
4. 기타 ()

문1-2-1-2.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대해 (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2. 보육의 질이 낮아서
3. 비용 부담이 높아서
4. 기타 (·)

문1-3. 귀하는 최근 2년 이내에 (2023~2024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 1-3-1로 이동
2. 아니오 -> 문 2로 이동

문1-3-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2 | 3 | 4 | 5 |

문1-3-1-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에 대해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2. 교육 및 돌봄의 질이 높아서
3. 비용 부담이 낮아서
4. 기타 (·)

문1-3-1-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에 대해 (매우)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
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한 시간 만큼 이용할 수 없어서
2. 교육 및 돌봄의 질이 낮아서
3. 비용 부담이 높아서
4. 기타 (·)

문2. 최근 2년 이내에 (2023~2024년) 초등방과후돌봄에 대한 인지도부,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 | 만족도 | | | | |
|---------------------|-------|-------|-------|----|--------|-----|----|----|-------|
| | 알고 있음 | 알지 못함 | 있음 | 없음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 2 | 1 | 2 | 1 | 2 | 3 | 4 | 5 |
| 1. 초등돌봄교실 | | | | | | | | | |
|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 | | | | | | | | |
| 3. 지역아동센터 | | | | | | | | | |
|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포함) | | | | | | | | | |
| 5. 공동육아나눔터/마을공동체 돌봄 | | | | | | | | | |
| 6. 늘봄학교* | | | | | | | | | |

*늘봄학교: 2024년 도입,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포함

문2-1. 해당 초등방과후돌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적어주시시오.

| | |
|----|--|
| 보기 | ① 교육 및 돌봄의 질적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실제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⑨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⑩ 기타() |
|----|--|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돌봄 포함)
5. 공동육아나눔터/마을공동체 돌봄
6. 늘봄학교*

*늘봄학교: 2024년 도입,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포함

문3. 귀하는 다음의 육아지원 제도 중 무엇을 이용하였습니까? 각 지원 제도 별로 이용 경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경우에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이용 경험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신청했으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용 경험 '없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구분 | | 인지여부 | | 이용/수혜 경험* | |
|----------------------|---|-------|-------|-----------|----|
| | | 알고 있음 | 알지 못함 | 있음 | 없음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1. 아동수당 | 1 | 2 | 1 | 2 |
| | 2. 부모급여 | 1 | 2 | 1 | 2 |
| | 3. 가정양육수당 | 1 | 2 | 1 | 2 |
| | 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1 | 2 | 1 | 2 |
| | 5.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1 | 2 | 1 | 2 |
| | 6.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급, 2024년 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 지급) | 1 | 2 | 1 | 2 |
| | 7. 지자체 현금지원금(출산지원금 등) | 1 | 2 | 1 | 2 |
|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8. 모 출산휴가 | 1 | 2 | 1 | 2 |
| | 9. 부 출산휴가 | 1 | 2 | 1 | 2 |
| | 10.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 2 | 1 | 2 |
| | 11.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 2 | 1 | 2 |
| | 12. 모 육아휴직 | 1 | 2 | 1 | 2 |
| | 13. 부 육아휴직 | 1 | 2 | 1 | 2 |
| | 14.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1 | 2 | 1 | 2 |
| | 15.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1 | 2 | 1 | 2 |
| | 16.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1 | 2 | 1 | 2 |
| 17.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1 | 2 | 1 | 2 | |

문3-1. 지자체 현금지원금(출산지원금 등) 총 수급액을 기입해 주세요

_____만원

문3-2. 이용한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 구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아동수당 | 1 | 2 | 3 | 4 | 5 |
| 2. 부모급여 | 1 | 2 | 3 | 4 | 5 |
| 3. 가정양육수당 | 1 | 2 | 3 | 4 | 5 |
| 4.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1 | 2 | 3 | 4 | 5 |
| 5.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1 | 2 | 3 | 4 | 5 |
| 6.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급,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 지급) | 1 | 2 | 3 | 4 | 5 |
| 7. 지자체 현금지원금(출산지원금 등) | 1 | 2 | 3 | 4 | 5 |
| 8. 모 출산휴가 | 1 | 2 | 3 | 4 | 5 |
| 9. 부 출산휴가 | 1 | 2 | 3 | 4 | 5 |
| 10.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 2 | 3 | 4 | 5 |
| 11.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 2 | 3 | 4 | 5 |
| 12. 모 육아휴직 | 1 | 2 | 3 | 4 | 5 |
| 13. 부 육아휴직 | 1 | 2 | 3 | 4 | 5 |
| 14.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1 | 2 | 3 | 4 | 5 |
| 15.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1 | 2 | 3 | 4 | 5 |
| 16.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1 | 2 | 3 | 4 | 5 |
| 17.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1 | 2 | 3 | 4 | 5 |

문3-3. 해당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세요.

문3-3-1. 현금지원

| 구분 | ①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③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④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⑥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인프라 등 다른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어서 ⑦ 기타() |
|--|---|
| 1. 아동수당 | |
| 2. 부모급여 | |
| 3. 가정양육수당 | |
| 4. 첫만남이용권(생후 육아용품 구입비 200만원 지급,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 지급) | |
| 5. 지자체 현금지원금(출산지원금 등) | |

문3-3-2. 의료비 및 건강 지원

| 구분 | ①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③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④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 기타() |
|-------------------------------------|--|
| 6.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 7.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

문3-4. 해당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구분 | ①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③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④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⑤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자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⑥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기타() |
|--------------------|--|
| 8. 모 출산휴가 | |
| 9. 부 출산휴가 | |
| 10. 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
| 11. 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
| 12. 모 육아휴직 | |
| 13. 부 육아휴직 | |
| 14.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
| 15.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
| 16.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
| 17.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 |



III. 윤석열 정부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문4.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p>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 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일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p>교육·보육·돌봄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
| <p>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문5.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5-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문5-2. <교육·보육·돌봄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문5-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문6.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p>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 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p>교육·보육·돌봄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
| <p>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문6-1.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6-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문6-1-2. <교육·보육·돌봄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문6-1-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IV. 윤석열 정부 육아정책의 향후 중요도에 대한

문7.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p>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 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 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p>교육·보육·돌봄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
| <p>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문7-1.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7-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문7-1-2. <교육·보육·돌봄 정책> 범주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문7-1-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전문가 설문지

육아정책 성과분석 전문가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일반과제인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과분석과 향후 제언을 위해 육아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응답 시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정과제 | 주요내용 | |
|--------------------------------------|--|---|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 부모급여 신설 | •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 어린이집 아동당 교사 비율 조정 |
| | | • 어린이집 시설면적 상향 검토 |
| | | • 보육교사 처우개선 |
| | | • 부모교육 확대 |
| | | •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선 |
| •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 | |
| 총총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 •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 지대 보충 | |
|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
| | •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 |
| | •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 |
| | •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 |
| | •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 |
| |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 |
| | •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
| 아동·청소년보호책임 강화 | •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발달장애인 지원 | • 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
| | |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 | | •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한부모가족 지원 |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 | 다문화가족 지원 | •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문화 수용성 제고 |
| | 다양한 가족지원 | •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수 고용직 등) 확대 |
|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 | | • 난임 휴가기간 확대 |
|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 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 국정과제 | 주요내용 | |
|--|------------|---|
|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아동학대 방지 | •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아동 진료체계 개선 | •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진료체계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 사업」 도입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
|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식생활 건강권 강화 | • 급식 국가관리 확대 |
|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 확보 | 교통안전 | •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
| | 사회적 약자 보호 |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유보통합 | •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
| | | •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 | |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 | | •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 | 초등전일제 교육 | •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 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 | |



1. 윤석열 정부 육아 관련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추진 성과평가

문1. 다음은 육아정책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정부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귀하가 전문가로서 인지하고 판단하시는 성과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못했으면 1점, 매우 잘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 | 매우 못했다 | | | 보통 | | | 매우 잘했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 | | | | | |
|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 | | | | | |
|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 | | | | | |
|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 | | | | | |
| 5)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 | | | | | |
| 6)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 | | | | | |
| 7)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 | | | | | |
| 8)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 | | | | | |
| 9)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 | | | | | |
| 1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 | | | | | |

문2. 윤석열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에 대해 1,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2-1. 윤석열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1,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5)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6)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7)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8)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9)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1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문2-1-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1. ()
- 2. ()

문2-2. 윤석열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 1,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5)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6)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7)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8)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9)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1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문2-2-1.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1. ()
- 2. ()

문2-3. 윤석열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 1,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2)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3)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4)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5)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6)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7)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8)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9)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1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문2-3-1.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1. ()
- 2. ()

문2-3-2. 실행이 가장 미흡하다고 선택하신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
- 2. ()

문3.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23~2024)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 | | 보통 | |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 | | | | | |
|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 | | | | | |
|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 | | | | |

문4.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다음으로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23~2024)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보육·돌봄 정책>

| |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 | | 보통 | |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 | | | | | |
|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 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 | | | | | | |
|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 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 | | | | | |
|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 | | | | | | |
|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 | | | | | | |
|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 | | | | | |
|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 | | | | | | |
|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 | | | | | | |
|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 | | | | | | |

문5.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최근 2년(2023~2024)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 | | 보통 | |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 | | | | | | |
|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 | | | | | |

문6.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 높음, 정책 효과 높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정책범주 | 정책과제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 |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 |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교육·보육·돌봄 정책 |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 |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
| |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 정책범주 | 정책과제 |
|-------------------------|---|
| |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문6-1. 문 6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1. ()
2. ()

문7.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 높음, 정책 효과 높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7-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문7-2. 교육·보육·돌봄 정책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문7-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문7-4. 문7-1 ~ 문7-3번에서 각 정책범주별 선택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 정책범주 |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 교육·보육·돌봄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문8.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 낮음, 정책 효과 낮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정책범주 | 정책과제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 |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 |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교육·보육·돌봄 정책 |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 |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
| |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 |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
| |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
| |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 |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
| |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
| |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
| |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문8-1. 문 8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1. ()
2. ()

문9.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작은(수요자 만족도 낮음, 정책 효과 낮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9-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문9-2. 교육·보육·돌봄 정책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문9-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문9-4. 문9-1 ~ 문9-3번에서 각 정책범주별 선택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 정책범주 |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 교육·보육·돌봄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II. 윤석열 정부 육아정책의 향후 중요도에 대한 질문

문10. 육아정책에서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범주는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2. 교육·보육·돌봄 정책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문10-1. 문 10번에서 선택한 정책범주가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1. ()

문11.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의 향후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점, 매우 중요하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문1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 보통 | | | 매우 중요 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 | | | | | |
|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 | | | | | |
|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치)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 | | | | |

문11-2. <교육·보육·돌봄 정책>

|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 보통 | | | 매우 중요 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문11-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 보통 | | | 매우 중요 하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문12.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 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정책범주 | 정책과제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 |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 |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
| 교육·보육·돌봄 정책 |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 |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
| |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 |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
| |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
| |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 |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

| 정책범주 | 정책과제 |
|-----------------|---|
| |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
| |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
| |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문12-1. 문 12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시오.

1. ()
2. ()

문12-2.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12-2-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급여 도입(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2.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3. 아동 진료체계 개선(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제공)

문12-2-2. <교육·보육·돌봄 정책> 범주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유보통합(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보육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마을돌봄 활용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 늘봄학교 도입 및 운영(초등전일제 교육)
5. 아동학대 방지(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6. 발달장애인 지원(장애 조기발견·개입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7. 취약계층 및 다양한 가족 지원(한부모·다문화·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강화)
8. 식생활 건강권 강화(급식 국가관리 확대)
9. 교통안전(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보호의무 확대)

문12-2-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2.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기업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문12-2-4. 문12-2-1 ~ 문12-2-3번에서 각 정책범주별 선택 정책에 대해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시십시오.

| 정책범주 |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이유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 교육·보육·돌봄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범주 선택 정책 | |

문13.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육아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각 정책범주별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이하 해당란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정책범주 |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 |
|----------------|------------------|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
| 교육·보육·돌봄 정책 | |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

배문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하십니까? 가장 주되게 하시는 일을 응답해 주십시오.

1. 대학 교수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공무원
4. 현장전문가(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종사자)
5. 기타 전문가()

배문2.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유아교육
2. 교육
3. 아동/보육
4. 가족
5. 여성
6. 사회복지
7. 정책/행정
8. 경제
9. 기타()

배문3. 귀하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면담조사 질문지

| 대상 | 면담조사 질문 |
|------------|---|
| 어린이집 원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어린 이집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 는「유보통합」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유보통합」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현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4.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추진된 보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6. 향후 보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7. 보육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안하시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유치원 원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유보통합」은 교육부·교육청 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 등 단계적인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 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유보통합」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유보통합」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으로 인해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4.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추진된 유아교육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6. 향후 유아교육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7.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안하시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
: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